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 청대 월해관과 관세 대리 징수 구조

— 海關兩의 기원과 관련하여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주 형 준



# 청대 월해관과 관세 대리 징수 구조

－ 海關兩의 기원과 관련하여 －

지도교수 김형중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주 형 준

주형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 위 원 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 국문초록

# 청대 월해관과 관세 대리 징수 구조

— 海關兩의 기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주 형 준

본 학위논문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와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분석한 연구이다. 청조는 강희 23년(1684) 四口通商의 형식으로 대외 무역을 재개한 이후 건륭 24년(1759) 洪任輝事件을 계기로 一口通商과 行商制度를 특징으로 하는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인 廣東體制를 완성하였다. 광동체제의 성립은 廣州의 상거래 관습과 청조의 對서양 무역 정책이 제도로서 정착된 것을 의미하였고, 도광 22년(1842) 南京條約의 체결로 廣州 외 네 곳에 통상 항구를 신설하고, 行商의 독점적인 무역 권한을 취소할 것이 결정되면서 해체되었다. 즉,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1759년부터 1842년까지 廣州의 월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의 무역 정책이 집약된 관리 제도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광동체제가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청조는 기존에 체제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는 그 모델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조약에 따른 대외 무역의 확대와 무역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동체제가 해체되고 시작된 五口通商 시기(1842-1858)는 청조가 기존의 징세 시

시스템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를 구축해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성과 특징, 구조적 결합, 작동 매커니즘뿐만 아니라 호부의 對서양 무역 정책에 변화와 그것이 징세 구조에 끼친 영향 등 아편전쟁 직전까지 청조가 구축한 징세 시스템과 대외 무역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은 오구통상 시기 해관을 이해하고, 다구통상 시기에 출현하는 ‘근대 해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청조의 해관 정책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과 ‘근대 해관’의 출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외 무역의 재개를 결정한 이후 설치된 海關은 모두 내지 무역을 관리하는 權關體制에 따라 운영되었다. 명대 鈔關에서 유래한 權關은 청대 호부와 공부에서 관할하는 세관인 戶關과 工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통과세를 징수하는 세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각관체제의 핵심은 權關이 ‘매년 정해진 할당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결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청대 재정 운영 원리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正額主義가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적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청조의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내지 常關과 동일한 정책주의가 반영된 호부의 징세 기관으로서 운영되었다. 대외 무역항은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서 정책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海關의 본질적인 속성이었다. 상품의 유통량과 교역량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강희 연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옹정 연간 耗羨歸公을 거치며 陋規가 雜稅로 포함되었고, 세수가 급증하며 강희 연간 설정한 權關의 할당액을 넘어서는 초과 징수분인 盈餘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건륭 초까지 국내 상품 유통량의 증가와 대외 교역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權關의 초과 징수분은 이미 할당액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건륭 초 對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월해관의 성장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월해관의 세수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징수분의 비중은 높

아졌고, 호부의 입장에서는 초과 징수분의 증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각관체제에서 호부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징세 과정을 직접 감찰할 수 없었고, 징세 기관에 대한 호부의 뿌리깊은 의혹과 불신은 세수의 회계 결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호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행된 일련의 행정 조치들은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정리할 수 있겠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내지의 常關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월해관은 행상이 무역에 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는 반대급부로 관세의 과세와 징수 및 외국인을 관리 등 관세 행정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형태의 징세 청부제를 채택하였고, 이것은 청조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은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민간의 징세 청부업자에게 관세 행정을 위탁하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각관체제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 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존재하였고, 호부는 이러한 예외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하였다. 다만, 호부의 월해관 운영 원칙은 관세 대리 징수 구조를 因地制宜의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건륭 초 이미 월해관은 전국의 樞關에서 세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요주의 樞關으로서 호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건륭 연간 계속된 각관체제의 변화와 수정은 바로 월해관으로부터 시작된 正額主義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호부의 조치였고, 월해관 행정에 대한 호부의 엄정화 정책의 방향은 각관체제로부터 원심력을 높여가던 월해관에 대한 대응이었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기존에 특례로서 인정되었던 예외들에 대한 취소 혹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각관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호부의 의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아편전쟁 이전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내무부 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하는 기존에 이해 방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본 학위논문은 건륭 29년(1764) 세수 운송 체계의 재편에 따른 水脚銀의 節省分에 歸公과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을 통해 월해관에 인정되었던 특례들이 부정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청부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존 이권을 축소시키고,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였던 행상의 주요 이권 중에 하나는 징수한 관세를 회계 결산일 전까지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관세 운용권이었다. 당시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서 행상은 이를 통해 막대한 현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고, 관세 운용 기간의 축소는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급격하게 경색시켰다.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에 따른 월해관 행정 체계의 변화는 가경제와 도광제 시기 행상의 연쇄적인 도산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월해관의 징세 구조는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는 주체(징세 청부업자)와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주체(월해관)가 분리되어 있었다. 對서양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은 과세한 관세를 정확하게 징수하여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하지만 대외 무역이 재개된 이후 廣州는 서양과 중국의 이질적인 문명이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서 경제 활동을 매개로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징세 당국로서는 다양한 무게와 순도를 가진 중국의 銀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외국 은화의 순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월해관의 관세 행정은 매우 위험(risk)이 큰 업무였다. 징세 당국은 이렇게 번거롭고 리스크가 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대리 징수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에게 관세 행정(과세와 징수)을 위탁하더라도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업무는 월해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였고, 여기서 저울추 무게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세의 과세 기준은 호부의 회계 기준에 따라 庫平銀을 기준으로 하였다. 칭량화폐 체계의 특징상 호부에서 사용하는 고평과 각 징세 기관에서 사용하는 고평의 무게에 차이가 있었고, 각관체제에서는 이 비용을 정식 지출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월해관의 관세는 징세 청부업자가 징수하였으므로 행상이 사용하는 고평과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고평에도 무게 차이가 있었다. 즉, 징세 청부업자-월해관-호부, 이 세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저울추

의 무게 차이가 존재하였고, 각관체제에서 인정된 부분은 월해관-호부 간에 비용 지출뿐이었고, 징세 청부업자-호부의 저울추 무게 차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바로 건륭 29년(1764) 節省水脚銀의 歸公을 둘러싼 호부-월해관의 갈등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월해관은 저울추의 무게 차이로 인해 관세의 징수와 회계 과정에서 두 차례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것은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월해관 행정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과정에서 출현한 중간 단계의 화폐 단위인 關平銀이 출현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고평 저울추인 粵海關平으로 무게를 측정된 足色紋銀인 粵海關銀으로 세수를 회계 처리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은 廣州의 市平인 司碼平으로 무게를 측정하여 월해관을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여 대납하였고, 월해관은 월해관을 호부 庫平銀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조정하여 세수를 결산하였지만, 저울추의 무게 차이에 따라 호부에서 최종적으로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셈이었다.

오구통상 시기는 광동체제下 월해관 시스템의 변용과 확대의 과정이었다. 신설 해관은 조약에 의거하여 개정된 월해관의 稅則을 적용하였고, 해관의 도량형, 회계 연도, 회계 방식은 월해관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해관은 대외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내지의 常關과 차이점을 인정받으면서 더 이상 榷關으로서의 통일성을 요구받지 않았다. 이 시기부터 해관은 각관체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운영 원리를 구축하였다.

호부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파생물인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오구통상 시기 해관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월해관평을 관세 징수의 무게 기준으로 하는 海關平을 사용하였다. 관세는 해관평으로 무게를 측정된 족색문은을 기준으로 하는 關平銀으로 징수하였고, 결국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화폐 단위는 동일하였다. ‘근대 해관’의 화폐 단위로 익숙한 海關兩은 외국인이 관평은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Haikwan teal”의 번역어였고, 아편전쟁 이후 신설된 해관과 ‘근대 해관’에서 사용한

화폐 단위인 해관량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사용되었던 粵海關銀을 계승한 것이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가 아편전쟁 이후까지 유지된 현상은 일종의 ‘관성’이자, 조약으로 양측이 합의한 결과였다. 아편전쟁으로 행상이 관세 행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청조는 海關銀號을 통해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과세 능력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었다. 오구통상 시기 밀수와 탈세가 횡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입 상품의 통관 절차를 처리하여 상품에 정확히 과세할 수 없었던 해관의 과세 무능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구통상 시기 외국인 세무사 제도가 큰 거부감 없이 청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친화력은 바로 관세 행정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징세청부의 관행과 함께 과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해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있었다. ‘근대 해관’의 출현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광동체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요어: 榷關, 常關, 海關, 粵海關, 粵海關監督, 廣州, 廣東體制, 行商, 保商, 一口通商, 五口通商, 海關銀號, 海關兩, 關平銀, 司碼銀, 庫平銀, 스페인 은화, 包攬, 징세청부업,

학 번: 2013-30861

# 목 차

국문초록

서론 ..... 1

**제 I 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운영과 징세 구조 ..... 18**

- 1. 월해관의 행정 체계 ..... 18
  - 1) 월해관의 구성 ..... 18
  - 2) 稅則 ..... 32
- 2. 월해관의 관리 제도 ..... 43
  - 1) 總督兼管制의 확립 ..... 43
  - 2) 월해관감독 직무의 대리 ..... 57
- 3. 세수의 결산제도 ..... 72
  - 1) 회계처리의 두 단계 절차 ..... 72
  - 2)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구성 ..... 80
- 4. 소결 ..... 90

**제 II 장 權關體制의 구심력 강화: 월해관 특례의 취소 ..... 94**

- 1. 세수의 考核 ..... 94
  - 1) 월해관 회계 연도(關期)의 고정 ..... 94
  - 2) 세수의 고핵 기준 ..... 104
- 2. 세수 운송 체계의 재편 ..... 119
  - 1) 건륭 29년 節省水脚銀의 歸公 ..... 119
  - 2)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의 결손 사건 ..... 129
  - 3) 월해관의 ‘운송 총액’의 구성 ..... 136
- 3. 水脚銀 비중의 비교 ..... 142
  - 1) 粵海關 ..... 142
  - 2) 太平關 ..... 149

3) 閩海關 .....	154
4) 南新關·北新關 .....	157
4. 소결 .....	159
<b>제Ⅲ장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 결과: 행상의 도산 .....</b>	<b>165</b>
1.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	165
1) 榷關 회계 연도의 曆年 선행 .....	165
2)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	172
2. 행상의 재무 상태 분석 .....	181
1) 수입과 지출 규모 .....	181
2) 현금 수요의 증가 .....	189
3. 현금 유동성의 악화 .....	196
1) 행상의 도산과 청조의 대응 .....	196
2) 월해관 세수 酌撥의 보편화 .....	205
4. 소결 .....	212
<b>제Ⅳ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수 화폐: ‘粵海關銀’을 중심으로 .....</b>	<b>216</b>
1. 광동 지역의 은 화폐 유통 상황 .....	216
1) 지역 은정의 유통 .....	216
2) 외국 은화의 유입 .....	224
2. 粵海關銀의 순도와 저울추 조정 규정 .....	234
3. 관세 징수 절차의 실제 .....	245
4. 소결 .....	256
<b>제Ⅴ장 아편전쟁 이후 광동 지역 해관의 징세 기준: ‘海關兩’을     중심으로 .....</b>	<b>260</b>
1. 五口通商時期 해관의 징세 구조 .....	260
2. 海關兩의 순도와 무게 .....	273
3. 광동 지역 해관의 해관량 산정 방식 .....	285

1) 潮州關 .....	286
2) 琼州關 .....	288
3) 北海關 .....	289
4. 소결 .....	295
결론 .....	298
참고문헌 .....	312
中文摘要 .....	328

## 표목차

<도표 1-1> 월해관의 행정 조직도 .....	25
<도표 1-2> 粵海關과 淮安關의 행정 부서 비교 .....	31
<도표 1-3> 월해관 관리 제도의 변화 .....	55
<도표 1-4> 월해관감독 직의 대리 현황 .....	58
<도표 1-5> 李質穎의 월해관 행정 대리 업무 내용과 기간 .....	64
<도표 1-6> 도광 戊戌年分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항목 .....	81
<도표 2-1> 건륭 11년 전후 월해관 세수 보고 .....	96
<도표 2-2> 호부의 세수 환산치 .....	101
<도표 2-3> 岳濬의 세수 환산치 .....	101
<도표 2-4> 건륭 41년분 세수의 전삼년 비교법 적용표 .....	110
<도표 2-5> 건륭 44년분 세수의 전삼년 비교법 적용표 .....	111
<도표 2-6> 월해관의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 구성 .....	137
<도표 2-7> 건륭 31년분 월해관 지출 항목표 .....	139
<도표 2-8> 월해관 건륭 31년분 세수의 구성 .....	142
<도표 2-9> 北京-廣州 세수 운송로 .....	145
<도표 2-10> 건륭 28년분~건륭 33년분 월해관의 수각은 구성 .....	148
<도표 2-11> 태평관 건륭 29년분 세수 보고 .....	150
<도표 2-12> 건륭 31년분 태평관 세수 보고 .....	151
<도표 2-13> 건륭 29년 이후 태평관 세수 중 절생수각은 비중 .....	152
<도표 2-14> 北京-福州 세수 운송로 .....	155
<도표 2-15> 건륭 31년분 복신관의 세수 보고 .....	157
<도표 3-1> 태평관의 회계 연도, 관기, 회계 결산일 표 .....	168
<도표 3-2> 월해관의 회계 연도, 기간, 세수 결산일 표 .....	169
<도표 3-3> 19세기 초 차-모직물 교역의 수익률 .....	184
<도표 3-4> 행상의 捐輸 용도와 총액 .....	186
<도표 3-5> 도산한 外洋行의 채무액과 상환 방식 .....	187
<도표 3-6> 行用 지출 항목과 금액(1807~1816) .....	188

<도표 3-7> 1785년 전후 10년 EIC 매입 총액 .....	190
<도표 3-8> 19세기 초 월해관 전체 무역 규모 .....	191
<도표 3-9> 1778년 겨울 계약 내역 .....	192
<도표 3-10> 1778년 월해관의 국가별 수출량 .....	193
<도표 3-11> 非무역 시즌 행상과 동인도회사의 겨울 계약 비중 .....	194
<도표 3-12> 1793년 겨울 계약 조건 .....	196
<도표 3-13> 外洋行의 폐업 연도와 폐업 유형 .....	198
<도표 3-14> 행상 채무액 .....	203
<도표 3-15> 월해관 세수의 협항 내용(건륭 50년~건륭 60년) .....	206
<도표 4-1> 청대 寶銀의 종류와 순도 비교표 .....	219
<도표 4-2> 8레알 은화의 시금 결과표 .....	233
<도표 4-3> 화폐 단위 비교표 .....	250
<도표 4-4> 『大清會典則例』 船鈔 과세 규정 .....	251
<도표 4-5> Oriental Commerce 船鈔 과세 규정 .....	251
<도표 4-6> 가정 연간 선초 규정 .....	252
<도표 4-7> 매클즈필드(Macclesfield)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	252
<도표 4-8> 다위피예號의 船鈔와 規禮銀 납세 증명서 정리표 .....	253
<도표 4-9> 아우구스타(Augusta)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정리표 .....	254
<도표 4-10> 프린세스 루이스(Princesse Lowise)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정리표 .....	255
<도표 5-1> 도광 丙午年分 영여은수목 보고의 세부 항목 .....	264
<도표 5-2> 건륭 13년(1748) 월해관의 洋稅와 商稅 분류표 .....	269
<도표 5-3> 아편전쟁 전후 월해관 세수 비교 .....	271
<도표 5-4> 1842년 廣恒銀號의 시금 결과표 .....	274
<도표 5-5> 1913년 저울추 무게 실측 결과 .....	277
<도표 5-6> 1878년 12월 20일 기준 은화-해관량 환산표 .....	278
<도표 5-7> 廣州의 補水 변동폭 .....	279
<도표 5-8> 강해관의 관평은 산정 방식 .....	282
<도표 5-9>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화폐 단위 .....	284
<도표 5-10> 북해관 해관은호의 환산 방식의 차이 .....	291



## 서론

청조의 대외 무역은 그 형태에 따라서 四口通商, 一口通商, 五口通商, 多口通商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청 초 동남 연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던 鄭氏 세력이 강희 22년(1683) 평정된 다음 해인 강희 23년(1684)부터 청조는 閩海關, 粵海關, 浙海關, 江海關을 신설하며 대외 무역을 정식으로 재개하였다. 원칙적으로 사구통상 시기 서양 상인은 네 곳에 설치된 海關을 통해 對중국 무역이 가능했지만, 대규모 교역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廣州의 월해관이 對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건륭 초 행상의 독점 무역 형태와 월해관 官吏의 부정·부패 등으로 廣州의 교역 환경이 악화되자, 영국 동인도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 이하 EIC로 약칭)는 월해관 외에 절해관으로 교역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건륭제의 거부감은 건륭 22년(1757) 상유를 통해 對서양 무역을 월해관으로 제한하는 一口通商 원칙이 수립되고, 건륭 24년(1759) 발생한 洪任輝事件을 계기로 『防範外夷章程』이 제정되어 對서양 무역의 관리 제도로서 保商制度가 실시되는 廣東體制로 이어졌다.

광동체제의 성립은 강희 23년(1684) 대외 무역을 재개한 이래 廣州의 상거래 관행과 대외 무역의 운영 원리가 청조의 權關體制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을 의미하였다. 광동체제가 성립한 시점과 그 성격에 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주요 특징이 一口通商과 保商制度에 있으며 중화사상에 입각한 “懷柔遠人”의 대외 정책이 반영된 무역 관리 제도였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sup>1)</sup>

광동체제가 청조의 對서양 무역을 관리하는 이념과 정책이 완성된 결과라

---

\* 본 학위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금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曹雯, 『清代廣東體制再研究』, 『清史研究』 2, 2006.

면, 광동체제가 해체된 이후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아편전쟁의 패배와 조약체제의 성립, 그리고 오구통상의 굴곡을 거쳐서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진 소위 ‘근대 해관’의 출현으로 연결된다.<sup>2)</sup>

이러한 설명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청대 해관 연구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해 방식은 청조의 정책적 전환의 측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근대 해관’의 출현에 대한 인식은 아편전쟁의 패배와 조약체제의 성립에서 출발하여 협정관세와 외국인 세무사의 해관 접수에 따른 중국의 관세 자주권 상실의 시각이 짙게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시각은 크게 교정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류 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다.<sup>3)</sup>

여전히 아편전쟁 이후 해관 연구는 ‘청조의 해관’이 아니라 ‘외국인 총세무사의 해관’에 방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청대 재정 수입에서 관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해관의 운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별다른 거부감과 반발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 당국은 외국인 세무사를 고용하여 ‘근대 해관’을 설치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sup>4)</sup> 광동체제에서 “天子南庫”라고 불리며 황실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월해관도 독무와 월해관감독의 요청으로 1859년 외국인 세무사

---

2) 외국인 세무사제도 성립 이후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해관을 “近代 海關” 혹은 “新關” 혹은 “洋關”으로 지칭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近代”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압도적 이미지로 인한 이해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근대 해관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자 한다.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별할 것이다.

3) 이러한 의미에서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의 연구는 기존에 해관 연구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의 연구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이하 청대 해관 연구에 관한 내용은 岡本隆司, 『江海關と外國人稅務司制度の創設, 『近代中國と海關』, 名吉屋大學出版社, 1999를 참조한다.

4) 戴一峰, 『晚清粵海關(洋關)設立問題考辨』,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 2009.

를 고용하여 해관 업무를 이양하였다.<sup>5)</sup> 외국인 세무사의 성립과 확대 과정이 청조 중앙과 지방에서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지점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海關에서 횡행하는 밀수와 탈세를 단속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작동 기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sup>6)</sup> ‘前근대적’이고 ‘후진적’으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의 어떤 결합이 밀수와 탈세를 증가시켰으며 ‘근대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여겨지는 서양의 세관 시스템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해관의 행정 체계를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면, 정확히 ‘무능하고 부패한 중국의 官吏’를 대신한 ‘숙련된’ 외국인 세무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sup>7)</sup> 결국 청대 외국인 세무사와 총세무사의 직능과 역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외국인 총세무사가 중국의 해관을 통해 청조의 국가 재정을 장

- 
- 5) 일반적으로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출현을 제2차 아편전쟁 결과 1858년 체결된 『中英天津條約』의 후속 조약인 『通商章程善後條約』 제10조에서 찾고 있지만, 이것은 1853년 小刀會의 반란의 결과 출현한 외국인 세무사제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었다. 제10조는 五口通商時期 領事擔保制를 전제로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이었다. 1859년 월해관의 신식 해관 설치의 조약의 이행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천진조약과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詹慶華, 『中國近代海關總稅務司募用洋員特權問題新論』, 『近代史研究』 1, 1995 등을 참조.
- 6) 오카모토는 오구통상 시기 廣州 출신의 外洋行이 上海의 교역을 주도한 결과 上海의 징세 형태는 “廣州化”되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징세 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출현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당시 지방 당국이 太平天國運動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江海關의 밀수와 탈세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관세 수입을 증가시켜야 했다는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에 대해서는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의 연구서 『近代中國と海關』 제4장을 참조한다(岡本隆司, 『江海關と外國人稅務司制度の創設』, 『近代中國と海關』, 名吉屋大學出版社, 1999, pp.179-220).
- 7) 이러한 측면에서 任智勇은 ‘근대 해관’을 외국인 세무사와 해관감독의 이원체제로 설명하여 상호 견제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악했다는 이해 방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은 청대 해관 연구자들에게 제2대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하트가 배상금 상관과 외채 조달 및 대외 교섭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중국 정계에서 하트가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민국 시기 “太上皇 財政總長”이라 불리며 로버트 하트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제3대 총세무사 프란시스 아글렌(Francis A. Aglen)도 총세무사의 권능이 최정점에 도달한 1920년대 중국 정부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가 청대 군사·외교·재정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중국 해관의 총책임자라는 공적 영역과 북양대신과의 관계라는 사적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 말 정국에서 하트가 활약한 배경에는 한인 관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바탕에 있었다. 총세무사의 직능으로 본다면, 그 역시 중국의 관료 체계 내에 존재하는 기술관료에 불과하였고, 청 말 국가의 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관세를 외국인 총세무사가 장악하여 운용하였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청대 해관의 연구는 동아시아 세계에 국제 질서의 맥락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隋·唐시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冊封과 朝貢의 관계로 설명하는 “冊封體制論”으로 제시하여 “동아시아 세계론”으로 발전시켰고, 비슷한 시기 미국의 존 킹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아편전쟁 이후 근대적 국제관계를 “조약체제(Treaty System)”으로 파악하고, 기존에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 질서를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로 설명하여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이해 도식으로 설명하였다.<sup>8)</sup>

---

8)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과 존 킹 페어뱅크 이해 연구사는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傳統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32, 147-181을 참조한다.

이들의 연구에 대한 비판, 보완, 확대를 거치며 논의가 계속되었고, 페어뱅크 이래의 近代化論에 반대하며 半植民地論의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관점의 방향만 다를 뿐 서양적 역사 발전 단계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역사 해석 시각에 대한 대안으로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 스키하라 카오루(杉原薫), 가와카츠 헤이타(川勝平太) 등 일본 연구자를 중심으로 “조공무역시스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들은 서양의 충격 이전 존재하였던 ‘아시아교역권’에 주목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성립한 조약 관계가 재래의 조공 관계에 기반하여 발전한 교역망에 포섭(참여)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하마시타의 ‘論’은 학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측면에서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하였지만, 영역 국가의 틀을 넘어선 광역시장권을 상정하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에 주목함으로써 해관 연구의 공간적 경계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후 오카모토 타카시(岡本隆司)는 하마시타의 ‘조공무역시스템’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이후 징세 기관으로서 청대 해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sup>11)</sup>

- 
- 9) 하마시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저작은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97이다. 2013년 岩波書店에서 재출판되었고, 2018년 한국어 번역판으로도 나왔다(하마시타 다케시, 서광덕·권기수 역,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소명출판사, 2018).
- 10) 하마시타 다케시를 필두로 하는 연구 풍토는 우선 실증적 논증이 부재한 論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해관이 지역 시장들과 결절점을 이루고 그 동향과 구조를 체현한 징세 기관이라고 의미 부여하였지만, 해관과 지역 시장에 관한 각각의 연구가 부재하며 해관과 지역 시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없었다. 그의 주장에 ‘論’을 붙이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강진아, 『시대와 공간의 越境: 일본 중국사학계의 새로운 조류』, 『동아시아역사연구』 5, 1999). 또한 그의 연구는 현실 정치적 맥락에서 최근 일본의 우 편향적 정치지형이나 역사 인식이 발견된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서양 중심적 역사 인식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적 관점을 강조하지만, 이와 함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淸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아시아에서의 ‘覇者’로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습은 20세기 초의 동아협동체론이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시킨다는 공격을 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다(송한용, 『하마시타의 조공시스템론을 통한 ‘아시아교역권’론에 대한 재론』, 『용봉인문논총』 47, 2015).

오카모토는 향후 전문 해관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첫 번째는 청대 월해관의 성격을 명대 市舶司와 다른 계통의 징세 기관의 성격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시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朝貢貿易이 해관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互市貿易에 포섭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호세 발루아 모스(Hosea Ballou Morse) 이래 ‘行商=길드=독점’의 도식으로 독점에 초점이 맞춰진 시각을 ‘貿易과 徵稅’가 일체화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행상은 독점 운영이라는 해석에서 징세 청부업자로서의 성격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오구통상 시기 기존에 行商에 의해 이루어지던 징세 업무가 通事가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江海關의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이 광동식 징세 모델을 대체한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연구 시각에서 외국인 세무사의 위치는 회계사로 재조정된다. 그는 총세무사의 위치를 ‘근대 해관’의 총책임자라는 공적인 역할과 ‘외국인 막우’로서 총리아문의 고문이라는 사적 역할로 구분하여 총세무사 제도가 중국의 정치구조에 의해 규제되는 제도였다는 점을 밝히고, 서구에 의해 중국에 도입된 근대적 장치라는 의미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륙의 任智勇은 ‘근대 해관’의 구조를 외국인 세무사가 관리하는 해관과 海關監督이 관리하는 징세 업무로 구분한 이원구조로 설명하며 양자의 독립된 두 행정 계통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는 선학의 연구에서 모두 이미 지적된 것이지만, 대륙의 연구자로서 당안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증 연구로 관심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2)</sup>

11) 岡本隆司, 『近代中國と海關』, 名古屋大學出版會, 1999.

12) 任智勇, 『晚清海關再研究』, 人民出版社, 2012. 任智勇이 설명하는 ‘근대 해관’의 구조는 일찍이 다카야나기 마츠이치로(高柳松一郎)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高柳松一郎, 『中國關稅制度論』, 商務印書館, 1933). 이후 陳詩啓가 저술한 중국 해관 연구의 입문서로서 큰 영향을 끼친 『中國近代海關史』에서도 이를 지적하였다(人民出版社, 1999). ‘근대 해관’의 관세 징수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에 의해 초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濱下武志,

청대 해관에 관한 선행 연구는 각론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광동체제下 월해관과 외국인 총세무사의 ‘근대 해관’을 엄격히 구분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아편전쟁의 결과 광동체제가 해체되고, 외국인 세무사가 관리하는 ‘근대 해관’이 출현했다는 시각인데, 여기에는 은연 중에 전통적 대외 무역 관리 체제가 해체되고 서양의 근대적 세관 시스템이 중국에 이식되는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전통 시대 국가 운영 원리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고려해본다면,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청대 해관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근대 해관’이 가진 본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해관’의 출현을 조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국에 이식된 결과가 아니라, 청조가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의 연속과 변화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시각은 청대 해관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해를 피하고자 분명히 밝힐 점은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출현과 ‘근대 해관’의 성립이 청대 海關史에서 중요한 기점이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근대 해관’의 출현은 해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대적 회계 제도의 도입, 항만 시설의 확충 등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다만, 기존에 광동체제와 신식 해관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시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존재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출발하자는 제언이다.<sup>13)</sup>

---

『中國近代經濟史研究』, 汲古書院, 1989). 선행들은 ‘근대 해관’의 구조를 해관 운영권과 관세 관리권이 각각 외국인 세무사와 해관은호로 분류되어 있는 특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3) 펠릭스 보에킹(Felix Boecking)은 남경정부 시기(1928-1949)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근대 해관’을 통한 서양식 회계 제도와 관리 제도, 통계 제도의 도입이 중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장개석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보에킹은 청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근대 해관 시스템의 역할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한다(Felix Boecking, *No Great Wall: Trade, Tariffs, and Nationalism in Republican China, 1927 - 1945*, Harvard University

광동체제下 월해관에 관한 연구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누적되어 있다. 월해관과 해상, 그리고 광동체제에 관한 연구는 이미 동시대인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며 對중국 무역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이 저술한 회고록, 무역 가이드 혹은 매뉴얼 성격이 강하였다.<sup>14)</sup>

광동체제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호세 발루아 모스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외국인 세무사로서 해관의 행정에 직접 참여한 경력과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조의 대외 무역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는 EIC 자료를 직접 분석하여 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사료 접근이 어려웠던 후대 연구자들에게 연구서와 동시에 사료로서 이용되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와 함께 민국시기 梁嘉彬은 ‘廣東十三行’으로 알려진 해상 집단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현재까지도 해상제도를 연구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필독서로 자리잡았다.<sup>15)</sup>

광동체제下 월해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대만의 陳國棟의 연구이다. 그는 1980년대 월해관의 구조와 행정 체계 및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0년 해상의 경영난과 파산을 다룬 박사논문을 발표하였고, 월해관감독의 신분 문제를 중심으로 내무부와의 관계까지 확장하며 광동체제下 월해관 연구에 관한 전체 골격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영국동인도회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월해관에서 이루어진 대외 무역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해상들과 EIC 사이의 왕래 문서를 통해 당시 해상의 재무 상황, 경영 문제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sup>16)</sup>

---

Asia Center, 2017, pp.92-117)

14) 1830년대 피터 오베르(Peter Auber), 존 프란시스 데이비스(Jhon Francis Davis) 과 아편전쟁 이후 로버트 마틴(Robert M. Martin), 윌리엄 헌트(William C. Hunter)의 저서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 梁嘉彬, 『廣東十三行考』, 商務印書館, 1937(2009년 廣東人民出版社 재출판).

16) 그의 박사 학위 논문 Chen, Kuo-tung, *The insolvency of the Chinese Hong merchants, 1760-1843*, Yale University, 1990을 참조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폴 아서 반 다이크(Paul A. Van Dyke)가 세계 각국의 아카이브에 분산되어 있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로 약칭), 덴마크동인도회사(Ostindisk Kompagni), 스웨덴동인도회사(Svenska Ostindiska Companiet) 등의 사료를 발굴함으로써 광동체제 시기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는 풍부한 사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주로 珠江 일대의 외국 선박의 도선 문제, 선박의 입·출항 관리, 선박의 국적 문제, 買辦(comprador), 通事(linguist)의 활동, 마카오-廣州 내항, 밀무역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부터 광동체제와 대외 무역 등 거시적 시야까지 폭넓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행상의 거래 장부, 영수증, 납세 증명서, 회계 문서 등 ‘廣東十三行’ 관련 한문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사료의 접근성의 문제로 모스를 비롯한 여러 저서에서 언급된 서양 측 자료의 단편적인 서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陳國棟과 반 다이크의 연구는 한계점에 도달한 월해관 연구에 돌파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 세계의 기록보관소(archive)에 소장된 각국의 무역 회사에 對중국 무역 관련 자료들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반영하여 본 학위논문은 청대 해관을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광동체제下 월해관과 ‘근대 해관’이 공유하는 친화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이식된 새로운 세관 시스템의 도입보다는 광동체제下 징세 시스템이 그 구조적 결함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청대 대외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海關의 본질은 관세의 징수와 회계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월해관의 징세 형태를 ‘貿易과 徵稅가 일체화’로 지적한 오카모토의 연구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징세 청부업자가 관세의 課稅와 徵稅를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은 ‘課稅’라고 할 수 있다. 대외 무역을 관리하고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징세 기관으로서는 수출·입 상품의 종류를 정확히 분류하고, 품질을 검사하여 가격을 확정해야만 稅則에 의거하여 정확히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과세에 실패하면

의도적이든 非의도적이든 모두 관세의 逋脫이며 脫漏였다.

또한 징세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다. 해관은 정해진 세칙에 따라 과세한 금액을 오차 없이 정확히 징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중국 은정과 외국 은화에 함유된 순은의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인력과 조직 등 제반 시설을 완벽히 갖춘다고 하더라도 오차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관세의 과세와 징수는 모두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risk)이 컸다. 따라서 지방 당국으로서는 리스크가 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 대신, 징세 청부업자를 선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관세 행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그들에게 전가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바로 행정 편의와 책임 회피의 목적에서 채택된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청대 해관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였다. 광동 체제下 월해관은 관세 행정 전체를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에게 위탁함으로써 관세의 과세와 징수 능력이 취약한 기형적인 징세 기관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바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조적 결함의 본질이었다.

도식적으로 간략화하면 아편전쟁 이후 행상제도의 폐지에 따라 징세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했던 해관의 구조는 행상을 대체한 징세 청부업자인 海關銀號를 선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핵심이 되는 과세 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해관의 과세 무능은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청조의 해관 운영 원칙에는 아편전쟁 전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외국인 세무사를 고용하여 관세의 과세 업무를 전담시키는 형태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와 친화력을 갖는 관리 제도인 셈이었다.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징세 구조의 친화력을 확인하는 데 유효한 접근은 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關平銀의 분석이라 생각된다. 관평은은 명칭 그대로 ‘해관(關)에서 사용하는 저울추(平)를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한 은정’을 의미하였고, 징세 청부업자와 징세 기관 간에 저울추의 차이로 인해 출현

한 중간 단계의 화폐 단위였다. 즉, 관평은은 청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파생물이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에서 청조의 회계 기준 은정인 庫平銀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粵海關銀이 사용되었다. 이론상 월해관의 저울추는 호부에서 배포한 庫平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평은과 월해관은 동일한 은정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는 고평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 청부업자들이 사용하는 저울추도 월해관의 저울추(粵海關平), 고평과 차이가 있었다. 징세 청부업자가 관세를 징수할 때 고평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하였지만, 廣州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고평은 사실상 월해관의 고평인 월해관평이었다.

廣州를 중심으로 장기간 교역을 해 온 외국 상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기 어려웠던 고평보다 월해관의 월해관평에 더 익숙하였다. 남경조약에서 해관의 관세 징수의 무게 기준 저울추로 월해관평이 결정되었고, 이는 해관의 징수 기준인 海關兩(Haikwan teal)의 성립으로 이어졌다.<sup>17)</sup> 청조의 재정·회계의 기준인 庫平銀과 구별되는 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해관량을 사용한 것은 관세 대리 징수 구조의 결과물이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아편전쟁을 전후하여 청대 해관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그 출발점을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것을 통해 외국인이 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관리 제도가 큰 거부감 없이 기존에 청조의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친화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제 의식과 연구 시각에서 본 학위논문에서 갖고 있는 관심은 크게

17) 海關兩은 서양인들이 사용한 'Haikwan teal'의 번역어이다. 중국 측 사료에서는 해관의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한 은정'을 의미하는 關平銀으로 사용하였다. 이론상 해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는 모두 호부 고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후기 해관에서 주조한 은정은 모두 고평은이면서 관평은이었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해관의 징수 단위를 총칭하는 경우 “關平銀”으로 지칭하고, 전·후기 관평은을 각각 “粵海關銀”, “海關兩”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도록 한다.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속성은 正額主義에 기반한 청대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반대였다는 점이다.<sup>18)</sup> 사구통상 시기 설치된 해관은 호부의 榷關 운영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榷關體制’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호부의 각관체제는 정액제에 기초하여 엄격한 세수 결한 기한과 고핵 제도의 운영을 그 특징으로 하였고, 그 목적은 ‘할당된 定額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결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본다.<sup>19)</sup>

그런데 대외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교역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정액주의에 근간을 둔 청대 재정 원리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다. 교역량이 미미했던 강희제와 옹정제 시기 큰 문제 없이 각관체제 안에서 월해관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건륭 연간 대외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월해관의 세수는 호부에서 할당한 정액을 훨씬 넘어서는 초과 징수액인 盈餘銀이 출현하며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대외 교역이 왕성해질수록 각관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월해관의 원심력은 더욱 커졌다. 이에 호부는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에 인정해 주었던 특례들을 취소 혹은 축소하고, 榷關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강화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반영된 월해관의 행정 체계는 각관체제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호부의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호부의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와 징세 청부업자에게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반영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對서양 무역 관리 제도의 구조와 특징이다. 호부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필요한 월해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리 징수 구조는 “因地制宜”의

---

18) 본고에서 사용하는 “正額主義”는 명청시대 중국의 재정구조를 정리한 김형종의 연구에서 지적한 “洪武型 모델”에 관한 정리를 따른다(김형종, 『清代國家權力の性格: 財政史的 觀點에서의 理解』, 『東亞文化』 45, 2007, pp.1-40).

19) “榷關體制”의 개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할 것인데, 일단은 ‘할당된 定額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결산’하기 위해 전국의 榷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호부의 운영 원리로 정의한다.

영역에서 예외로 인정하였다.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課稅와 徵稅는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였다. 징세 당국은 관세 행정을 위해 수출입 상품의 정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함께 관세로 납부되는 외국 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능력도 갖추어야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택한 대리 징수 구조는 결과적으로 징세 청부업자가 과세와 징세 업무를 전담하고, 징세 기관이 이를 회계 처리하는 형태의 징세 구조를 만들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의 특징을 검토하여 이것이 아편전쟁 이후 신식 해관의 형태로 구조적 결함을 수정·보완해 가는 과정을 검토하여 그 계승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광동체제 시기 이질적 화폐 체계를 정립한 서양과 중국의 접촉이 허용되었던 유일한 통로인 廣州라는 열린 공간에서 계수 화폐와 칭량화폐가 상호 간에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월해관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은화는 칭량화폐로 취급되어 중국의 화폐 체계 안으로 흡수되었고, 중국의 역사에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중국의 화폐 체계는 역설적이게도 전 지구사적 관점에서 은화 유통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한 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관평은은 관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징세 구조의 계승적 측면을 관평은을 통해 검토할 것이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수 기준이었던 粵海關銀이 오구통상 시기 신설된 해관의 징수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다시 다구통상 시기에 전국에 확대·신설된 해관의 海關兩으로 계승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월해관은과 해관량의 계승 관계를 확인한다면 아편전쟁 이후 해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을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갖고 있는 내재적 결함이다. 해관의 징세 청부업자들은 징세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상당한 이권을 보장받았다. 행상과 해관은호는 관세의 운용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이것이 축소 혹은 방해받는 상황에서 도산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도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바로 징세 당국의 경직화이다.

이것은 관세 행정을 위임한 대리 징수 구조가 갖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징세 청부업자의 경영난 혹은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의 위험 증가는 관세 행정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에 징세 당국은 더욱 엄격한 태도로 관세 행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문제 의식과 연구 시각에 따라 본고는 다섯 장으로 구성하여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와 운영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제I장에서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조와 행정 체계에 대해 다루고, 대외 무역항으로서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월해관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그 특징으로는 과세·징세 주체와 회계 주체가 양분된 월해관의 행정 구조,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공동으로 해관을 관리하는 총독겸관제의 속성, 월해관의 회계 결산에 반영된 대리 징수 구조의 특례가 검토될 것이다. 광동체제下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행상이 징세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과세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그 결과 과세와 징세 기능이 부재한 징세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월해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월해관의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중앙에서 월해관을 직접 감찰할 수 없는 구조에서 성립한 월해관의 총독겸관제의 성격과 목적을 살펴보고, 월해관의 奏銷摺을 통해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두 단계 회계 결산 절차로 이루어지는 월해관의 회계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II장에서는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의 결손 사건을 통해 월해관의 특례가 취소되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월해관은 常關과 달리, 세수를 결산하면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였고,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은 비공식적으로 水脚銀의 節省分에서 지출하는 것이 월해관의 특례였다.

하지만 건륭 29년 호부가 세수 운송 방식을 재편하면서 수각은의 절생분 전액을 반납할 것을 결정하고, 월해관의 특례 인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관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호부 측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월해관의 특례는 취소되었다. 월해관의 수각은 비중이 3.85%였다는 점은 다른 榷關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광동성에 위치한 상관인 太平關, 南洋에 위치한 해관인 閩海關, 장강 유역에 위치한 상관인 南新關과 北新關에 수각은 산정 절차와 비중을 살펴보고, 월해관과 비교하여 월해관의 높은 수각은 비중이 관세 대리 징수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건륭 45년 호부의 월해관의 결산 기한 설정이 행상의 도산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각관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월해관의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월해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호부의 입장도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호부의 일련의 정책 방향을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월해관의 행정 체계의 변화가 징세 청부업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엄정화는 광동체제下 징세청부업을 담당했던 행상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관세 운용 기한의 축소가 그 중 하나였다. 행상은 관세의 결산 기한 이전까지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 행상의 영세한 자본금 규모와 당시 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행상이 자금을 융통하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엄정화의 방향이 행상들의 현금 유동성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 행상의 도산을 ‘과다 경쟁→수익률 하락→부채 증가→도산’의 악순환과 관리의 수탈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설명하는 기존의 시각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행상의 도산에 따라 관세 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으며 청조가 실시한 대책이 가경제와 도광제 시기 행상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추적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아편전쟁 전후 關平銀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징수 규정과 회계 결산 규정을 통해 월해관의 징수 단위인 월해관은의 무게와 순도의 규격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행상이 사마평으로 외국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 고평과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加法)과 외국 은화와 족색문은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補水)을 통해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를 살펴본다.

그 다음 호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평과 월해관평의 무게 차이를 통해 양자의 무게 차이를 살펴본다. 그렇다면 사마평-월해관평-고평 사이의 저울추 무게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당시 외국인들에게 발급한 관세의 납세 증명서를 근거로 월해관에서 船鈔와 規禮銀을 징수할 때 실제 적용한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V장은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의 징세 구조가 다섯 개의 항구에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청조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를 모델로 대외 무역항을 구성할 의도였고, 조약을 통해 수정과 변형되는 과정에서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 무역의 관리 원칙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에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청부업을 담당한 행상이 맡았던 업무가 분화하여 각각 領事擔保制와 海關銀號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아편전쟁 이전의 월해관 운영 원리가 신설 해관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오구통상 시기 이후 해관의 독자적인 징세 기준으로 자리를 잡는 해관량의 순도와 무게의 규격을 검토하여 이것을 이전 시기의 월해관은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월해관이 해관량으로 계승되는 과정을 밝히고, 월해관 이외에 潮州關, 瓊州關, 北海關에서 관세를 해관량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분석하여 월해관이 신식 해관으로 전과되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청조의 재정 운영 원리 중 하나인 正額主義로부터 광동체제下 월해관이 원심력을 강화하려는 경향과 이에 대한 월해관 행정에 대한 엄정화의 방향이 징세 구조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동체제下 월해관을 분석하는 과정은 아편전쟁 이후 출현한 소위 ‘근대 해관’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찰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될 것이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이 갖는 구조적 결함이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결과였다는 점을 짚어냄으로써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도입이 중국의 해관에 부재한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청조의 對서양 무역의 관리 제도와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의 결합에 주목하는 분석은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청조에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친화력을 밝힘으로써 소위 ‘근대 해관’의 출현이 외부로부터의 이식 혹은 조약체제에 따른 강요의 결과가 아니라 청조의 해관 정책에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편전쟁을 전후 단절적으로 이해되는 청대 해관을 연속적이고 계승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 I 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운영과 징세 구조

## 1. 월해관의 행정 체계

### 1) 월해관의 구성

강희 22년(1683)<sup>20)</sup> 대만의 鄭氏<sup>21)</sup> 세력을 평정한 다음 해인 강희 23년(1684) 청조는 遷界令을 해제하고, 대외 무역의 재개를 정식으로 결정하였다.<sup>22)</sup> 엄중한 국가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해 청 초 천계령은 명대 해금 정책보다 훨씬 강력하게 시행되어 복건성을 중심으로 한 동남 연해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던 것으로 평가된다.<sup>23)</sup> 청조가 22년 가까이 유지한 천계령을 해제하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동남 연해 지역의 안정화에 따른 해상 안보의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24)</sup>

20) 본고의 시간 표기는 중국의 연호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연호를 기준으로 음력과 양력을 병기하여 ‘연호 연도(양력 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정확한 음력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음력 날짜 뒤에 괄호로 양력 날짜를 병기하여 ‘연호 음력 일월(연도 양력 일월)’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로 ‘연도 양력 일월(연호 음력 일월)’의 형식이다.

21)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명사를 한문 표기가 원칙이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한글로 표기해도 이해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한글로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일 것이다. 다만, 인명과 지명의 경우 모두 한문으로 표기한다.

22) 사구통상 시기 각 지역에 海關을 개설하는 시점과 위치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彭澤益, 『清初四權關地點和貿易量的考察』, 『社會科學戰線』 3, 1984, pp.128-133과 黃國盛, 『清初四省海關衙署設置新探』, 『福建師範大學學報』 2, 1999, pp.89-95를 참조한다.

23) 元廷植, 『清初 福建社會와 遷界令 實施』, 『東洋史學研究』 81, 2003, pp.68-72.

24) 鄭氏 세력의 평정과 청조의 海防 전략에 관해서는 채경수, 『清朝의 包攝 政策과 鄭氏 隸下 海上集團의 轉向 -臺灣遠征隊 구성원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明清史學會』 52, 2019, pp.257-291을 참조한다.

청조의 四口通商 결정은 외부의 위협이 해소된 결과였지만, 이것이 완전한 “開海禁”이라기보다 海禁의 ‘완화’의 성격이 있었다는 지적을 우선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sup>25)</sup> 청 초 海禁·遷界의 목적은 정씨 세력과 연해 해상세력의 이익 공유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었다.<sup>26)</sup> 그러나 해금·천계는 외국과의 교역 중단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른 은 유입의 감소와 디플레이션 발생은 지역 사회의 침체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청조의 입장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27)</sup>

월해관의 경우 천계령이 해제되기 이전부터 對서양 무역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강희 17년(1678) 브누아 페레이라(Benoit Pereyra)를 대표로 하는 포르투갈 사절단의 요청을 계기로 서양 상인의 對중국 무역이 허용되었고, 강희 18년(1679)부터 마카오-廣州의 육로 무역이 제한적으로 재개되었다.<sup>28)</sup> 당시는 복건총독 姚啓聖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 함대의 건설과 정씨 세력에 대한 포섭 전략이 막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청조가 해상에서 완벽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된 廣州-마카오 무역은 市舶司가 관리하는 명대 이래 전통적 대외 무역 방식인 朝貢貿易의 형식에 따라 재개된 셈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희 23년(1684) 대외 무역의 공식적인 재개는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가 출현했다는 데에 보다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구통상 결정을 통해 청조는 외국 상인의 對중국 무역(來洋)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의 對남양 무역과 연해 무역(出洋)을 승인

25) 조영현, 「‘大運河時代’(1415-1784), 중국의 商業과 邊境 정책」, 『史叢』 81, 2014, pp.234-235.

26) 海禁·遷界의 실시 의미와 鄭氏 세력의 자세한 평정 과정에 관해서는 채경수, 「遷界令의 전략적 의미 재검토 -북건 연해 해상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48, 2017, pp.75-113을 참조한다.

27) 강희 연간 물가 하락에 관한 개요는 키시모토 미오(岸本美緒)의 저서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에 7장을 참조한다(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研文出版, 2003, pp.241-244).

28) 브누아 페레이라(Benoit pereyra)의 파견에 관해서는 岡本隆司, 「清代粵海關の徵稅機構 -保商制度を中心として-」, 『史林』 75-5, 1992, pp.71-72를 참조한다.

하였다.<sup>29)</sup> 중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며 出洋이 증가하게 될 상황에서 이를 감독할 관리 제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청조는 해금 완화의 여론을 수용하는 한편, 동남 연해 지역 네 곳에 海關을 신설하여 바다를 통해 출입하는 중국의 인원과 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sup>30)</sup>

원칙적으로 사구통상 시기 외국 상인은 네 곳에 개설된 모든 무역항에서 교역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廣州는 재력이 비교적 풍부한 행상이 포진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대량의 상품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무역항보다 선호되었다. 하지만 건륭 초 보상의 무역 독점과 월해관의 勒索 등으로 인해 교역 환경이 악화되었고, 이에 EIC는 건륭 20년(1755) 이후 무역항을 浙海關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sup>31)</sup>

對서양 무역이 절강성까지 확대되자, 건륭제는 건륭 21년 7월 9일(1756년 8월 9일) 상유에서 “최근에도 여전히 무역하고자 오는 자가 많은데, 장래에 항로가 익숙해지면 입항하는 선박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하나의 市集이 생기는 것이다. 본국에서 멀리까지 와서 通商하고자 하는 상인을 안무한다는 데 寧波도 본래 澳門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시 하나의 市集이 증가하면 시간이 흘러 내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서양 상인의 무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sup>32)</sup>

---

29) 홍성구는 강희 23년 이후 청조의 해금 정책을 “해금 완화 조치”로 설명하며 “강희 23년의 조치를 해금의 ‘해제’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금은 이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을 뿐 완전히 ‘해제’되거나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홍성구, 『청조 해금정책의 성격』,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pp.175-176).

30) 廣州에서의 市舶司 업무는 鹽課提舉司가 겸임하여 鹽課市舶提舉司로 불리었고, 鹽市提舉司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오카모토 다케시(岡本隆司)는 명대 市舶司와 청대 海關을 구분하고, 이를 계승 관계가 아닌 청대 새로 출현한 海關이 朝貢貿易을 담당하는 市舶司의 업무를 포섭한 것으로 본다(岡本隆司, 『清代粵海關の徵稅機構 -保商制度を中心として-』, 『史林』 75-5, 1992, pp.71-76).

31) 寧波 무역 확대, 浙海關의 세율 인상, 최종적으로 禁衛이 공포되는 상세한 과정은 정성일, 『清代廣州貿易體制의 成立 - 洪任輝事件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41, 1991, pp.12-24를 참조한다.

寧波가 제2의 마카오가 되는 것에 대한 건륭제의 우려는 건륭 22년 11월 10일(1757년 12월 20일) 건륭제가 對서양 무역을 廣州의 월해관 한 곳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유를 공포함으로써 一口通商 원칙이 확립되었다.<sup>33)</sup> 이에 반발한 EIC는 제임스 플린트(James Flint)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건륭 24년(1759) 플린트가 寧波를 거쳐서 天津까지 북상하여 월해관의 부정·부패와 保商制度에 대한 불만 사항을 7가지로 정리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洪任輝事件이 일어났다.<sup>34)</sup>

EIC의 무역 확대 시도는 청조의 대외 무역 정책을 더욱 경직시켰다. 건륭제는 복주장군 新柱 등을 廣州에 급파하여 월해관의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양광총독 李侍堯가 『防範外夷規條』를 상주하면서 廣東體制의 성립으로 이어졌다.<sup>35)</sup> 광동체제는 對서양 무역항을 廣州의 월해관 한 곳으로 제한하는 ‘一口通商’과 행상이 무역에 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는 반대급부로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保商制度’를 두 축으로

32) 『清高宗實錄』, 건륭 21년 7월 乙亥(9), “近年乃多有專爲貿易而至者, 將來熟悉此路, 進口船只, 不免日增, 是又成一市集之所. 在國家綏遠通商, 寧波原與澳門無異. 但於此復多一市場, 恐積久留居內地者益衆”.

33) 『清高宗實錄』 卷550, 乾隆 22년 11월 戊戌(10), “嗣後口岸定於廣東, 不得再赴浙省. 此於粵民生計並贛韶等關均有裨益, 而浙省海防亦得肅清. 看來番船連年至浙, 不但番商洪任等利於避重就輕, 而寧波地方必有奸牙串誘, 並當留心查察. 如市儈設有洋行, 及圖謀設立天主堂等, 皆當嚴行禁逐, 則番商無所依托, 爲可斷其來路耳. 如或有難行之處, 該督亦即據實具奏, 再將前折隨奏交部議覆, 可一並傳諭知之”.

34) 플린트의 탄원서는 직예총독 方觀承의 주접에 부건으로 건륭제에게 보고되었다. 方觀承, 『奏聞請旨事』, 건륭 24년 6월 29일, 商務檔案(2), pp.1213-1224. 이하 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清宮藏中西商務檔案』 全8冊, 中國檔案出版社, 2010을 인용하는 경우 “『商務檔案(책수)』로 약칭한다.

35) 洪任輝事件은 청조의 一口通商體制 혹은 廣東體制가 확립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홍임휘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袁伯韜·胡瑞琴, 『洪任輝事件與清王朝的對策探析』, 『魯東大學學報』 6, 2016; 李金明, 『1757年廣州一口通商與洪任輝事件』, 『南洋問題研究』 2, 1993; 정성일, 『清代廣州貿易體制的成立 - 洪任輝事件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41, 1991 등을 참조한다.

하는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였다.

일구통상의 원칙이 건륭 22년(1757) 상유와 건륭 24년(1757) 洪任輝事件을 거치며 결정되었다는 점에는 연구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으나 보상제도의 연원에 대한 견해는 그 논의와 시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찍이 梁嘉彬은 보상제도의 출발점을 명대 牙行까지 소급하였다. 무역상이 징세 청부업자로서 외국 상인을 대신하여 관세 납부의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明·淸 시기 아행으로 비정하여 명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36)</sup>

하지만 아행과 구별되는 보상의 특징 또한 명확한데,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보상은 대외 무역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반대급부로 관세 행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들은 외국 선박이 월해관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상품을 교역한 후에 출항할 때까지 외국인 관리 업무와 징세 업무의 일체를 전담해야 하는 관세 행정의 보증인이었다. 보상은 무역상이면서 동시에 월해관 행정을 담당한 半官적 성격을 갖는 집단이었다.

광동체제에서 행상이 외국 상인을 대신하여 包攬하는 행위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彭澤益의 경우 월해관 무역이 재개된 이후 독무와 월해관감독이 제정한 「分別往行貨稅」가 공포된 이후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 징세청부업을 담당한 상인의 권리와 의무가 정식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상제도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sup>37)</sup> 강희 25년(1686) 양광총독 吳興祚, 광동순무 李士楨, 월해관감독 宜爾格圖는 「分別往行貨稅」에서 월해관의 관세 징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sup>38)</sup>

36) 梁嘉彬, 『廣東十三行考』, 廣東人民出版社, 2009, p.33

37) 「分別往行貨稅」에 관한 연구는 彭澤益, 「廣東十三行續探」, 『歷史研究』 4, 1981을 참조한다.

38) 李士楨, 『撫粵政略』 卷6, 「分別往行貨稅」, 沈雲龍 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第39輯, 文海出版社, 1988, pp.729-732 所收. “省城佛山舊設稅課司, 征收落地往稅. 今設立海關, 征收出洋行稅, 地勢相連, 如行往二稅不分, 恐有重複, 影射之弊. 今公義設立金絲行洋貨行兩項貨店, 如來廣省本地興販, 一切落地貨物分爲往稅, 報單皆投金絲行, 赴稅課司納稅. 其外洋販來貨物及出海貿易貨物, 分爲行稅報單, 皆投洋貨行, 候出海時, 洋商自赴關部納稅”. 이하 『近代中國史料叢

省城과 佛山은 이전부터 稅課司가 설치되어 落地往稅를 징수하였다. 이제 海關을 설치하여 出洋行稅를 징수하지만, 地勢가 이어져 있어서 往稅와 行稅를 구분하지 않으면 중복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제 협의하여 金絲行과 洋貨行의 두 종류의 貨店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니, 만약 광동성에 상품을 팔고자 한다면 모든 落地往稅은 往稅로 분류하고, 報單은 모두 金絲行에 건내면 稅課司에 가서 관세를 납부한다. 外洋에서 팔려고 가져온 상품 및 (중국의) 상품으로 바뀌어 가져가려는 상품은 行稅로 분류하고, 報單은 모두 洋貨行에 내고, (외국 선박이) 출항할 때를 기다려 洋商이 海關으로 가서 관세를 납부한다.

廣州에서 징수하는 대외 무역세는 기존에 마카오를 통한 육로 교역에서 징수하던 往稅(落地往稅)와 대외 무역의 재개 후 월해관에서 징수하던 行稅(出洋行稅)로 구분되어 있었고, 往稅와 行稅는 각각 金絲行과 洋貨行이 징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洋貨行은 자금력이 충분한 상인으로 제한되었고, 지방관은 이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帖을 부여하여 대외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sup>39)</sup> 『分別往行貨稅』의 공포를 계기로 행상이 징세 청부업자로서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관세 대리 징수 구조가 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해관 행정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廣州府에 위치한 粵海關監督署와 大關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월해관감독이 관할하는 廣東省의 해안 전역에 걸쳐서 위치한 소속 해관인 總口, 小口를 포함하고, 또한 대외 무역을 감독하고, 관세의 징수와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 전체까지 포괄하였다.<sup>40)</sup>

刊』을 인용하는 경우 “『近代中國史料叢刊』 권수”로 약칭한다.

39) 李士禎, 『撫粵政略』 卷6, 『分別往行貨稅』, 『近代中國史料叢刊』 第39輯, pp.730-731, “如有身家殷實之人, 願充洋貨行者, 或呈明地方官承充, 或改換招牌, 各具呈認明給帖”.

40) 월해관의 구성과 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은 1980년 이후 陳國棟의 선구적인 연구들에 의해 대부분 정리되었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월해관의 구조에 관한 내용

월해관의 소속 해관은 總口와 小口로 구성되었다. 총구는 관세의 징수와 회계 처리를 담당한 기본 단위로서 소속 해관인 소구를 관리하였다. 월해관은 廣州府에 大關과 澳門總口, 惠州府에 烏坎總口, 潮州府에 庵埠總口, 高州府에 梅菴總口, 雷州府에 海安總口, 瓊州府에 海口總口 등 모두 7개의 총구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으로 “粵海關”이라고 지칭하는 大關도 여러 총구 중 하나였다. 여기서 다시 총구에 소속된 소구가 있었고, 『粵海關志』 기준으로 약 70개의 소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sup>41)</sup>

월해관의 소속 해관인 총구와 소구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시 正稅口, 掛號口, 稽查口로 구분되었다.<sup>42)</sup> 정세구는 상품 교역이 가능한 항구로 상세를 징수하는 해관이었다. 쾌호구는 입항 수속(“報關登記, 填寫稅單”)을 담당하였다. 외국 선박은 정세구에 입항하기 전 쾌호구에서 선박의 인원과 화물에 대한 입항 수속을 거쳐서 船鈔와 規禮銀의 납부를 마친 후 정세구로 이동하여 상품을 교역할 수 있었다. 다만, 해안총구와 해구총구와 같이 쾌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정세구에서 입항 수속을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사구는 정세구와 쾌호구에 소속되어 통과 선박에 대한

---

은 그의 저서 陳國棟,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 학위논문은 그의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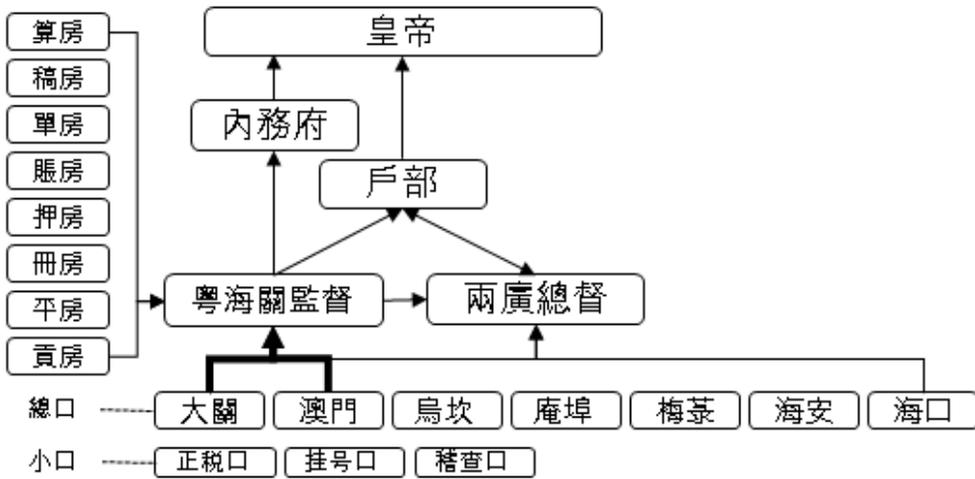
41) 總口와 小口는 강희 23년 월해관 대관을 개항한 이후 시간 차이를 두고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강희 27년 澳門總口과 4개의 稽查口를 설치하면서 大關 소속 總巡口, 東炮臺口, 西炮臺口, 行後口の 稽查口, 黃埔구, 虎門口, 鎮口의 掛號口, 江門口의 正稅口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瓊州, 庵埠, 烏坎, 梅菴에 다섯 개의 총구와 각각에 小口를 설치하였다(中國海關通志編纂委員會, 『中國海關通志』 第一篇, 『方志出版社』, 2013, p.166).

42) 월해관의 소속 항구의 위치와 기능은 『粵海關志』 卷5, 「口岸一」과 卷6, 「口岸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광 연간 기준으로 “正稅之口는 31개가 있었는데, 瓊州 10개, 潮州 9개, 惠州 4개, 廣州, 뢰주, 겸주 2개씩, 肇慶, 高州 각 1개씩이다. 稽查之口는 22개가 있었는데, 雷州 8개, 廣州, 高州 5개, 惠州 3개, 廉州 1개이다. 掛號之口는 22개가 있었는데, 潮州 10개, 廣州 9개, 惠州 3개”가 있었다(梁廷枏 撰·袁鍾仁 點校, 『粵海關志』, 廣東人民出版社, 2002, pp.59-113. 이하 인용하는 『粵海關志』는 袁鍾仁의 교점본을 기준으로 하고, “『粵海關志』 권수, 「권명」로 약칭한다).

화물과 인원을 검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sup>43)</sup> 외국 선박이 월해관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에 걸친 진입 허가를 거쳐야 하였다.<sup>44)</sup>

사실상 월해관은 독립된 7개의 總口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과 징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업무는 廣州府의 粵海關監督署에서 총괄하였다. 월해관의 구조를 간략히 도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 월해관의 행정 조직도



본 학위논문에서는 월해관의 행정을 크게 ‘관리 행정’과 ‘관세 행정’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관리 행정’은 소속 해관의 인원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가리키고, ‘관세 행정’은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는 ‘징

43) 『粵海關志』 卷5, 『口岸一』, pp.59-80. 粵海關 大關을 예로 살펴보면, 粵海關 大關의 正稅口는 大關, 江門口 2개, 掛號口는 總巡口, 東炮臺口, 西炮臺口, 佛山口, 黃埔口, 虎門口, 紫泥口, 市橋口, 鎮口 9개, 稽查口는 總巡口 소속의 行後口 1개로 구성되었다.

44) 외국 선박의 월해관 입항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Paul A. Van Dyke, *The Canton Trade: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pp.19-49를 참조한다.

세 업무'와 세수를 회계 결산하는 '회계 업무'로 정리하고자 한다. 월해관은 중앙에서 파견한 월해관감독이 관세 행정을 전담하고, 독무가 관리 행정의 책임자로서 월해관 행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sup>45)</sup>

월해관의 소속 해관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해관감독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의 관할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월해관감독과 知府·知縣 등은 직접적으로 통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때문에 독무가 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廣州府에 위치한 대관총구와 오문총구를 제외한 소속 해관에 대한 월해관감독의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월해관감독은 廣州府에 상주하여 대관총구와 오문총구를 포함한 모든 총구에 파견된 委員을 통해 관세 행정을 총괄하였다. 월해관 개설 초기에는 부감독 격인 筆帖式이 파견되기도 하였지만, 강희 55년(1716) 이후 월해관의 筆帖式은 폐지되었다.<sup>46)</sup> 건륭 24년(1759) 월해관감독 尤拔世가 淮安關의 예에 따라 筆帖式 1인의 파견을 요청하여 건륭제의 승인도 받았지만, 실제로 재파견되었는지는 사료로 확인되지 않는다.<sup>47)</sup>

위원은 총구에 소속된 소구의 징세 업무를 담당하여 소구에서 징수한 관세를 수합하여 稅冊으로 정리하여 규정에 따라 월해관감독에게 전달하였다. 월해관에 소속된 해관이 위치한 거리는 廣州府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므로

---

45)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46) 강희 38년(1699년) 영국의 선박 매클스필드號가 입항하였을 때 “the Second Hoppo”가 선원을 접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the Second Hoppo”는 筆帖式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Hosea Ballou Morse,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The Clarendon press, 1926, p.89). 이하 모스의 저서는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로 약칭한다.

47) 尤撥世, 『爲請旨事』, 건륭 24년 10월 4일, 商務檔案(3), pp.1433-1436, “奴才駐劄省城, 惟附近之大關澳門等處, 易於稽查, 其餘各口雖委有佐雜徵員, 難以深信, 必須常員周巡查察, 庶足以杜弊端, 而裕稅課. 爲此奏請聖恩, 俯照淮安關之例, 於內府筆帖式內, 揀發一員, 來粵幫同稽查”.

징수한 관세와 세책이 월해관감독에게 전달될 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에 廣州府에 위치한 대관총구와 오문총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분기마다 세책을 정리하여 우선 보고한 후 관세의 징수가 완료되면 이를 월해관감독 서로 운송하였다. 다만, 廣州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경주총구의 경우 세수 결산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매 분기가 종료되는 즉시 징수한 세수와 세책을 운송해야 하였다.

월해관의 징세 구조에서 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는데, 위원의 선발과 파견 방식은 월해관의 관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월해관감독이 행정 전체를 專管하는 시기에는 월해관감독이 직접 위원을 선발하여 각 총구에 파견하였지만, 옹정 원년(1723)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 참여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知府·知縣이 이를 겸임하였다.<sup>48)</sup>

건륭 8년(1743) 경주총구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軍標에서 員弁을 파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장군아문에서 위원을 임명하기도 하였다.<sup>49)</sup> 하지만 해관 업무에 대한 이들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胥役에게 속거나 혹은 한 통속이 되어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건륭 15년(1750) 總督兼管制가 확립된 이후부터 양광총독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선발하여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건륭 15년(1750) 월해관감독 唐英은 佐貳官과 雜職官 중에서 위원을 선발하여 瓊州總口에 2명, 나머지 총구에 1명씩을 파견할 것을 건의한 결과, “각 총구마다 委官 1명, 매년 藩司에서 現任 혹은 試用 佐雜官에서 (선발하여) 양광총독에게 (건의하여) 위원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어 廣州府의 縣丞, 巡

48) 孔毓珣, 『委奏明委管關稅事』, 옹정 6년 7월 18일, 故宮 402019030, “竊廣東巡撫兼管太平粵海兩關, 其太平關稅務經前撫臣楊文乾, 委韶州府知府吳騫管理, 粵海大關稅務, 委廣州府知府張鋁, 惠潮各口委惠潮道樓儼, 高雷廉瓊各口, 俱委各該知府管理”. 이하 臺灣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된 宮中檔과 軍機處檔을 인용할 경우 “文獻編號”를 기준으로 “故宮 文獻編號”로 약칭한다.

49) 策楞, 『爲奏明事』, 건륭 8년 7월 2일, 第一 MR18, pp.1691-1694. 이하 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서 영인한 마이크로 필름인 『中國第一歷史檔案館硃批奏摺財政類檔案』을 인용할 경우 필름 롤(roll)을 기준으로 “第一 MR넘버”로 약칭한다.

檢 등 佐貳官 혹은 佐雜官에서 선발하여 양광총독의 재가를 얻어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sup>50)</sup>

하지만 이들의 품급이 비교적 낮았고, 매년 근무지가 바뀌면서 지역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져서胥吏들의 농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sup>51)</sup> 건륭 51년 6월 양광총독 孫士毅와 월해관감독 穆騰額은 현지의 丞倅(知府의 佐貳官)에서 위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오감총구는 惠州府同知, 암부총구는 潮州府海防同知, 해안총구는 雷州府同知, 해구총구는 瓊州府同知, 매륙총구는 高州府通判이 임명되었다.<sup>52)</sup>

이처럼 총독겸관제가 정립된 이후 총구를 관리하는 위원은 布政司가 추천한 자를 선발하여 양광총독의 재가를 얻어서 파견되었다. 월해관감독서가 위치한 廣州府의 대관총구는 월해관의 관세 행정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이자, 對서양 무역의 중심지였고, 오문총구는 서양인의 거주 지역이었다는 측면에서 佐雜官을 위원으로 파견하지 않고, 장군아문의 팔기 군관 중에서 직접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했다.<sup>53)</sup> 각 총구의 관리자인 위원의 선발과 파견 과정에서 월해관감독의 인사권이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건륭 24년(1759) 월해관감독 尤撥世가 내무부 筆帖式的 재파견을 요청한 직접적인 원인도 “(委員들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50) 陳大受, 「爲查明稅口情形懇准派員經理以清宿弊事」, 건륭 15년 12월 15일, 第一 MR19, pp.594-598.

51) 孫士毅·穆騰額, 「爲請撤路遠之坐口委員長隨就近派委丞倅兼管並請添設庫官以重樞務仰祈聖鑒事」, 건륭 51년 6월 27일, 故宮 403048485, “所有詳委之佐雜, 本非熟習關務, 且官職較卑, 胥吏家丁視爲微員, 未能受其拘管, 即有一二向上之員, 又因遞年更換, 不肯實心經理, 而向來派往遠路口岸者, 因家丁不能敷用, 每多遣派長隨, 若輩或留或去, 既不比家丁之易”.

52) 孫士毅·穆騰額, 「爲請撤路遠之坐口委員長隨就近派委丞倅兼管並請添設庫官以重樞務仰祈聖鑒事」, 건륭 51년 6월 27일, 故宮 403048485

53) 『粵海關志』卷7, 「設官」, pp.115-116, “管理總口委員七員. 一大關旗員. 一澳門總口旗員. 一惠州府同知. 一潮州府海防同知. 一雷州府同知. 一瓊州府同知. 一高州府通判”.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월해관감독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은 관세 행정으로 제한되었고,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행정력을 보완하는 형태를 이루었다. 소속 해관의 관리와 감독은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양광총독이 담당하고, 월해관감독은 마카오-廣州의 珠江 삼각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對서양 무역을 관리하며 총구에서 징수한 관세를 회계 처리하는 데 집중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7개로 이루어진 총구와 소속 소구를 행정적으로 감독·지휘하는 양광총독과 粵海關監督署의 長으로서 관세의 징세와 세수의 회계 결산을 책임진 월해관감독의 공동 관리 방식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은 廣州府의 粵海關監督署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월해관감독서는 모두 8개의 업무 부서(房)를 두었고, 그 구성은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옹정 10년(1732) 毛克明이 “...庫(房)·稿(房) 등 8房에 각 書吏의 規銀 약 30,000량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면 옹정 연간 8房이 존재한 것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세부 명칭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sup>54)</sup>

각 부서의 명칭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륭 24년을 기준으로 보면, 算房, 稿房, 單房, 船房, 票房, 承發房, 柬房, 庫房의 8房이 존재하였다.<sup>55)</sup> 각 房에서 주관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算房은 월해관의 회계, 稿房은 奏銷摺과 清冊의 작성, 單房은 給單의 등기, 船房은 입·출항 선박의 丈量, 承發房은 월해관의 문서 수신 및 각 房의 문서 초안 등의 보관, 柬房은 지방 아문과의 문서 왕래, 庫房은 銀錢의 출납과 장부책 관리, 票房은 선박의 입·출항 허가증의 발급을 담당하였다.<sup>56)</sup>

그리고 『粵海關志』가 완성된 도광 20년(1840)을 전후로 월해관감독서의 구성에 큰 변화가 확인되는데, 算房, 稿房, 單房, 冊房, 賬房, 押房, 平房, 貢房 등 10房이 존재하였다.<sup>57)</sup> 건륭 24년(1759)의 구성과 『粵海關志』의 구성을 비

54) 毛克明, 『爲密行奏聞仰祈聖鑒事』, 옹정 10년 7월 13일, 故宮 402004065.

55) 新柱·朝銓·李侍堯, 『爲請除外洋夷船規例之名色以杜弊混以協體制事』, 『史料旬刊』 第5期, 史料旬刊社, 1930, pp.337-341.

56) 中國海關通志編纂委員會 編, 『中國海關通志』 第1分冊, 方志出版社, p.175.

57) 건륭 24년과 도광 20년 전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하면 船房, 票房, 承發房, 束房, 庫房이 사라지고 賬房, 冊房, 平房, 貢房, 押房이 새로 출현하였다. 賬房은 庫房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冊房은 서류 관련 작업을 전담한 부서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맡았던 承發房과 束房의 업무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押房은 외국 선박의 입항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 부서로 보이는데, 船房과 票房的 업무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平方과 貢房은 이전 확인되지 않던 새로운 부서인데, 平方은 월해관의 저울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貢房은 매년 월해관에서 상공해야 하는 貢物을 처리하기 위해 정식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sup>58)</sup>

『粵海關志』에서 확인되는 각 업무 부서(房)의 책임자는 案書는 掌冊案書, 掌平案書, 掌稿案書, 單房案書, 算房案書, 貢房案書의 6인이었는데, 賬房과 押房의 案書는 확인되지 않는다.<sup>59)</sup> 賬房의 경우 건륭 52년 월해관의 關庫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관직인 庫大使를 신설하였다. 關庫를 관리하는 庫大使는 정9품에 해당하는 官員이었으므로 별도의 案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押房의 경우 그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sup>60)</sup>

월해관감독서의 업무 부서와 인적 구성을 보면, 관세의 과세와 징수를 담당한 행정 부서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廣州에 입항하기 전 黃埔에서 진입을 허가받으면서 船鈔와 規禮銀을 납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월해관감독이 파견한 胥吏에 의해 과세와 징수가 이루어졌다. 胥吏는 입항 선박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과세액을 산정하였고, 선초와 규례은의 납부가 완료되면 선박의 입항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세와 징세 업무는 書房과 票房(후에 押房)에서 담당하였지만, 상품의 교역세에 해당하는 商稅의 과세와 징세

건륭 24년	算房	稿房	單房	庫房	船房	票房	承發房	束房		
도광 20년	算房	稿房	單房	賬房		押房		冊房	平房	貢房

58) 陳國棟, 『粵海關監督的派遣』,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p.56-57.

59) 『粵海關志』 卷7, 『設官』, p.119.

60) 『粵海關志』 卷7, 『設官』, p.117, “臣穆騰額自乾隆四十九年接任, 遞年增至七八十萬兩餘銀數, 較昔年不啻加倍, 而向例止設庫書二名經理其事, 殊非慎重錢糧之道”.

업무를 처리하는 월해관의 행정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월해관의 구조는 常關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청대 대표적인 常關 중 하나인 淮安關과 비교해 보면 명확한데, 光緒本 『淮關通志』를 기준으로 비교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1)</sup>

<도표 1-2> 粵海關과 淮安關의 행정 부서 비교

粵海關	淮安關	비고
算房	本房	회계 업무
稿房	季報房	奏銷摺 작성
單房	單房	허가증 발행
賬房	廠房	關庫 업무
柬房	冊房	행정 기관 간 문서 처리
平方		저울추 관련 업무
貢房		貢品の 조달
押房		船鈔의 징수
	揭房	관세 납부 업무(추정)
	雜行房	불명확
	商稅房	商稅의 징수

常關의 구성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징세 기관으로서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회안관의 경우 월해관에 존재하지 않는 商稅房이 존재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관세 행정을 행상이 담당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징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광동체제下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이 회안관의 商稅房과 같이 상세의 과세와 징수를 위한 행정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세 기관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黃埔에서 선초와 규레은을 납부한 외국 선박은 廣州에 입항하여 별도의 상품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保商의 창고에서 화물을 하역하였는데,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는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보상은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 가격을 책정하여 과세액의 산정을 주도하였고, 외국 상인을

61) 『淮關通志』, 荀德麟 主編, 『淮安文獻叢刻』, 方志出版社, 2006, 所收.

대신하여 이를 親填冊에 기록함으로써 관세 납부의 보증인이 되었다.<sup>62)</sup>

물론, 월해관의 胥吏가 파견되어 이 과정을 감독하였지만, 稅則을 적용하는 과세 행위는 보상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사실상 과세와 징수가 모두 징세 청부업자인 保商에게 위임된 형태의 징세 형태로 인해 과세와 징세가 불가능한 기형적인 징세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 2) 稅則

월해관의 관세는 징수 목적에 따라 크게 正稅와 雜稅로 구분되었다. 정세는 각관체제에서 할당된 ‘本稅’적 성격을 갖는 관세로서 상품에 과세하는 商稅와 선박에 과세하는 船鈔로 구성되었다. 반면, 잡세는 해관의 행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한 ‘附加稅’적 성격의 관세였다. 정세와 잡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 기준인 稅則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월해관감독은 이 세칙을 상인에게 전파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이를 고지할 책임이 있었다.<sup>63)</sup> 이하에서는 월해관의 奏銷摺의 구성과 회계 절차를 분석하기 위한 밑작업으로서 우선 월해관 세칙을 정리하고자 한다.<sup>64)</sup>

62) 李質穎, 『爲酌辦洋船稅餉分別先後征收以副解限仰祈聖鑒事』, 건륭 47년 8월 2일, 商務檔案(3), p.1872, “竊照粵海關稅餉, 內地各口俱係隨時驗貨收銀, 並無拖欠. 惟外洋夷船到廣, 俱先投省行認保, 將載來貨物起貯行內. 行商又代爲置貨回國, 所有進出口各貨, 俱由行商報驗, 核明稅額, 填單登簿, 候洋船全數出口之後, 始行立限開征”.

63) 『粵海關志』 卷1, 『皇朝訓典』, p.3, “大抵關差之弊, 皆惟知目前小利, 忍意侵漁, 聽信家丁, 縱容胥吏. …(중략)… 嗣後將上稅課之貨物, 遵照則例, 逐項開明, 刊刷詳單, 分發各貨店, 徧行曉示, 使衆皆知悉. 其關前所有刊刻則例之木榜, 務令豎立街市, 人人共見. 不得藏匿屋內, 或用油紙揜蓋, 以便高下其手, 任意苛索, 立法如此, 自能剔除弊端”.

64) 월해관의 稅則에 관한 내용은 1982년 陳國棟이 『食貨月刊』에 『粵海關的稅務行政』을 발표하면서 세부 내용들은 이미 대부분 밝혀졌다(陳國棟, 『粵海關的稅務行政』,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p.66-114 所收). 陳國棟 이후 戴和, 『清代粵海關稅收述論』,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 1988; 李金明, 『清代海關的設置與關稅的征收』, 『南洋問題研究』 3, 1992; 王巨新, 『清前期粵海關稅則

첫 번째로 商稅는 말뜻 그대로 수출·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였다. 상세는 기본적으로 길이, 무게, 개수, 자루, 덩어리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종량세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sup>65)</sup> 상세의 세칙은 正稅則例와 比例로 구성되었는데, 정세칙례는 월해관을 개설하면서 월해관감독으로 파견된 宜爾格圖가 명대 “抽分制”의 방식으로 수출·입 화물을 “衣物”, “食物”, “用物”, “雜花”로 구분하여 마련한 세칙이었다.<sup>66)</sup>

대의 무역항을 관리하는 징세 당국이 수출·입 상품에 세칙을 적용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우선은 상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였다. 한 예로 “용품”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布”를 보면 “布: 繡梭布, 繡斜紋布는 100斤당 각 2兩 2錢. 梭布, 夏布, 雲布, 葛布, 波羅 100斤당, 1등급 西洋布 1疋당 각 5錢. …(후략)…”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로서 각각의 상품의 종류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상품별로 적용해야 하는 세율이 모두 달랐다.<sup>67)</sup>

또한 대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역 품목이 다양해졌고, 정세칙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품이 수입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기존에 세칙을 기준으로 견주어 징수(引比徵收)”하는 방식으로 기존 상품과의 유사성에 따라서 정세칙례를 적용하였다.<sup>68)</sup> 가령 향수(花露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세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花露水 1병당 洋酒 1병으로 견주어 1병당 2分으로 하고, 5단지당 洋酒 1병으로 견주어 1단지당 4釐”를 적용하였다.<sup>69)</sup>

考』, 『歷史教學』 5, 2010 등의 연구가 이어졌다.

65) 『粵海關志』 卷8, 「稅則一」, pp.150-151, “凡輸稅者, 衣物之屬以疋計, 以身計, 以卷計, 以筒計, 以件計, 以箇計, 以副計, 以條計, 以斤計, 以十雙百雙十頂百頂計; 食物用物及雜貨之屬, 以斤計, 以箇計, 以包計, 以箇計, 以擔計, 以塊計, 以件計, 以張計, 以疋計, 以埋計, 以石計, 以十套百套十把百把計; 牲畜之屬, 以口計, 以價計, 其貨有包者, 不除包皮, 每百斤作九十斤科算”.

66) 陳國棟, 「粵海關的稅務行政」,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74.

67) 『粵海關志』 卷9, 「稅則二」, p.174. “布[繡梭布、繡斜紋布每百斤各稅二兩二錢. 梭布、夏布、雲布、葛布、波羅每百斤, 一等西洋布每疋各稅五錢. …(후략)…]”.

68) 陳國棟, 「粵海關的稅務行政」,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p.74-75.

69) 『粵海關志』 卷9, 「稅則二」, p.182, “花露水. 每瓶比洋酒一瓶, 每瓶二分. 每五罐

“인비징수”의 사례가 누적되면서 세칙으로 정례화된 것이 比例였다. 비례는 옹정 13년 월해관감독 毛克明이 관행적으로 적용해 오던 “比例冊簿”를 중앙에 보고하면서 정식 세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월해관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새로 출현한 상품과 적용 세율을 정리하여 호부에 보고하였고, 비례책부는 호부의 심사를 거쳐서 정식 세칙으로 인정되었다.<sup>70)</sup>

두 번째로 船鈔는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오늘날 선박세와 비슷한 성격의 관세였다. 海禁 이전 동양선과 서양선은 각각 선초의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南洋에서 입항하는 동양선의 경우 4등급제를 적용하고, 西洋에서 입항하는 서양선은 9등급제를 적용하였는데, 등급별로 적용되는 세율에서도 서양선이 동양선에 비해 훨씬 무거웠다.<sup>71)</sup>

강희 24년(1685) 월해관감독 宜爾格圖의 건의에 따라서 동양선과 서양선의 선초를 20%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것으로 동양선과 서양선의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sup>72)</sup> 이에 대한 서양 상인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결국 강희 37년(1698) 동양선과 서양선의 차별 규정을 수정하여 서양선을 동양선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할 것을 결정하였다.<sup>73)</sup>

比洋酒一瓶，每罐四釐”。

70) 『粵海關志』 卷8, 『稅則一』, p.152, “是以歷任遵照引比征收之條，設立比例簿冊，第未經奏明，又不咨部，恐輕重有差，礙難畫一遵守，理合繕寫比冊一本，伏乞勅部核覆”。

71) 『清朝文獻通考』, “粵東向有東西二洋諸國往來交易，係市舶提舉司征收貨稅，明隆慶五年以夷人報貨奸欺難，以查驗改定丈抽之例，按船大小以爲額稅，西洋船定爲九等後，因夷人屢請量減抽三分，東洋船定爲四等”。

72) 『粵海關志』 卷22, 『貢舶二』, p.448, “國朝未禁海以前，洋船詣澳，照例丈抽。但往日多載珍奇，今系雜貨。今昔殊異，十船不及一船，請於原減之外，再減二分，東洋亦照例行”。

73) 강희 37년 이전 서양선은 1등급 3,500량, 2등급 3,000량 3등급 2,500량을 징수하였다. 명 융경제 이후 월해관의 선초는 丈抽制를 적용하여 등급별 정액제가 아니라 과세 단위에 등급별 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강희 37년 이전 서양선의 등급별 과세 단위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알기는 어렵다. 『大清會典則例』, “西洋一等二等三等夾板船，均照東洋船例徵收(西洋第一等船原徵銀三千五百兩，第二等船原徵銀三千兩，第三等船原徵銀二千五百兩。康熙三十七年均改照東洋例)”。

광동체제 성립 이전 선초의 경우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고 과세 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월해관 측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선초의 문제로 양측이 충돌한 사례가 확인된다. 강희 28년(1689) 廣州에 입항한 EIC 소속 디펜스(Defence)號의 경우가 대표적이다.<sup>74)</sup>

월해관감독은 디펜스號에 船鈔 2,484량을 과세하였다. 디펜스號의 사례는 강희 37년(1698) 선초의 과세 규정이 확립되기 이전이므로 월해관감독이 2,484량을 과세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외국 상인이 교역을 취소하고 그냥 되돌아가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볼 때 외국 상인에게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월해관감독은 “이는 황제께서 정하신 규정이므로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후에 선초를 내지 않겠다면 화물을 모두 압수하고 즉시 내쫓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곧 양측은 선초의 과세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고, 최종적으로 684량을 감면하여 1,800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관세의 과세는 월해관감독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거나 깎아주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협상 과정에서 通事가 1,800량 중 선초가 1,500량이고, 나머지 300량은 월해관감독의 몫이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선초의 과세와 징수 과정에 존재한 불투명성이 포착된다. 옹정 연간 월해관의 행정 제도가 정비되고 과세 절차가 정형화된 이후 강희 연간처럼 월해관감독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고 과세 단위를 산출하여 선박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였다.

세 번째로 雜稅는 정세인 상세와 선초를 제외하고 징수하는 모든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관세였다. 잡세는 중국 사회의 독특한 관행이 반영된 것이었다.<sup>75)</sup> 정세가 호부 재정에 귀속되는 관세였다면 잡세는 월해관의 운영비를

74)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p.81-82.

75) 李侍堯·尤拔世, 「爲遵旨議奏事」, 건륭 24년 12월 22일, 第一 MR19, p.1331, “伏查粵海關, 凡外洋本港商船貨物, 出入向則, 除按照則例科征正稅船鈔之外, 另有官吏家人通事巡役人等, 規禮以及分頭擔頭等項銀兩”.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관세였다. 월해관의 대표적인 잡세 항목으로는 火耗, 規禮銀, 擔頭銀, 分頭銀, 加平銀 등이 있었다.<sup>76)</sup>

최소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청조의 재정 운영 원리에 의해 세금의 징수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중 대부분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였고, 이를 위한 비공식적인 세금의 징수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청대 관료 사회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 혹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금전이나 예물을 수수하는 관행(饋送)이 존재하였는데, 당연히 이 비용도 정식 지출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조달해야 하였다.

이처럼 지방 행정 기관이 업무 추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징수했던 세금이 陋規였다. 여러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징수하던 누규의 관행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옹정 연간 “耗羨歸公”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재정 개혁 조치를 거쳐서 정식 세칙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었다.

대의 무역의 징세 기관이었던 월해관도 마찬가지였다. 월해관감독은 행정 경비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의 포정사, 순무, 총독, 호부, 호과 등에 보내야 하는 饋送 비용까지 모두 누규를 통해 해결하였다.<sup>77)</sup> 월해관의 누규의 정비는 옹정 3년(1725) 楊文乾이 광동순무로 부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楊文乾은 정세인 상세와 선초 외에胥吏와 家人 등이 각종 명목을 붙여서 자의적으로 勒索하던 누규를 항목과 세율을 고정시켜서 정식 세칙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잡세의 세칙인 規例가 성립하였다.<sup>78)</sup> 옹정 연간 시작된

76) 이 외에 건륭 초에 폐지되는 繳送, 건륭 말 신설되는 行用 등이 있었지만, 월해관의 회계 결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 소절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7) 陋規는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粵海關志』卷1, 『皇朝訓典』, p.3, “國家之設關稅, 所以通商而非累商, 所以便民而非病民也. …(중략)… 嗣後榷關者, 務須秉公除弊. 過關之船, 隨到隨驗, 應收稅者, 納稅即放, 不得任膏役作奸, 勒索阻滯, 以副聯通商便民之意”.

78) 孔毓珣, 『爲奏明交代撫篆事』, 옹정 3년 7월 26일, 故宮 402019263; 楊文乾, 『爲奏聞事』, 옹정 4년 2월 12일, 故宮 402013940, “書辦衙役, 以掛號爲名, 索取規禮, 相延已久, 遂爲常例. 每年各口書役有繳官公費銀一萬餘兩, 書役私得數倍於

耗羨歸公을 거쳐 건륭 원년(1736) 전후 누구의 대부분은 規例로 정비를 끝마쳤다.<sup>79)</sup>

잡세는 청조에서 인정한 정식 관세였고, 그 세칙인 규례로 규정된 항목 외에 자의적으로 누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국 상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고, 불만을 가졌던 관세가 바로 잡세였다. 외국 상인들은 수출·입 상품에 부과하는 상세와 선박세인 선초 외에 월해관의 행정 경비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월해관 측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잡세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징수하는 사람에 따라 매번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정식으로 징수하는 관세가 아닌 월해관의 官吏들이 요구하는 뇌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감독은 정식 세칙인 규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잡세의 과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서양 상인을 납득시키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월해관의 胥役과 家人 등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월해관 행정은 무질서하며 중국의 官吏들은 탐욕적이고 부패하다’는 이미지까지 덧붙여졌다. 그렇지만 예상과는 달리, 규례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엄격히 준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세부 항목의 과세와 징수를 통해 검토해보겠다.

첫 번째는 청대 재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잡세인 “火耗”이다. 본래 화모는 징수한 錢糧, 織物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부분, 혹은 지역 은정으로 징수한 세수를 庫平銀으로 재주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은 손실의 보충 및 재주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항목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각종 명목이 추가되면서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고, 옹정 연간의 개혁을 거치면서 월해관의 화모는 정세의 20%로 결정되며 정식 세칙으로 인정받았다. 건륭 원년(1736) 화모는 10%로 재조정되었다.<sup>80)</sup>

---

此. …(중략)… 是以仰體皇上矜商恤民, 至意將前項勒索規禮, 盡行出示裁革”.

79) 楊永斌, 『爲報海關雜項銀兩事』, 건륭 원년 3월 8일, 第一 MR18, pp.669-701, “查粵海一關除徵收正稅外, 尚有耗羨規禮分頭擔頭繳送號禮等, 各項銀兩皆係從前監督, 及書役巡役家人輩, 所得之陋規. 自雍正肆年以後, 經前任巡撫臣楊文乾傳泰等, 陸續報出歸入公項解部, 是以歷任俱照收起解在案.

두 번째는 規禮銀이다. 규례은은 외국 선박이 마카오에서 廣州에 입항할 때까지 각종 명목으로 월해관의 關吏들로부터 누색당하던 누규가 정비된 항목이었다. 옹정 연간 耗羨歸公 이후 총액 1,950량으로 고정되어 월해관의 잡세로 편입되었고, 월해관에 입항하기 직전 黃埔에서 선초와 함께 납부해야 하였다.<sup>81)</sup> 규례은은 사료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화폐 단위의 환산에 따른 차이였을 뿐 관리의 부정·부패나 행정 체계의 무질서와는 관계가 없었다.

규례은은 크게 분류하면 입항 규례은, 출항 규례은, 糧道衙門 규례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입항 규례은은 외국 선박이 마카오를 출발하여 월해관에 입항하면서 월해관감독 및 通事, 庫房, 稿房, 單房, 船房 등의胥役과 家人 등에게 지급하는 30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출항 규례은은 선박이 출항하면서 庫房, 稿房, 承發房, 票房, 船房, 票房, 算房, 束房 등의胥吏과 家人에게 지급하는 38개 항목이었다.<sup>82)</sup> 양도아문 규례은은 普濟院의 운영비를 지출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그 외에 입항 소속 과정에서 保商과 선박의 장량, 해관 경비 인원, 府縣의 官吏 등에게 지급하는 기타 항목이 있었다.

세 번째는 擔銀, 擔規, 擔頭費라고 불리는 擔頭銀이었다. 담두은은 胥吏, 差役 등의 工食과 紙筆 등 관공비 명목으로 화물 1擔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였고,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과세하였다. 건륭 9년(1744) 월해관감독 策楞이 이를 歸公할 것을 요청하여 세칙에 정식으

80) 楊永斌, 「爲請裁關稅平餘銀兩以恤商旅事」, 건륭 원년 2월 18일, 第一 MR18, pp.640-642, “再該關耗銀, 向來徵收加二. 今既准部咨加一火耗之外, 不許絲毫多取, 自應遵照加一徵收”.

81) 許地山 編, 『達衷集(鴉片戰爭前中英交涉史料)』, 商務印書館, 1928, pp.173-175. “規禮銀計一千九百五十兩. 一九三折算傾紋銀計一千八百一十三兩五錢內, 應完放關紋銀四百八十兩零四錢二分, 應完糧道放關紋銀一百一十六兩四錢一分四釐, 入口禮紋銀一千零一十三兩三錢六分四釐[交大關], 餘銀二百零三兩二錢九分李璠[交通事志各項零用], 以上四款共支銀一千八百一十三兩五錢”.

82) 입항규례은과 출항규례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은 「新柱等奏各關口規禮名色請刪改載於則例內摺」, 故宮文獻館, 『史料旬刊』 第5期, 史料旬刊社, 1930, pp.158-161을 참조.

로 편입되었다. 건륭 28년 양광총독 蘇昌은 월해관의 담두은을 “1擔당 1分 1釐 ~ 1分 3釐”라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였다.<sup>83)</sup> 각 무역항마다 세율에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항지와 출항지, 그리고 상품(米, 麥, 豆)에 따라서도 제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다.<sup>84)</sup>

네 번째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과세하는 分頭銀이 있었다. 『粵海關志』에서 분두은을 세칙에서 “估價例”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는 수출 화물의 가격에 적용하는 세칙이었다. 다만 상품 가격은 시장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청조가 고정한 상품 가격(“官價”)이 기준이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증가세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sup>85)</sup>

『粵海關志』에서는 “수출 화물은 가격을 평가하여 1량당 分頭銀 4分 9釐를 징수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광 연간 분두은의 세율이 4.9%였다.<sup>86)</sup> 그런데 분두은의 세율에 관한 중국 측 기록과 서양 측 기록은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월해관 稅則의 무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밀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각 사료에서 세율이 불일치하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데, 우선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옹정 5년(1727) 복건순무 常賚는 분두은을 3.9%로 설명하여 『粵海關志』의 4.9%와 차이가 있었다.<sup>87)</sup> 그리고 옹정 8년(1730) 祖秉圭가 “수출 상품의 가격 1량당 5分 4釐를 징수하고, 명칭을 分頭라고 합니다. 이 중 監督이 3分 5釐를 얻고, 감독의 家人과 書辦이 1分 4釐, 左翼鎮總兵官이 5釐를 얻습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분두은 5.4%를 징수하는데, 그 중 월해관 세입이 4.9%, 좌익진총병관 세입이 0.5%이므로 『粵海關志』의

83) 蘇昌, 『奏爲粵海關陋規久經歸公留關充用導旨查明奏覆事』, 건륭 28년 정월 25일, 故宮 403014095,

84) 『粵海關志』 卷11, 『稅則四』, pp.213-216.

85) 陳國棟, 『粵海關的稅務行政』,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75.

86) 『粵海關志』 卷11, 『稅則四』, p.213, “內出口貨物, 估計價值每兩收分頭銀四分九厘”.

87) 常賚, 『爲奏明太平粵海兩關稅務情由事』, 옹정 5년 7월 19일, 故宮 402015287, “仍照稅耗外, 復抽分頭銀三分九釐”.

4.9%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sup>88)</sup>

3.9%와 4.9%의 차이는 옹정 12년(1734) 毛克明·鄭伍賽의 奏摺을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접에서는 “(수출 상품의) 가격 1兩당 3分 5釐를 官收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家人이 4釐를 받고, 庫房의 吏書가 6釐를 받고, 稿房의 吏書가 4釐를 받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89)</sup> 아마도 기존에 분두은 3.9%는 규례로 정식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庫房과 稿房에 지급하는 행정 비용 0.4%와 0.6%가 추가되어 4.9%가 되었고, 좌익진총병관에게 지급되는 0.5%가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측의 기록은 더욱 복잡하다. 옹정 원년(1723)에 입항한 월폴(Walpole) 號의 케이스에서 분두은의 세율은 4%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四分頭”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sup>90)</sup> 그리고 건륭 24년 洪任輝의 탄원서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1兩당 5分을 징수한다”고 기록하며 5%로 설명하였다.<sup>91)</sup> 이러한 서양 측 자료의 기록은 아마도 중국 측 기록의 3.9%와 4.9%가 실제 징수 과정에서 4%와 5%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외국 측 사료 중에서는 분두은의 세율을 6%로 설명하며 “六分頭”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였지만, 이는 분두은에 기타 항목이 추가된 것일 뿐 세칙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월해관의 조사 결과에서 “六

88) 祖秉圭, 『爲冒昧陳情仰祈睿鑒事』, 옹정 8년 정월 29일, 第一 MR18, pp.499-504, “凡外國洋船出口貨物價值, 每兩收銀五分四釐, 名爲分頭. 內監督得三分五釐, 監督家人與書辦得一分四釐, 左翼鎮總兵官得五釐”. 옹정 3년 廣州에 普濟堂을 설치하면서 左翼鎮總兵官에게 배분되던 몫 0.5%는 보제당 운영 경비로 전환되었다(傳泰, 『爲請旨事』, 옹정 7년 10월 28일, 故宮 402018964).

89) 毛克明·鄭伍賽, 『爲奏聞事』, 옹정 12월 6일 10일, 故宮 402004080, “其規例內有分頭一項, 名色因外洋商船出口置買貨物估, 其價值每銀壹兩官收參分伍厘, 管事家人收四厘, 庫房吏書收六厘, 稿房吏書收四厘”.

90)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175.

91) 洪任輝, 『謹將負屈條款瀝陳伏乞電伸』, 연도불명, 商務檔案(2), pp.1222-1223, “況前例正餉之外, 又有估價每兩征銀五分, 名曰分頭”.

分頭에서 分頭銀 5兩 4前을 제외한 나머지 6釐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이 화물을 운반하는 인건비와 운송비 항목으로 行商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지, 결코 월해관에서 징수하는 항목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면 중국 측 기록의 설명과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92)</sup>

이상 분두은 항목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본래 분두은은 3.9%(월해관감독 몫 3.5%+ 家人 몫 0.4%)를 징수하였고, 옹정 연간 耗羨歸公을 통해 정식으로 세칙에 편입되면서 1%(庫房 書辦 0.6%+稿房 書辦 0.4%)가 추가되어 4.9%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분두은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추가 비용인 좌익진총병관 0.5%와 화물 처리 비용 0.6%의 1.1%가 추가되어 6%가 적용되어 “육분두”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저울추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加平銀이 있었다.<sup>93)</sup> 가평은은 중앙의 호부와 지방의 징세 당국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 징수하는 항목이었다. 사료에서는 이를 加法, 加平, 添平, 補平 등의 용어로 설명하였는데, 교환 가치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단 ‘가평은’으로 명칭을 통일하겠지만,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法”은 “法碼”, “法馬”의 의미로서 호부에서 전국의 布政司에 배포한 법정 표준 저울추인 庫平을 가리켰다. 다만, 호부에서 배포한 저울추의 수량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본은 포정사에 보관되어 회계 과정에서 저울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각 징세 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독자적인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포정사의 고평과 무게 차이를 조정하였는데, 加法은 호부와 징세 기관 간에 사용하는 고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였다.

92) 託恩多·蘇昌·尤拔世, 『爲酌辦夷情會摺奏聞事』, 건륭 26년 10월 11일, 商務檔案(3), p.1587, “惟所稟六分頭內, 除分頭銀五分四釐外, 尚有銀六釐. 查係夷人幫貼行商爲搬運貨物之辛工腳費, 並非官徵之項”.

93) 월해관의 저울추 조정 문제는 제II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쑤”은 저울추의 범칭으로서 고평과 같은 관용 저울추와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市平을 모두 포함하였고, 加平은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법과 가평은 저울추 무게 차이를 고려하여 산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징세 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때 그 차이만큼 추가 징수하여 호부 고평과 무게를 맞추었다.

加法과 加平이 저울추에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였다면 添平和 補平은 寶銀으로 주조된 은정에 무게를 조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징세 기관은 세수를 회계 처리하기 위해 모두 庫平銀으로 재주조하였는데, 고평의 무게 차이로 인한 고평은의 교환 가치 차이를 조정해야 하였다. 이에 징세 기관은 세수를 결산하면서 별도의 寶銀을 추가하여 조정하였고, 이를 침평과 보평이라 하였다.

세칙에 의거하여 고평은으로 과세한 세금을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징세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그렇지만 징세 기관이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서 은정을 징수하더라도 오차는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세 기관은 차후에 세수를 결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결손 가능성에 대응해야 하였고, 이를 위해 가평은을 징수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가평은의 경우 건륭 26년(1761) 징수액에 2%를 추가하는 것이 규정으로 확정되었다.<sup>94)</sup>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징세 청부업자가 사용하는 저울추인 司碼平으로 무게를 측정한 외국 은화를 2%를 추가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호부의 회계 기준은 ‘호부 고평으로 무게를 측정한 족색문은’이었기 때문에 월해관에서 세수를 결산할 때 이를 환산하여 庫平銀 1.65%로 회계 처리하였다. 즉,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사마평 기준으로 2%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월해관의 세칙을 다시 정리한 이유는 월해관의 행정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

94) 託恩多·蘇昌·尤拔世, 『爲酌辦夷情會摺奏聞事』, 건륭 26년 10월 11일, 商務檔案(3), p.1587, “仍照舊例每百兩收添平銀一兩六錢五分, 合算番銀市平每兩計收銀二分, 亦係定例應徵之款”.

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륭 24년(1759) 제임스 플린트가 탄원서에서 고발한 월해관 행정의 부정·부패는 대부분 正稅 외에 월해관의 행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한 잡세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징세 청부업자, 월해관, 그리고 호부 간에 저울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월해관 측의 설명은 그들에게 탐관오리의 탐학과 횡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플린트의 탄원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당시 월해관에서 외국 상인에게 적용한 행정의 실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플린트가 고발한 사항은 월해관의 세칙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어쩌면 당시 외국 상인들이 남긴 기록에서 묘사한 월해관 官吏의 부패, 무능, 탐욕의 이미지는 중국의 재정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 오해, 편견이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 2. 월해관의 관리 제도

### 1) 總督兼管制的 확립

월해관감독은 월해관의 소속 해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을 감독하고, 관세 행정을 총괄하는 월해관 행정의 책임자였다. 월해관감독의 전체 官銜이 “督理廣東省沿海等處貿易稅務戶部分司”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월해관은 호부 소속의 징세 기관 중 하나였고, 월해관감독은 호부 소속의 해관 행정에 책임자였다.<sup>95)</sup>

<sup>95)</sup> 서양 측 자료에서는 월해관감독을 “Hoppo”로 지칭한다. “Hoppo”의 어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월해관감독의 관함 중 ‘戶部’를 민남어 방언으로 발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陳國棟은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월해관감독을 지칭하는 “關部”를 “海關-戶部”의 합칭인 점을 밝히고, “戶部”와 “關部”의 호칭이 월해관감독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陳國棟, 『粵海關監督의 派遣』,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p.3-7을 참조).

현재까지 월해관의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월해관감독의 신분이 內務府包衣였다는 점에서 滿·漢의 문제, 내무부 재정 등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만, 여기에 천착하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황제의 奴僕이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황제와 월해관감독의 특수 관계 혹은 내무부 재정의 주요 수입으로서 월해관의 특수한 위상 등으로 이해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우선 內務府包衣가 파견되어 그들이 징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월해관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월해관감독 외에도 杭州織造, 蘇州織造, 江寧織造, 長蘆鹽政, 兩淮鹽政, 河東鹽政, 兩浙鹽政, 濟甯關監督, 龍江·西新關監督, 南·北新關監督, 天津關監督, 淮安關監督, 九江關監督, 鳳陽關監督에는 모두 內務府包衣가 파견되었다.<sup>96)</sup> 월해관감독에 內務府包衣가 파견되었다는 사실로 월해관의 특수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天子南庫”라고 불리며 황실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평가된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월해관의 세수 중 내무부 재정으로 배정된 항목은 매년 55,000량에 불과하였다. 건륭 연간 내무부의 1년 예산 총액을 대략 60만량으로 본다면, 전체 1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었다.<sup>97)</sup> 또한 樞關 중에서 내무부 재정을 담당한 常關도 여럿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중의 측면에서 본다면 樞稅보다는 鹽課가 전체 내무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일단, 우선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건륭 15년 월해관감독 직이 內務府包衣缺로 고정된 사실을 旗人 독점과 漢人 배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96) 包衣가 파견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은 陳國棟이 정리한 표를 참조한다(陳國棟, 『內務府關員的外派, 外任與乾隆宮庭文物供給之間的關係』,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312).

97) 건륭 연간 내무부의 1년 예산 규모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嘯亭雜錄』의 서술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크게 호부에서 60만량을 지원받아서 내무부 재원으로 하였다는 견해와 예산 총액이 60만량이라는 견해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劉文華는 분석을 통해 건륭 연간 내무부 1년 예산 총액을 60만량이었다는 점을 밝혔다(劉文華, 『乾隆年間戶部撥款60萬作爲內務府常年經費考辨』, 滿族研究 1, 2019, pp.35-40).

점을 상기하면서 이하에서는 督撫가 鹽稅관 行政에 參與하는 形態의 對外 貿易 管理 制度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98)</sup>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陳國棟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분석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특히 獨무와 鹽稅관감독이 각각 獨립된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를 가졌던 鹽稅관의 行政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동체제 시기 廣州는 中國과 서양의 이질적인 두 문명이 접촉하며 상호 간에 交易이 허용된 ‘열린 공간’이었다. 鹽稅관은 各관체제에 따라 개설되었지만, 國內 流通 商品의 관리와 내지 통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權關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對外 貿易항인 鹽稅관에 적용할 수는 없었다. 호부에서 관리하는 戶關의 하나로서 鹽稅관은 對서양 貿易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서양인이 왕래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管理 制度가 필요했고, 이것은 해상 貿易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海關으로서 鹽稅관이 갖춰야 할 기본 이었다.

육상 貿易이 참가하는 人員과 商品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관리도 수월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해상 貿易은 관리 당국이 입·출항하는 선박과 人員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웠고, 또한 交易량도 육상 貿易보다 훨씬 컸다. 鹽稅관을 통한 해상 貿易은 점점 더 활발해졌지만, 이와 비례하여 양측의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졌다. 그렇지만 청조는 강제적으로 交易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지 않았다. 交易을 억제할 경우 해상의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國家 권력 밖에 또다시 해상 세력이 대두할 가능성도 컸다. 청조는 交易 증가에 따라 마찰이 발생하여 이것이 國경에서 소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특히 建醜제는 이것이 심각한 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청조는 鹽稅관의 管理 制度의 정비와 서양인의 이권을 우대하는 태도를 보였고, 내부의 단속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썼다.

---

98) 鹽稅관의 管理 制度和 鹽稅관감독의 신분에 관해서는 陳國棟, 『粵海關監督의 派遣』,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3-29를 참조.

건륭 15년 월해관감독 직이 內務府包衣缺로 고정됨과 동시에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總督兼管制로 확립되었다. 이하에서 월해관의 관리 제도를 크게 專管制와 兼管制로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담당 주체에 따라서 월해관감독이 전담하는 監督專管制, 월해관감독이 파견되지 않고 督撫가 전담하는 督撫專管制, 독무와 월해관감독이 공동 관리하는 督撫兼管制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양광총독과 광동순무가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서 巡撫專管制, 巡撫兼管制, 總督專管制, 總督兼管制로 차이를 둘 것이다.<sup>99)</sup>

월해관은 다른 樞關들과 비교하여 월해관감독이 관할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었다. 광동성 전역에 걸쳐서 위치한 소속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행정력의 지원이 중요했지만, 월해관감독과 지방관 사이에 직접적인 통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해관감독이 상주하는 廣州府를 제외한 지역을 감독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sup>100)</sup> 게다가 각 지방의 知府·知縣 등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넘어서 월해관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sup>101)</sup>

99) 본 학위논문의 분류는 코사카 마사노리(香阪昌紀), 陳國棟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우선 코사카의 분류는 상관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에서 감독을 파견하여 담당하는 방식을 “關差制”, 織造가 상관의 감독 업무를 겸직하는 방식을 “兼差制”, 그리고 인원의 파견 없이 해당 지역의 독무가 겸관하는 방식을 “兼管制”로 구분하였다(香阪昌紀, 『清代常關制度の研究』, 東北大學博士學位論文, 1994, pp.17-18). 본 학위논문의 경우 월해관감독을 파견(關差)하고 독무가 겸관(兼管)했다는 점에서 코사카의 관차제와 겸관제를 합친 형태라고 하겠다. 陳國棟은 강희제 시기는 판단을 보류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옹정 원년(1723)~건륭 15년(1750)을 월해관감독 직의 설치와 폐지가 계속된 시기, 건륭 15년(1750)~광서 30년(1904) 이후 월해관감독 직의 설치 시기로 나눴다. 陳國棟은 월해관감독 직을 중심으로 독무의 전관과 겸관으로 구분했는데, 옹정 원년(1723)~건륭 15년(1750)에 대한 구분에서 본 학위논문과 입장에 차이가 있다(陳國棟, 『粵海關的行政體系』,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37-49 所收).

100) 毛克明, 『爲陳陳稅歸大吏徵解以重權柄以收實效仰祈睿鑒事』, 옹정 11년 정월 2일, 故宮 402004072, “粵東海關, 地面遼闊, 口岸繁多 監督駐筭省城, 與各地方文武, 毫無統屬”.

강희 23년(1684) 월해관을 개설한 이후 청조는 월해관감독을 파견하여 월해관 행정을 전담하는 형태의 監督專管制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월해관감독의 모호한 지위로 인해 소속 항구에 대한 통제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옹정 원년(1723) 월해관감독 직이 폐지되었고, 광동순무가 월해관 행정을 專管하는 巡撫專管制가 실시되었다.<sup>102)</sup> 이에 따라 월해관의 행정은 광동순무가 관할하는 지방 행정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고, 광동성의 내지 常關이었던 太平關과 같이 광동순무가 관리하는 權關에 포함되었다.

감독전관제와 순무전관제는 월해관의 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감독전관제에서 월해관감독은 總口와 小口에서 월해관 행정을 담당할 인원을 직접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자신이 직접 파견하는 인원들을 통해 각 지역의 해관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당연히 세수 증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월해관 책임자인 월해관감독에게 있었다. 반면, 순무전관제에서 광동순무는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 월해관 행정을 수행하였고, 知府 혹은 知縣이 총구와 소구의 해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세수 증감에 대한 책임은 광동순무에게 있었다.<sup>103)</sup>

하지만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업무를 專管한 기간에 楊文乾, 常賚, 阿克敦 등이 세수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광동순무를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옹정 6년(1728) 양광총독 孔

101) 『粵海關志』 卷7, 「設官(表附)」, pp.114-115, “十二年十二月奉諭旨. 直省關稅監督, 於地方官原不相統轄, 一切呼應不靈, 而大小口岸甚多, 監督一人, 勢難分身兼顧, 雖選委書吏巡役, 公同親信家人稽查收放, 而地方文武官弁, 以爲無與事, 並不協力. 或轉懷挾私意, 則奸商之隱漏, 地棍之把持, 督撫或不關心監督, 動則掣肘, 不獨於稅務元補, 即於地方亦難免擾累”.

102) 『粵海關志』 卷7, 「設官(表附)」, p.114, “雍正元年奉諭旨. 嗣後稅務交與地方官監收, 於錢糧地方均有禪益, 著議奏. 等因”. 옹정 원년 8월 21일 광동순무 年希堯가 해관 업무를 인계받았다(年希堯, 「爲各關書辦悉係流棍仰請斥遂以重錢糧事」, 옹정 원년 8월 24일, 第一 MR18, pp.447-449).

103) 가령 광동순무 常賚는 “太平粵海兩關稅務”를 專管하였는데, 太平關과 粵海關의 세수를 함께 결산하였다(常賚, 「爲奏明太平粵海兩關稅務情由事」, 옹정 5년 7월 19일, 故宮 402015287).

毓珣은 장군아문의 千摠과 把摠 및 鎮標水師 등을 파견하여 월해관의 행정을 감독하는 방식을 시도하였지만, 세관 업무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관세 행정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다.<sup>104)</sup>

결국 옹정 7년(1729) 옹정제는 월해관감독을 재파견하여 감독전관제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였고, 祖秉圭가 월해관감독으로 파견되었다.<sup>105)</sup> 월해관감독직에 부임한 祖秉圭는 광동순무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大關의 징세 업무와 관세 행정을 총괄하는 한편, 기존에 總口의 업무를 담당하던 知府를 대체하여 직접 委員을 선발하여 파견하면서 월해관의 행정 조직을 복구하였다.<sup>106)</sup>

옹정 7년(1729) 월해관감독 직의 부활을 계기로 월해관은 지방 행정 체계에서 재독립하며 독자적인 징세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부터 월해관감독과 독무가 맡는 행정 업무에 분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독무는 월해관감독에 협조하면서도 관세 행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sup>107)</sup> 이것은 常關의 운영 방식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월해관의 관세 행정은 점차 월해관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확립되었다.

감독전관제에서는 월해관 행정의 효율성과 세수 회계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소속 해관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祖秉圭도 비위 행위에 연루되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옹정 10년(1732) 祖秉圭의 후임으로 廣東城守副將 毛克明이 월해관감독 직을 兼管하

---

104) 孔毓珣, 『爲奏明委管關稅事』, 옹정 6년 7월 18일, 故宮 402019030, “臣飭附近各口將備千把, 不時密行查察, 而廣州府首郡事繁, 知府張鎬經管粵海大關, 查察難週, 不無透漏. 臣隨帶臣標水師參將黃錫申, 謹慎誠實, 令其協查同收. 臣因稅務重大, 一時權宜, 故令就近武職協同辦理”.

105) 祖秉圭, 『爲恭謝天恩事』, 옹정 7년 5월 21일, 故宮 402004343-32.

106) 祖秉圭, 『爲奏明事』, 옹정 7년 5월 21일, 故宮 402004343-31, “竊臣荷蒙聖恩, 管理粵海關稅, 跪聆訓旨後, 隨即自京起身, 于本年四月十二日到廣東海關任事, 伏查海關駐劄廣州省城沿海稅口大小共四十六處, 幸蒙聖恩賞給帶出五人分委大口, 督率家人書役征收口稅”.

107) 黃文煒, 『爲奏聞事』, 옹정 10년 6월 21일, 故宮 402002991, “但外彝挾資遠來, 全在樞關監督之員, 仰體聖慈協同地方督撫, 布德蠶奸, 公忠共濟, 庶爲恤商裕課. 而監督祖秉圭, 以關務爲地方官, 不得過問, 任用省城一二有力行商壟斷專利, 胥役人等荷派作奸罔, 恤彝情”.

고, 내무부 원외랑 鄭伍賽를 부감독으로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08)</sup> 이를 기점으로 월해관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장군아문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毛克明이 월해관감독 關防을 받아서 월해관감독 직을 專管하고, 鄭伍賽가 실질적인 관세 행정을 전담하는 형태였다는 측면에서 감독전관계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109)</sup>

장군아문 소속 毛克明을 월해관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각 지역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조치였지만, 그들 역시 해관 업무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옹정 12년(1734) 毛克明은 월해관 행정에 독무를 참여시켜서 지방 행정 조직을 활용하여 월해관의 소속 해관을 감독할 것을 상주했고, 총독겸관제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양광총독 혹은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이 월해관 행정에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협업 구조가 이루어졌다.<sup>110)</sup>

옹정 12년(1734) 이후 몇 번의 변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륭 15년(1750) 總督兼管制로 확립되었는데, 毛克明이 독무가 월해관감독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양자를 상호 견제 혹은 협력의 관계로 설정하면서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독무가 관세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독무와 월해관감독의 업무 영역은 명확하게 분리되었고, 독무는 관세의 징세와 회계 업무를 지휘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가 확립되었다.<sup>111)</sup>

108) 毛克明, 『爲恭謝天恩敬請聖訓事』, 옹정 10년 9월 29일, 故宮 402004126, “准兵部咨開, 奉上諭廣東海關監督事務, 着廣東城守副將毛克明, 就近兼管. 再將員外郎鄭伍賽, 派出爲副監督”.

109) 毛克明, 『爲稅羨分項解部謹據實奏聞事』, 옹정 12년 정월 2일, 故宮 402004078.

110) 毛克明, 『爲陳陳稅歸大吏徵解以重權柄以收實效仰祈睿鑒事』, 옹정 12년 정월 2일, 故宮 402004072, “且粵海關自歸督撫兼管以來, 雷令風行, 商民震懾. 今復設監督, 凡刁惡行店商賈意存蔑視, 動云監督全仗地方官作主, 以致欠餉玩延, 罔遵約束. …(중략)… 不如就近歸於督撫兼管, 則通省文武軍民均受統屬節制, 不敢欺公玩法, 再令京員掌管監督印信, 監收錢糧, 則稅務肅清, 而弊端可杜”.

111) 毛克明, 『爲陳陳稅歸大吏徵解以重權柄以收實效仰祈睿鑒事』, 옹정 12년 정월 2일, 故宮 402004072, “以奴才愚昧之見, 莫如將稅務著督撫兼管, 稽查出入, 以

독무는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월해관 소속 해관을 관리하고, 월해관의 書役과 家人 등이 재지 세력 등과 결탁하여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단속하고, 월해관감독이 담당하는 징세 업무와 회계 업무를 감찰하며 관세의 탈루를 단속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毛克明의 건의가 건륭제의 승인을 받으면서 양광총독 鄂彌達이 월해관을 관리하고, 鄭伍賽를 월해관감독 직에 임명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12)</sup> 옹정 12년(1734) 양광총독 鄂彌達이 毛克明으로부터 직무를 인계받았고, 鄭伍賽는 “廣東海關副監督”으로 임명되었다.<sup>113)</sup> 월해관감독 鄭伍賽는 부감독으로서 징세와 회계 업무를 전담하고, 양광총독 鄂彌達은 지방 행정 장관으로서 월해관 소속 해관과 월해관감독을 관리하는 형태의 분업 구조였다.<sup>114)</sup>

하지만 총독겸관제에서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兩廣總督衙門이 위치한 肇慶府는 粵海關監督署가 위치한 廣州府와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였기 때문에 양광총독이 월해관에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다.<sup>115)</sup> 양광총독 鄂彌達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毛克明이 다시 월해관 행정을 담당하거나 광동순무 楊永斌이 “就近兼管”하도록 해 줄 것을 상주하였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옹정 13년(1735) 광동순무 楊永斌이 鄂彌達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서 월해관 행정을 兼管하는 巡撫兼管制가 시행되었다.<sup>116)</sup>

---

重其權，復令京員專司，監督掌管印信，以分其任。仍遵照舊例，不得聽督撫節制，於以互相察核，協力辦理，則大吏無難兼於顧之諉，併私弊之端，而監督藉威令之行，得展舒之柄，庶徵收不致玩誤，而稅課鉅益，見盈餘矣”。

112) 옹정 12년 7월 14일 상유, 商務檔案(1), p.467, “不若就近歸於督撫兼管，則通省文武軍民均受統屬節制，不敢欺公玩法，再令京員掌管監督印信，監收錢糧，則稅務肅清，而弊端可杜”。

113) 鄂彌達, 『奏爲奏聞事』, 옹정 12년 12월 27일, 故宮 402013232.

114) 광동순무직이 공식인 경우 양광총독이 회계 처리하였다. 가령 건륭 원년분 월해관 세수의 회계 책임자는 광동순무직을 겸관한 양광총독 鄂彌達이었다(鄂彌達·鄭伍賽, 『爲報解海關雜項銀兩事』, 건륭 2년 6월 27일, 第一 MR18, pp.792-795).

115) 鄂彌達, 『爲奏聞請旨事』, 옹정 13년 2월 12일, 故宮 402013231.

116) 楊永斌·鄭伍賽, 『爲報解海關雜項銀兩事』, 건륭 원년 6월 24일, 第一 MR18, pp.713-715, “竊臣於雍正拾三年肆月貳拾壹日，准吏部咨欽奉上諭着臣兼管粵海

하지만 건륭 초 순무검관제를 실시하는 동안 연속해서 월해관의 세수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건륭 3년분, 건륭 4년분, 건륭 5년분 월해관 세수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월해관감독 鄭伍賽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鄭伍賽는 건륭 6년(1741) 양광총독 慶復에 의해 탄핵되었다.<sup>117)</sup> 鄭伍賽의 혁직으로 督糧道 朱叔權이 월해관감독 직을 겸임했지만, 월해관감독의 재과전은 상당히 지연되었다.<sup>118)</sup> 건륭 6년 12월 13일(1742년 1월 19일) 伊拉齊가 월해관감독으로 임명된 이후 건륭 7년 10월 16일(1741년 10월 16일) 월해관에 부임하며 전임자인 朱叔權으로부터 직무를 인계받았다.<sup>119)</sup> 伊拉齊의 재임 기간 “粵海關監督”의 직함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면 월해관감독 직을 즉각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륭 8년 정월 2일(1743년 1월 27일) 복주장군 策楞을 광주장군으로 임명하여 월해관 업무를 겸관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20)</sup> 건륭제가 策楞을 월해관에 파견한 목적은 鄭伍賽의 재임 기간 드러나 월해관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sup>121)</sup> 건륭 8년 4월 6일(1743년 4월 29일) 광동순무 王安國은 閩海關의 예에 따라서 향후 월해관 행정을 광주장군이 전관하도록 할 것을

---

關稅務。欽差。此隨於貳拾伍日准兩廣總督臣鄂彌達，移交關務文券冊籍，臣即於是日接收兼管”。

117) 慶復, 『爲遵旨據實查參事』, 건륭 6년 11월 11일, 第一 MR18, pp.1269-1271. 王安國이 월해관의 稽考冊과 親填冊을 대조한 결과 건륭 3년분 관세 약 12,100량, 4년분 관세 약 8,200량, 5년분 관세 3,700량 차이가 있었고, 鄭伍賽는 “多徵少報”의 죄명으로 혁직되었다(王安國, 『爲遵旨查明據實具奏事』, 건륭 6년 11월 19일, 第一 MR18, pp.1272-1274).

118) 慶復·王安國, 『爲奏聞事』, 건륭 7년 5월 8일, 第一 MR18, pp.1370-1373. 건륭 6년분(건륭 6년 정월 25일~건륭 7년 정월 24일) 월해관 세수의 영여은수목 보고에 따르면 鄭伍賽가 혁직된 후 11월 21일부터 督糧道 朱叔權이 월해관감독 직을 겸임하였다.

119) 伊拉齊, 『爲報任事日期事』, 건륭 7년 10월 29일, 商務檔案(1), pp.624-633.

120) 『清高宗實錄』, 건륭 8년 정월 2일, “命湖廣總督孫嘉淦, 來京候旨. 以廣州將軍 阿爾賽, 爲湖廣總督. 調福州將軍策楞, 爲廣州將軍. 兼管粵海關事務. 以鑲白旗 滿洲都統新柱, 爲福州將軍, 兼管閩海關事務”.

121) 策楞, 『爲欽奉上諭事』, 건륭 8년 閏4월 27일, 第一 MR18, pp.1608-1610.

건의하였지만, 이에 대해 건륭제는 “舊例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硃批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122)</sup>

策楞은 광주장군으로서 월해관감독 직을 겸관하다가 곧 광동순무로 임명되었지만, 후임 월해관감독의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策楞이 이를 계속 전관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는 광동순무가 월해관 행정을 專管하는 순무전관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건륭 8년(1743)과 건륭 9년(1744) 策楞은 월해관의 행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건륭 10년 4월 13일(1745년 5월 14일) 양광총독에 정식으로 임명되었고, 건륭 10년 11월 1일(1745년 11월 1일) 準泰가 광동순무에 부임하면서 월해관 업무를 모두 그에게 인계하였다.<sup>123)</sup>

하지만 순무전관제를 재적용한 기간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연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sup>124)</sup> 이를 계기로 건륭 12년(1747) 건륭제는 “광동순무가 맡고 있는 월해관은 양광총독 策楞이 영원히 兼管하며 대신 광동순무에게 넘기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이후 광동순무는 월해관 행정에서 배제되고, 양광총독이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정착되었다.<sup>125)</sup>

월해관 관리 제도는 다시 총독전관제로 바뀌었지만, 廣州府에 상주할 수 없었던 양광총독이 월해관의 징세 업무와 회계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월해관감독이 부재한 형태의 총독전관제는 월해관의 사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다. 건륭 14년분 월해관 세수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瓊州總口에서 징수한 10, 11, 12월분 관세가 기한 내에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126)</sup> 결국 양광총독 陳大受는 총독

122) 王安國, 『爲關務請歸一官接管以專責成事』, 건륭 8년 4월 6일, 商務檔案(2), pp.653-655.

123)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1년 3월 28일, 第一 MR18, pp.2419-2420.

124) 건륭 11년 전후 월해관의 세수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II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25) 策楞, 『爲恭謝天恩事』, 건륭 12년 6월 28일, 故宮 001025, “廣東巡撫所管之粵海關, 着總督策楞永遠兼管, 不必再交巡撫”.

126) 碩色, 『爲奏報聞稅事』, 건륭 15년 3월 16일, 第一 MR19, pp.367-369, “尙有瓊州一口第四季所收銀兩, 未經報到算入, 除俟該口報齊及各口銀兩解到之日, 聽接任管關之員, 分別正稅盈餘細數, 查明應支經費造具清冊委員解部題報, 并將

전관제를 통한 월해관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sup>127)</sup>

결국 건륭 15년 4월 21일(1750년 5월 26일) 월해관의 관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월해관감독의 재파견이 결정되었다.<sup>128)</sup> 월해관감독 직에 부임한 唐英은 양광총독 陳大受로부터 관세 행정 업무를 인계 받았는데, 건륭제는 陳大受에게 唐英과 함께 월해관을 “協同管理”할 것을 지시하였고,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공동 관리하는 총독겸관제의 형태로 월해관의 관리 제도가 정착하였다.<sup>129)</sup>

옹정 연간에 시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총독겸관제에서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의 업무와 책임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양광총독은 兩廣의 군정과 민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월해관감독을 포함한 소속 인원을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이었다. 그리고 월해관감독은 월해관의 책임자로서 관세의 징수 및 세수를 회계 결산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sup>130)</sup> 총독겸관제는 명목상으로 공동 운영이었지만, 양광총독이 세수의 증감에 대한 책임이 없는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감독전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겸관제는 양광총독이 월해관 소속 總口와 小口를 관리하고,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을 감독하여 비위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점차 양자가 공동운명체로 협조 관계가 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

---

商人親填印簿送部查核外, …(후략)…”.

127) 陳大受, 『爲恭謝天恩事』, 건륭 15년 5월 16일, 第一 MR19, pp.425-428, “其稽查防範之法, 尙有未盡, 周詳之處, 臣現在熟籌立法, 以杜浸漏”.

128) 唐英, 『爲恭謝天恩事』, 건륭 15년 6월 20일, 第一 MR19, pp.446-447, “本年伍月參拾日接准戶部來文內開, 乾隆什伍年肆月貳拾壹日, 內閣奉上諭, 粵海關關務繁重, 唐英年近衰老, 恐精力不能周到. 總督陳大受仍着協同管理, 庶吉士寅保着帶原銜, 前往廣東, 幫助伊父, 辦理關務. 欽差”.

129) 陳大受, 『爲奏明事』, 건륭 15년 9월 11일, 第一 MR19, pp.493-494.

130) 王安國, 『爲遵旨查明據實具奏事』, 건륭 6년 11월 19일, 第一 MR18, pp.1272-1274, “竊照粵海關稅務, 自雍正十三年交與臣衙門兼管, 但一應正雜錢糧收支數目, 具係監督鄭伍賽一手造報. 臣衙門止於題咨事件附列銜名, 是徒存兼管之名, 尙無稽核之責. 歷任撫臣不過分遣家人, 收得火足銀兩而已”.

실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륭제의 눈에는 총독겸관제가 실시된 이후 월해관에서 발생한 몇몇 사안에서 보인 양광총독의 태도가 건을 축소하고 월해관 감독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건륭 47년(1782) 월해관 세수의 고핵 방식이 ‘건륭 41년·42년 비교법’으로 변경되면서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기준으로 세수의 증감을 고핵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륭제는 양광총독이 월해관감독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월해관감독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건륭 57년(1792) 총독겸관제를 폐지하고, 감독전관제의 재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31)</sup>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의 공동 관리제가 해체되며 양광총독은 월해관 행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월해관감독은 기존에 세수의 결산 및 해관 업무에 관한 사안 등을 단독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였다.

곧 감독전관제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경 14년(1809) 總督兼管制로 복귀하였고, 이로써 광동체제 시기 월해관의 관리 제도에 최종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다.<sup>132)</sup> 이상에서 살펴본 월해관의 관리자와 책임자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1) 『清高宗實錄』 卷1416, 건륭 57년 11월 乙巳(10), “向來粵海關派令該督撫兼管, 原爲就近稽察起見. 今思該督撫既管關務, 與監督即成一事. 而派出家人吏役等, 尤不免彼此扶同弊混, 轉不足以互相查察, 嗣後粵海關稅務竟不必令督撫兼管”.

132) 『清仁宗實錄』 卷214, 가경 14년 6월 乙巳(16), “諭內閣. 粵海關稅務, 自乾隆十五年以後, 均係監督徵收, 會同總督題報. 迨五十七年, 欽奉特旨, 改令監督專管, 仍責成該督撫查明按月造冊, 密行咨部, 俟期滿覈對, 原以防弊竇而嚴鈎稽. 乃近來該督撫以事不關已, 漫不留心, 而吳熊光等, 於該關徵收稅務情形, 竟全不過問, 是稽覈之例, 竟係有名無實. 嗣後粵海關稅務, 應仍著該督撫一體稽查, 儻有情弊, 即當隨時參奏, 並著按月造冊密行咨報戶部, 俟一年期滿, 該部將該督撫與該監督所報清冊覈對. 如查有弊端, 即行參劾”.

<도표 1-3> 월해관 관리 제도의 변화

연도	형태	월해관 행정	
		관리자	책임자
강희 24년(1685)	감독전관제	월해관감독	
옹정 원년(1723)	순무전관제	광동순무	
옹정 7년(1729)	감독전관제	월해관감독	
옹정 12년(1734)	총독겸관제	양광총독	월해관감독
옹정 13년(1735)	순무겸관제	광동순무	월해관감독
건륭 8년(1742)	순무전관제	광동순무	
건륭 12년(1747)	총독전관제	양광총독	
건륭 15년(1750)	총독겸관제	양광총독	월해관감독
건륭 57년(1792)	감독전관제	월해관감독	
가경 14년(1809)	총독겸관제	양광총독	월해관감독

옹정제 시기 재정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월해관의 稅則, 회계 연도, 관리 제도, 세수의 결산과 고핵 제도 등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定額主義에 근거한 청조의 權關 운영의 기본 방향성은 할당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결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징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할당된 정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지, 이를 초과하여 최대한 많이 징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와 내지 통과세를 징수하는 常關에서는 적합했겠으나 대외 무역의 징세 기관인 월해관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옹정 연간 월해관의 세수는 이미 정액을 훨씬 넘어서는 盈餘銀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영여은의 증감은 점차 權關의 세수 고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히 큰 폭으로 세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한 월해관 행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청조 중앙은 廣州의 대외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과세와 징세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보고가 실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각관체제로 운영되는 월해관의 관리 제도를 통해서도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호부가 월해관감독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었다. 호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독무를 통해 월해관을 감찰하는 방법뿐이었다. 옹정 연간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독무전관제 혹은 독무겸관제 형태의 관리 제도가 출현한 것은 관리 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양광총독, 광동순무, 광주장군이 어느 정도까지 월해관의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옹정 연간과 건륭 초 시행했던 독무전관제는 관세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장군아문의 인원을 활용하려던 시도도 그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게다가 월해관의 관세 행정이 모두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월해관의 행정 체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행정 부서가 부재하였다는 점, 廣州府를 제외한 지역에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월해관감독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월해관감독조차 관세 행정을 어느 정도까지 장악할 수 있었을지도 미지수이다.

청조 중양은 월해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 특히 건륭제는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인 순무전관제와 순무겸관제를 신뢰하지 않았다.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廣州府에 상주하는 광동순무가 “就近兼管”하여 월해관감독과 함께 대외 무역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은 안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양광총독과 광동순무는 바로 이러한 장점을 근거로 순무겸관제의 실시를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肇慶府에 상주하는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륭제의 입장은 확고하였는데, 아마도 건륭제는 廣州府에 상주하는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이 서로 결탁할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륭제의 우려는 월해관감독 직이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한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관세 행정에서의 광동순무 배제 현상과 그 목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2) 월해관감독 직무의 대리

總督兼管制는 중앙에서 월해관감독을 파견하면서도 독무가 행정에 참여하는 공동 관리 구조에서 상호 간에 업무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던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광총독 혹은 월해관감독이 전임, 해임,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공석이거나, 출장, 상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임시로 대리할 인원이 임명되었다.

월해관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광총독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이 경우 양광총독은 본래의 월해관 관리자의 업무뿐만 아니라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까지 담당하였다. 총독겸관제가 확립된 건륭 15년 이후 양광총독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첫 사례는 楊應琚의 케이스였다. 건륭 20년(1755) 월해관감독 李永標는 건륭제를 알현하기 위해 北京으로 떠나면서 그 직무를 양광총독 楊應琚에게 인계하였다.<sup>133)</sup> 이 기간 楊應琚는 월해관의 관리자 책임뿐만 아니라 관세 행정의 책임자로서 월해관 세수 증감에 대한 고핵 대상자가 되었다.<sup>134)</sup> 따라서 만약 楊應琚가 직무를 대리한 기간 세수가 감소했다면, 고핵 결과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광동순무는 양광총독 직을 대리하여 월해관의 관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여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모두 부재한 경우 광동순무 혹은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서 모두 10차례 확인되는데, 각각

133) 楊應琚, 「爲恭報微臣接管粵海關印務日期仰祈聖鑒事」, 건륭 20년 11월 8일, 故宮 403010701. 건륭 21년 3월 25일 李永標는 월해관감독 직에 복귀하여 양광총독 楊應琚로부터 직무를 인계받았다(李永標, 「爲恭謝天恩事」, 건륭 21년 3월 29일, 故宮 403011594).

134) 李永標,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22년 11월 2일, 第一 MR19, pp.993-995.

광동순무 6차례, 광주장군 4차례였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5)</sup>

<도표 1-4> 월해관감독 직의 대리 현황

대리자	관직	연도	기간
明山	광동순무	건륭 28년 2월 24일 ~ 건륭 28년 3월 17일	24일
李質穎	광동순무	건륭 42년 12월 17일 ~ 건륭 43년 정월 30일	1개월 14일
圖薩布(A)	광동순무	건륭 51년 10월 9일 ~ 건륭 51년 11월 14일	36일
圖薩布(B)		건륭 54년 윤5월 12일 ~ 건륭 54년 6월 11일	1개월
善德	광주장군	건륭 54년 6월 12일 ~ 건륭 54년 6월 21일	10일
郭世勳(A)	광동순무	건륭 55년 5월 19일 ~ 건륭 55년 10월 11일	4개월 14일
郭世勳(B)		건륭 56년 9월 19일 ~ 건륭 56년 11월 14일	2개월 26일
福昌(A)	광주장군	건륭 58년 7월 19일 ~ 건륭 58년 8월 26일	1개월 8일
福昌(B)		가경 원년 7월 15일 ~ 가경 원년 8월 7일	23일
福昌(C)		가경 2년 4월 6일 ~ 가경 2년 6월 21일	2개월 16일

이하에서 광동순무와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경우를 각각

135)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陳國棟이 표로 정리하였다. 다만, 연도와 기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였다. 진국동, p.47를 참조. <도표 1-4>의 작성은 다음의 주 소점을 참조하였다. 명산(方體浴,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29년 11월 15일, 故宮 403019136), 李質穎(圖明阿, 『爲報海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4년 7월 13일, 第一 MR20, pp.559-562), 圖薩布(A: 佛寧, 『爲查收交代銀兩數目恭摺具奏仰祈睿鑒事』, 건륭 51년 11월 17일, 故宮 403049398; 佛寧, 『爲報明起解雜項銀兩事』, 건륭 53년 4월 28일, 故宮 403053900; B: 福康安, 『爲奏明接收粵海關印信并關稅銀兩數目日期仰祈睿鑒事』, 건륭 54년 6월 28일, 故宮 041432); 선 덕(福康安, 『爲奏明接收粵海關印信并關稅銀兩數目日期仰祈睿鑒事』, 건륭 54년 6월 28일, 故宮 041432); 郭世勳(A): 額爾登布,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仰祈睿鑒事』, 건륭 56년 4월 8일, 第一 MR20, pp.1370-1372; 郭世勳, 『爲恭報通年徵收關稅仰祈聖鑒事』, 건륭 56년 10월 29일, 第一 MR20, pp.1452-1454; 郭世勳(B): 盛住, 『爲恭報接收交代關稅銀數仰祈睿鑒事』, 건륭 57년 정월 3일, 第一 MR20, pp.1473-1475; 복창(A): 蘇楞額,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睿鑒事』, 건륭 59년 3월 4일, 第一 MR20, pp.1754-1757; 복창(B): 書魯, 『爲恭報通年徵收關稅仰祈聖鑒事』, 가경 원년 8월 28일, 故宮 404001081; 常福, 『爲關稅一年期滿比較緣由仰祈聖鑒事』, 가경 2년 7월 26일, 故宮 404002951; 복창(C): 常福, 『爲關稅一年期滿比較緣由仰祈聖鑒事』, 가경 2년 7월 26일, 故宮 404002951.

구분하여 분석할 것인데, 우선 광동순무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양광총독이 부재한 유형, 두 번째는 양광총독이 재직 중이면서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없었던 유형, 세 번째는 양광총독이 재직 중이면서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있었음에도 광동순무가 그 직무를 대리한 유형이다.

첫 번째는 양광총독이 부재한 유형으로 明山과 郭世勳(㉠, ㉡) 시기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우선 明山の 사례는 월해관감독 직이 공석인 된 후에 양광총독 직이 공석이 된 경우였다. 건륭 27년 12월 15일(1763년 1월 28일) 월해관감독 尤撥世는 건륭제를 알현하기 위해 상경하였고, 그 직무를 양광총독 蘇昌에게 인계하였다.<sup>136)</sup> 그리고 건륭 28년 2월 24일(1763년 4월 7일) 蘇昌도 건륭제를 알현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광동순무 明山에게 양광총독 직과 월해관감독 직을 모두 인계하였다.<sup>137)</sup> 3월 18일(4월 30일) 직무에 복귀한 尤撥世는 明山으로부터 월해관감독 직을 인계받았고, 蘇昌은 여전히 부재하였으므로 明山은 광동순무로서 양광총독 직을 계속 대리하였다.<sup>138)</sup>

郭世勳(㉠, ㉡)의 사례는 모두 양광총독 직이 공석이 된 후에 월해관감독 직이 공석이 된 경우였다. 郭世勳(㉠) 사례는 건륭 55년(1790) 응우옌후에(阮惠, 후에 阮光平으로 개칭)가 건륭제의 팔순 만수절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sup>139)</sup> 베트남과의 국경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간에 우호적

136) 蘇昌, 「爲接署海關印務恭摺奏聞事」, 건륭 27년 12월 15일, 第一 MR19, pp.1879-1881.

137) 蘇昌, 「爲交印起程北上恭摺奏聞事」, 건륭 28년 2월 24일, 故宮 403014317.

138) 尤拔世, 「爲恭謝天恩事」, 건륭 28년 3월 19일, 故宮 403014500.

139) 건륭 연간의 청과 베트남의 관계는 山本達郎가 편찬한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曲氏の擡頭から清佛戰爭まで』 7장에 수록된 스즈키 쥬세이의 논문 「黎朝の清との關係(1682-1804)」의 6절부터 8절까지를 참조한다(鈴木中正, 「黎朝の清との關係(1682-1804)」,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曲氏の擡頭から清佛戰爭まで』, 山川出版社, 1975, pp.437-483). 실제 입조한 사람은 응우옌후에가 아니라 조카인 판공찌(范公治)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2012, pp.251-254를 참조한다.

인 분위기의 형성에 맞추어 건륭제는 양광총독 福康安에게 응우옌후에와 대동하여 상경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직무를 광동순무 郭世勳에게 인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5월 10일(6월 22일)부터 郭世勳이 福康安을 대신하여 양광총독 직을 대리하였다.<sup>140)</sup> 그런데 5월 19일(7월 1일) 월해관감독 額爾登布도 건륭제의 만수절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광동순무 郭世勳은 양광총독 직을 대리하면서 월해관감독 직까지 대리하게 되었다.<sup>141)</sup> 다만, 福康安은 상경 도중 동남 연해에 海盜가 출몰하면서 상경이 취소되었고, 10월 12일(11월 18일) 광동성으로 복귀하여 郭世勳으로부터 양광총독 직과 월해관감독 직을 모두 인계받았다.<sup>142)</sup>

郭世勳(B) 사례는 건륭제가 양광총독 福康安에게 그의 모친의 칠순 생일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면서 상경하게 되었고, 광동순무 郭世勳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하였다.<sup>143)</sup> 그런데 그 직후 월해관감독 額爾登布가 中風에 걸려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건륭 56년 9월 18일(1791년 9월 18일) 額爾登布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월해관감독 직이 공석이 되었다.<sup>144)</sup> 이에 광동순무 郭世勳은 양광총독이 부재 상황에서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였고, 건륭 56년 12월 15일(1792년 1월 8일) 신임 월해관감독 盛住가 부임한 후에 그 직무를 인계하였다.

두 번째는 양광총독이 부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없는 유형으로 圖薩布(B)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圖薩布(B) 사례는 베트남과의 국경 문제와 그 직후에 응우옌후에의 만수절 참가 문제를 배경으로 하였다. 양광총독 孫士毅가 응우옌후에의 기습에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고, 건륭 54년 정월 26일(1789년 2월 20일) 福康安이 그의 후임으로

140) 郭世勳, 『爲恭報接印兼署日期仰祈聖鑒事』, 건륭 55년 5월 10일, 故宮 044647.

141) 郭世勳, 『爲恭報接印兼署日期恭謝天恩事』, 건륭 55년 5월 20일, 故宮 044703.

142) 福康安, 『爲途次接印任事恭摺具奏仰祈睿鑒事』, 건륭 55년 10월 13일, 故宮 045880.

143) 『清高宗實錄』卷1385, 건륭 56년 8월 己巳(27일)

144) 郭世勳, 『爲奏聞事』, 건륭 56년 9월 20일, 『中國嘉德2007秋季拍賣會』 도록 p.127 재인용.

임명되었다.<sup>145)</sup> 건륭제는 福康安에게 鎮南關에 주둔하여 변경 군무에 전념할 것을 지시하였고, 3월 9일(4월 4일) 광서성 貴縣에서 福康安은 孫士毅로부터 양광총독 직을 인계받았다.<sup>146)</sup>

그런데 閏5월 11일(7월 3일) 월해관감독 佛寧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월해관감독 직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147)</sup> 당시 福康安은 응우옌후에의 항복 문제를 처리하고, 그를 대동하여 건륭제 팔순 만수절 참가 문제를 처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sup>148)</sup> 이에 따라 광동순무 圖薩布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였고, 6월 3일(7월 24일) 杭州織造 額爾登布가 후임 월해관감독으로 임명되면서 그 직무를 인계받았다.<sup>149)</sup>

세 번째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양광총독 직이 공석이 아니었고, 월해관감독 직을 겸관할 수 있었음에도 황제가 직접 광동순무를 지목하여 월해관감독 직을 겸관시킨 유형이었다. 圖薩布(㉠)와 李質穎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圖薩布(㉠)의 사례는 건륭 51년 5월 15일(1786년 6월 10일) 양광총독 富勒渾은 전임지에서의 비위 사건으로 해임되었고, 그 후임으로 광동순무 孫士毅가 양광총독에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sup>150)</sup> 갑작스러운 인사에 따라 孫士毅는 후임 광동순무 圖薩布가 현지에 부임하기 전까지 양광총독으로서 광동순무 직을 대리하였다.<sup>151)</sup>

145) 이 시기 청과 베트남의 전쟁에 관해서는 張明富, 『福康安與乾隆末中安宗藩關係的修復』, 『西南大學學報』 36-4, 2010을 참조.

146) 福康安, 『爲途次接印任事恭摺奏謝天恩事』, 건륭 54년 3월 12일, 故宮 040188.

147) 圖薩布, 『爲海關監督病故恭摺由驛奏聞事』, 건륭 54년 閏5월 13일, 故宮 040807.

148) 額爾登布, 『爲遵旨速赴新任先行奏覆事』, 건륭 54년 6월 27일, 故宮 403057702, “福康安現有安南應辦事件, 不能常駐粵東”.

149) 額爾登布, 『爲恭謝天恩事』, 건륭 54년 6월 15일, 故宮 403057624. 額爾登布가 廣州府로 이동하던 중 월해관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광동순무 圖薩布가 병으로 사임하면서 광주장군 善德이 대리하였다.

150) 『清高宗實錄』 卷1254, 건륭 51년 5월 丁巳日(15).

151) 孫士毅, 『爲恭謝聖恩事』, 건륭 51년 6월 1일, 故宮 403048285.

9월 2일(10월 23일) 월해관감독 穆騰額의 상경이 결정된 이후 그의 후임으로 佛寧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52)</sup> 건륭제는 穆騰額에게 佛寧이 월해관감독 직에 부임한 후에 직무를 인계한 후 상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9월 18일(11월 8일) 穆騰額을 바로 長蘆鹽政에 파견할 것이 결정되면서 穆騰額에게 佛寧의 부임을 기다리지 말고, 상유를 받는 즉시 광동순무 圖薩布에게 직무를 인계하고 부임지로 출발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sup>153)</sup> 그리고 10월 9일(11월 29일) 穆騰額은 지시에 따라 월해관감독 직을 圖薩布에게 인계하고 天津으로 출발하였다.<sup>154)</sup>

광동순무 圖薩布가 양광총독 孫士毅를 대신하여 광동순무로서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게 된 이유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 시기 동남 연해에 海盜가 빈번히 출현하기 시작하기도 하였고, 당시 孫士毅가 兩廣의 군정을 시찰하기 위해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sup>155)</sup> 그렇지만 圖薩布(ᄇ) 시기처럼 양광총독이 긴급한 군사적 임무로 인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양광총독이 월해관감독 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건륭제가 광동순무를 지적하여 직무를 대리시킨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李質穎의 경우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양광총독 楊景素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광동순무 李質穎이 楊景素를 대신하여 양광총독이 담당한 월해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해관감독

152) 穆騰額, 『爲欽奉諭旨恭摺覆奏事』, 건륭 51년 9월 20일, 故宮 403048902. 건륭 51년 9월 2일 월해관감독을 穆騰額에서 佛寧으로 교대할 것이 결정되었다. 穆騰額은 佛寧이 현지에 도달한 후 직무를 인계하고 상경할 예정이었다.

153) 穆騰額, 『爲恭報交印起程日期仰祈聖鑒事』, 건륭 51년 10월 9일, 故宮 403049052

154) 圖薩布, 『爲恭謝聖恩兼管署檄篆事』, 건륭 51년 10월 11일, 故宮 403049075. 11월 12일 佛寧이 월해관에 부임하여 圖薩布로부터 직무를 인계받았다(佛寧, 『爲恭報接印日期仰祈聖鑒事』, 건륭 51년 11월 17일, 故宮 403049398).

155) 이 시기 남양의 海盜 출몰에 관한 연구는 王華鋒, 『乾隆後期(1786-1795)福建海盜問題初探』, 『蘭州學刊』 11, 2007; 劉正剛, 『老鼠與貓: 1780年廣東盜案研究』, 『廣東社會科學』 3, 2007을 참조.

직이 공석이 되자, 월해관의 관세 행정까지 대리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륭 42년 정월 18일(1777년 2월 25일) 양광총독 李侍堯가 운귀총독으로 전임되고, 그의 후임으로 楊景素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는데, 건륭제는 李侍堯에게 상유를 받는 즉시 직무를 광동순무 李質穎에게 인계하고 부임지로 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56)</sup>

그런데 그 직후인 정월 26일(3월 5일) 건륭제는 다시 상유를 내려서 양광총독의 월해관 업무를 광동순무 李質穎이 겸관할 것을 추가 지시하였다. 당시 월해관감독 德魁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고, 상유를 받은 李質穎도 “奴才는 감독 德魁와 협력하여 (粵)海關을 관리”할 것임을 밝힌 것처럼 李質穎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sup>157)</sup> 건륭제의 의도는 잠정적으로 巡撫兼管制를 시행하여 李質穎이 월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12일(4월 19일) 楊景素가 현지에 도착하면서 李質穎으로부터 양광총독 직을 인계받았지만, 월해관의 관리 업무는 상유에 따라 李質穎이 계속 담당하였다.<sup>158)</sup>

양광총독을 대신하여 월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李質穎은 건륭 42년 9월(1777년 10월) 전후로 월해관감독 德魁의 병세가 악화되며 직무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德魁의 후임자를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상주하였고, 德魁의 후임으로 圖明阿의 파견이 결정되었다.<sup>159)</sup> 이 때 건륭제는 圖明阿가 부임하기 전까지 李質穎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여 혼란을 틈타 屬吏와 家人들이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60)</sup> 건륭 42년 12월 16일(1778년 1월 14일) 德魁가 사망하며 李

156) 李質穎, 「爲叩謝天恩事」, 건륭 42년 2월 3일, 故宮 403030702; 李侍堯, 「爲恭報奴才交印起程日期事」, 건륭 42년 2월 3일, 故宮 403030700.

157) 李質穎, 「爲叩謝天恩事」, 건륭 42년 3월 12일, 故宮 403030951, “奴才惟有協同管關監督德魁, 隨時隨事, 悉心經理”.

158) 楊景素, 「爲恭報到任日期事」, 건륭 42년 3월 12일, 故宮 403030950; 李質穎, 「爲奏聞事」, 건륭 42년 3월 12일, 故宮 403030952.

159) 李質穎, 「爲奏聞事」, 건륭 42년 10월 12일, 故宮 403032796.

160) 李質穎, 「爲奏明事」, 건륭 42년 12월 19일, 故宮 403033676.

質穎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며 월해관의 관세 행정까지 담당하게 되었다.<sup>161)</sup>

광동순무 李質穎이 양광총독의 월해관 관리 업무와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을 모두 맡는 상황은 다소 복잡하지만, 건륭 43년분 세수의 회계 과정을 통해 정리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62)</sup>

<도표 1-5> 李質穎의 월해관 행정 대리 업무 내용과 기간

시기	양광총독	월해관 관리자	월해관감독
건륭 42년 2월 26일 ~ 건륭 42년 3월 11일	無	李質穎	德魁
건륭 42년 3월 12일 ~ 건륭 42년 12월 16일	楊景素		李質穎
건륭 42년 12월 17일 ~ 건륭 43년 정월 30일			圖明阿
건륭 43년 2월 1일 ~ 건륭 43년 2월 25일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양광총독이 재직 중에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관리 업무까지 대리한 사례는 李質穎이 유일하였다. 게다가 여기에 월해관감독 德魁가 사망하고 圖明阿가 부임하기 전까지 월해관의 관세 행정까지 대리하며 해당 기간 월해관 세수 증감에 따른 고핵 대상자가 되었다.

광동순무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양광총독의 부재 상황이었지만,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양광총독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건륭제가 圖薩布와 李質穎을 직접 지명하여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모두 양광총독이 모두 旗人이 아니라 漢人이었다는 공통점에서 상관관계를 추정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1) 楊景素, 『奏爲奏聞事』, 건륭 42년 12월 19일, 故宮 403033692. 圖明阿는 건륭 42년 2월 1일 월해관감독 직에 부임하여 李質穎으로부터 직무를 인계받았다(圖明阿, 『爲恭謝天恩事』, 건륭 43년 2월 3일, 故宮 403034105).

162) 圖明阿, 『爲報海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4년 7월 13일, 第一 MR20, pp.559-562.

월해관감독에 임명된 인물들은 모두 奏摺에서 스스로 “內府世僕”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包衣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sup>163)</sup> 또한 이 시기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광동순무들의 경우에도 주첩에서 모두 “滿洲世僕”으로 자칭한다는 점에서 包衣는 아니었지만, 모두 旗人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sup>164)</sup> 반면, 孫士毅와 楊景素는 모두 주첩에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奴才” 대신 “臣”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漢人이었다.<sup>165)</sup>

“滿洲世僕”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諸申(만주어: jušen)”에 가까운 의미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하튼 內務府包衣缺은 旗人缺이었기 때문에 旗人이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sup>166)</sup> 하지만 漢人 관료의 경우 제도적으로 旗人缺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67)</sup>

다음으로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사례를 검토할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양광총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광동순무 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고, 善德이 여기에 해당한다. 善德의 사례는 양광총독 福康安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광동순무 圖薩布가 사망한 상황에서 빚어졌다. 圖薩布는 福康安의 부재 상황에서 월해관감독 佛寧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후임자인 額爾登布가 현지에 부임하기 전까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예정이었다.

163) 李質穎을 포함하여 圖明阿, 穆騰額, 額爾登布 등의 내무부 包衣 출신자는 황제로부터 직함을 받으면서 “內府世僕”임을 밝혔다.

164) 圖薩布, 『爲遵旨護理撫篆恭摺叩謝天恩事』, 건륭 48년 2월 28일, 故宮 403044 171.

165) 청대 “奴才” 사용에 관해서는 祁美琴, 『清代君臣語境下“奴才”稱謂的使用及其意義』, 『清史研究』 4, 2011을 참조.

166) 杜家驥, 『清代滿族的“諸申”問題』, 『清史研究』 5, 2020; 劉厚生, 『從《舊滿洲檔》看滿語“諸申”(jušen)一詞的語義』, 史學集刊 2, 1990; 董萬倫, 『從滿文記載看“諸申”的身份和地』, 滿語研究 1, 1986. ; 祁美琴·崔燦, 『包衣身份再辨』, 『清史研究』 2, 2013; 徐法言, 『內務府漢姓包衣的社會地位及其族屬認定』, 『社會科學研』 3, 2008.

167)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2, p.139.

하지만 곧 圖薩布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sup>168)</sup> 건륭 54년 6월 2일(1789년 7월 23일) 福康安은 圖薩布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후임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이 廣州로 복귀하여 직무를 인계받을 때까지 광주장군 善德에게 월해관감독 직을 “暫行署理”시키겠다는 뜻을 우선 보고하였다.<sup>169)</sup> 그리고 6월 12일(8월 2일) 월해관감독 직은 善德에게 인계되었다.<sup>170)</sup> 福康安은 서둘러 廣州로 복귀하여 광동순무 직을 대리하고, 善德으로부터 월해관감독 직을 인계받았다.<sup>171)</sup> 善德의 재임 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는 점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 유형은 양광총독이 부재하고 광동순무가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광주장군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황제는 광동순무를 대신하여 광주장군을 직접 지목하여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福昌(㉠, ㉡, ㉢)의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福昌 ㉠의 사례는 양광총독 福康安은 구르카의 반란을 진압한 후 모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양광총독 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광동순무 郭世勳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다.<sup>172)</sup> 건륭 58년 5월 27일(1793년 7월 4일) 월해관감독 盛住가 淮安關監督으로 전임되고, 그의 후임으로 蘇楞額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다. 그 이전에 盛住는 건륭제를 알현할 것이 결정되어 월해관감독 직을 광주장군 福昌에게 인계하고 상경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7월 19일(8월 25일) 盛住는 건륭제를 알

168) 圖薩布, 『感患風痰病難速痊仰懇恩准解任調理事』, 건륭 54년 6월 10일, 故宮 041065.

169) 福康安, 『爲廣東巡撫患病旨簡員補放以重地方事』, 건륭 54년 6월 2일, 故宮 040944.

170) 善德, 『爲奏聞暫署粵海關印務日期仰祈聖鑒事』, 건륭 54년 6월 14일, 故宮 403057601.

171) 福康安, 『爲施抵廣州省城接署巡撫監督印篆並陳地方情形恭摺奏聞仰祈聖鑒事』, 奏片, 건륭 54년 6월 22일 추정, 故宮 041196.

172) 『清高宗實錄』 卷1421, 건륭 58년 5월 庚戌(19).

현하기 위해 상경하며 월해관감독 직을 福昌에게 인계한 후에 상경하였고, 8월 27일 蘇楞額이 월해관감독 직에 부임하여 福昌으로부터 그 직무를 인계받았다.<sup>173)</sup>

福昌 ㉔의 사례는 양광총독 覺羅長麟이 건륭 60년 5월 28일(1795년 7월 14일) 민절총독 직을 대리하면서 공식인 상황에서 광동순무 朱珪가 양광총독 직을 대리하는 경우였다.<sup>174)</sup> 가경 원년 5월 13일(1796년 6월 17일) 월해관감독 舒璽가 蘇州織造로 전임되며 그 후임으로 晷魯의 파견이 결정되었고, 건륭제는 晷魯에게 광주장군 福昌에게 직무를 인계하고 즉시 부임지로 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75)</sup>

그런데 6월 1일(1796년 7월 5일) 광동순무 朱珪를 정식으로 양광총독에 임명하고 광동순무로 英善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지만, 福昌에게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시킨다는 지시는 바뀌지 않았다.<sup>176)</sup> 6월 29일(8월 2일) 覺羅吉慶이 양광총독에 새로 임명되었고, 朱珪는 覺羅吉慶이 부임한 후 양광총독 직을 인계한 후 상경할 것이 결정되었다.<sup>177)</sup> 7월 15일(8월 17일) 舒璽는 월해관감독 직을 福昌에게 인계하였고, 晷魯는 8월 8일 福昌에게 직무를 인계받았다.<sup>178)</sup>

福昌 ㉕의 사례는 양광총독 覺羅吉慶은 王囊仙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 중인 상황에서 광동순무 張誠基가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였다.<sup>179)</sup> 가

173) 蘇楞額, 『爲接收交代銀數盤覈清楚恭摺奏明仰祈聖鑒事』, 건륭 58년 9월 10일, 第一 MR20, pp.1685-1687. 盛住는 5월 27일 상유에 따라서 상경 중에 부임지인 회안관으로 이동하였다(盛住, 『爲遵旨進京陛見報明交印起程日期仰祈聖鑒事』, 건륭 58년 7월 19일, 商務檔案(4), pp.2193-2195).

174) 『清高宗實錄』 卷1479, 건륭 60년 5월 戊寅(28) “前因閩省各屬倉庫多有虧缺, 諸事廢弛. 降旨將福康安調任閩浙總督, 並令魁倫暫署巡撫印務. 嗣因福康安赴閩, 尚須時日, 復令長麟馳往署理督篆”.

175) 舒璽, 『爲恭謝天恩事』, 가경 7월 15일, 故宮 404000916.

176) 朱珪, 『爲恭謝天恩事』, 가경 원년 6월 24일, 故宮 404000817.

177) 朱珪, 『爲恭謝天恩事』, 가경 원년 7월 14일, 故宮 404000906.

178) 舒璽, 『爲報明交印起程日期仰祈聖鑒事』, 가경 원년 7월 15일, 故宮 404000915. 8월 8일; 晷魯, 『爲恭報到任接印日期仰祈聖鑒事』, 가경 원년 8월 8일, 故宮 404001003.

경 2년 3월 18일(1797년 4월 14일) 월해관감독 書魯가 兩淮鹽政으로 임명되며 그 후임으로 常福을 파견할 것이 결정되었고, 건륭제는 書魯에게 유지를 받는 즉시 직무를 福昌에게 인계하고 부임지로 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80)</sup> 4월 6일(5월 2일) 書魯는 福昌에게 직무를 인계하고 부임지로 출발하였고, 6월 22일(7월 16일) 常福이 월해관감독에 부임하여 福昌에게 직무를 인계받았다.<sup>181)</sup>

福昌(㉠, ㉡, ㉢) 사례들은 모두 양광총독의 부재 상황에서 광동순무가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할 수 있었음에도 광주장군을 지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은 善德의 사례에서 건륭제가 “善德이 關稅의 情形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임 월해관감독 額爾登布에게 신속하게 부임지로 출발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sup>182)</sup> 善德의 사례는 양광총독과 광동순무가 모두 부재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예외로 하더라도 福昌의 사례들은 광동순무가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광동순무를 대신하여 福昌에게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시킨 이 유도 사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福昌이 旗人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李質穎의 사례처럼 황제의 개인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월해관 행

179) 覺羅吉慶, 『爲欽遵諭旨查明據實覆奏仰祈聖鑒事』, 가경 2년 2월 14일, 故宮 404002012, “臣因黔省南籠苗匪茲查不法, 奏明以閱兵爲名, 前赴廣西連界處所查辦”. 王囊仙의 반란과 관련하여 李尚英, 『嘉慶二年的王囊仙起義』, 『清史研究』 2, 1993을 참조.

180) 書魯, 『爲叩謝天恩事』, 가경 2년 4월 6일, 故宮 404002268.

181) 書魯, 『爲報明交印起程日期仰祈聖鑒事』, 가경 2년 4월 6일, 故宮 404002267; 常福, 『爲恭報接印任事日期仰祈聖鑒事』, 가경 2년 6월 24일, 故宮 404002657.

182) 額爾登布, 『爲遵旨速赴新任先行奏覆事』, 건륭 54년 6월 27일, 故宮 403057702, “再福康安奏, 圖薩布現在患病, 請回旗調理, 關務現交將軍善德代管. 等語. 善德於關稅情形, 未經諳悉, 前已有旨令, 額爾登布速赴新任, 著再傳諭, 該監督接奉此旨, 務於途次加緊進行, 迅赴粵東任事. 此諭令知之. 欽差. 欽遵”.

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선 福昌은 內務府包衣가 아니었고, 그의 대리 기간이 23일, 1개월 8일, 2개월 16일이라는 점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월해관감독 직의 공석에 따른 긴급 조치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황상 건륭 57년(1792) 감독전관제 시행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일시적으로 감독전관제가 부활했던 기간 월해관감독의 부재 상황에서 양광총독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방식은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전관제가 월해관 행정에서 독무를 분리시킨다는 목적이었으므로 월해관감독의 부재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를 단순히 滿·漢의 문제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福昌(㉔), ㉕) 시기 광동순무 朱珪와 張誠基가 모두 한인 관료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福昌 ㉖)시기 광동순무 郭世勳은 팔기한군에 소속된 旗人이었다. 게다가 郭世勳은 건륭 55년(1790)과 건륭 56년(1791) 양광총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광동순무로서 이미 두 차례나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경험도 있었다(郭世勳 ㉗, ㉘). 그런데 건륭 58년(1793)에 와서 갑자기 광동순무 郭世勳을 배제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 滿·漢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는 상황은 월해관 행정에서 광동순무를 배제하고자 했던 황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광동순무가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건륭제는 일관되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건륭 11년 전후 광동순무 準泰의 세수 결손 사안을 배경으로 건륭 12년(1747) 건륭제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상유를 계기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리 제도가 총독겸관제로 확립되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sup>183)</sup>

건륭 52년(1787) 양광총독 孫士毅의 사례에서 건륭제의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건륭 52년 4월 16일(1787년 6월 1일) 양광총독 孫士毅가 林爽文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潮州에 주둔 중인 상황에서 양광총독의 부재를 틈타 해관의 胥役 등이 비위 행위를 일으킨 우려가 있으므로 광동순무가 “就近兼

<sup>183)</sup> 策楞, 『爲恭謝天恩事』, 건륭 12년 6월 28일, 故宮 001025, “乾隆十二年五月十三日奉上諭. 廣東巡撫所管之粵海關, 着總督策楞永遠兼管, 不必再交巡撫”.

管”하여 월해관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상주하였다.<sup>184)</sup> 하지만 이에 대한 건릉제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5월 17일(7월 1일) 상유에서 孫士毅를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다.<sup>185)</sup>

孫士毅의 상주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 孫士毅가 현재 비록 潮州에 주둔하여 省城에서 비교적 멀리 있지만, 대만섬의 逆匪들은 머지않아 평정될 것이며, 총독이 사안을 모두 마무리하면 바로 省城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潮州에 장기간 주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해관의 사무에 관해 家人,胥吏들이 혹여나 폐단을 일으킬 기미가 염려가 된다면, 순무에게 대신 稽察하도록 지시해도 무방하고, 하물며 월해관감독이 그곳에 있어서 일체를 살펴서 단속하여 더욱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 孫士毅는 潮州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어찌 이를 두려워하며 근심하여 업무를 (광동순무에게) 넘기고자 하는가?

이처럼 건릉제는 광동순무가 관리자로서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사안은 일시적으로 광동순무 圖薩布에게 맡기고, 월해관감독 佛寧에게 소속 해관에서 징수하는 관세를 장부로 작성하여 광동순무에게 검사받아서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순무겸관제로의 복귀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sup>186)</sup>

아마도 건릉제는 廣州府에 상주하는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관리 업무까지 담당할 경우 “就近稽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무와 감독이 결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의심은 정황상 상당히 합리

184) 孫士毅, 「爲請旨事」, 건릉 52년 4월 16일, 故宮 403050663.

185) 圖薩布, 「爲遵旨代查關務恭摺奏覆仰祈聖鑒事」, 건릉 52년 6월 13일, 故宮 403051173, “此奏殊可不必. 孫士毅現在雖駐潮州, 距省較遠, 但臺灣逆匪不日蕩平, 該督查辦一切事竣, 即可仍回省城辦事, 並非久駐潮州. 所有關榷事務, 即恐家人胥吏或有滋弊之處, 不妨札囑巡撫代爲稽察, 況尚有本管監督在彼, 一切巡查約束, 尤其專責, 孫士毅儘可安心在潮, 亦何必鯁鯁過計, 竟事推讓爲耶”.

186) 孫士毅, 「爲欽奉諭旨恭摺奏覆事」, 건릉 52년 6월 16일, 故宮 403051195.

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또한 공교롭게도 양광총독을 대리하여 광동순무가 월해관의 행정을 관리했을 때만 월해관 세수의 결산에 연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건륭 11년(1746) 準泰의 시기와 건륭 55년(1790)과 건륭 56년(1791) 郭世勳(㉠, ㉡) 시기가 그러하였다. 그리고 郭世勳(㉠, ㉡) 시기의 세수 결산 사안은 건륭 57년 11월 10일(1792년 12월 23일)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건륭제는 상유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sup>187)</sup>

월해관은 督撫에게 兼管하도록 명하였는데, 본래는 가까이서 稽察하라는 취지였다. 현재 督撫가 關務를 담당하며 (월해관)감독과 하나가 되니, 파견한 家人과 胥役 등은 서로 협작하여 폐단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상호간에 查察할 수 없었다. 이후에 월해관의 稅務는 督撫가 겸관하지 말라.

이 상유를 계기로 총독겸관제는 감독전관제로 일시적이었지만 재전환되었고, 월해관감독 직이 공석이 된 경우 그 직무의 대리는 기존에 양광총독, 광동순무 순으로 겸임하던 방식에서 황제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외 없이 양광총독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였다.<sup>188)</sup>

양광총독을 월해관의 관리자로 설정한 총독겸관제는 객관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을 결탁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청조는 독무를 통해 월해관감독이 관할하는 관세 행정을 감찰하고자 하였지만, 독무와 월해관감독이 공동운명체가 되면서 본래의 취지인

187) 『清高宗實錄』 권1416, 건륭 57년 11월 乙巳(10일), “向來粵海關派令該督撫兼管, 原爲就近稽察起見. 今思該督撫既管關務, 與監督即成一事, 而派出家人吏役等, 尤不免彼此扶同弊混, 轉不足以互相查察. 嗣後粵海關稅務竟不必令督撫兼管”.

188) 常顯, 『爲恭報交印起程日期仰祈聖鑒事』, 가경 14년 4월 12일, 故宮 404013869. 가령 가경 14년 2월 26일 가경제는 월해관감독 常顯의 알현을 허락하면서 신임 양광총독 百齡이 부임 후에 직무를 인계하고 상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稽查와 監察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청조 중앙에서 월해관 행정을 직접 감찰할 수 없는 구조에서 월해관의 세수 결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높아졌으며 이는 월해관의 세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졌다.

청조 중앙의 의심 어린 시선과 월해관의 징세 구조의 한계는 월해관 행정에 대한 엄정화를 낳았다. 호부는 대외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특례를 취소 혹은 축소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기존에 호부의 權關 운영 원리 안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 청부업자들이 누렸던 기존에 이권을 축소하였고, 증가한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그들에게 전가하며 광동체제下 징세 청부업자의 도산을 야기하였다.

### 3. 세수의 결산제도

#### 1) 회계처리의 두 단계 절차

월해관 세수의 회계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청대 재정 운영의 기본 개념인 “酌撥”과 “奏銷”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189)</sup> 청대 재정 운영은 定額主義에 기초하여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이 거의 고정되어 있었고, 금액에 급격한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부는 다음 회계 연도의 중앙과 지방의 收支를 예측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가령 田賦의 경우 府·州·縣에서는 上·下忙 두 시기로 구분하여 징수하였고, 이를 布政司의 司庫로 전달(徵解)하면, 호부는 각 세금의 支出을 처리를 결정하였다(酌撥).

189) 청대 재정 구조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한 김형종의 연구가 있다. 이하 청대 재정에 관한 서술은 모두 이를 따른다. 김형종, 『清代國家權力の 性格: 財政史的 觀點에서의 理解』, 『東亞文化』 45, 2007, pp.1-40. 그 외에 酌撥制度에 관한 내용은 岩井茂樹, 『中國近世財政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의 제2장을 참조한다. 奏銷制度에 관한 내용은 佐伯富, 『清代における奏銷制度』, 『東洋史研究』 22, 1963, pp.271-301의 연구를 참조한다.

호부는 징수한 세금을 중앙 운송분(運解)과 지방 체류분(存留)으로 구분하여 매년 春·秋 2회에 걸쳐서 집행하였다(春秋撥). 각 지역의 포정사는 다음 회계 연도의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호부에 보고하였고(冬估), 호부는 冬估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출할 금액을 제외한 후 收支가 부족한 다른 성으로 운송하는 “協餉”을 하거나 아니면 “存留”와 “協餉”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부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를 “解餉(解款, 京餉)”이라고 하였다.

酌撥制度가 현대의 예산 제도에 가까운 개념이었다면, 奏銷制度는 결산 제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榷稅와 같이 통과세적 성격의 세금은 매년 증감이 있어서 호부에서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물론 榷關은 1년 동안 징수해야 할 할당액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榷關의 회계 연도는 호부의 회계 연도와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웠다. 정액은 초과한 盈餘銀은 ‘결산’하는 방식을 통해 北京으로 起解하였고, 옹정 연간 영여은의 규모가 정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면서 榷關의 奏銷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榷關의 책임자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징수한 세수와 稅冊을 대조하고, 이상이 없으면 題本과 奏本의 형식으로 세수와 함께 北京으로 운송하여 결산하였다.<sup>190)</sup> 제본과 주본은 내용 면에서 해당 기간 징수한 세수의 항목과 금액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건륭 5년(1740)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한 경우 주본에만 그 원인을 기재하여 황제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규정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sup>191)</sup>

한편, 건륭 13년(1748) 주본의 작성이 취소되고 제본으로 대체되면서 奏摺

190) 題本은 명·청대 행정 문서의 한 종류였다. 兵·刑·錢糧 및 지방 행정 등 모든 사항은 題本으로 보고하였다. 관원이 직인을 찍어 제본을 갖추어 올리면(具題) 通政司에서 내각으로 보내어 황제에게 전달하였다. 개인적인 형식의 보고는 奏本을 사용하였고, 여기에는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黃六鴻, 『福惠全書』, 강희 33년본, 김형중 譯, 『북해전서』 전 3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이하 인용과 페이지는 모두 김형중의 번역본을 따른다).

191) 『清會典事例』 卷237 戶部86 關稅, p.791, “奏准各關任滿, 但將一年征收額, 繕本具題, 其或較上年多寡, 並因何短少緣由, 不必敘入本內, 令該監督等另折具奏

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sup>192)</sup> 주접은 제본과 주본과는 달리 通政司를 거치지 않고, 軍機處를 통해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었는데, 樞關의 회계 결산(奏銷)도 주접으로 황제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접으로 처리하는 주소를 “奏銷摺”으로 칭하여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한 주접과 구별할 것인데, 주소접은 樞關의 회계 결산 문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자 한다.

樞關의 책임자는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주소접과 호부에서 정한 양식(四柱淸冊)에 따라 세목과 금액을 정리한 奏銷冊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樞關의 징세 장부인 稅冊을 갖추어서 모두 北京으로 起解하였다.<sup>193)</sup> 월해관의 경우 매년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회계의 결산 보고는 徵收總數 보고, 盈餘銀數目 보고, 造辦處備貢銀 보고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주소제도가 최종 형태에 이른 도광 연간 戊戌年分 세수의 회계 결산 과정을 사례로 하여 월해관의 결산 절차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94)</sup>

호부의 규정에 따르면 樞關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접과 징수한 관세를 北京으로 起解하여 회계를 결산해야 하였다. 하지만 월해관의 경우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와 대외 무역의 독특한 결제 방식으로 인해 월해관감독이 3개월 안에 세수를 결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월해관은 常關과 달리, “徵收總數”와 “盈餘銀數目”의 두 단계를 거쳐서

192) 陳曉東, 『清代“奏折代替奏本”考辨』, 『清史研究』 2, 2016, pp.144-147.

193) 奏銷冊은 기존의 정액을 의미하는 “舊關”, 새로운 증액분을 의미하는 “新收”, 새로 줄어든 감소분을 의미하는 “開除”, 이상을 계산한 후 현재 남아 있는 액수를 의미하는 “實在”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관+신수-개제=실제이다. 주소뿐만 아니라 재정과 전량 관련 회계 장부 및 인수인계 문서 등은 모두 “四柱淸冊”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복해전서』 권1, p.499).

194) 도광 戊戌年分의 관기는 도광 15년 5월 26일부터 도광 16년 4월 25일이었다. 월해관의 회계 연도는 역년과 차이가 있었는데, 도광 무술년은 도광 18년으로 실제 관기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건륭 15년 關期의 고정 이후 누적된 윤달의 이월로 인한 것이다. 월해관의 회계 연도 명칭이 무술년일 뿐, 무술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 1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세수를 결산하는 것이 특례로서 인정되었다.

월해관의 회계 결산 첫 단계는 徵收總數 보고였다. 징수총수 보고는 회계를 결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해당 기간 징수한 총액을 우선 보고하고, 正額銀과 盈餘銀이 고핵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도광 戊戌年分 징수총수 보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5)</sup>

월해관은 매년 윤달을 만나면 (회계 연도를) 앞당겼습니다. 戊戌年分 관세는 도광 15년 5월 26일부터 윤달을 만나서 앞당겨 16년 4월 25일로 관기가 만료하였습니다. 관기 1년은 전임 감독 彭年의 임기 11개월 1일과 奴才의 임기에 이어서 징수한 29일, 두 (사람의 임기를) 합쳐 모두 12개월입니다. 大關과 각 口岸은 모두 1,674,851.728兩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正額銀 40,000兩, 銅筋水脚銀 3,564兩을 征足한 것을 제외하고, 아울러 영여은 855,500兩을 징족한 것을 제외하고, 총 775,787.722兩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후략)…

도광 戊戌年分 징수총수 보고는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에 한 달이 지난 도광 16년 5월 26일(1836년 7월 9일) 실시되었는데, 그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우선 해당 세수의 회계 연도와 소속 항구에서 징수한 관세 총액을 기재하고, 월해관 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재임 기간과 징수액을 구분하여 책임 경계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월해관 세수에서 매년 藩庫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액인 正額銀, 銅筋水脚銀과 초과 징수액에 해당하는 盈餘銀의 총액을 밝히고, 각각 고핵 기준의 충족 여부를 보고하였다. 옹정 연간 영여은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핵의 대상에 영여은이 포함되었는데, 영여은의 고핵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가경 4년(1799) 855,500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징수총수 보고에 기재된 총액은 월해관에서 징수를 마친

195) 文祥,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征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16년 5월 26일, 商務檔案(6), pp.3480-3483.

것이 아니라 소속 항구에서 전달한 稅冊에 근거하여 산출한 해당 회계 연도에 징수해야 할 세수의 총액을 의미하였다. 주소점의 말미에 “입항한 선척과 화물의 粗細를 분별하여 장부(奏銷冊)를 작성하고, 호부에 전달하여 核對하는 것 외에 관세는 1년 기한을 마치고 징수한 總數를 마땅히 삼가 주접으로 갖추어 보고드리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라고 밝힌 부분에서 이는 세수 운송과 회계 결산이 아닌, 세수 총액을 밝히는 중간 보고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96)</sup>

월해관의 회계 결산 절차의 특징은 다른 常關과 비교하면 명확하다. 가령 淮安關의 회계 결산 문서에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회안관의 고핵 기준을 밝히고, 회안관 책임자의 임기 동안 징수한 관세의 총액, 세수 증감의 유무와 사유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주소점의 말미에 “撥解, 支銷의 각 항목을 장부(奏銷冊)으로 작성하고, 호부에 전달하여 查核을 받고, 별도로 題本으로 갖추어 보고하는 것 외에 三關(淮·宿·海)에서 1년 동안 징수한 數目을 마땅히 삼가 주접으로 갖추어 보고드리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라고 밝히며 세수의 운송과 회계 결산 보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97)</sup>

월해관의 회계 결산은 두 번째 단계인 盈餘銀數目 보고로 마무리되었다. 월해관의 회계 결산 기한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건륭 43년(1778) 6개월로 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월해관감독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 기한 내에 소속 항구에서 징수한 관세를 수합하여 영여은수목 보고와 함께 北京으로 운송하여 결산을 마쳐야 하였다. 도광 戊戌年分 영여은수목 보고는 징수총수 보고가 이루어진 후 3개월 후인 8월 26일(10월 6일) 실시되어 문 제없이 마무리되었다.<sup>198)</sup>

196) 文祥,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征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16년 5월 26일, 商務檔案(6), pp.3480-3483, “除將到關船隻, 及貨物粗細, 分別造冊, 送部核對外, 所有關稅一年期滿征收總數, 理合恭摺具奏. 伏乞皇上聖鑒”(밑줄은 인용자).

197) 文連, 『爲關稅一年期滿據實陳明仰祈聖鑒事』, 도광 4년 4월 28일, 第一 MR21, pp.1049-1051, “除將撥解支銷各款, 照例造冊, 送部查核, 另疏具題外, 所有三關一年徵收數目, 理合恭摺具奏, 伏乞皇上聖鑒”(밑줄은 인용자).

198) 文祥, 『爲恭報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16년 8월 26일, 商務

월해관의 세수는 크게 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으로 분류되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각각 회계를 처리하였다. 영여은수목 보고는 호부 재정인 盈餘銀을 결산하기 위한 문서였고, 내무부 재정에 해당하는 造辦處備貢銀은 월해관의 지출 항목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회계 절차를 거쳤다. 거칠게 표현하면 호부 재원인 영여은은 ‘징수 총액에서 지출 항목으로 지정된 모든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나머지 금액’이었다.

영여은수목 보고의 세부 내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그 구성을 정리하면 크게 월해관의 회계 연도를 밝히고, 각 기간 징수한 관세 총액, 正稅項의 징수 총액과 지출 항목·금액, 雜稅項의 징수 총액과 지출 항목·금액, 盈餘銀 총액을 기재하고, 주소접의 말미에 “예에 따라 삼가 보고하고, 항목에 따라 확인 문서(文批)를 갖추어 도광 16년 8월 25일부터 委員을 나누어 戶部, 造辦處, 廣儲司로 운송하여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 외에 삼가 戊戌年分 관세의 收支, 存解의 數目을 주점으로 작성하여 보고드리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라고 밝히며 세수의 운송과 회계 결산 보고임을 밝혔다.<sup>199)</sup>

이처럼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었고, 보고 책임자도 달랐다. 월해관의 관리 제도가 總督兼管制로 확립된 이후 징수총수 보고는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연명으로 상주하였다. 양광총독은 월해관 소속 항구의 관리자 관리자로서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였다. 반면, 월해관의 세수 회계를 최종 결산하는 영여은수목 보고는 월해관감독이 단독으로 상주하였는데, 월해관감독은 월해관의 관세 행정 책임자로서 세수의 증감에 대한 책임을 졌다. 건륭 57년(1792) 이후 양광총독의 역할이 월해관감독의 감독관으로서 위치가 조정되면서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는 모두 월해관

---

檔案(6), pp.3484-3490. 영여은수목 보고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199) 文祥, 『爲恭報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16년 8월 26일, 商務檔案(6), pp.3484-3490, “除循例恭疏題報, 并按款備具文批於道光十六年八月二十五日起, 委員分批, 陸續解赴戶部造辦處廣儲司, 分別交納外, 謹將戊戌年分關稅銀兩收支存解數目, 繕摺具奏, 伏乞皇上聖鑒”.

감독이 단독으로 실시하였다.

건륭 연간 징수총수 보고를 실시한 후에 영여은수목 보고를 하기 전에 內務府 造辦處 재정으로 할당한 몫을 회계 결산하는 “造辦處備貢銀” 보고가 있었다(이하 ‘備貢銀 보고’로 약칭). 紫禁城 養心殿 남쪽에 위치한 내무부 조판처는 황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상공해야 하는 貢品の 종류와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sup>200)</sup> 각 지역에서 매년 상공해야 하는 공품은 예술품, 장식품, 문방구, 가구, 약재, 식재료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는데,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진귀한 물건을 조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서양에서 수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황제의 흥미와 수요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륭 19년 윤4월 6일(1754년 5월 27일) 건륭제는 상유를 통해 양광총독 班第에게 “(수입되는) 서양 물건 중에 新異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를 골라서 상공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처럼 상공품에 대한 황제와 내무부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다.<sup>201)</sup> 월해관의 貢品 상공은 원칙적으로 1년에 4차례(端貢, 萬壽貢, 年貢, 燈貢) 실시되었지만, 그 외에도 황제와 내무부 조판처의 지시에 따라서 매입한 물품을 비정기적으로 상공하기도 하였다.

건륭 7년(1742) 상유를 통해 매년 월해관 세수에서 55,000량을 할당하여 貢品の 상공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지출할 것이 결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회계 절차와 방식이 체계화되었다.<sup>202)</sup> 비공은 보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실제 공품을 구입하여 北京으로 운송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承辦貢

200) 월해관 무역과 貢品制度에 관해서는 藤原敬士, 『商人たちの廣州: 一七五〇年代の英清貿易』, 東京大學出版會, 2017, pp.85-108, 第3章 「貢品制度から見た廣州貿易」을 참조한다. 후지와라 케이지는 保商制度和 貢品制度를 밀접한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201) 中國第一歷史檔案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合編,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 人民出版社, 2005, p.644, “閏四月初六日奉旨. 着傳諭總督班第. 將西洋物件內, 有新異者, 尋覓幾樣進來. 不必製辦木器等物. 欽差”. 이하 『造辦處檔案總匯』로 약칭한다.

202) 策楞, 『爲奏明請旨事』, 건륭 9년 9월 15일, 第一 MR18, pp.2056-2057.

品方物 30,000량과 현금으로 조판처에 전달하는 裁存銀 25,000량이었다. 비공은 보고는 承辦貢品方物の 지출 내역과 裁存銀을 보고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처리 지시를 요청하는 성격의 보고였다. 월해관감독은 영여은수목 보고를 통해 월해관의 호부 재정을 결산하기 전에 양광총독과 연명으로 備貢銀의 지출 내역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호부 재정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하여 내무부에 전달하였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치품에 대부분은 황실을 제외하면 거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의 경우 월해관감독이 직접 외국 상인들과 접촉하여 거래를 시도한 장면들이 확인된다. 하지만 광동체제가 성립한 이후 공품 조달의 업무는 서양 문물에 사정이 밝았던 행상에게 전가되었고, 그 비용까지 행상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03)</sup> 건륭 49년(1784) 이러한 폐단이 적발되면서 건륭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월해관의 현물 상공을 폐지하고, 각 아문에서 행상에게 현물의 구매를 대행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sup>204)</sup>

貢品の 조달이 금지되면서 承辦貢品方物の 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내무부에 전달되었는데, 건륭 53년 2월 18일(1788년 3월 25일) 실시된 건륭 52년분 비공은 보고를 마지막으로 실시 여부가 불명확하다.<sup>205)</sup> 하지만 이후에도 월해관의 지출 항목에서 여전히 造辦處 備貢銀 항목으로 55,000량을 지출된 점으로 볼 때 아마도 전액 현금으로 내무부에 전달되면서 이전처럼 수지 명세와 처리 방식에 대한 요청이 불필요해졌고, 이에 별도의 주소점을 통

203) 藤原敬士, 『商人たちの廣州: 一七五〇年代の英清貿易』, 東京大學出版會, 2017, pp.94-101. 외국 상인은 광동체제의 성립이 貢品の 조달을 행상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상인은 행상의 지출과 부담 증가로 인해 對중국 무역에서 자신들의 이윤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다.

204) 富勒渾, 『奏爲欽奉上諭事』, 건륭 51년 정월 18일, 商務檔案(4), pp.1976-1978, “令該監督等, 毋許復行呈進鐘表等物, 正所以杜藉端派買之弊. 現在該商等備進物件, 亦經降旨停止”.

205) 孫士毅·佛寧, 『奏爲請旨事』, 건륭 53년 2월 18일, 故宮 403053324. 건륭 53년 이후 비공은 보고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비공은 전액을 현으로 납부하며 주소점으로 보고하는 대신 군기처와 내무부에 摺文 등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회계 결산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호부에서 관리하는 戶關임에도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다른 常關들과는 달리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의 두 단계 회계 결산 절차를 인정받았다. 광동체제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도광제 시기는 광동체제가 성립한 건륭 초와 비교하여 예외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호부가 징세 청부업자들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는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 2)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구성

이하에서는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구성과 각 항목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영여은수목 보고에 기재된 盈餘銀은 징수 총액에서 지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었지만, 지출 항목 중에는 節省分을 다시 호부에 반납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였다. 호부의 재정은 영여은 외에도 추가되는 금액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의심 없이 이용하던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세수 데이터에 수정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유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영여은수목 보고의 구성과 형식이 五口通商 시기를 포함하여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출현 이후까지 해관의 회계 문서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해관의 영여은수목 보고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관세 행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도광 戊戌年分을 한 사례로 하여 영여은수목의 항목과 구성을 살펴볼 것인데,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6)</sup>

---

206) 文祥, 『爲恭報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16년 8월 26일, 商務檔案(6), pp.3484-3490.

<도표 1-6> 도광 戊戌年分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항목

正稅項		雜稅項	
항목	금액	항목	금액
正羨盈餘銀	854,969.308	雜羨盈餘銀	819,882.420
正項銀	40,000.000	通關經費·養廉工食·銷鎔折耗	47,665.674
銅舫水脚銀	3,564.000	造辦處裁存備貢銀	55,000.000
		內務府廣儲司公用銀	300,000.000
		部飯食銀	41,760.252
		補解水脚銀	53,027.774
正羨銀	811,405.308	雜羨銀	322,428.720

월해관의 세수는 과세한 稅則의 종류에 따라 正稅項과 雜稅項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는데, 정세항은 丈抽制에 따라 입항 선박에 과세한 船鈔와 正稅稅則과 比例稅則에 따라 과세한 商稅의 항목으로 징수한 正稅였다.<sup>207)</sup> 그리고 雜稅項은 정세 외에 부가세적 성격의 規例로 과세한 火耗, 規禮銀, 擔頭銀, 分頭銀, 添平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雜稅였다. 규정상으로 정세항은 정액은을 처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항목이었고, 잡세항은 월해관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한 항목이었다. 하지만 각각은 본래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초과한 盈餘銀이 있었고, 영여은수목 보고는 이를 호부에 회계 결산하기 위해 작성한 奏銷摺이라고 하겠다.

우선 정세항을 살펴보면, 상세와 선초로 징수한 정세의 총액이 正羨盈餘銀이었다. 정선영여은은 시기에 따라서 正稅鈔銀, 稅秒正項銀, 正項銀, 正項盈餘銀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도광 10년(1830) 전후로 정선영여은으로 명칭이 고정되었다. 건륭 연간 세수의 고핵 범위가 영여은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월해관감독의 주요 업무는 호부에서 규정한 正項銀과 銅舫水脚銀을 정확하게 藩庫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sup>208)</sup> 정선영여은에서 정항

207) 穆騰額, 『爲報海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9년 6월 1일, 第一 MR20, pp.928-930, “通恭收銀七十九萬七千八百六十一兩五錢七分一釐內, 商稅船鈔正項銀四十三萬七千七百八十六兩二錢八分內, 支出正額銀四萬兩銅舫水脚銀三千五百六十四兩, 照例移交布政司庫, 取有庫收送部查核在案”(밑줄은 인용자).

208) 옹정제와 건륭제 초기에는 銅舫水脚銀과 함께 正額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鄂

은과 동근수각은을 藩庫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正羨銀이었다. 강희 연간과 옹정 연간에는 정향은과 동근수각은을 납부하고 남은 영여은을 內務府로 起解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건륭 7년(1742) 內務府 備貢銀 55,000량이 설정되면서 정향은은 호부 재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향은은 월해관 개설 당시 91,744.5량으로 규정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서 40,000량으로 액수가 고정되었다.<sup>209)</sup> 동근수각은은 청조에서 동전 주조에 필요한 銅을 조달하기 위해 할당하는 지출 항목이었다. 호부는 월해관의 동근수각은으로 3,750량을 배정하였는데, 이 중 186량은 월해관의 경비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지출액은 3,564량이었다. 강희 45년(1706) 이후 관원의 파견이 정지되었지만, 동근수각은의 지출 항목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고정 지출 항목에 포함되었다.<sup>210)</sup>

다음으로 잡세항을 살펴보면, 規例로 징수한 잡세의 총액이 雜羨盈餘銀이었다. 잡선영여은에서 내무부 재정과 월해관의 행정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雜羨銀이었다. 월해관의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지출 항목 외에 상당한 영여은이 발생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여은수목 보고는 월해관의 세수를 결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호부에 전달하여 결산하는 호부 재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내무부 재정은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지출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 모두 호부 재원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되어 내무부에 납부되고 있었다.

---

彌達, 『奏爲奏聞事』, 옹정 12년 12월 17일, 故宮 402013232).

209) 『粵海關志』 卷14, 『奏課一』, p.281, “其課有正額有盈餘. 粵海正額舊九萬一千七百四十四兩五錢, 康熙二十七年題減八千三百八十二兩四錢八分, 三十八年題減四萬三千三百三十二兩”. 『粵海關志』에 따르면 최초의 정액은 항목은 91,744.5량으로 규정되었다. 강희 27년(1688) 8,382.48량이 감액되어 83,362.02량으로 조정된 후 강희 38년(1699) 43,332량이 다시 감액되었다. 다만, 조정된 정액은 40,030.02량이어야 하지만, 이후 주소첩에서는 매년 정액은 40,000량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粵海關志』의 오류거나 혹은 차후 30.02량을 재차 감면하는 조치가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210) 祁美琴, 『清代權關制度研究』, 內蒙古大學出版社, 2004, p.246.

잡선영여은에서 지출 항목으로 처리되는 내무부 재정은 內務府 造辦處 備貢銀과 內務府 廣儲司 公用銀이 있었다. 우선 內務府 造辦處 備貢銀(이하 備貢銀으로 약칭함)은 월해관에서 매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常貢과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상공하는 貢品을 조달하는 비용의 지출 항목이었다. 비공은 55,000량은 承辦貢品方物 30,000량과 裁存銀 25,000량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이미 설명하였다. 다만 규정과 달리, 실제 적용은 상황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존재하였다.

매년 월해관에서 貢品을 상공하는 규모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보통 30,000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륭 28년(1763) 貢品の 상공 비용이 30,000량을 초과하였고, 초과액(不敷銀)을 처리할 지출 항목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sup>211)</sup> 이에 양광총독 李侍堯와 월해관감독 德魁는 承辦貢品方物 30,000량을 초과한 금액을 월해관의 盈餘銀에서 지출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후 承辦貢品方物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호부 재정이 盈餘銀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례가 되었다.<sup>212)</sup>

다음으로 內務府 廣儲司 公用銀(이하 公用銀으로 약칭함)은 廣儲司의 주요 재원으로 이용되던 兩淮鹽課의 납부가 지연되자, 도광 10년(1830) 월해관의 세수에서 이를 보조하기 위해 임시로 300,000량을 지출하면서 출현한 항목이었다.<sup>213)</sup> 다만, 공용은은 월해관의 호부 재정을 임시로 내무부로 補撥한

211) 건륭 28년분 承辦貢品方物 비용으로 약 31,061.3량을 지출하였고, 裁存銀 25,000량만 기해하였다. 이로 인해 약 1,061.3량의 不敷銀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광총독 李侍堯와 월해관감독 方體浴은 雜項銀 항목에서 지출 처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蘇昌·方體浴, 『奏爲請旨事』, 건륭 29년 4월 11일, 第一 MR19, pp.1949-1950, “此項長支可否在於粵海關經徵担雜項下開報核銷. 裁存備貢銀二萬五千兩, 是否仍解阿里袞查收之處. 理合恭摺具奏請旨伏乞皇上睿鑒訓示遵行謹奏”.

212) 李侍堯·德魁, 『奏爲請旨事』, 건륭 33년 2월 21일, 第一 MR19, pp.2214-2216, “係照例在於粵海關經徵雜項下支用, 俟該年稅餉造冊呈報戶部核銷”.

213) 中祥, 『奏爲奉撥內務府辦公銀三十兩全行撥解足數恭摺奏祈聖鑒事』, 도광 11년 정월 10일, 商務檔案(6), pp.3221-3224, “茲據查明開單具奏. 近年兩淮欠繳正項及各項利銀, 共銀一百九十二萬七千一百餘兩, 以致用不敷, 着戶部將粵海關監督, 應解戶部關稅盈餘銀兩, 酌撥銀三十萬兩. 每年即由粵海關監督委員解交廣

것이지, 정식으로 내무부 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공용은 호부 재정으로서 매년 영여은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된 후 廣儲司 銀庫에 납부되었다.

월해관의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의 총액은 通關經費·養廉工食·銷鎔折耗으로 배정하였다. 영여은수목에서는 행정 비용 총액만을 기재하였는데, 通關經費는 월해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월해관의 수리·보수 비용 혹은 紙·筆·墨·印泥 등 소모품 및 출장비, 여비 등 월해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항목에서 지출하였다. 養廉工食은 월해관감독에게 지급하는 양림은 그리고 胥吏, 家人, 巡役 등의 인원에게 지급하는 工食銀 등의 인건비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이었고, 銷鎔折耗은 월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하여 北京으로 운송하기 위해 庫平銀으로 재구조하면서 지출되는 수수료와 순은의 손실분으로 지출되는 항목이었다.<sup>214)</sup>

월해관 운영비용 외에 세수의 운송과 결산을 위해 지출되는 항목으로 部飯食銀과 報解水脚銀이 있었다. 부반식은 北京에서 세수를 회계 처리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養廉, 胥吏의 工食, 稅冊의 제작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항목이었다. 부반식은 “部科飯食銀”의 명칭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호부의 관원은 물론, 都察院 소속 戶科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담당하였다.<sup>215)</sup> 北京에서 지출해야 하는 부반식은 1,254량으로 정액이었다. 옹정 연간 奏銷摺에서 “部科考覈季報幫補庶吉士等銀 1,259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

儲司銀庫, 以濟公用”. 건륭제의 상유는 10년 7월 19일 호부에 내려져서 8월 22일 월해관감독에게 전달되었다.

214)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5.

215)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4. 매년 월해관에서 지출해야 하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內閣費用銀 200량(관기 종료 후 운송하나, 지시에 따라서 운송하는 경우도 있음), 庶吉士幫俸銀 40량, 兩次季報飯食銀 60량(1/4분기와 2/4분기는 專差하고, 3/4분기와 4/4분기는 奏銷批解), 預領冊檔紙張飯食銀 24량(장부책을 제작 비용, 반식은 12량, 장부책 제작 비용 12량), 戶部領劄飯食銀 50량(1/4분기, 2/4분기에 납부), 戶部考覈飯食銀 330량(관기 종료 후 납부), 戶科考覈飯食銀 240량(관기 종료 후 납부), 盈餘解費銀 10량(관기 종료 후 납부), 兩次季報盤費銀 300량(1/4분기와 2/4분기 160량, 3/4분기와 4/4분기 140량)

불 때 부반식은의 지출액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216)</sup>

『粵海關志』의 규정에 따르면 부반식은은 “(호부로) 起解하는 盈餘銀 1,000 량 당 解部部飯食銀 29량”을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월해관의 호부 재정에 2.9%를 결산 과정에서 지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도광 戊戌年分 세수의 경우 부반식은으로 할당한 금액은 41,760.252량이었는데, 이 금액은 『粵海關志』에서 규정한 영여은의 2.9%와 일치하지 않는다.<sup>217)</sup> 다만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오류는 아니었고, 도광 10년(1830) 공용은의 지출 항목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호부는 공용은 30만량을 정식으로 내무부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호부 재정으로 간주되어 호부에서 회계를 결산하는 항목에 포함되었다. 도광 10년(1830) 이후 部飯食銀은 영여은과 공용은을 합친 금액의 2.9%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도광 戊戌年分 부반식은은 41,760.252량은 호부 재정인 영여은과 공용은의 합계인 1,440,008.703량의 2.9%가 할당되었다.

월해관의 세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반식으로 할당된 금액 중 실제 北京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節省分이 발생하였다. 사료에서 부반식은의 절생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부반식은은 호부에 납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반식은은 월해관의 지출 항목으로 설정되어 호부 재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전액 호부에 납부되는 항목이었다.

보해수각은도 마찬가지였다. 보해수각은은 월해관의 세수를 결산하기 위해 세수 꾸러미를 포장하는 작업(入鞞)과 廣州에서 北京까지 세수를 운송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력의 인건비, 경비, 체류비, 복귀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해 할당된 지출 항목이었다. 이 항목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변화는 있었지만, 세수의 운송비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이하 水脚銀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權關의 세수는 역참을 통해 운송되었지만, 權關마다 지급받는 郵符의 차이

216) 祖秉圭, 『奏爲恭報關稅錢糧事』, 옹정 9년 4월 26일, 商務檔案(1), pp.394-397.

217)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4. 도광 무술년분 정잡영여은 1,133,834.028량의 2.9%는 약 32,881.186량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로 인해 운송비에 차이가 있었고,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수각은의 산정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건륭 29년 호부는 榷關에 일률적으로 勘合, 火牌, 兵牌를 모두 지급하여 역급을 통일함으로써 거리를 기준으로 실제 운송비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榷關에서 배정한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를 제외한 節省水脚銀을 호부에 반납 처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粵海關志』의 수각은 규정에 의하면 “(호부로) 운송하는 (正雜) 盈餘銀과 내무부로 운송하는 備貢銀 등 1,000량 당 38.5량”이었다.<sup>218)</sup> 이 규정은 호부로 운송하는 호부 재원과 내무부로 운송하는 내무부 재원의 총액을 기준으로 3.85%를 배정한다는 의미였는데, 도광 戊戌年分 수각은은 53,027.774량이 할당되어 『粵海關志』의 규정과 역시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륭 29년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용을 제외한 節省分의 귀공 조치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해관의 경우 논란 끝에 건륭 33년 수각은의 절생분을 호부에 반납할 것이 확정되었고, 건륭 37년 이후 영여은수목 보고에서는 수각은과 절생수각은의 항목이 분리되어 실제 운송비용은 월해관의 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하였고, 호부에 반납하는 절생수각은의 금액을 기재하기 시작하였다.<sup>219)</sup> 즉, 도광 戊戌年分의 보해수각은 53,027.774량은 호부와 내무부 재원의 합계인 1,550,008.703량에 수각은으로 3.85% 할당한 59,675.335량에서 실제 운송비용을 제외하고, 호부에 반납 처리해야 하는 절생수각은을 의미하였다.<sup>220)</sup>

바로 정선영여은과 갑선영여은에서 각각 규정된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남

218)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4, “起解盈餘銀兩, 解內務府備貢等銀, 每千兩支水脚銀三十八兩五錢”.

219) 건륭 36년까지 수각은은 “補解水脚銀”으로 기록되었다(德魁, 『奏爲補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6년 10월 24일, 第一 MR19, pp.2773-2775). 그리고 건륭 37년부터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수각은 항목은 “節存水脚銀”으로 기록하였다(德魁, 『奏爲補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7년 11월 3일, 第一 MR19, pp.2926-2928). 즉, 건륭 37년 이후 盈餘銀數目 보고의 수각은 항목의 금액은 ‘세수 총액’의 3.85%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부에 반납하는 節省水脚銀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20) 수각은과 운송비, 절생수각은의 산정 문제는 제2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은 정선은과 잡선은의 합이 正雜盈餘銀이었고, 이것이 편의상 영여은이라고 부르는 항목이었다. 도광 戊戌年分 영여은 총액이 1,133,834.028량이었다. 현재까지 아편전쟁 이전 월해관 연구에서 ‘영여은=호부 재정’으로 인식하여 통계 수치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월해관 세수 중 호부 재정은 영여은 외에 공용은, 부반식은, 절생수각은이 있었고, 또한 관세 외 수입인 平餘·罰料·截曠과 洋商備繳辦公銀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광 戊戌年分の 平餘·罰料·截曠은 6,174.675량이었다. 영여은수목 보고에서는 “平餘等銀”으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시기에 따라 명칭에 차이는 있었지만, 관세 외에 월해관이 얻는 수입이었다(이하 “平餘等銀”으로 약칭).<sup>221)</sup> 이 항목은 건륭 9년(1744) 策楞이 歸公을 건의하면서 정식으로 월해관의 세수로 편입되었다.<sup>222)</sup> 평여등은은 월해관의 정세와 잡세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 외 세입 항목이었으므로 월해관감독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호부에 보고하였고, 월해관의 회계를 결산하면서 호부 재정으로 귀속시켜서 北京으로 운송하였다.<sup>223)</sup>

이 항목은 관세 외의 기타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併平”은 “零封併兌平餘”를 의미하였다.<sup>224)</sup> 청대 세금은 납세자가 과세액을 직접 꾸러미로 포장하여 납부하고(自封投櫃), 징수 기관에서는 꾸러미를 해체하여 그 무게와 순도를 검사하였다(彈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결손을 막기 위해서 징세 기관은 금전을 출납하면서 무거운 추를 기준으로 받고, 가벼

221) 건륭 연간에는 “節存養廉平餘罰料截曠等銀”으로 불렸다(圖明阿,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3년 윤6월 2일, 故宮 403035400).

222) 策楞, 『爲敬陳海關事宜仰祈睿鑒事』, 건륭 9년 5월 29일, 第一 MR18, pp.1973-1974, “平餘罰料截曠銀兩, 宜另款收貯充公也”.

223) 蘇昌, 『奏爲粵海關陋規久經歸公留關充用導旨查明奏覆事』, 건륭 28년 정월 25일, 故宮 403014095, “臣請嗣後將平餘罰料截曠等銀, 照閩關之例, 另款收貯倘遇, 必不得已公用, 俱在此內動支, 仍不得托名歸公致有侵冒, 年滿之時將餘剩銀兩另列一條報解, 如此則積弊可除而辦公, 亦不致拮據矣”.

224) 併平은 併頭, 戥頭, 併封, 併頭, 平頭, 秤戥, 併戥, 秤頭, 掛平, 敲平 등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安部健夫, 『耗羨提解の研究 : 『雍正史』の一章としてみた』, 『東洋史研究』, 16-4, 1958, pp.470-471.

운 추를 기준으로 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는데, 併平은 저울추 무게 차이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였다. “罰料”는 “漏稅罰料”를 의미하였다. 밀수 혹은 탈세 등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이였다. “截曠”은 “吏役應給火足截曠銀”을 의미한다. 월해관의胥吏와 差役에게 관공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火足を 지급하는데, 이들이 휴가를 가거나 공석일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節省分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관세 외 수입으로 행상이 매년 출연하는 洋商備繳辦公銀 55,000량이 있었다(이하 辦公銀으로 약칭). 貢品の 조달 업무와 비용 부담을 행상에게 전가하던 월해관의 관행이 적발된 후 건륭 50년(1785) 건륭제는 현물의 상공을 금지하였다. 군기처와 월해관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그 결과 건륭 51년(1786) 양광총독 孫士毅와 월해관감독 穆騰額의 요청이 수락되어 관공은 55,000량의 내무부 재정이 신설되었다.<sup>225)</sup>

辦公銀은 행상이 貢品 상공의 부담을 면제해 준 건륭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된 항목이었고, 備貢銀의 예비 성격의 항목으로 造辦處 재정에 귀속되었다.<sup>226)</sup> 따라서 비공은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회계 절차를 거쳤다. 월해관감독은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군기처에 呈文으로 관공은의 회계를 보고하고, 월해관의 호부 재정을 결산하면서 함께 北京으로 운송하여 조판처에 납부하였다.<sup>227)</sup> 본래 관공은은 영여은수목

225) 孫士毅·穆騰額, 「奏爲據情籲懇俯賜恩准事」, 건륭 51년 6월 2일, 故宮 403048289, “伏思海關衙門向例有支銷辦公銀五萬五千兩, 因上年商等呈進貢品物, 即於此項銀兩內扣除解京, 今既仰邀聖恩停止呈進貢品, 商等一無報效, 微末蟻忱, 萬難自已, 每年情願備銀五萬五千兩, 解貯關庫, 爲預備傳辦品物之用. 爲數有限, 於商力無損毫末, 謹籲懇據情代爲陳奏”.

226) 건륭 52년 5월 12일 월해관감독 佛寧의 처음 辦公銀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 20일 영여은수목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처리되었다. 佛寧, 「爲呈明起解洋商繳貯備貢銀兩事」, 건륭 52년 5월 12일, 商務檔案(4), pp.2012-2015, “俟有積存, 遇便解交造辦處欽此. 爲此札知貴督貴監督, 遵照辦理. 俟將來如無用項積多之時, 一面咨復軍機處備查, 一面竟行遇便搭解, 不必屢亨章牘也. 等因”.

227) 孫士毅, 致軍機處 呈文, 건륭 51년 未詳, 商務檔案(4), p.2011.

보고에서 다루는 항목이 아니었지만, 가경 癸亥年分과 甲子年分 판공은을 월해관 세수에서 선용하여 납부하면서 판공은은 호부의 사책 범위에 포함되었고, 가경 9년 10월 29일(1804년 11월 30일) 실시한 가경 乙丑年分부터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관세 외 세입 항목으로 호부에 보고하기 시작하였다.<sup>228)</sup>

이상에서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다른 權關과는 달리, 두 단계의 회계 결산 절차를 거쳤다. 이것은 호부에서 규정한 權關의 결산 기한 3개월을 준수하기 어려운 월해관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었고, 월해관은 징수총수 보고를 통해 해당 회계 연도에 장부상으로 징수한 관세의 총액을 보고 기한에 맞춰서 우선 보고하고, 영여은수목 보고를 통해 회계 결산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두 번째로 월해관의 세수는 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으로 구분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다. 호부 재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징수 총액에서 지출 항목을 제외한 영여은이었지만, 지출 항목 중에 절생분의 반납의 명목으로 부반식은과 절생수각은과 관세 외 수입인 평여등은이 호부에 납부되었다. 평여등은은 별도의 결산 과정을 거쳤으므로 월해관의 호부 재정은 ‘영여은+부반식은+수각은’이 되겠다.

세 번째로 내무부 재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공은, 판공은, 공용은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기존에 비공은 외에 새로 출현한 판공은의 경우 행사들이 출현한 기금이었으므로 관세 외 수입에 해당하였고, 공용은의 경우 월해관의 행정에서 정식으로 내무부 재정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내무부에 補撥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따라서 월해관에서 징수한 세수 총액 외에 회계를 결산하면서 北京으로 실제 운송되는 “운송 총액”은 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의 총액이었다.<sup>229)</sup>

228) 延豐, 『奏爲奏明乙丑年分關稅分別收支撥解扣還數目並起解飯食等銀仰祈聖鑒查』, 가경 9년 10월 29일, 商務檔案(5), pp.2548-2558.

229) 도광 戊戌年分 세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징수 총액은 1,674,851.728량, 영여은은 1,133,834.028량이었다. 이 중 호부 재정(盈餘銀+部飯食銀+水脚銀)은 1,228,622.054량, 내무부 재정(備貢銀, 辦公銀, 公用銀) 410,000량으로 운송 총

#### 4. 소결

강희 23년(1684) 대외 무역의 재개와 함께 신설된 海關은 모두 각관체제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것은 국내에 유통되는 상품과 이동하는 인원을 관리하고, 내지 통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常關의 운영 방식을 대외 무역항에 확대 적용하고자 했던 청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각관체제로 해관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몇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다. 海關이 설치된 지역은 서양과의 접촉이 허용된 유일한 통로이자, 개방된 공간이었다. 바다를 통해 출입하는 인원과 상품을 통제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각관체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세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관체제에 존재하지 않는 업무를 대신 처리할 청부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반대급부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대외 무역에 직접 참여하였던 무역상이었던 行商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각관체제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여러 분야를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었던 셈이었다.

관세의 과세와 징세 업무가 징세 청부업자인 行상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월해관은 과세와 징세 업무를 능력이 결여된 불안정한 징세 기관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은 마카오에서 廣州로 입항하는 과정 중 黃埔의 세관에서 船鈔와 規禮銀을 직접 과세하여 징수하였지만, 수출·입 상품에 부과하는 商稅의 경우 과세와 징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부서 자체를 두지 않았다.

대외 무역항의 과세 활동은 稅則을 적용하는 행위가 본질이었다. 관세의 징수는 수출·입 상품을 품종별로 정확히 구분하고, 그 품질과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적합한 세칙을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수출·입

---

액은 1,638,622.054량이었다. 平餘等銀은 결산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월해관 세수와 함께 운송되었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던 월해관의 官吏가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무역 활동에 직접 종사했던 행상이 이 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월해관의 징세 구조는 징세 청부업자가 단순한 관세의 징수와 대납뿐만 아니라 과세 업무까지 장악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각관체제는 청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定額主義가 반영된 관리 제도였다. 월해관 개설 초 청조는 월해관감독을 직접 파견하여 매년 규정된 할당액을 처리하는 監督專管制로 대외 무역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교역 규모가 성장하면서 월해관은 각관체제에서 규정한 할당액을 초과한 “盈餘銀”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초과 징수액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옹정 원년(1723) 巡撫專管制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관리 제도가 출현한 이후 건륭 15년(1750) 總督兼管制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각관체제의 틀로는 더 이상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잘 보여준다.

총독겸관제는 월해관의 행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각자의 직무 영역을 책임지는 형태의 관리 제도였다. 양광총독은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 소속 해관의 행정을 지휘하는 관리자 역할이었고, 월해관감독은 관세의 징수와 회계 처리 등을 담당하는 관세 행정에 책임자였다. 양자의 업무 영역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책임의 경계도 명확하였는데,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공동으로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형태의 총독겸관제는 어쩌면 아편전쟁 이후 출현한 신식 해관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총독겸관제는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서 광동순무를 배제하겠다는 건륭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광동순무는 월해관감독이 담당한 징세 업무와 회계 업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고, 원칙적으로 월해관감독의 부재 상황에서 양광총독이 관세 행정을 대리하고, 광동순무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광동순무는 양광총독 직을 대리하여 월해관에 관리 행정에 참여할 수는 있었

지만,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하여 관세 행정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물론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모두 부재했을 때 예외적으로 광동순무 혹은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무를 대리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였다. 광동순무와 광주장군이 월해관감독 직을 대리한 예외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漢人 독무의 배제’와 ‘광동순무의 배제 원칙’이 그것이었다.

한인 독무의 배제 원칙은 황제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내무부 업무를 담당하는 월해관감독 직무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겠고, 광동순무의 배제 원칙은 廣州府에 상주하는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이 서로 결탁함으로써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건륭 57년(1792) 이후 독무가 월해관 행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월해관감독의 감독자로서 역할이 재조정되는 형태로 최종 변화하였다.

월해관감독의 주요 업무는 소속 해관에서 징수한 관세를 회계 처리하여 호부에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월해관의 징세 업무는 행상이 대리하였으므로 세수의 결산은 각관체제에서 규정한 기한을 그대로 준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월해관은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의 두 단계의 절차를 통해 회계를 결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월해관 관세 행정에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징수총수 보고는 1년 동안 과세한 관세의 총액만 우선하여 보고하는 1단계였고, 영여은수목 보고는 징수한 세수의 총액과 함께 廣州에서 실제 운송하는 총액의 산출 과정을 밝히고 이를 起解하여 회계를 결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2단계였다.

영여은수목 보고의 세부 항목의 분석 결과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세수에 대한 기준에 설명 방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해관에서 1년 동안 징수한 관세의 총액에서 지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인 영여은을 호부 재정으로 이해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호부 재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영여은 외에 부반식은, 절생수각은, 평여등은이 있었다. 따라서 월해관의 세수 중 호부 재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는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奏銷摺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은 아편전쟁 이후 출현한 신식 해관의 관세 행정과 연속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 주소첩과 다구통상 시기 월해관 주소첩의 내용과 형식은 이후 특정 시점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sup>230)</sup>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 이후 신식 해관의 통계 자료가 발간되며 수출·입 상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관의 회계 결산에 관한 연구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아편전쟁 전후 해관을 다른 성격의 징세 기관으로 구별해 오던 연구 시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탈피하여 청조의 징세 기관으로서 해관의 회계 절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 제I장에서 분석한 과세·징수 주체와 회계 주체가 분리된 행정 체계와 그 결합(1절), 양광총독과 월해관감독이 공동으로 해관을 관리하는 총독겸관제의 속성(2절),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주소첩의 형식과 구성(3절) 등을 통해 아편전쟁 이후 출현하는 신식 해관에서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큰 저항감 없이 청조에 수용될 수 있었던 친화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30) 侯彦伯, 「1869年粵海關監督奏銷與粵海關稅務司貿易報告表中洋稅收入數據之考核」, 『國家航海』 16, 2016; 任智勇, 「從權稅到夷稅:1843—1854年粵海關體制」, 『歷史研究』 4, 2017.

## 제Ⅱ장 權關體制의 구심력 강화: 월해관 특례의 취소

### 1. 세수의 考核

#### 1) 월해관 회계 연도(關期)의 고정

權關의 책임자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징수한 세수에 대한 고핵 대상자가 되어 매년 할당된 규정액을 심사받아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감소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權關體制에서 세수의 결산은 1년(12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망, 해임, 전임, 출장 등의 이유로 權關 책임자가 교체될 때마다 세수의 결산이 이루어졌다.<sup>231)</sup> 재임 기간 1년 미만에 교체되는 경우 전임자의 임기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 연도를 마치고, 후임자는 직무를 인계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sup>231)</sup> 건륭 15년 關期가 고정되기 전까지 중앙에서 감독을 직접 파견하는 關差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복주장군 準泰는 건륭 원년 정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73일 동안 閩海關을 관리하였고,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후 해당 기간에 징수한 관세를 회계 결산하였다(準泰, 『爲奏銷海關耗雜銀兩事』, 건륭 원년 6월 21일, 第一 MR18, pp.702-704). 鳳陽關監督 蘇赫訥이 杭州織造로 임명되며 자신의 재임 기간(건륭 7년 정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5개월 20일)에 징수한 관세를 회계 결산하였다(蘇赫訥, 『爲恭報鳳陽關稅課事』, 건륭 7년 7월 8일, 第一 MR18, pp.1442-1443). 하지만 독무가 權關의 업무를 전관한 경우 독무의 지방 행정의 인수인계에 세관 업무가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관세를 회계 결산하지 않고, 12개월에 한 번씩 처리하였다. 광동순무가 관할하는 태평관의 경우 건륭 6년분은 양광총독 馬爾泰가 건륭 6년 정월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 신임 광동순무 王安國이 건륭 6년 2월 17일부터 건륭 7년 정월 20일까지 11개월 4일을 담당하였고, 책임자의 교대와 관계 없이 12개월마다 이루어졌다(王安國, 『爲奏聞事』, 건륭 7년 2월 15일, 第一 MR18, pp.1340-1342).

새로운 회계 연도를 시작하였다.

세수의 결산은 權關 책임자의 교체 과정에서 각자의 재임 기간의 관세 행정에 대한 책임의 경계를 확정 짓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였는데, 1년 치 할당액을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로 쪼갠 후 해당 책임자의 재임 일수로 계산하였다. 즉, 權關 책임자가 재임 기간 1년을 채우면 규정대로 세수를 결산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징수한 액수가 산출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되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雍正 연간 재정 개혁을 거치면서 權關의 세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할당액을 초과하는 영여은의 규모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핵 범위는 영여은으로 확대되는 경향으로 이어졌는데, 영여은은 1년 치 할당액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고핵 기준을 설정하기 상당히 까다로웠다. 따라서 호부는 전년도의 영여은을 기준으로 그 증감을 고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權關 책임자가 교체될 때마다 실시되는 세수 결산으로 인해 權關의 회계 연도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유동적이었고,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회계 연도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결국 고핵 기준이 매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고핵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회계 연도를 통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특히 월해관은 매년 입항 선박의 수와 교역 규모에 변화가 컸고, 계절에 따른 교역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한 고핵 방식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컸다.

건륭 11년(1746) 전후 월해관의 세수가 연속해서 결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매년 회계 연도 차이 때문이었는데, 이 무렵 월해관의 세수 결산 현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32)</sup>

232) 策楞, 『爲代奏關稅盈餘事』, 건륭 9년 10월 11일, 第一 MR18, pp.2065-2068;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9년 10월 11일, 第一 MR18, pp.2062-2064;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0년 8월 26일, 第一 MR18, pp.2310-2311;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1년 3월 28일, 第一 MR18, pp.2419-2420; 準泰,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2년 4월 26일, 第一 MR18, pp.2680-2682;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2년 11월 16일, 第一 MR18, pp.2784-2785; 岳

<도표 2-1> 건륭 11년 전후 월해관 세수 보고

주소연도 명칭	보고자	회계 연도	징수액	책임자	비고
3개월 2일분	策楞	건륭 8년 정월 25일~건륭 8년 4월 26일	29,426	伊拉齊	3개월 2일
건륭 8년분	策楞	건륭 8년 4월 27일~건륭 9년 3월 26일	328,776	策楞	1년
건륭 9년분	策楞	건륭 9년 3월 27일~건륭 10년 3월 26일	415,143	策楞	1년
7개월 3일분	策楞	건륭 10년 3월 27일~건륭 10년 10월 29일	249,299	策楞	7개월 3일
건륭 11년분	準泰	건륭 10년 11월 1일~건륭 11년 9월 29일	339,618	準泰	1년
8개월 6일분	策楞	건륭 11년 10월 1일~건륭 12년 6월 6일	216,023	準泰	8개월 6일
건륭 13년분	岳濬	건륭 12월 6월 7일~건륭 13년 6월 6일	435,080	策楞	1년
7개월 19일분	岳濬	건륭 13년 6월 7일~건륭 13년 7월 7일	28,908	策楞	1개월 1일
		건륭 13년 7월 8일~건륭 13년 12월 25일	286,540	岳濬	6개월 18일
건륭 14년분	碩色	건륭 13년 12월 26일~건륭 14년 12월 25일	438,640	碩色	1년

당시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巡撫專管制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월해관 세수의 증감에 따른 관세 행정의 책임자는 광동순무였다. 건륭 10년 11월 1일(1745년 11월 23일) 월해관 책임자가 광동순무 準泰로 교체되면서 전임자인 策楞은 자신의 임기 동안 징수한 ‘7개월 3일분’을 결산하였다.<sup>233)</sup>

회계 연도 차이로 ‘7개월 3일분’은 전년도 ‘건륭 9년분’과 단순 비교할 수 없었고, 이 경우 전년도 세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고핵의 기준으로 삼아

濬, 『爲代奏關稅盈餘事, 건륭 13년 11월 24일, 第一 MR19, pp.118-119; 岳濬, 『爲奏報粵海關稅羨盈餘事』, 건륭 14년 12월 18일, 第一 MR19, pp.344-346; 碩色, 『爲奏報聞稅事』, 건륭 15년 3월 26일, 第一 MR19, pp.367-369.

233) 건륭 15년 이전에는 회계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가 빈번히 출현하여 월해관의 회계 연도의 명칭을 역년에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 연도의 명칭을 임시로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별한다.

증감을 평가하였다. 다만 ‘월평균 평가 방식’은 음력에서 큰 달(30일)과 작은 달(29일)의 차이를 무시하고, 1년을 12개월, 한 달을 30일로 환산했기 때문에 실제 일수와는 차이가 있었다.<sup>234)</sup>

‘7개월 3일분’ 영여은수목 보고에 따르면 “正額銀과 銅舫水脚銀은 예에 따라서 일수로 헤아린 25,775.367량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35)</sup> 월해관의 정액은과 동근수각은의 총액은 43,564량이었으므로 ‘7개월 3일분’은 1년에 59.1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를 월 단위 일수로 환산하면 정확히 7.1개월이었다.

즉, ‘7개월 3일분’의 실제 일수는 209일이었지만, 호부의 월 단위 일수를 환산하면 213일로 평가되었다. 사료에서 “일수로 헤아린다(照例按日料算)”에 의미는 실제 일수가 아닌 월 단위 일수를 의미하였다. 당연히 호부의 월 단위 일수로 관세의 증감을 고핵할 경우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사소한 편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절풍에 따라서 무역량 편차가 컸던 월해관 무역의 특징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컸다는 점이다.<sup>236)</sup>

---

234) 월 단위 일수는 한 달(30일)을 한 단위로 하였다. 따라서 3일은 0.1개월, 6일은 0.2개월, 9일은 0.3개월로 환산하였다. 월 단위 일수의 문제는 ‘6개월 18일분’을 보면 명확한데, ‘6개월 18일분’의 기간은 건륭 13년 7월 8일부터 12월 25일이었고, 재임 기간은 5개월 48일로 실제 일수는 196일이었다. 하지만 호부는 6개월 18일을 월 단위 일수로 198일로 환산하였다. 岳濬, 『爲奏報粵海關稅羨盈餘事』, 건륭 14년 12월 18일, 第一 MR19, pp.344-346, “臣乾隆十三年七月初八日管理粵海關務起, 連閱至十二月二十五日交代止, 計六個月零十八日”.

235)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1년 3월 28일, 第一 MR18, pp.2419-2420, “又自乾隆十年三月二十七日起, 至十月二十九日交代止七個月零內, …(중략)…除每年正額銀四萬兩銅舫水脚銀三千五百六十四兩, 照例按日料算共銀二萬五千七百七十五兩三錢六分七厘”.

236) 증기선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서양 무역선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계절풍을 이용해야 하였는데, 그들은 보통 6월~10월 사이에 입항하였고,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출항해야 하였다(Maria Kar-wing Mok, “Trading with Traders The Wonders of Cantonese Shopkeepers”, Paul A. Van Dyke and Susan E. Schopp Eds., *The Private Side of the Canton Trade, 1700-1840 Beyond the Companies*, Project Muse, 2019, p.64).

당시 월해관 책임자였던 양광총독 策楞은 ‘7개월 3일분’의 세수 증감을 보고하며 평가 기준이 되는 전년도 ‘건륭 9년분’을 7.1개월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운이 좋게도 ‘7개월 3일분’은 무역 시즌이 시작하는 여름과 가을을 거의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策楞은 전년도보다 월해관의 관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sup>237)</sup>

이러한 방식은 평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었고, 다음 해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월해관 책임자 광동순무 準泰는 ‘건륭 11년분’의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세수를 결산하면서 전년도 ‘7개월 3일분’의 회계 연도가 1년 미만이었고, ‘건륭 9년분’은 외국 선박의 입항이 폭증하여 예외적으로 무역이 왕성한 해였다는 점을 근거로 ‘건륭 8년분’과 ‘건륭 7년분’을 기준으로 하여 세수의 증가를 보고하였다.<sup>238)</sup>

하지만 호부는 準泰의 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건륭 11년분’을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sup>239)</sup> 準泰는 ‘건륭 11년분’의 감소 원인에 대해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하여 외국 선박의 입항 저조, 갑작스러운 기후의 한랭화로 인한 빈랑나무(檳榔), 설탕(糖), 사탕수수(蔗)와 같은 수출 상품의 작황의 부진 등에 따라 세수에 감소가 있었다는 사

237)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1년 3월 28일, 第一 MR18, pp.2419-2420, “臣此次管關七個月零, 較乾隆九年通年所收銀四十一萬五千餘兩之數, 按日料算, 尚屬有盈無絀”.

238) 準泰,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2년 4월 26일, 商務檔案(2), p.814, “臣查督臣策楞乾隆十年收稅未及年滿, 其乾隆九年分到有外洋番船十八隻, 乃番船來粵最多之年, 似難比照, 而論惟較之乾隆八年到有番船一十一隻, 徵收銀三十二萬八千七百七十六兩零之數, 計多收銀一萬八百四十二兩零. 較之乾隆七年到有番船一十四隻, 徵收銀三十一萬七千一百六十八兩之數, 計多收銀二萬二千四百五十兩零”.

239) 策楞, 『爲奏明事』, 건륭 13년 7월 15일, 第一 MR19, pp.22-24. ‘건륭 11년분’은 ‘건륭 9년분’과 회계 기간이 동일하므로 75,524.57량 감소한 것은 별도의 환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7개월 3일분’의 경우 호부의 월평균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7.1개월치를 1년치로 환산하면 예상액은 421,352.097량이었다. 호부는 ‘건륭 11년분’이 전년도 ‘7개월 3일분’보다 81,733.406량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호부가 ‘7개월 3일분’을 1년 치로 환산한 추산액은 예상치일 뿐, “실재하지 않는 숫자(虛數)”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월해관은 대외 무역항으로서 매달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월평균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sup>240)</sup>

이처럼 회계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전년도와 정확하게 비교하기도 어려웠고, 다음 회계 연도에 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곤란하였다. 이에 호부는 회계 연도 1년 미만인 ‘7개월 3일분’ 대신에 기간 차이가 없는 ‘건륭 9년분’으로 바꾸어 반론을 이어갔다. 호부는 ‘건륭 11년분’을 ‘건륭 9년분’과 비교해도 월해관에 입항한 선박의 수에 거의 차이가 없고, 상품 작물의 작황도 비슷한 조건에서 약 7만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호부는 건륭제에게 세수 감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재가를 얻으면서 월해관의 세수 감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월해관 책임자인 광동 순무 岳濬은 ‘건륭 11년분’과 ‘7개월 3일분’을 호부의 월평균 평가 방식이 아닌, ‘동 기간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재검토하였다. ‘7개월 3일분’의 회계 연도인 건륭 10년 3월 27일부터 10월 29일과 ‘건륭 11년분’의 같은 기간인 건륭 11년 3월 27일부터 9월 29일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건륭 11년분’은 전년 동기에 비해 16,255.588량이 감소한 것이 밝혀졌다.<sup>241)</sup>

그런데 岳濬의 동 기간 평가 방식의 결과 역시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월해관 측에는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岳濬은 ‘건륭 11년분’의 건륭 11년 3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7개월 3일만 대상으로 하였을 뿐, 건륭 10년 11월 1일부터 건륭 11년 3월 26일까지가 평가에서 제외되어 제

240) 岳濬, 『爲復奏事』, 건륭 13년 8월 29일, 第一 R19, pp.55-56, “粵海關稅本以到關番舶之多寡以爲盈絀, 並無每年如常一定之數. 至內地所產之檳榔糖蔗等貨, 亦有豐歉難齊. 故稅數亦難按年相等. 臣準泰於乾隆十年十一月初一日接管, 粵海關起連閏至十一年九月二十九日一年期滿, 僅到洋船一十三隻, 而潮高雷瓊等處檳榔糖蔗等項, 又因是年天氣遇寒冷損者多, 以故收數少 …(중략)… 此實約計虛數而言, 蓋海洋船隻本難按月而較, 上月豐盈, 下月減少, 時有不同”.

241) 岳濬, 『爲復奏事』 附件, 건륭 13년 8월 29일, 故宮 003343-0-A.

대로 고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두 방식 모두에서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호부는 회계 연도에 논란이 있었던 전년도 ‘7개월 3일분’이 아니라 전전년도인 ‘건륭 9년분’과 비교하여 75,524.57량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sup>242)</sup>

월평균 평가 방식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호부는 이를 고수하며 다음 해에 또다시 월해관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륭 12년 11월 16일(1747년 12월 16일) 월해관 책임자 策楞은 전임자 準泰의 ‘8개월 6일분’ 관세를 결산하였다. 策楞은 호부의 방식대로 월평균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동 기간 평가 방식으로는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호부는 策楞의 동 기간 평가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월평균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16,000량, 전전년도 대비 71,900량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sup>243)</sup> ‘8개월 6일분’은 호부의 월 단위 일수로 환산하면 8.2개월이었으므로 평가 기준이 되는 ‘건륭 11년분’과 ‘7개월 3일분’을 8.2개월치로 환산하였다.<sup>244)</sup>

호부의 환산 방식에 따르면 ‘건륭 11년분’의 경우 234,072.769량으로 환산되어 ‘8개월 6일분’보다 16,048.836량 많았고, ‘7개월 3일분’의 경우 287,923.929량으로 환산되어 ‘8개월 6일분’보다 71,899.995량 많았다.<sup>245)</sup> 이

---

242) 準泰, 『爲天恩高厚微臣感激難名謹望闕叩頭奏陳謝悃事』, 건륭 13년 11월 15일, 故宮 042195, “較之總督策楞任內所收共短少盈餘銀七萬五千五百二十四兩, 部議請以前項短少盈餘銀兩, 應於臣名下, 照數賠補等因. 於乾隆十三年十月二十八日具奏. 本日奉旨. 準泰應賠粵海關缺額銀兩著加恩減半賠補欽此”.

243) 策楞, 『爲遵旨查奏事』, 건륭 13년 7월 8일, 第一 MR19, p.10.

244) 策楞,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2년 11월 16일, 第一 MR18, pp.2784-2785, “除每年正額銀四萬兩銅舫水脚銀三千五百六十四兩, 照例按日料算, 共銀二萬九千七百六十八兩七錢三分三厘”. 8개월 6일분은 고정 지출 항목인 정액은과 동 근수각은의 총액 중 일수에 따라서 29,768.733량 지출하였다. 이는 1년치(12개월, 360일)의 68.33%에 해당하며 월 단위로는 8.2개월, 일 단위로는 246일에 해당하였다.

245) 岳瀆, 『奏爲遵旨事』, 건륭 13년 9월 30일, 第一 MR19, pp.87-89, “經臣部按日扣算十一年徵收盈餘, 又短少銀一萬六千有零”.

것은 ‘8개월 6일분’이 非무역 시즌인 겨울과 봄을 거의 포함하면서 교역량 자체가 적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호부는 월해관의 세수가 계절에 따라 입항한 외국 선박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상품 작물의 영향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월해관의 세수가 연속해서 감소하는 원인을 월해관 측에서 명백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광동순무 岳濬은 재차 월평균 평가 방식이 아닌 동 기간 평가 방식으로 재평가하여 반대로 ‘8개월 6일분’이 36,535.789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sup>246)</sup> 하지만 호부는 월해관 측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월평균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sup>247)</sup>

호부의 월평균 평가 방식은 월 단위 일수가 실제 일수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환산치가 저평가되었다. 호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실제보다 높게 환산할 우려는 없었기 때문에 고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역 시즌과 非무역 시즌에 무역 규모의 변동폭이 극명했던 월해관의 경우 평균치를 이용한 평가 방식은 고핵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호부의 월평균 평가 방식의 문제는 건륭 14년 12월 18일(1750년 1월 25

<도표 2-2> 호부의 세수 환산치

회계 연도 명칭	징수액	월 단위	환산치	차액	비고
8개월 6일분	216,023.934	8.2	216,023.934		
건륭 11년분	339,618.691	12	232,072.769	+16,048.836	閏月
7개월 3일분	249,299.994	7.1	287,923.929	+71,899.995	

<sup>246)</sup> 岳濬, 『爲遵旨查奏事』, 건륭 13년 9월 30일, 故宮 003546-0-A. 岳濬은 ‘8개월 6일’과 전년도 ‘건륭 11년분’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였다. 岳濬의 보고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3> 岳濬의 세수 환산치

회계년 명칭	기간	징수액
건륭 11년분	건륭 10년 11월 1일 ~ 건륭 11년 6월 6일	179,488.145
8개월 6일분	건륭 11년 10월 1일 ~ 건륭 12년 6월 6일	216,023.934

<sup>247)</sup> 準泰, 『爲天恩疊沛感激難名謹竭下忱仰求睿鑒事』, 건륭 14년 정월 6일, 故宮 003865, “今於乾隆十三年十二月十九日復准戶部咨文, 以臣兼管粵海關任內, 尙有乾隆十一年十月初一日起, 至十二年六月初六日止, 八個月零六日所收盈餘, 較十一年之數短少一萬六千四十八兩有零, 若合十一年應賠之數, 通年按日比較, 計短少銀六萬七千六百五十六兩零, 應臣傳受賠補等因”.

일) 월해관 책임자 광동순무 岳濬이 보고한 ‘1개월 1일분’과 ‘6개월 18일분’의 결산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개월 1일분’과 ‘6개월 18일분’은 모두 ‘건륭 13년분’을 기준으로 증감을 평가하였는데, 월평균 평가 방식에 따르면 ‘1개월 1일분’은 전년도보다 약 23% 감소하고, 전전년도보다 약 6% 증가하였다.

하지만 ‘6개월 18일분’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 20% 증가하고, 전전년도보다 약 65%가 증가하였다.<sup>248)</sup> 이처럼 ‘6개월 18일분’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무역 시즌이 7월부터 12월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월 1일분’과 ‘6개월 18일분’이 보인 극명한 대비는 계절에 따른 월해관의 무역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호부는 월평균 평가 방식을 고집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를 인식하며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전년도 기준의 평균치를 이용한 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륭 15년 6월 21일(1750년 7월 24일) 權關 책임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관세의 결산을 1년(12개월)에 한 번만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호부가 權關의 세수가 무역량의 증감, 상품 작물의 풍흉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고, 월해관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다.<sup>249)</sup>

---

248) 正額銀과 銅筋水脚銀은 월 단위 일수에 따라서 약 23,960량 제외하였다. 이는 1년 중 54.99%에 해당하며 12개월로 환산하면 6.6개월이었다. 岳濬, 『爲奏報粵海關稅羨盈餘事』, 건륭 14년 12월 18일, 第一 MR19, pp.344-346, “按日料算除正額及同級水脚銀二萬三千九百六十兩零, 照例飭發藩庫查收”. 이를 호부의 월평균 평가 방식에 적용하면 ‘6개월 18일분’은 전년도 환산치보다 약 47,246량 증가, 전전년도 환산치보다 약 112,667량 증가하였다.

249) 『清高宗實錄』卷367, 건륭 15년 6월 壬辰(21), “戶部奏. 各關管理稅務日期, 凡接任徵收者, 無論兩任三任, 俱扣足一年爲滿. 其管關一年零數月者, 將一年盈餘奏報. 零月歸下屆, 統俟扣足一年奏. 其各任徵收盈餘, 較之成數俱屬無虧, 及此任徵收, 能抵補彼任短少者, 均無庸議. 倘此任短少, 而彼任所餘之數. 不能抵補者, 祇將短少之員議處. 如各任所徵俱少者, 均照例議處. 再各關監督, 如前任所收稅課, 係實力稽徵, 儘收儘報. 飭令接任之員, 出具並無捏飾印結. 已經出結之後, 專責成接任, 不得復將短少緣由推諉前任. 倘接任官. 查出前任徵多報少等弊. 據實參奏. 扶同徇隱者, 一併議處”.

그렇지만 榷關 책임자의 교체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만 관세를 결산할 경우 세수 감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호부는 榷關 책임자의 교체 시 인수인계 과정을 추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이를 계기로 接收交代 보고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榷關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동안 징수한 관세의 내역과 關庫에 현황을 직접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였다. 전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參奏하도록 하여 양자의 책임 소재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교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sup>250)</sup> 회계 연도가 12개월로 고정되면서 호부는 영여은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월해관의 회계 연도는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정 날짜로 통일되었다.

각관체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액 초과분의 특성상, 세수 규모가 커질수록 고핵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여은을 고핵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계 연도를 통일하여 동 기간 기준으로 영여은의 증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였고, 호부는 榷關 책임자의 교대와 관계없이 1년(12개월)마다 한 차례씩 세수를 결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총독겸관제의 실시가 결정된 직후의 결정이었고, 월해관의 행정의 엄정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건륭 연간 계속된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이 결탁하여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건륭제의 의심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었다. 건륭 11년(1746) 전후 순무전관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월해관의 세수 결산 과정에서

250) 『粵海關志』 卷14, 『奏課一』, p.290, “乾隆十五年六月二十一日, 戶部奏言. … (중략)… 抑臣等更有請者, 各關接任征收, 既令扣足一年爲滿, 司權各員值貨物豐盛之時, 以征收盈餘, 足敷本任數目, 此外視爲無關己責, 易啟侵蝕之端. 其值貨物儉少之際, 又或藉後任可以抵補, 並不實力征收, 均未可定. 若不立定稽查之法, 竊恐彼此觀望, 轉多推卸之弊. 請嗣後各關監督, 如前任所收稅課, 實力稽查, 盡收盡報, 飭令接任之員, 詳細確查出具, 並無捏飾, 印結送部. 其已經出結以後, 專行責成, 接任不得復將短少緣由, 推讀前任. 倘接任官員查出前任果有征多報少侵蝕等弊, 即行據實參奏. 如扶同徇隱, 並不實力稽查, 或經臣部查出, 或別經發覺, 即將濫行具結之員, 一並交部議處. 如此酌定成規, 庶前任征收數目, 因後任實力稽查, 不致征多報少, 而後任視爲己責, 亦不得藉端推卸, 於稅課實有裨益”.

연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것은 건륭제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옹정제와 달리, 건륭제는 월해관의 관리 제도로 총독겸관제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옹정제와 건륭제 사이에 달라진 월해관의 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총독겸관제를 통한 월해관감독의 관리 강화와 회계 연도의 통일을 통한 관세 행정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 2) 세수의 고핵 기준

월해관 세수의 고핵 범위가 기존에 정액은에서 영여은으로 확대되면서 호부는 영여은 증감에 따른 고핵 기준을 마련해야 하였다. 건륭 14년(1749) 11월 호부는 정액은의 고핵 방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감소율에 따른 처벌 기준을 채택하고, 전년도의 세수를 고핵 기준으로 평가하는 ‘전년도 비교법’을 상주하였다.<sup>251)</sup>

호부의 건의에 대해 건륭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고핵할 경우 고핵 기준이 매년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權關의 책임자는 더 많은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 商·民으로부터 苛斂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핵 기준을 전년도가 아니라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으로 고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건륭제는 옹정 13년(1735) 전후 상품 작물의 작황과 무역량에 큰 변화가 없었고, 權關의 세수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핵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건륭제는 상유를 통해 權關의 영여은 고핵을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 기준으로 고핵하는 ‘옹정 13년분 비교법’의 실시를 명령하였다.<sup>252)</sup>

251) 『粵海關志』 卷14, 「奏課一」, pp.287-288. 정액은의 감소율 5% 이하는 降一級·留任, 5~10%는 降一級·調用, 10~20%는 降二級調用, 30% 이상은 降三級·調用, 40% 이상은 降四級·調用, 50% 이상은 革職의 처분을 받았다. 영여은은 정액은에 비해 기준이 낮았는데, 10% 이하는 처벌하지 않고, 10~20%는 罰俸一年, 20~30%는 罰俸 2년, 30~40%는 降一級·留任, 40~50%는 降一級·調用, 50% 이상은 降二級·調用하였다.

252) 『清高宗實錄』 卷352, 건륭 14년 11월 庚申(15일), “朕意當以雍正十三年征收盈

하지만 호부는 건륭 초 權關의 영여은 규모가 이미 옹정 13년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고핵할 경우 영여은의 증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건륭 19년(1754) 정월 호부는 영여은이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多徵少報”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 호부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상주하였고, 건륭제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전년도 비교법을 재개하였다.<sup>253)</sup>

건륭 42년(1777) ‘전삼년 비교법’이 실시되기 전까지 옹정 13년분 비교법은 영여은 감소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으로 존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비교법에 따라 영여은의 증감을 비교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안을 종료하고, 큰 폭으로 감소한 경우 징세 과정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만약 영여은 감소의 이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權關의 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호부의 재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揚關과 같이 매년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에 미달하는 權關의 경우 호부는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하였다. 가령 건륭 39년분 양관의 징수 총액은 약 103,749.7량으로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 21만량 기준으로 11만량 적었지만, 호부는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약 1,169.2량 증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sup>254)</sup>

---

餘數目爲定，其時正諸弊肅清，而亦豐約適中之會也。自雍正十三年而上下二三十年之中，歲時之殷歉相若也，賈舶之來往相若也，民風之奢儉相若也，則司權之征收又何至大相懸殊哉。嗣後正額有缺者，仍照定例處分，其各關盈餘成數，視雍正十三年短少者，該部按所定分數議處，永著爲例”。

253) 『粵海關志』 卷14, 「奏課一」, p.291, “臣等公同酌議，嗣後各關征收盈餘銀兩，如較上屆短收無幾者，臣部欽遵諭旨，即行隨奏核結，毋庸再行駁查，致滋案牘。至較上屆短少，數目大相懸殊者，令該監督按照該關該年情形，據實奏報。如有無故短少，任意侵肥，臣部即行查參，將所短銀兩在於管關監督名下照數追賠，其工部所管龍江等關，亦應一體辦理”。

254) 薩載, 「爲比較揚州關由關收稅銀數仰祈聖鑒事」, 건륭 39년 4월 28일, 故宮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을 상회하는 權關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비교법은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대체하여 사실상 고핵 기준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건륭 40년(1775) 전후 澹墅關, 淮安關, 鳳陽關 등 주요 상관의 세수가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년도 비교법의 문제가 드러났다. 건륭 40년분 호서관의 영여은은 전년도 비교법에 따라 36,092.035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55)</sup> 호부의 조사 결과 米·豆의 유통량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 기준으로 약 76,000량 증가하였으므로 호서관의 책임자는 행정 처분과 감소분의 배상 없이 마무리되었다.<sup>256)</sup> 이처럼 전년도 비교법은 매년 고핵 기준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건륭제의 옹정 13년분 비교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봉양관과 회안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비교법이 옹정 13년분 기준을 상회하는 權關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sup>257)</sup> 건륭 40년분 봉양관과 회안관은 전년 대비 감소는 물론,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 기준에도 크게 미달하였다. 두 세관 모두 米·豆의 유통량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은 인정받았지만,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에 미달하였으므로 행정 처분과 함께 감소액을 배상해야 하였다.<sup>258)</sup>

---

403028819.

255) 舒文, 『爲奏明關稅錢糧事』, 건륭 40년 윤10월 10일, 第一 MR20, pp.361-364.

256) 薩載,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1년 정월 26일, 第一 MR20, pp.405-408, “今澹墅關徵收盈餘銀兩較上屆三十九年短銀三萬六千餘兩雖核之, 雍正十三年所收盈餘銀數, 尙多銀七萬六千餘兩, 但該關爲南北水陸衝途 商販往來不絕, 其盈餘短少之故 是否因米豆船隻稀少以致絀收, 應請飭交兩江總督高晉江蘇巡撫薩載遴委明幹大員前赴該關嚴行核勘徹底清查”.

257) 건륭 40년분 회안관 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97,701량 감소하였다(寅著, 『委接徵關稅一年期滿循例奏明比較事』, 건륭 40년 10월 29일, 第一 MR20, pp.352-255). 그리고 건륭 40년분 봉양관 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64,100량 감소하였다(陳文, 『爲關稅一年期滿據實奏聞事』, 건륭 40년 10월 21일, 第一 MR20, pp.341-343).

258) 건륭 40년분 회안관 세수는 옹정 13년분 대비 약 88,000량 감소하였다. 조사 책임자였던 薩載는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적용하여 權關의 책임자였던 伊齡阿

주요 상관에서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연이어 보고되자, 건륭제는 전년도 비교법이 매년 평가 기준액을 상승시킬 뿐, 실질적으로 權關의 징세 과정을 감독하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건륭제는 “관세의 盈餘銀은 正額銀과 똑같이 처리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감소액의 배상을 명령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봉양관과 회안관의 책임자의 행정 처분과 배상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한편, 건륭 41년(1776) 3월 상유를 통하여 전년도 비교법을 폐지하고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재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59)</sup>

건륭제는 옹정 13년분 비교법의 재실시를 결정하였지만, 이미 세수 규모가 이를 훨씬 상회하는 權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호부는 다시 한번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의 병용을 기획하였고, 건륭 41년 6월 18일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적용하고,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건의하였다. 호부는 權關의 세수가 옹정 13년분에 미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일괄 적용하면 교역이 왕성하여 세수가 증가한 경우 “徵多少報”의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260)</sup>

---

와 寅著를 형부로 이관하여 고핵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옹정 13년분 기준으로 감소한 88,000량을 배상할 것을 주청하였다.(薩載,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1년 정월 26일, 第一 MR20, pp.409-414). 그리고 건륭 40년분 봉양관 세수는 옹정 13년분 대비 약 40,900량 감소하였다. 陳文은 세수 감소의 책임을 물어 자신을 형부로 이관하여 처벌할 것을 스스로 주청하였다(陳文, 『爲關稅一年期滿據實奏聞事』, 건륭 40년 10월 21일, 第一 MR20, pp.341-343).

259) 寅著, 『爲恭謝天恩事』, 건륭 41년 4월 27일, 第一 MR20, pp.446-449, “嗣後各關考核, 務照雍正十三年之數比較, 毋得復事更張. 至關稅盈餘, 尚非正額可比, 向俱不令著賠”. 봉양관은 행정 처분과 배상을 면제하였다(陳文, 『爲恭謝天恩事』, 건륭 40년 11월 12일, 第一 MR20, pp.375-377). 그리고 건륭제는 회안관 책임자의 처벌을 면제하고자 하였지만, 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 처분을 면제하고, 배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하였다(寅著, 『爲恭謝天恩事』, 건륭 41년 4월 27일, 第一 MR20, pp.446-449).

건륭제가 호부의 건의를 수용하며 영여은 고핵 방식은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이 병용되었지만, 곧이어 건륭 41년분 揚關의 세수를 처리하면서 이 두 방식을 병용하는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전과는 정반대로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고핵 기준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 것이다. 건륭 41년분은 옹정 13년분 비교법으로 약 32,680량이 감소하였지만, 전년 대비 약 15,690량 증가하였다. 호부는 兩淮鹽運使 朱孝純을 파견하여 징세 과정을 조사한 후 옹정 13년분 비교법에 따라 양관의 책임자였던 강소순무 楊魁와 道員 孫栝을 병부로 넘겨서 처벌하고, 孫栝이 감소분을 배상할 것을 상주하였다.<sup>261)</sup>

揚關의 세수 결손 사건의 발생을 보고 받은 건륭제는 그동안 양관의 징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관은 건륭 14년(1749)과 건륭 17년(1752)을 제외하고 옹정 13년분 징수 총액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관의 세수는 매년 고핵 기준액을 밑돌 것이 명백하므로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적용한다면 건륭제의 의도와 다르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건륭제는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이 각각의 단점이 있었고, 이를 전체 樞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건륭 42년 8월 3일(1777년 9월 4일) 건륭제는 상유를 통하여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을 모두 폐지하고, 건륭 28년분 臨淸關을 고핵했던 방식인 전삼년 비교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62)</sup>

260) 『粵海關志』 卷14, 「奏課一」, p.293, “是年六月十八日, 戶部奏言. …(중략)… 臣等公同酌議, 嗣後奏報盈餘, 其短少各關, 於各該監督奏到時, 臣部悉照雍正十三年之數比較, 核議具奏. 至多收盈餘各關, 倘有較雍正十三年之數雖多, 而與近年現在征收數目大相懸殊者, 臣等於核議奏覆時, 仍聲明請旨遵行, 並請先通行各關監督妥協經理, 盡收盡解, 不得因奉行比較雍正十三年之數, 遂視爲有盈無絀, 胥吏或乘機弊混, 致與近年現征數目有虧”.

261) 高晉,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2년 6월 20일, 故宮 403031803.

262) 『清高宗實錄』 卷1038, 건륭 42년 8월 丙申(3). 건륭 28년분 臨淸關 영여은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건륭제는 건륭 25년분과 건륭 26년분으로 대상 범위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건륭 25년분과 건륭 26년분과 비교하여 약 15,000량 증가한

전삼년 비교법은 해당 연도의 세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 대상 범위를 재작년과 재재작년까지 확대하여 직전 3년 치의 세수와 증감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건륭제는 매년 상품 작품의 작황에 따라서 세수 규모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상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 직전 3년 동안의 영여은과 비교해도 감소한 경우라면 權關의 책임자를 행정 처분하고, 그 감소액을 배상하게 하였다.

세수의 고핵 방식에서 건륭제가 가장 염려한 부분은 고핵 기준을 매년 상승시켜서 商·民들로부터 더 거두려고 한다는 이미지였다. 건륭 14년(1749) 이후 고핵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건륭제는 매우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전삼년 비교법의 시행을 결정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짐이 무거운 기준에 따라 고핵하고자 한다고 의심하고, 짐이 商·民을 입장을 살피고자 하는 본심을 알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라고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sup>263)</sup> 그리고 건륭제는 “본래 좋은 뜻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그 방식에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함(求全之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옹정 13년분 비교법을 완전히 포기하였다.<sup>264)</sup>

權關의 고핵제도는 전삼년 비교법으로 결정되며 가경 4년(1799) 정액제로 변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고핵의 대상 기간을 확대한 전삼년 비교법은 본래의 좋은 의도와 달리, 매년 세수 변동이 심했던 월해관에는 불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삼년 비교법을 월해관에 적용하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삼년 비교법의 시행을 결정한 건륭제의 상유가 월해관에 전달된 시점은 건륭 42년 9월 21(1777년 10월 21일)이었고, 이보다 앞선 6월 2일(7월 6일) 건륭 41년분 영여은수목 보고는 전년도 비교법을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하였다. 월해관감독 德魁는 건륭 41년분이 전년도 대비 약 8,685량 감소

것으로 밝혀져서 처벌을 면하였다.

263) 『清高宗實錄』 卷1038, 건륭 42년 8월 丙申(3일), “且恐無識之徒, 疑且關於關稅, 必欲从其多者相核實, 不知朕體恤商民之本意矣. 若朕有意於幣項增多, 則不三次通免天下錢糧, 其所增益不較此百倍乎”.

264) 『清高宗實錄』 卷1038, 건륭 42년 8월 丙申(3일), “夫朕以雍正十三年爲准者, 本屬美意, 今既有此求全之毀, 嗣後此例不必行”.

하였고, 감소 원인으로 전년도 대비 입학 선박이 8척이 감소된 사항을 보고 하였다.<sup>265)</sup>

호부가 건륭 41년분을 고핵할 시점은 이미 전삼년 비교법의 시행된 이후였으므로 호부는 건륭 41년분을 직전 3년 치 세수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sup>266)</sup> 호부는 월해관감독의 처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 3년 치와 비교하여 입학 선박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호부는 월해관감독의 직무 소홀 혹은 吏胥들의 농간을 부려 “徵多報少”한 것이 의심되므로 이를 조사하는 한편, 세수 감소분을 월해관감독에게 배상하도록 할 것을 주청하였다. 호부는 건륭 38년분과 건륭 41년의 경우 입학 선박의 차이는 2척으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세수가 2만량 감소한 것은 월해관감독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지 입학 선박의 감소를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267)</sup>

양광총독 楊景素는 즉각 糧驛道 吳九齡을 파견하여 징세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삼년 비교법에 따라 월해관감독 德魁에게 감소분을 배상하도록 할 것을 주청하였다.<sup>268)</sup> 건륭제는 德魁의

265) 德魁,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2년 6월 2일, 商務檔案(3), pp.1801-1804. 건륭 41년분 월해관 세수는 옹정 13년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으로 고핵이 이루어졌다. 월해관은 이미 옹정 13년분 징수액 기준을 초과한 세관이었으므로 전년도 비교법이 적용되었다.

266) 건륭 41년분과 직전 3년치 세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李侍堯·德魁, 『爲奏明通年徵收稅數仰祈睿鑒事』, 건륭 38년 8월 15일, 第一 MR20, pp.109-111; 李侍堯·德魁, 『爲奏明通年徵收稅數仰祈睿鑒事』, 건륭 39년 10월 5일, 故宮 403030198; 李侍堯·德魁, 『爲奏明一年期滿徵收稅數仰祈睿鑒事』, 건륭 40년 7월 19일, 第一 MR20, pp.310-311; 李侍堯·德魁, 『爲奏明年滿徵收稅數仰祈睿鑒事』, 건륭 41년 3월 23일, 商務檔案(3), pp.1762-1764).

<도표 2-4> 건륭 41년분 세수의 전삼년 비교법 적용표

	41년분	40년분	39년분	38년분
입학 선박	26	34	31	28
징수액	533,178	541,863	541,553	553,826

267) 건륭 43년 2월 5일 상유, 商務檔案(3), pp.1810-1811.

업무 능력을 볼 때 그가 직무를 소홀히 할 리 없고, 이미 德魁가 죽은 상황에서 감소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을 면제하였다. 다만, 입항 선박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세수가 감소한 것은 家人과 월해관의 屬吏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하였다.<sup>269)</sup>

재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건륭 41년분 세수 감소 사안은 종결되었지만, 곧이어 건륭 44년분이 또다시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건륭 44년분은 작년도와 재작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재재작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圖明阿는 월해관의 세수 감소의 원인을 입항한 외국 선박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이번에도 호부는 입항 선박의 감소가 원인이라는 월해관 측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다.<sup>270)</sup> 호부는 건륭 43년분이 건륭 42년분보다 입항 선박이 6척 감소하고도 오히려 관세가 소폭 증가하였는데, 건륭 44년분은 건륭 43년분보다 5척 감소하고 약 3만량 감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월해관감독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호부의 전삼년 비교법 적용 방식은 건륭제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건륭제가 전년도 비교법을 대신하여 전삼년 비교법을 실시한 이유는 매년 고핵 기준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호부에서 대상 범위를 직전 3년 치로 확대하여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핵 기준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륭 44년분의 경우 건륭 41년분보다 입항 선박이 2척 증가하고, 세수도 23,007량 증가했음에도 세수 결손

268) 楊景素, 『爲遵旨確查具奏事』, 건륭 42년 12월 19일, 故宮 403033693.

269) 李質穎·圖明阿, 『爲查明關稅盈餘短少緣由遵旨據實覆奏事』, 건륭 43년 3월 18일, 故宮 403034435.

270) 圖明阿의 보고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圖明阿, 『爲報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5년 8월 13일, 第一 MR20, pp.734-737).

<도표 2-5> 건륭 44년분 세수의 전삼년 비교법 적용표

	44년분	43년분	42년분	41년분
입항 선박	28	33	39	26
징수액	556,185	588,453	588,407	533,178

으로 평가된 것은 전삼년 비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건륭제는 건륭 45년 12월 21일(1781년 1월 15일) 상유를 통해 “월해관의 관세 징수는 지금까지 외국 선박의 많고 적음(洋船之多少), 상품의 가격(貨物之粗細)으로 盈絀이 결정되었다. 滸墅關 등과 같은 내지의 화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건륭 44년분의 감소는 월해관감독의 보고대로 입항 선박의 감소와 무역량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배상을 면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향후 월해관 세수의 증감은 전삼년 비교법을 적용하지 말고, 입항 선박과 무역량의 증감에 따라 고핵할 것을 명령하였다.<sup>271)</sup>

이어서 건륭제는 월해관의 고핵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건륭 47년(1782) 4월 호부는 월해관의 세수를 건륭 41년과 42년의 무역량을 고핵 기준으로 고정하는 ‘건륭 41·42년 비교법’의 시행을 결정하였다.<sup>272)</sup> 월해관의 회계 연도는 역년과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호부에서 “건륭 41년과 42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시기를 조정하면 월해관 회계 연도로 건륭 42년분과 건륭 43년분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월해관은 건륭 42년분 징수 총액 588,407.508량과 입항 선박 39척, 건륭 43년분 징수 총액 588,453.970량과 입항 선박 33척이 고핵 기준으로 재조정되었다.<sup>273)</sup>

사실상 월해관 세수의 증감이 입항 선박 숫자에 따른 무역량으로 결정된

---

271) 건륭 45년 12월 21일 상유, 故宮 029325-0-A, “粵海關經征課稅, 向來原視洋船之多少, 貨物之粗細, 以定盈絀, 非滸墅等關征收內地貨物者可比. 所有圖明阿短少銀三萬二千二百餘兩, 據稱係船小貨粗, 尚屬有因, 著加恩免其賠補. 嗣後該部查核粵海關征收課稅, 即以該年之船隻貨物核實考察, 毋庸照各關例將上三屆比較. 餘依議”.

272) 舒常, 「爲恭報通年智愚關稅總數仰祈聖鑒事」, 건륭 50년 정월 6일, 第一 MR20, pp.993-995, “又於乾隆四十七年四月內經戶部議准粵海關稅銀以乾隆四十一二年兩年作爲比較, 亦在案. 查四十一年計到洋船三十九隻, 通關各口共收銀五十八萬八千四百七兩九錢零. 四十二年計到洋船三十三隻, 通關各口共收銀五十八萬八千四百五十三兩九錢零”.

273) 圖明阿,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3년 윤6월 2일, 故宮 403035400; 圖明阿, 「爲報海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4년 7월 13일, 第一 MR20, pp.559-562.

다는 월해관 측의 주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호부가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숫자와 무역량을 직접 감독할 방법이 없었고, 오직 월해관감독의 보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서 월해관감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월해관감독도 마찬가지였다. 월해관의 관세 행정이 징세 청부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월해관감독이 관세의 과세와 징수 과정을 완벽히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광동순무 李質穎과 월해관감독 圖明阿는 징세 청부업자들이 주도하는 관세 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274)</sup>

각 소속 해관을 통과하는 화물은 胥役·家人이 함께 검사하고 모든 錢糧은 매년 월별로 마감하여 稅冊을 검토하니, 진실로 폐단이 발생할 리 없습니다. 외국 선박이 해관에 도달하면 행상이 貨物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本官이 胥役·家人을 파견하여 외국 상인, 通事 등과 화물 목록을 함께 저울로 측량하고, 세칙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관세를 걷습니다. 실로 폐단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월해관에 胥役과 家人을 파견하기 때문에 월해관 행정에 대한 장악도를 자신한 그들의 설명과는 달리, 월해관에 입항한 선박은 바로 保商의 창고로 이동하여 화물을 하역하였다. 외국 상인이 작성한 화물 목록에 근거하여 월해관에서 파견한 胥役의 감독하에 화물 검사를 비롯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었고, 保商은 수출·입 화물을 과세한 후에 상인을 대신하여 親填冊에 기재한 후에 관세의 대납을 보증하였다.

수출·입 화물에 세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다. 세칙을 적

274) 李質穎·圖明阿, 「爲查明關稅盈餘短少緣由遵旨據實覆奏事」, 건륭 43년 3월 18일, 故宮 403034435, “各屬口岸經過貨物, 書役家人公同驗征, 所收錢糧每年按月比較冊報查核, 俱不敢作弊. 其洋船到口, 向由行商將貨物開單呈報, 本官差書役家人, 與夷商通事等, 將所報貨物眼同秤驗, 照則算稅登記印簿收銀, 實不能作弊”.

용하여 과세하는 작업은 각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였고, 단순히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李質穎과 圖明阿의 설명은 오히려 월해관에서 진행되는 통관 절차 및 과세 작업이 保商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상이 수출·입 화물의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품의 품목을 구분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과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월해관감독의 감독 가능 범위도 보상이 작성한 수출·입 신고서와 관세 납부 증명서, 그리고 행상의 거래 장부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액을 검사하는 데 한정되었다. 사실상 수출·입 화물에 대한 과세와 징세 기능이 부재한 월해관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징세 과정에 대한 감찰 절차에 대한 광동순무 李質穎과 월해관감독 圖明阿의 설명을 보면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sup>275)</sup>

奴才 등은 40년분과 지난 3년 동안 징수한 臺帳을 선척의 大小와 화물의 粗細을 하나하나 비교하였습니다. 그 항목과 징수한 錢糧의 수목이 서로 부합하여 결코 폐단이 없었습니다. 또한 행상이 외국 상인들과 결탁하여 숨기고 탈루할 우려도 있어서 각 行商 등이 각자 교역 상황을 기록한 原簿와 월해관에 보고한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화물 내역과 수량을 상세히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조금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胥役·家人 및 각 상인들을 은밀하게 감찰하여 실제로 관세를 침탈하고 탈세한 정황이 없음을 명백히 조사하였습니다.

월해관의 행정 체계 내에는 관세의 탈루를 적발할 수 장치가 없었다. 청조

275) 李質穎·圖明阿, 「爲查明關稅盈餘短少緣由遵旨據實覆奏事」, 건륭 43년 3월 18일, 故宮 403034435, “奴才等將四十年分并上三年經征底簿, 所開船隻大小貨物粗細, 逐一較對. 其款項與征收錢糧數目相符, 並無弊竇. 又恐行商或有勾串夷商欺隱侵蝕, 亦未可定. 密提行商等各自記之交易底簿與報官單票, 詳細查對其貨物名色并斤兩數目, 毫無架錯. 明查暗訪胥役家人, 以及各商實無侵漁中飽情弊”.

중앙이 징세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행상의 장부, 관세 납부 영수증, 세책 외에는 없었다. 건륭 41·42년 비교법이 시행되면서 고핵 기준이 입항한 외국 선박의 숫자와 교역량으로 바뀌었지만, 월해관감독과 호부는 이를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륭 57년분과 건륭 58년분 월해관 세수가 연이어 감소하는 사건은 월해관의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건륭 57년분 월해관 세수는 건륭 41·42년 비교법 기준을 훨씬 넘는 규모였지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3만량이 감소하였다.<sup>276)</sup> 호부는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하여 월해관 세수를 결손 처리하였고, 관련자의 처벌을 상주하였다. 하지만 건륭제는 세수의 감소 원인이 입항 선박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월해관감독의 업무 소홀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광동순무 郭世勳과 월해관감독 額爾登布에게 각각 1만량씩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면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sup>277)</sup>

하지만 다음 회계 연도인 건륭 58년분 월해관 세수는 입항 선박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sup>278)</sup> 고핵 규정에 따른다면 건륭 41년·42년 비교법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세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호부는 다시 입항 선박의 증가율에 따른 세수 증가 폭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호부는 “입항 선박의 多少, (수출입) 화물의 粗細”을 고핵의 기준으로 한다는 상유를 근거로 건륭 56년분과 비교하여 약 11만량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자의 처벌을 상주하였다.<sup>279)</sup> 하지만 이 역시 건륭제가 광동순무 郭世勳과 월

276) 건륭 57년분 징수 총액은 995,882량이고 입항 선박은 38척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징수액은 131,680량, 입항 선박은 21척이 감소하였다(郭世勳, 『爲恭報通年徵收關稅仰祈聖鑒事』, 건륭 56년 10월 29일, 商務檔案(4), pp.2103-2106).

277) 福英, 『爲恭謝天恩事』, 건륭 57년 7월 7일, 第一 MR20, pp.1546-1548.

278) 건륭 58년분 세수는 약 1,011,426량, 입항 선박은 55척이었다(郭世勳, 『爲恭報通年徵收關稅銀數仰祈聖鑒事』, 건륭 57년 9월 24일, 商務檔案(4), pp.2146-2149).

279) 건륭 58년분은 전년도 대비 입항 선박은 17척 증가한 반면, 징수액은 15,543량의 증가에 그쳤다. 호부는 전전년도인 건륭 56년분과 비교하면 116,130량이 덜 걷힌 것으로 평가하였다. 和珅, 『爲奏明請旨事』, 건륭 57년 11월 10일, 商務檔

해관감독 盛住에게 각각 1만량씩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면제할 것을 지시하며 마무리되었다.<sup>280)</sup>

월해관의 세수가 건륭 41년·42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건륭 57년 11월 10일(1792년 12월 23일) 건륭제는 상유를 통해 호부의 상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sup>281)</sup>

월해관이 관세를 징수함은 洋船의 多寡에 있지 않고, 오직 화물의 麗細를 따져 盈絀을 정해야 한다. 항구에 도착한 선박이 많더라도 만약 香料나 藥材 등을 적재할 뿐이라면 관세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선박에 귀하고 중한 상품을 적재한다면 선박의 숫자가 비록 적더라도 관세는 반드시 비교적 많을 것이다. 현재 해당 세관에 입항한 洋船은 (건륭) 56년에 비해 17척이 많은데, 어떻게 겨우 약 15,000량의 영여운을 더 거두었을 뿐인가? (건륭) 55년과 비교하면 약 116,000량이 적은데 해당 감독 등은 분명히 (수입 상품의) 麗重을 구실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품의) 귀하고 중한지 아닌지는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만약 (이에 대한) 단속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월해관에 입항한 선박이 적은 해에는 선박이 적은 것을 구실로 삼아 영여운의 감소에 이를 것이고, 월해관에 입항한 선박이 많은 해에는 또한 (수입) 화물의 麗重을 구실로 삼아 足數를 징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 正稅와 雜稅의 盈餘銀은 선박이 많건 적건 결국 감소할 뿐 증가하지 않을

---

案(4), pp.2153-2160.

280) 『清高宗實錄』 卷1416, 건륭 57년 11월 乙巳(10), “又諭戶部奏粵海關徵收贏餘銀兩, 比較五十五年分, 計短少銀十一萬六千一百三十八兩零, 應按數著賠一摺. 已降旨令兼管之巡撫及該監督, 各賠銀一萬兩, 餘著加恩寬免矣”.

281) 『清高宗實錄』 卷1416, 건륭 57년 11월 乙巳(10), “粵海關經徵稅課, 不在洋船之多少, 惟視貨物之麗細, 以定盈絀. 到口船隻雖多, 若所載不過香料藥材等項, 稅銀仍屬有限. 如船隻內裝載貴重細軟貨物, 則船數雖少, 稅銀自必較豐. 今該關所到洋船, 比五十六年多至十七隻, 何以僅多收贏餘銀一萬五千餘兩. 較五十五年少至十一萬六千餘兩, 該監督等自必以貨物麗重爲詞. 但是否實系麗重, 無憑查核. 若不設法稽查, 則到關船少之年, 既藉口船少, 以致贏餘短絀, 而到關船多年分, 又藉稱貨物麗重, 不能徵收足數. 是此項正雜贏餘, 無論船多船少, 總屬有絀無盈”.

것이다.

건륭제는 월해관 세수가 입항 선박의 증감보다 수출·입 화물의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즉 입항 선박의 숫자, 세수의 증감으로 월해관의 관세 행정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월해관 세수의 고액 기준을 교역 상품의 수량과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건륭제의 지적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청조 중앙이 廣州에서 이루어지는 징세 과정을 완벽히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였다.

청조 중앙이 수출·입 화물의 수량과 가격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해관감독이 이를 구실로 세수 증감의 책임을 피할 구실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한 건륭제의 대안은 월해관감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자를 두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기존에 총독겸관제에 최종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총독겸관제 실시의 본래 목적도 양광총독이 월해관의 관리 행정을 맡으며 월해관감독의 관세 행정을 감찰하는 것이었지만, 양자가 공동으로 월해관 행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점차 공동운명체가 되며 상호 협조와 견제하고자 했던 취지도 어긋나게 되었다.<sup>282)</sup>

건륭 57년 11월 10일(1792년 12월 23일) 건륭제는 총독겸관제를 폐지하고 감독전관제를 재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목적은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에서 분리시켜서 본래의 월해관감독에 대한 감찰 업무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에 양광총독은 월해관감독과 별개의 계통을 통해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수출·입 화물을 조사하여 매월 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양광총독이 올린 보고와 월해관감독의 주소첩과 稅冊을 대조하여 고핵할 것을 결정하였다.<sup>283)</sup>

282) 『清高宗實錄』 卷1416, 건륭 57년 11월 乙巳(10일), “海關派令該督撫兼管, 原爲就近稽察起見. 今思該督撫既管關務, 與監督即成一事. 而派出家人吏役等, 尤不免彼此扶同弊混, 轉不足以互相查察.”

283) 蘇楞額, 『爲恭報通年徵收關稅總數仰祈聖鑒事』, 건륭 59년 9월 24일, 第一

각관체제에서 청조 중앙이 관세 행정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서 불신과 의심은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이어졌고, 세수의 고핵 강화가 그 첫걸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부와 건륭제의 입장 차는 뚜렷하였는데, 호부는 세수 증가에 따른 비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관세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호부가 강력하게 적용하기를 희망했던 전년도 비교법은 고핵 과정에서 전년 대비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지방 당국이 세수를 착복할 공간(多徵少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륭제의 입장은 달랐다.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함으로써 매년 고핵 기준이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고려해야 하였고, 이에 옹정 13년 비교법, 전삼년 비교법, 건륭 41·42년 비교법 등의 방식으로 고핵 기준을 정액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호부가 영여은에 대한 고핵을 강화하고자 했던 노력에 비해 월해관의 관세 행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월해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통관 절차를 살펴보면 명확한데,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과세와 징수 절차를 保商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징세 당국조차 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다.

결국 호부의 고핵은 월해관감독이 올린 보고에 근거하여 영여은 액수의 단순 증감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고, 월해관감독이 작성한 보고는 保商들이 과세하여 징세한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불신에 기반한 호부의 재정 운영 방식은 각관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海關의 원심력을 부정하고, 權關의 획일성을 강화하여 호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월해관의 엄정화는 월해관에 인정되었던 특례를 취소 혹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MR20, pp.1843-1845, “又於乾隆五十八年正月內准部劄行欽奉諭旨。嗣後粵海關稅務竟不必令督撫兼管，其每月到關船數若干，所載貨物粗細若干，責成該督撫詳細查明，按月造冊密行咨報戶部，俟一年期滿時交該部。將該督撫所報清冊與該監督所報清冊總彙總核對，如有不符之處，即行參辦。等因。欽此欽遵”。

## 2. 세수 운송 체계의 재편

### 1) 건륭 29년 節省水脚銀의 歸公

광동체제에서 廣州는 은본위제에 기초한 계수 화폐 체계의 서양과 칭량화폐 체계의 중국이라는 두 이질적인 화폐 체계가 접촉하는 공간이었다. 화폐와 상품의 교환은 필연적으로 각 화폐의 교환 가치에 따라 일정한 교환 비율(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따라서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 은화는 칭량화폐로 취급되어 중국의 화폐 체계로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對서양 무역의 징세 기구로서 월해관은 두 문명 간에 이질적인 화폐 체계로 인해 징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과 위험(risk)이 발생하였다. 우선 외국 은화의 종류가 다양했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더 복잡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론상으로 외국 은화는 법정 순도와 무게로 주조되었지만, 실제로는 규정대로 주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화의 둘레를 깎거나 잘라서 변조하는 행위가 성행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외국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측정하여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너무 위험이 컸다. 징세 당국이 아무리 정밀하게 수행하더라도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하고 번거로운 업무를 감수할 이유는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징세 청부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출현하게 된 여러 배경 중 하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측정’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에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세의 회계 절차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징세 청부업자, 월해관, 호부 등) 간에 저울추의 무게가 달랐다는 것이다. 징세 청부업자가 관세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저울추 간에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바로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된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본 학위논문에서 설명하는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각관체제로의 구심력을 강화한다는 호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건륭 29년 호부가 權關의 세수 운송 방식을 재편하여 월해관의 특례를 취소하고 常關과 통일성을 강화하면서 호부와 월해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이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특수한 처우를 받았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해관은 대외 무역항으로서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정되고 내지 常關과의 획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월해관 세수의 결산 절차에 반영된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한 사례로서 ‘저울추의 무게 조정 2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징세 주체인 징세 청부업자, 회계 주체인 월해관, 결산 주체인 호부 간에 庫平의 무게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절차였다. 주목할 부분은 징세와 회계 주체가 같았던 常關의 세수 결산이 저울추의 무게 조정을 한 차례 거치는 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에 걸친 조정은 명확한 월해관만의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월해관의 회계 결산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행상이 대납한 관세를 세책과 대조한 후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세수는 절차에 따라 밀봉하여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수를 北京으로 起解하기 전 세수 꾸러미(鞞箍)를 포장하여 봉인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을 入鞞라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무게 10량짜리 庫平銀 100개를 한 묶음(1000량)으로 하는 세수 꾸러미로 꾸러졌다. 월해관의 관세는 다양한 무게와 순도를 지닌 지역 은정과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 은화로 납부되었으므로 입초 작업은 호부의 회계 기준 은정인 庫平銀으로 재구조하는 前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고평은의 재구조 작업은 입초 전에 월해관감독의 감독 하에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징세 청부업자가 관세를 월해관에 납부할 때 고평은으로 재구조하여 대납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행상은 외국 상인에게 관세를 과세하고 징수하여 대납하는 것 외에 세수의 결산을 위한

고평은의 재주조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이것은 다른 榷關들과 구별되는 월해관의 특징 중 하나였다.

고평은의 재주조는 각 행상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민간의 銀爐에서 담당하였다. 銀爐 혹은 爐房에서 사용하는 고평 저울추는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와도 다를 것이고, 호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와도 무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월해관은 다른 榷關에서 저울추의 무게 조정이 한 차례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한 단계가 더 필요하였다.

여기서 곤란한 점은 實銀으로 고평은을 주조한 이상, 세수꾸러미의 무게에 문제가 발생하면 碎銀을 추가하여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添平)으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었다. 징세와 회계의 주체가 분리된 월해관은 세수의 결산을 위해 민간에서 재주조한 고평은을 호부 고평은의 교환 가치와 맞추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였고, 결국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월해관의 세수 결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관체제에서 호부는 榷關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와 호부 고평의 무게 차이를 1.5%로 인정하였다. 이는 실제 저울추 무게 차이와 별개로 榷關의 세수에서 정식 지출 항목으로 1.5%를 지출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의미이고, 즉 榷關은 호부 고평은과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수에서 1.5%를 지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榷關과 호부의 저울추 무게를 조정하는 비용은 전국의 榷關에 공통적으로 인정된 지출 항목이었다.

하지만 월해관의 경우 銀爐-월해관-호부 사이에 저울추의 무게 차이가 존재하였고, 호부가 월해관과 호부 간에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1.5%의 지출만 인정한다면, 銀爐-월해관 간에 저울추 무게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물론, 銀爐業者가 고평은을 주조할 때 정성을 다하여 정확한 무게를 맞출 수 있었다면 추가 단계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당시 저울추 무게에 오차를 없애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월해관 측에서는 銀爐-월해관 사이에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 항목을 마련해야 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은 관행적으로 水脚銀의 節省分에서 지출되었다.

수각은은 榷關에서 세수의 운송 준비 작업부터 실제 운송에 지출하는 경비, 복귀 비용 등 일체를 처리하기 위해 배정한 정식 지출 항목이었다. 건륭 29년(1764) 호부는 전국의 榷關에서 北京으로 세수를 운송하는 방식을 통일한 후에 실제 지출하는 운송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節省分)을 모두 호부로 반납(歸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수각은에서 添平銀을 지출해 오던 월해관의 관행에도 영향을 끼쳤고, 결국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 따른 월해관의 특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게 되었다.

호부의 관세 운송 방식의 재편은 건륭 28년(1763) 6월 兩淮鹽政 高恒의 건의에 따라 시행된 염세 운송 방식의 개혁 내용을 그대로 관세 운송 방식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高恒의 건의안은 ‘鹽課의 운송에 역참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수각은의 節省分을 내무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sup>284)</sup> 이를 통해 염세는 역참의 급역 규정에 따라 말과 수레, 선박, 인부 등을 지원받으면서 운송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염세와 달리 관세는 이미 역참을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었다. 다만, 관세를 운송할 때 榷關에서 발급할 수 있는 郵符에 차이는 있었다.<sup>285)</sup> 가령 九江關·贛關은 勘合과 兵牌, 江海關, 鳳陽關, 揚州關 등은 火牌와 兵牌, 粵海關, 閩海關, 北新關, 臨清關, 浙海關 등은 兵牌, 潞墅關, 淮安關, 蕪湖關 등은 火牌를 지급하였고, 발급된 郵符에 따라서 역참의 급역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sup>286)</sup> 勘合과 火牌는 수령자의 차이로 운송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郵符라는

284) 高恒, 「奏爲請定解餉事」, 건륭 28년 6월 10일, 故宮 403015126, “奴才查各驛站額稅夫馬, 原爲應付差使運送餉鞘之用, 而鹽課錢糧與地丁關稅同屬正供, 自應劃一辦理 應請嗣後奉撥京協各餉, 亦俱填給勘合水陸路程, 俱由驛站遞送, 挨站接替既覺迅速即住宿撥護, 亦有定程, 更有夫頭人等協同照料管押較之僅祇解官所帶數人與驛夫, 自爲照應實爲謹慎所有運庫脚價一項, 向來凡有節省, 原於每網竣後, 專摺奏交內庫”.

285) 우부는 병부에서 발급하지만, 감합, 화패, 병패 등의 우부는 독무, 장군, 도통, 제독, 총병 등에게 선지급하여 각 상황에 맞춰서 빈칸에 기재(填給)하여 전달하였다(劉廣生·趙梅莊 編, 『中國古代郵驛史』(修訂版), 人民邮电出版社, 1999, pp.566-569).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委員에게는 勘合, 吏役에게는 火牌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兵牌는 銀兩, 緞疋, 銅觔 등 병력의 호송이 필요한 경우 발급되는 郵符였다.<sup>287)</sup> 兵牌는 규정에 따르면 세수를 운송하는 경우 수레당 병사 2명, 말 1필당 병사 1명이 배치되었다.<sup>288)</sup>

權關에서 발급하는 郵符의 차이로 인해 각 지역에 실제 운송비 산정 방식은 모두 제각각이었고, 호부는 개혁을 통해 모든 權關에 일률적으로 勘合, 火牌, 兵牌를 지급하여 급역을 통일함으로써 역참 수를 기준으로 운송비 책정 방식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호부는 거리, 지역과 환경의 차이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실제 운송비를 책정하고, 權關에서 배정한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를 제외한 절생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관세 운송 체계의 재편은 기존에 불분명한 용도로 전용하던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歸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관세의 운송 개혁에 관한 호부의 결정은 건륭 29년 7월 16일(1764년 8월 13일) 율해관감독 方體浴에게 전달되었는데,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9)</sup>

286) 건륭 29년 5월 29일 상유,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乾隆朝上諭檔』 第4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p.439 所收, “至於關稅一項, 向來各省起解, 相沿辦理, 未免參差. 如九江贛關則給有勘合兵牌, 江海鳳陽揚州等關則給火牌兵牌, 粵海閩海北新臨清浙海等關祇給兵牌, 潞陞淮關蕪湖等關則支給火牌, 辦理原未劃一”. 이하 “『乾隆朝上諭檔』”으로 약칭한다.

287) 건륭 29년 5월 29일 상유, 『乾隆朝上諭檔』 第4冊, p.439 所收, “臣等伏查外省起解錢糧, 其由委員押解者則填給勘合, 其由吏役解送者則填給火牌, 沿途支取廩給口糧, 并撥夫抬送, 又俱給與兵牌于所過營分撥兵防護”.

288) 光緒朝 『欽定大清會典』 卷51 兵部 車駕清吏司二, “凡領有詔旨, 及關防敕印者, 撥背負兵三名, 解送銀兩緞疋等項, 每車一輛, 撥兵二名, 每馬一匹, 撥兵一名, 銅斤至二十七萬斤, 撥兵十二名, 其有增減, 另行酌撥, 押解人犯, 每一犯, 撥兵二名, 旗員休致參革攜眷回旗及病故扶輦者, 該督撫查明家口數目, 十名一下, 撥兵役各二名”.

289) 건륭 29년 5월 29일 상유, 『乾隆朝上諭檔』 第4冊, p.439 所收, “所有水腳銀兩, 除應給鞘箍口袋繩索等費給解員等至京住宿飯食並回省路費等銀, 應行令各該督撫並監督等酌核情形, 確寔定數外, 其每年節省銀若干, 卽由各該處奏明, 照鹽政高恒節省水腳之例, 解交內務府查收, 並令分晰冊報戶部”(밑줄은 인용자).

수각은은 鞵箍, 口袋, 繩索 등 비용, 운송 인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北京에 체류하며 지출하는 비용, 귀향 비용 등과 각 독무 및 감독 등이 사정을 헤아려 명확히 지출할 비용으로 결정한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節省銀은 해당 기관에서 奏明한다. 鹽政 高恒의 節省水脚銀 처리의 예에 따라서 내무부에 전달하여 查收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호부에 보고하라. (밑줄은 인용자)

월해관감독 方體浴은 이 방침에 따라 건륭 28년분을 결산하면서 세수 꾸러미 포장 비용, 인건비와 체류비, 귀향 비용 외에 고평은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添平銀을 함께 지출로 처리하였다.<sup>290)</sup> 하지만 호부가 인정한 1.5% 외에 添平銀의 지출은 호부가 정한 실제 운송비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었고, 호부는 이를 결손으로 처리하여 補解를 명령하였다. 方體浴이 건륭 28년분에서 침평은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결손액을 사후에 처리했는지는 사료로서 확인되지 않지만, 건륭 29년분의 세수 결산에서도 건륭 28년분의 처리 방식처럼 수각은에서 침평은을 지출로 처리한 것으로 볼 때 그는 호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91)</sup>

양측의 의견 대립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결이 지체되었다. 方體浴은 건륭 31년(1766) 9월 淮安關으로 전임되었고, 그에게는 수각은에서 침평은을 지출한 것에 대해 별다른 행정 처분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92)</sup> 이는 아마도 건륭제의 상유에서 “독무 및 감독 등이 사정을 헤아려 명확히 지출 비용으로 결정한 비용을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290) 方體浴,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29년 11월 15일, 故宮 403019136, “滋粵海關起解盈餘等銀進京, 查照向例共應支水脚銀一萬九百一十三兩五錢五分六厘. 除鞵箍等費給員役至京住宿飯食添平等項, 並回粵路費共銀四千八百三十九兩九錢五分外, 計實存節省水脚銀六千七十三兩六錢六厘”(밑줄은 인용자).

291) 方體浴,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30년 11월 21일, 故宮 403021928.

292) 方體浴이 회안관 감독으로 전임하고 1년이 되지 않아서 포상을 받는 것은 확인된다. 월해관 재임 기간 호부와의 의견 대립이 관리로서 그의 경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方體浴, 『奏爲恭謝天恩事』, 건륭 32년 윤7월 10일, 故宮 403022543).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293)</sup> 호부의 입장에서건릉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월해관감독의 처벌을 건의하기는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구체적인 조정 과정은 方體浴의 후임으로 부임한 德魁가 건륭 31년 10월 13일(1766년 11월 14일) 양광총독 楊廷璋과 연명으로 상주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德魁와 楊廷璋은 저울추의 무게 차이에 따른 침평은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월해관의 상황을 건륭제에게 강조하였는데, 월해관의 加平·加法·添平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94)</sup>

건륭 9년 양광총독 策楞이 월해관을 관리하던 임기 중에 零封·併兌·平餘 (항목)의 세수를 별도의 세목으로 報解하여 公用 항목으로 備充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奏明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정액이 없었는데, 건륭 15년 唐英의 임기 중에 100량 당 3錢의 수준으로 헤아려 정하였고, 지금까지 관기가 종료되면 罰料·截曠 등과 함께 모두

293) 건륭 29년 5월 29일 상유, 『乾隆朝上諭檔』 第4冊, p.439 所收, “所有水腳銀兩, 除應給鞞箍口袋繩索等費給解員等至京住宿飯食並回省路費等銀, 應行令各該督撫並監督等酌核情形確寔定數外, 其每年節省銀若干, 卽由各該處奏明”.

294) 楊廷璋·德魁, 『爲奏明粵海關辦理解餉添平銀兩緣由仰祈睿鑒事』, 건륭 31년 10월 13일, 第一 MR19, pp.2090-2092, “乾隆九年兩廣總督策楞管關任內, 奏明請將關稅零封併兌平餘銀兩, 另列條款報解備充公用一項. 當辦理之初, 多寡無定, 及乾隆十五年唐英任內核定每百兩三錢之數, 歷年以來年滿與罰料截曠等銀一體報銷在案. 又兩廣總督策楞任前向收加平銀三錢. 迨乾隆二十五年前監督尤拔世任內, 另行呈部頒換法馬, 到關較藩庫法馬, 每百兩仍輕五錢. 是以征收加法銀五錢, 所有前項加平銀三錢加法銀五錢總共八錢, 歸入正稅鞞內, 一併解京. 又乾隆十五年七月初十日前監督唐英任內, 接准部文, 解部餉銀添平, 不准掛批, 復於大關征收備帶加平銀五錢五分. 除零封併兌平餘與罰料截曠年滿報部外, 每百兩共征收添平一兩三錢五分. 乾隆二十六年戶部行文, 嗣後各關解交京餉, 着照銀庫奏准定例, 每鞞加銀十五兩. 統計粵海一關惟大關收有添平銀十三兩五錢. 其餘各口所收平銀每百兩止有八錢, 除每年撥支雷瓊高廉兵餉等項, 照司法彈兌, 應加平銀五錢補足支給外, 尙餘平銀三錢歸入截曠等項, 支解是以每年大關解京餉鞞, 每鞞尙不敷銀一兩五錢, 前監督尤拔世任內, 水腳運費未經歸公, 向皆於水腳項下, 樽節添補解部”.

報銷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광총독 策楞의 재직 이전부터 줄곧 加平銀 3錢을 징수하였습니다. 건륭 25년에 이르러 前월해관감독 尤撥世의 임기 중에 明文을 올려서 戶部에서 배포한 저울추를 교환하였는데, 월해관에 전달된 (저울추가) 藩庫의 法碼와 비교하여 100량 당 5錢 가벼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加法銀 5錢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의 항목인 加平銀 3錢과 加法銀 5錢을 합쳐서 모두 8錢이고, 正稅의 세수 꾸러미에 넣어서 함께 北京으로 운송하였습니다. 또 건륭 15년 7월 10일 前월해관감독 唐英의 임기 중에 戶部の 문건을 받았는데, 호부로 운송하는 세수의 침평은 掛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大關에서 가져갈 것을 대비하여 加平銀 5錢 5分을 추가로 걷게 하였습니다. 零封併兌·平餘·罰料 截曠 등을 關期가 종료되면 戶部에 보고하는 것 외에 100량 당 添平으로 모두 1兩 3錢 5分을 징수하였습니다. 건륭 26년 호부에서 공문을 보내었는데, 이후에 각 세관에서 北京으로 운송하는 세수는 銀庫에서 상주를 올려 허가를 받은 定例에 따라 세수 꾸러미 당 15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해관은 大關은 添平銀 13兩 5錢을 걷고, 나머지 각 항구는 (添)平銀 100량 당 단지 8錢을 걷을 뿐입니다. 매년 雷州·瓊州·高州·廉州의 兵餉 등은 司法에 따라 彈兌하여 加平銀 5錢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 나머지 3錢은 截曠 등 항목에 歸入하여 운송할 때 지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大關에서 세수 꾸러미를 北京으로 운송하면서 세수 꾸러미 당 부족한 1兩 5錢은 前감독 尤撥世의 임기 중에 운송 경비는 아직 歸公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두 水脚銀 항목에서 節省分에서 보충하여 호부에 운송하였습니다.

호부는 월해관의 침평은 지출을 각관체제에서 인정한 1.5%만 지출로 인정하였고, 건륭 26년(1760) 호부는 權關에서 北京으로 세수를 起解할 때 세수 꾸러미 한 꾸러미당 15량을 별도의 쇠은(加鞞銀)으로 동봉하게 하였다. 하지만 건륭 25년(1759)까지 월해관은 침평 항목으로 1.35%만 징수하였으므로 나머지 부족한 0.15%를 보충할 항목이 없었다. 이에 尤撥世의 임기 중에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침평은의 부족액 0.15%를 전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입초 작업에서 添平하는 1.5% 중 0.15%를 수각은에서 지출하는 이상,

월해관측은 절생수각은을 모두 歸公하라는 호부에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월해관 측은 행상이 외국 상인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첩평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295)</sup> 그리고 세수의 결산 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우선 건륭 30년분은 기존에 방식대로 수각은에서 첩평 비용을 지출 처리하고, 이후 호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를 따를 것임을 보고하였다.<sup>296)</sup>

월해관 측은 외국 상인으로부터 행상이 얻고 있는 차익을 이용할 뿐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지만, 월해관 측이 제시한 해법은 사실상 첩평 비용을 행상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행상이 이를 부담할 경우 최종적으로 외국 상인들에게 이를 전가할 것이므로 건륭제가 이를 허용할 리 없었다. 월해관 측에서 이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륭제는 이 건의를 불허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매년 월해관에서 지출해야 하는 첩평 비용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한 후 잠정적으로 수각은에서 첩평 비용을 지출할 것을 허용하였다.<sup>297)</sup>

호부와 월해관 측의 첫 의견 충돌은 건륭제가 월해관의 주장을 수용하며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로써 월해관은 이전의 방식대로 수각은에서 첩

---

295) 楊廷璋·德魁, 「爲奏明粵海關辦理解餉添平銀兩緣由仰祈睿鑒事」, 건륭 31년 10월 13일, 第一 MR19, pp. 2090-2092, “又多係大關行商應納稅鈔, 積至年滿, 始行完清, 終歲權衡, 似有餘利, 詳加斟酌, 若令行商認補, 又恐沾染夷人 隨傳集行商面與商確. 據伊等僉稱, 每年應繳稅餉, 歷限年滿完納 原有餘息 情甘認補, 並無絲毫沾染夷人”.

296) 德魁,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1년 12월 13일, 第一 MR19, pp.2118-2120, 건륭 30년분 세수는 수각은 14,398.365량에서 補平銀을 포함한 세수 운송 준비와 廣州와 北京의 왕복 경비 6,479.5량을 제외한 節省水腳銀 7,918.865량을 歸公하였다.

297) 德魁, 「爲據實明白回奏仰祈聖鑒事」, 건륭 33년 8월 12일, 故宮 403025706, “以摺內未將核計, 每年共應添補加鞘銀若干, 詳悉聲明. 僅以行商原有餘息, 願補具奏未妥協. 着令將每年實應添補若干兩, 詳晰查明, 於歸公項下酌量扣出抵補. 咨部定議”.

평은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륭제의 상유는 건륭 32년 12월 8일(1768년 1월 27일) 월해관감독 德魁에게 전달되었고, 건륭 31년분은 이전의 방식대로 회계 처리되었다.<sup>298)</sup>

하지만 월해관의 수각은에서 지출되던 첩평 비용은 입초 첩평은 0.15%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입초 첩평은 1.5%는 분명 호부와 월해관의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호부가 인정한 정식 지출 항목이었다. 하지만 세수 꾸러미를 꾸릴 때 사용하는 고평은은 행상이 銀爐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구조한 은정이었으므로 호부 고평은의 교환 가치와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월해관의 세수는 北京으로 운송된 후 세수 꾸러미를 해체하는 작업(劈鞣)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실질적인 은정의 무게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벽초 첩평은’이 추가 지출되었다. 벽초 첩평은은 호부 첩평은 1%와 내무부 첩평은 2%가 있었고, 이 비용 역시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월해관 측은 건륭제에게 벽초 과정에서 지출되는 벽초 첩평은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입초 첩평은 0.15%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

월해관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세수 결산을 위한 고평은의 구조까지 징세 청부업자들이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두 단계의 저울추 무게 조정 과정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필요한 비용은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절생수각은을 전액 歸公하라는 호부의 결정은 월해관의 예외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고, 양측의 첫 번째 충돌은 건륭제가 잠정적으로 월해관 측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월해관 측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sup>298)</sup> 德魁, 『奏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2년 12월 22일, 故宮 403023761, “茲粵海關起解乾隆三十一年分盈餘等銀, 進京查照向例共應支水脚銀一萬八千二兩二錢八分七厘, 除支銷鞘箍等費, 及員役至京住宿飯食加鞘補平等項, 並回粵路費, 共銀七千六百六兩八錢二分三厘外, 實存節省水脚銀一萬三百九十五兩四錢六分四厘”.

## 2)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의 결손 사건

호부는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 번째 총들이 재개되었다. 호부는 수각은에서 입초 침평은 1.5% 중 0.15%의 지출만을 정식 항목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침평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sup>299)</sup> 호부는 입초 침평은 외에 호부와 내무부에서 지출하는 벽초 침평은을 금지하고, 이를 모두 절생수각은으로 호부에 반납하도록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그리고 이것이 건륭제에게 승인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sup>300)</sup>

이러한 호부의 결정이 월해관에 전달된 시점은 건륭 33년 정월 9일(1768년 2월 26일)이었고, 이미 건륭제의 상유에 따라서 건륭 31년분을 北京으로 운송한 이후였다. 이미 세수 수송단이 廣州를 출발한 상황에서 수송단을 복귀시켜서 세수 꾸러미를 재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월해관감독은 운송 책임자 周自邠에게 사람을 급파하여 호부와 내무부에서 지출할 벽초 침평은을 절생수각은에 포함시켜서 모두 호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호부에 자문을 보내어 벽초 침평은을 절생수각은 항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301)</sup>

하지만 호부는 건륭 31년분을 약 6,585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륭제에게 관련자의 처벌을 상주하였다. 호부는 세수 결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는 월해관

299) 德魁, 『爲據實明白回奏仰祈聖鑒事』, 건륭 33년 8월 12일, 故宮 403025706, “嗣於乾隆三十三年正月初九日接准部復, 止准於水脚內撥補加鞘銀一兩五錢, 其餘添平各數, 仍不准開支”.

300) 『粵海關志』 권15, 『奏課二』, p.314, “據該關呈請於水脚銀內照舊劃出添平, 節經臣部駁傷刪減, 於上年十一月內議定, 照閩海太平等關, 奏准每千兩添平十五兩定數支銷. 所有該關外帶部庫添平及內務府加平銀兩, 一概刪除, 歸入水脚項下充公報解”.

301) 德魁, 『爲據實明白回奏仰祈聖鑒事』, 건륭 33년 8월 12일, 故宮 403025706, “一面會咨戶部查核, 此原系遵照部文歸款, 並非鞘內分兩不足, 及私行改抵別項情事”.

에서 주조한 고평은의 무게 자체가 규정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호부의 部庫에서 세수 꾸러미의 포장을 해체하고 고평은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은정의 무게는 대부분 9.3~9.8량이었고, 심한 경우 9량에도 미치지 못한 은정이 발견된 것이다.<sup>302)</sup>

두 번째는 월해관에서 세수를 운송할 때 입초 침평은 외에 별도로 벽초 침평은을 준비하여 벽초 과정에서 결손을 보충하려고 했다는 점이였다. 호부는 월해관감독이 별도의 벽초 침평은을 준비한 것은 이미 입초 작업 중에 세수 꾸러미의 무게가 규정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륭 31년분의 결손액을 즉각 補解하는 한편, 은정의 무게 미달과 벽초 침평은을 준비한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을 상주하였다.<sup>303)</sup>

그런데 여기서 호부는 벽초 과정에서 호부와 내무부의 침평은을 지출해 오던 월해관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였다. 건륭 31년분은 호부의 지시에 따라 벽초 침평은으로 지출할 비용을 절생수각은으로 전환하여 歸公하였으므로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호부는 마치 월해관감독이 의도적으로 벽초 침평은을 마련하여 벽초 과정에서 무게 차이를 조정하려고 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고평은의 무게 불량에 의한 세수 결손으로 초점을 집중시켰다.

호부의 보고를 받은 건륭제는 세수의 결손이 단순한 저울추 무게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彈兌)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수천량에 이른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건륭제는 월해관에서 규정 외에 北京에서 추가로 침평하는 이유가 입초 작업에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철저히 조정하지 않았

302) 德魁, 『爲據實明白回奏仰祈聖鑒事』, 건륭 33년 8월 12일, 故宮 403025706, “查核關銀錠細加秤較竟, 有九兩三四錢至九兩七八錢. 且有不足九兩之錠”.

303) 德魁, 『爲據實明白回奏仰祈聖鑒事』, 건륭 33년 8월 12일, 故宮 403025706, “又據解員周自邠等稟稱, 曾經備帶添平銀五千二百五十五兩零, 續將添平銀兩改作水脚正項抵交. 該關既曾備帶添平銀兩明係鞘內兩不足. 請旨勅令該監督將前項短少銀兩作速補解完項, 併將起解此項銀兩何致短少, 既曾備帶添平復行改抵別款之處, 該監督德魁據實明白回奏”.

기 때문이며 별도의 벽초 첩평은을 준비한 것은 율해관감독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 보았다. 이에 건륭제는 율해관감독의 행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광동순무 李侍堯에게 율해관감독 德魁의 업무 능력, 평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함께 명령하였다.<sup>304)</sup>

李侍堯는 건륭 31년분의 결손 원인을 호부가 수각은에서 입초 첩평은 0.15%만을 지출로 인정하고, 호부와 내무부의 첩평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는데, 그는 율해관에서 지출하는 입초 첩평은과 北京에서 지출하는 벽초 첩평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05)</sup>

율해관에서 그동안 稅銀을 起解했던 실제를 조사해 보니, 1,000兩 당 15兩을 더하여 세수를 꾸리는 것을 규정으로 정할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본래 加法과 補平으로 13兩 5錢을 징수하여 보충하는 것 외에 不敷銀 1兩 5錢입니다. 그리고 (戶)部庫에 이르러 탄태 과정에서 1,000兩 당 10兩을 補平합니다. 또 내무부에 전달하는 備貢 (항목) 등은 1,000兩 당 20兩을 補平합니다. 종래 관세를 起解하면서 1,000兩 당 38兩 5錢을 水

304) 乾隆 33년 6월 20일 上諭, 『乾隆朝上諭檔』 第4冊, p.341 所收, “關稅解部, 自應按數兌准, 卽偶有短缺, 何至數千餘兩之多. 且每錠竟有不按十兩定例, 缺少數錢至一兩者, 更不得藉口於彈兌時之手輕手重, 併不得以備帶添平之數, 改解水脚正項爲詞, 妄行牽混. 著傳諭李侍堯, 將此項關稅因何致有短平之故, 詳悉查明, 據實覆奏. 關稅原係督臣兼管, 見聞尤爲親切, 斷不可稍有瞻徇, 思欲顛預了事. 德魁前次差人進京, 卽有私帶稅物銀兩之事. 令起解關稅復短少如許, 看來德魁在任一切俱不甚妥協, 著李侍堯將伊平日辦事. 若何居官聲明, 若何是否能勝監督之任, 一併據實奏聞候朕另降諭旨”.

305)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乾隆 33年 7月 16日, 故宮 403025538, “查粵海關歷年起解稅銀奉行, 奏准定例每千兩應加銀十五兩入銷. 除原有徵收加法補平銀十三兩五錢抵補外, 尚不敷銀一兩五錢. 又到庫彈兌, 每千兩應補平銀十兩. 又解內務府備貢等銀, 每千兩應補平銀二十兩. 緣向來起解關稅銀兩, 例准每千兩支銀三十八兩五錢, 以爲水脚添平等用. 所有前項解部人銷, 不敷銀一兩五錢, 補平銀十兩, 及內務府補平銀二十兩, 均於此內支應. 其間有於十兩二十兩之外, 尚須添補者, 亦均於水脚內節省通融辦理. 以故歷來解交, 從無不足”(밑줄은 인용자).

脚과 添平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규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수를 꾸러서 호부로 운송하는데 不敷銀 1兩 5錢, 補平銀 10兩 및 內務府 補平銀 20兩은 모두 여기서 처리하였습니다. 10兩, 20兩 외에 또 添補해야 하는 것은 역시 모두 수각은의 節省分에서 변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동안 解交하며 지금까지 결손된 적이 없었습니다. (밑줄은 인용자)

월해관 세수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廣州와 北京에서 두 차례 저울추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廣州에서 세수 꾸러미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월해관에서 징수한 관세는 督撫가 파견한 인원의 입회하에 월해관감독의 지휘로 세수 운송에 참여하는 인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포장 작업(入鞞)을 실시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포장 작업에 사용되는 은정은 고평은 10량이었다. 세수 꾸러미(鞞籜)는 은정 10개가 담긴 大封 10개(1,000량)를 기준으로 하였고, 加鞞銀 15량의 碎銀이 담긴 小封 1개(15량)로 꾸렸다. 포장 작업이 완료되면 월해관감독은 세수 꾸러미의 무게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印花를 붙여서 봉인하였다.

세수가 北京에 도착하면 호부에서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 호부는 세수 꾸러미 印封의 손상 여부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포장을 해체하는 작업(劈鞞)을 실시하고, 호부의 고평 저울추로 은정의 무게를 재검사(彈兌)를 실시하였다.<sup>306)</sup> 그리고 탄태 과정에서 호부 침평은 1%와 내무부 침평은 2%를 지출하였고, 이를 수각은에서 지출하는 것이 월해관의 관행이었다.

李侍堯는 호부와 내무부에서 지출해 오던 침평은을 호부의 지시대로 절생 수각은으로 되돌려서 호부에 반납하였으므로 세수가 결손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sup>307)</sup> 그리고 월해관의 은정이 무게 규정에 미달한다는 호부의 주

306)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至裝鞞內十大封, 計銀一千兩, 一小封計銀十五兩, 俱用皮紙包封, 上蓋印花入鞞, 裝釘堅固”.

307) 호부 침평은 4,576.569량을 호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1,900량의

장에 대해 월해관의 입초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은정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월해관에서 은정을 직접 재주조하지 않고, 대리 징수 업자인 행상이 銀匠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재주조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입초 작업에서 세수 꾸러미의 무게를 측정하여 부족한 무게를 碎銀으로 보충하고 있으므로 개별 은정의 무게가 10량에 미달하더라도 세수 꾸러미의 무게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sup>308)</sup>

따라서 호부의 주장처럼 세수 꾸러미가 적게는 8~9량, 많게는 30~40량이 미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 세수 꾸러미의 무게를 검사하는 작업은 廣州府知府 顧光이 참관하여 월해관감독과 운송 책임자 등과 함께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월해관의 저울추도 함께 동봉하여 戶部로 보냈으니, 세수 꾸러미의 해체 과정에서 印封의 훼손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과 훼손이 확인되면 周自躬 등을 刑部로 이송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309)</sup> 월해관감독은 세수 결손을 운송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며 그 책임을 운송 책임자에게 전가하였다.

李侍堯의 보고를 받은 건륭제는 호부에 재조사를 명령하였고, 호부는 세수 꾸러미를 劈鞞하기 전 印封이 손상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印封을 해제하기 전 이미 세수 꾸러미의 무게는 규정에 미달하고 있었다고 반박하였다.<sup>310)</sup> 게다가 월해관의 세수 꾸러미의 검수 절차가 매우 불철저하게 실시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운송 책임자였던 周自躬은 월해관에서 입초 작업이

---

결손액이 발생하였다.

308)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33년 7월 16일, 故宮 403025538, “至十兩一錠短少之處, 查粵海關稅銀, 係各商自行覓匠傾容交納, 每錠有十兩以外, 或九兩七八錢, 及九兩三四錢者, 如有不足, 均以碎銀湊補. 歷久相沿, 原非每百兩止有十錠, 即現在貯庫之銀, 經臣提取數封, 逐加稱兌, 亦有輕重不齊, 然歸總合兌, 實無虧短”.

309)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33년 7월 16일, 故宮 403025538, “惟在粵兌解之銀, 到京復兌, 輕重自然一律, 今部庫彈兌每千兩所小自八九兩至三四兩不等, 何至多寡如此懸殊”.

310)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據銀庫查明, 監劈餉鞞時, 點驗印封, 俱無破損”.

마무리된 후 월해관감독이 450여 개의 세수 꾸러미 중 10여 개의 세수 꾸러미의 무게만을 검사하였고, 심지어 이때 이미 세수 꾸러미의 무게가 모두 규정에 미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311)</sup>

월해관의 입초 작업에 이상이 없었다는 월해관감독의 주장에 대해 호부는 매우 냉소적인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축하였다. 하나는 월해관의 입초 작업에서 北京에서 실시되는 벽초 과정에서의 添平을 예상하여 착복하였거나, 아니면 家人, 關胥, 銀匠이 한통속으로 속여서 편취한 것을 월해관감독이 우롱당하여 알아채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sup>312)</sup>

호부는 해당 사안이 저울추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기하며 월해관 측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은정을 측정하는 장소는 北京의 호부와 廣州의 월해관으로 서로 차이는 있지만,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 역시 호부에서 배포한 저울추인데 측정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게에 차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sup>313)</sup>

호부는 월해관에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서역들이 농간을 부려서 상인과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취하기 위한

311)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據供稱從前領解銀兩時, 監督先一日兌齊. 職等照向例抽兌過十數封, 間有短少, 當時補足等語. 是領解之時, 并未當面逐封兌交解員, 止於四百五十餘鞘之內, 抽兌十餘封, 已有短少, 則其餘未經抽兌之各封, 自必俱有短少, 可以例推”.

312)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전략)... 恐該關特有添平一項, 暗中滋偷減之弊, 或家人與關胥銀匠串通舞弊, 監督受其愚弄而不知, 以致稅項虧短, ...(후략)... ”.

313)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臣等伏思, 該關起解稅課, 如果照依部頒法馬, 足數彈兌, 則到庫兌收, 何至短少銀六千四百八十餘兩之多. 若謂因備帶添平, 改作水腳解交所致, 則該關添平銀款, 已有每千兩核定十五兩之數, 與各關劃一支銷, 豈應獨有不敷, 尚須以別款貼補. 至水...腳一項, 原應全數節省歸公, 歷年以來, 該關於此內支出添平, 均經臣部節次核追. 今該監督以例應充公正項仍欲撥補添平之用, 牽混支銷, 殊屬不合. 況除此項銀四千五百七十餘兩之外, 尚短少銀一千九百有餘, 而較核所短銀數, 每千兩自八九兩至三四十兩不等. 如止系彈兌之手輕手重, 則各鞘短少銀兩, 即少有參差, 亦應不相上下, 何以多寡數目大相懸殊, 此不得讀之於一時手輕手重可知也”.

구실일 뿐이라고 공격하였다. 최종적으로 호부는 입초 작업에서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한 加鞞銀의 불부는 0.15%를 제외한 일체 지출을 허가해 주지 말 것을 건륭제에게 상주하였다.<sup>314)</sup>

월해관과 호부의 두 번째 충돌에서 건륭제는 호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건륭제는 입초 작업이 호부에서 배포한 저울추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설령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호부의 조사에 따르면 탄태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무게가 미달인 세수 꾸러미가 확인되었고, 입초 과정에서 이미 세수 꾸러미가 무게 규정에 미달하였다는 운송 책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세수 꾸러미를 포장하면서 이미 탄태 과정에서 침평 비용이 배정될 것을 계산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힐책하였다.<sup>315)</sup>

건륭제는 입초 작업에서 加鞞銀 1.5%를 추가하도록 한 규정은 전국의 權關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인데, 월해관에서만 예외 규정으로 수각은에서 벽초 침평은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절생수각은의 귀공도 權關에 일괄 적용하였는데, 오직 월해관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까닭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 결손 사건으로 불거진 월해관의 침평 문제는 월해관감독 德魁가 구두 질책을 받고, 결손액을 배상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행정 처분 없이 사안이 종결되었다. 이것은 양광총독 李侍堯의 적극적인 변호

---

314) 『粵海關志』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查各關收納稅銀, 均經臣部頒給法馬, 以此征收, 即以此解交, 是在關在庫交收雖異, 而所用部法馬則同, 並非另有解部兌收之法馬, 何必藉此爲詞, 另立名色, 致啟在關書役巧取浮收, 擾累商民之弊. 至鞞外加平銀兩, 臣部久經行令該關, 照各關之例, 畫一刪除在案, 自可毋庸再議”.

315)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33년 12월 1일, 故宮 403026638, “嗣後徵收稅餉, 飭令行商各口遵照部定章程, 傾足十兩之銀錠交納, 不得以碎銀添補, 致滋弊竇”.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李侍堯는 이번 사건에서 德魁의 과실은 없었고, 월해관의 오랜 陋例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德魁의 능력과 평판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건륭제의 명령에 대해 李侍堯는 “德魁의 사람됨은 세심하고, 사무 처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월해관 업무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서 상인과 백성들이 분쟁이 없고,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함으로써 德魁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16)</sup>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德魁는 건륭제에게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륭제는 德魁에 대해서 그 사람됨이 세심하여 재임 기간 별다른 실수가 없었으니, 월해관감독 직을 연임하게 하였다.<sup>317)</sup> 그리고 德魁는 건륭 42년(1777) 숨을 거둘 때까지 월해관감독 직을 연임하였다.<sup>318)</sup>

건륭 29년 절생수각은의 귀공 방침에서 시작된 월해관과 호부의 의견 대립은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의 결손 사건에서 마무리되었다. 호부는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한 두 차례의 저울추 무게 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權關의 처리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결과적으로 월해관은 對서양 무역 항구로서의 특례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각관체제로의 구심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3) 월해관의 ‘운송 총액’의 구성

건륭 31년분 세수 결손 사건을 거치면서 월해관의 收支와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월해관의 세수 회계에 대해 더욱 정

---

316) 李侍堯, 『奏爲遵旨覆奏事』, 건륭 33년 7월 16일, 故宮 403025534, “至監督德魁臣於去歲抵任後, 見其爲人小心, 謹飭辦理一切事, 務俱肯虛心, 向臣詢問臣開誠布告, 伊亦能領會 其經理權政按例徵收商民相安, 尙屬妥協 …(후략)…”.

317) 德魁, 『爲恭謝天恩仰祈睿鑒事』, 건륭 33년 10월 16일, 故宮 403026154, “…(전략)… 德魁管理粵海關已屆年滿, 因其人尙小心, 在任亦無過失. 是以仍令接管一年. …(후략)…”.

318) 楊景素, 『奏爲奏聞事』, 건륭 42년 12월 19일, 故宮 403033692, “…(전략)… 今病勢日重, 於十二月十六日戌刻病故. 除印信錢糧等項, 現經撫臣李質穎接收管理外 …(후략)…”.

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해관의 징수 총액에서 지출 항목을 제외한 영여은은 호부 수입으로 분류되어 호부에서 결산하였는데, 水脚銀, 部飯食銀과 같이 지출 항목으로 설정된 일부 항목은 歸公의 형태로 다시 호부 재정으로 귀속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징수총수 보고와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언급한 영여은이 호부 재정의 전부는 아니었다.

월해관 세수의 회계 결산과 세수 운송 과정을 통해 호부 재정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에 앞서 사료의 불안정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우선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 보고의 구성을 간략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19)</sup>

<도표 2-6> 월해관의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 구성

正稅項		雜稅項	
항목	금액	항목	금액
正項銀	294,180.212	雜項銀	305,940.600
正額銀	40,000	‘지출 총액’	121,900.468
銅觔水脚銀	3,564		
正羨銀	250,616.212	雜羨銀	184,040.132

건륭 31년분의 회계 연도는 건륭 30년 6월 26일부터 건륭 31년 6월 25일(1765년 8월 12일-1767년 7월 20일)이었고, 세수 결산은 건륭 32년 12월 22일(1767년 1월 22일)에 실시되었다. 건륭 31년분 징수 총액은 599,964.959량, 平餘等銀은 155.853량이였다. 正稅項에서 월해관의 正額銀과 銅觔水脚銀을 藩庫에 납부하고, 雜稅項에서 규정된 월해관 지출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盈餘銀 총액은 434,656.344량이였다.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 보고에서는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採辦貢品傳辦方物, 通關經費, 解部飯食銀, 解餉水脚, 鎔銷折耗, 並在關員役養廉工食”의 단일 항목으로 합쳐서 지출 총액만 기록하고 있다. 1장 3절에서 검토한 방식에 따라서 이를 단순화하면 ①월해관의 운영비(通關經費, 鎔

319) 德魁, 「奏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2년 12월 22일, 故宮 403023761.

銷折耗, 在關員役養廉工食), ②備貢銀(採辦貢品傳辦方物), ③部飯食銀(解部飯食銀), ④水脚銀(解餉水脚)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20)</sup> 월해관의 운영비는 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는 있겠지만, 이는 모두 실제로 지출되어 없어지는 항목이었고, 부반식은, 절생수각은, 비공은은 각각 호부와 내무부 재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이었다.<sup>321)</sup>

건륭 31년분 세수의 수각은은 18,002.287량 배정되었다. 이 중 입초 작업과 세수 운송에 소비하는 항목(인건비, 경비)과 함께 벽초 과정에서 지출하는 첩평은을 포함하여 7,606.823량을 지출하고 남은 절생분 10,395.464량을 반납 처리하여 호부 재정으로 결산하였다.<sup>322)</sup> 월해관의 수각은 산정 규정은 『粵海關志』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23)</sup>

영여은을 起解하고, 내무부 비공은을 운송하는 비용은 1,000량당 水脚銀 38兩 5錢을 지출한다.

이에 따르면 수각은은 영여은과 비공은의 3.85%를 배정하였는데, 우선 비공은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결산 과정에서 비공은 55,000량은 지출로 처리하여 내무부 재정으로 전환하고, 備貢銀 보고를 통해 별도의 결산 과정을 거쳤다. 건륭 31년분 비공은 보고에 따르면 承辦貢品方物 비용으로 약 22,064.4량을 지출한 나머지 약 7,935.5량과 裁存銀 25,000량의 총액 약 32,935.5량을 결산하였다.<sup>324)</sup> 규정에 따르면 건륭 31년분 수각은

320) 公用銀 300,000량은 도광 10년, 辦公銀 55,000량은 건륭 51년 신설되었으므로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의 지출 항목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321) 월해관의 운영비는 『粵海關志』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지급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직접 검증하는 것은 사료의 한계로 불가능하지만, 지출액은 규정에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322) 德魁, 「奏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2년 12월 22일, 故宮 403023761.

323)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3, “起解盈餘銀兩, 解內務府備貢等銀, 每千兩支水脚銀三十八兩五錢”.

324) 德魁, 「奏爲請旨事」, 건륭 32년 2월 17일, 第一 MR19, pp.2157-2158.; “承辦貢品四次級傳辦方物, 並解京運費等項, 實共支過銀二萬二千六十四兩四錢零, 俱

18,002.287량은 영여은과 비공은 절생분의 총액인 467,591.844량의 3.85%로 산정하였다.

건륭 31년분 영여은수목 보고에서는 부반식은 항목의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정에 근거하여 역으로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粵海關志』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25)</sup>

영여(은)을 기해하는 1,000량당 部飯食銀 29兩을 지출한다[기간이 차면 奏銷와 함께 운송한다].

부반식은 호부 재정을 회계 처리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행정 비용이었다. 지출 규정에 의하면 영여은의 2.9%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출 항목이 세분화되는 건륭 후기 이후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부반식은 영여은의 2.9%가 배정되는 것이 확인된다.<sup>326)</sup> 이에 따르면 건륭 31년분 영여은 434,656.344량의 2.9%인 약 12,605.033량일 것으로 추정된다.<sup>327)</sup>

건륭 31년분 세수의 세부 항목에 대한 광동순무 李侍堯의 설명을 통해 몇

經遵例，按次造冊咨送養心殿造辦處，查核在案。核之應支三萬兩之數計節省銀七千九百三十五兩五錢零。…(중략)… 今粵海關三十一年分節省前項銀七千九百三十五兩五錢零，及裁存銀二萬五千兩，是否仍交阿里袞查收之處，理合恭摺具奏請旨”。

325)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3, “起解盈餘每千兩，支解部飯食銀二十九兩[年滿隨同奏銷批解]。起解盈餘銀兩，解內務府備貢等銀，每千兩支水腳銀三十八兩五錢”。

326) 가경 7년 12월 12일에 이루어진 癸亥年分の 영여은수목 보고를 살펴보면, 癸亥年分 세수의 정잡영여은 1,321,672.383량으로 부반식은 2.9%인 38,328.499량이 지출되었다(三義助, 「奏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가경 7월 12월 12일, 明清宮藏 5, pp.2513-2519).

32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건륭 31년분 월해관의 지출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7> 건륭 31년분 월해관 지출 항목표

항목	① 운영비	② 비공은	③ 부반식은	④ 수각은
금액	36,293.147	32,935.5	12,605.034	18,002.287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28)</sup>

감독 德魁와 臣(李侍堯)이 함께 이를 조사하였는데, 添補해야 하는 은량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륭 31년 영여은을 起解하여 심사하고자 호부에 咨文을 보내며 (침평은은) 수각은에서 공제하여 호부에 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起解가 시작된 이후 수각은 항목에서 입초 작업에서 보충하는 불부는 1兩 5錢만을 인정하고, 部庫 1,000량 당 보평은 10兩, 내무부 1,000량 당 20兩은 지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호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 德魁와 臣 李侍堯는 참작하여 解員 周自邠 등에게 본래 지출하기로 한 (호부) 침평은 4,576兩 5錢 6分 9釐, 내무부 침평은 658兩 7錢 1分 1釐를 수각은 항목으로 되돌려 解交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李侍堯는 北京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저울추 무게 조정에서 호부 재정에 1%와 내무부 재정에 2%의 벽초 침평은을 수각은 항목에서 지출하였지만, 호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호부 벽초 침평은 4,576.569량과 내무부 벽초 침평은 658.711량을 절생수각은으로 되돌려서 호부 재정으로 귀공 처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건륭 31년분에서 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한데, 호부 재정은 457,656.9량, 내무부 재정은 32,935.55량이었다.<sup>329)</sup>

그런데 李侍堯의 설명에서 호부 재정 457,656.9량은 영여은수목 보고에서 언급된 영여은 434,656.344량과 차이가 있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를

---

328)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33년 7월 16일, 故宮 403025538, “又經監督德魁會同臣查明前項, 應需添補銀兩實無浮冒, 咨部核銷於起解乾隆三十一年盈餘銀兩, 仍照數於水脚銀內扣除解部甫經起解施准部覆, 止准於水脚項下撥補入鞘不敷銀一兩五錢, 其部庫每千兩補平銀十兩, 內務府每千兩補平銀二十兩, 仍不准銷. 是以監督德魁與臣李侍堯酌行令解員周自邠等, 將原支添平銀四千五百七十六兩五錢六分九釐, 內務府添平銀六百五十八兩七錢一分一釐, 仍歸入水脚項下解交”.

329) 德魁, 『奏爲請旨事』, 건륭 32년 2월 17일, 第一 MR19, pp.2157-2158.

종합하면 영여은 외에 지출 항목으로 처리된 부반식은과 절생수각은이 귀공 처리되면서 호부 재정으로 반납되었으므로, 호부의 재정은 ‘영여은+부반식은+절생수각은’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李侍堯가 설명한 호부 재정은 영여은수목 보고에 영여은, 부반식은, 절생수각은의 총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내무부 재정도 비공은 절생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세수 운송의 준비를 위한 입초 작업에서 부반식은과 절생수각은은 호부 재정으로서 세수 꾸러미로 포장되었다. 周自邠의 진술에 따르면 월해관에서 운송한 건륭 31년분 세수는 입초 작업을 거쳐서 모두 “450여 꾸러미”로 꾸러졌다.<sup>330)</sup> “450여 꾸러미”는 호부의 영여은, 부반식은, 절생수각은의 총액인 457,656.844량과 거의 일치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내무부 재정 역시 입초 작업을 거쳐서 세수 꾸러미로 밀봉하여 내무부에 전달되었을 텐데, 세수 꾸러미의 포장 규정에 따르면 비공은 32,935.5량은 33개 꾸러미로 꾸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 재정으로 분류된 비공은은 호부 재정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되었다.

월해관의 수각은 비중이 3.85%를 차지한 것은 관세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北京의 彈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다. 호부가 수각은에서 벽초 첨평은 비용의 지출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權關의 수각은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한 것은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건륭제 역시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유를 내리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건륭 31년 세수 결손 사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제공하는 정보를 정리하면, 1년 동안 正稅와 雜稅로 징수한 관세의 총액이 ‘징수 총액’이다. 징수 총액에서 규정된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盈餘銀’이다. 그런

330)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5, 건륭 33년 8월 23일 戶部奏 “...(전략)...是領解之時, 並未當面逐封兌交解員, 止於四百五十餘鞘之內, 抽兌十餘封, 已有短少. ...(후략)...”. 호부에 납부하는 건륭 31년분 세수는 457,656.842량이었다. 1,000량에 미달하는 우수리 금액은 1,000량에 미달하더라도 관계없이 단독 꾸러미로 포장하였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458개였을 것이다.

데 징수 총액에서 지출로 처리된 항목 중 부반식은과 수각은의 절생분, 비공은 절생분은 호부에 반납해야 하였기 때문에 영여은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되었다. 따라서 월해관 세수는 호부 재정(영여은, 부반식은, 수각은의 절생분)과 내무부 재정(비공은 절생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의 총액이 北京으로 운송되는 ‘운송 총액’으로 분류한다.

다만 수각은이 영여은과 비공은의 3.85%로 산정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반식은과 수각은의 절생분은 호부의 정규 재정이 아니라, 지출 처리된 항목의 절생분을 반납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부와 내무부의 정규 재정인 영여은과 비공은 절생분은 ‘세수 총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8> 월해관 건륭 31년분 세수의 구성

항목	금액	비고
징수 총액	599,964.959	1년 동안 징수한 총액(正稅 + 雜稅)
영여은	434,656.344	징수 총액 - 지출 항목
호부 재정	457,656.841	영여은 + 부반식은 + 절생수각은
내무부 재정	32,935.500	비공은
세수 총액	467,591.844	영여은 + 비공은
운송 총액	490,592.341	호부 재정 + 내무부 재정

### 3. 水脚銀 비중의 비교

#### 1) 粵海關

월해관의 수각은이 세수 총액(호부 재정과 내무부 재정)의 3.85%로 배정된 것은 다른 權關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월해관의 높은 수각은 비중이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면, 다른 權關의 실제 운송비 산정 과정을 분석하여 수각은 비중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전국의 權關 중에서 그 성격과 위치에 따라서 세 그룹

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는 太平關이다. 태평관은 내지 통과세를 관리하는 常關으로서 광동성에 위치하여 월해관과 동일한 세수 운송 경로를 이용하였고, 동일한 행정 계통을 통해 처리되었다. 두 번째는 閩海關이다. 민해관은 복건성에 위치하여 對남양 통상 항구로 운영되었던 대외 무역항이었고, 北京으로부터 거리가 粵海關과 크게 차이도 없었다. 세 번째는 南新關과 北新關이다. 南·北新關은 장강 이남에 위치한 常關으로서 위치상으로 비교적 北京과 가까웠고, 내지 통과세를 담당했던 常關이었다.

이 세 그룹의 각관이 실제 지출하는 운송비와 운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한 후에 월해관의 높은 수각은 비중이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를 반영한 월해관의 특수성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월해관의 운송비 산정 규정을 살펴보면, 『粵海關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31)</sup>

京餉과 協餉은 육로와 수로로 구분된다[광동성에서 京師까지 모두 56개의 역참하고 5리이다. 복건성까지 모두 21개의 역참하고 36리이다. 광서성까지 모두 14개의 역참하고 70리이다. 귀주성까지 모두 46개의 역참이다. 운남성까지 모두 56개의 역참하고 65리이다]. 운송하는 은은 10,000량당 역참마다 수각은 3錢을 지급한다. 英德縣에서 始興縣에 이르기까지 수로는 10,000량당 역참마다 수각은 5分을 추가 지급한다. 운송하는 시기가 겨울과 봄에 이르면 10,000량당 역참마다 수각은 5分을 추가 지급한다. 운송하는 세수 1,000량당 재주조 비용과 세수 꾸러미 포장 비용으로 6錢을 지급한다. 만약 재주조가 필요 없는 경우 鞞箍銀 3錢만을 지급한다.

331) 『粵海關志』 卷16, 「經費」, p.324, “起解京餉協餉, 分由水陸程. 自省至京計五十六站零五釐, 至福建省計二十一站零三十六裏, 至廣西省計一十四站零七十釐, 至貴州省計四十六站, 至雲南省計五十六站零六十五釐. 所解餉銀, 按每萬兩每站給水腳銀三錢. 經由英德縣至始興縣, 水程按每萬兩每站增給水腳銀五分. 凡解餉時, 值冬春, 按每萬兩每站增給水腳銀五分. 每解餉銀千兩, 給傾鑄稍箍銀六錢. 如不需傾鑄, 只給稍箍銀三錢.”

월해관의 세수 운송비는 세수 꾸러미의 개수와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우선 입초 작업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세수 꾸러미의 포장 작업, 운송 준비 과정, 고평은의 재주조 등의 항목으로 지출하는 鞞篋銀이 있었다. 초잡은은 수각은에서 지출되는 정식 항목이었고, 세수 꾸러미의 개수를 기준으로 지출하였다. 세수 꾸러미 1개의 포장 단위의 무게는 1,000량이었고, 그 외에 1,000량 미만의 우수리 금액도 단독 꾸러미로 포장하였다.

규정에서는 재주조할 필요가 없는 은정이라면 0.03%만 지출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월해관에서 운송하는 세수는 모두 행상이 재주조한 은정이었으므로 이 제한 조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부의 규정에서도 廣州에서 北京까지 역로를 이용한 세수의 운송비에서 초잡은으로 0.06%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큰 제약 없이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sup>332)</sup>

다음으로 운송 거리에 따른 비용은 통과하는 역참의 수를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다만 『粵海關志』에는 廣州에서 北京까지 모두 “56개 역참과 5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실제 廣州에서 北京까지 이용한 세수 운송로는 사료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大清會典則例』에 따르면 56개를 훨씬 초과한 최소한 78개 이상의 역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세수의 운송로는 육로와 수로에 따라서 이동 거리와 역참의 개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32) 『大清會典則例』, “廣東起解京協餉, 給與勘合夫馬傾鎔元寶掣備鞞篋每千兩給銀六錢, 水脚費每站每萬給銀三錢冬春增給五分惟英德縣至始興縣水路五百里撐駕維艱每站增給五分”.

<도표 2-9> 北京-廣州 세수 운송로<sup>333)</sup>

	수로	육로
직예성	(40)通州 潞河驛 - (85)通州 和合驛 - (70)武清縣 河西驛 - (60)武清縣 楊村驛 - (60)天津縣 楊青驛 - (75)靜海縣 奉新驛 - (90)青縣 流河驛 - (70)青縣 乾寧驛 - (70)滄州 甄河驛 - (70)南皮縣 新橋驛 - (70)吳橋縣 連窩驛	(70)良鄉縣 固節驛 - (70)涿州 涿鹿驛 - (60)新城縣 汾水驛 - (70)雄縣 歸義驛 - (70)任邱縣 鄭城驛 - (70)河間縣 瀛海驛 - (60)獻縣 樂城驛 - (40)交河縣 富莊驛 - (40)阜城縣 阜城驛 - (50)景州 東光驛
산동성	(70)德州 良店驛 - (70)德州 安德驛 - (70)德州 梁家莊驛 - (90)武城縣 甲馬營驛 - (70)臨清州 渡口驛 - (70)臨清州 清源驛 - (60)清平縣 清陽驛 - (60)聊城縣 崇武驛 - (90)陽穀縣 荊門驛 - (60)東平州 安山驛 - (60)汶上縣 開河驛 - (90)濟寧州 南城驛 - (80)魚臺縣 河橋驛	(60)德州 安德驛 - (70)恩縣 太平驛 - (70)高唐州 魚邱驛 - (70)茌平縣 茌山驛 - (60)東阿縣 銅城驛 - (50)東阿縣 舊縣驛 - (60)東平州 東原驛 - (60)汶上縣 新橋驛 - (50)滋陽縣 新嘉驛 - (40)滋陽縣 昌平驛 - (50)鄒縣 邾城驛 - (51)鄒縣 界河驛 - (40)滕縣 滕陽驛 - (66)滕縣 臨城驛
강남성	(120)沛縣 泗亭驛 - (110)山東嶧縣 萬家驛 - (90)江南邳州趙村驛 - (120)宿遷縣 鍾吾驛 - (60)桃源縣 古城驛 - (60)桃源縣 桃源驛 - (60)清河縣 清口驛 - (60)山陽縣 淮陰驛 - (80)寶應縣 安平驛 - (60)高郵州界首驛 - (60)高郵州孟城驛 - (66)甘泉縣 邵伯驛 - (45)江都縣 廣陵驛 - (80)儀徵縣 儀徵驛 - (100)上元縣 龍江驛 - (120)安徽 當塗縣 采石驛 - (80)蕪湖縣 櫓港驛	(68)銅山縣 利國驛 - (90)銅山縣 東岸驛 - (50)銅山縣 桃山驛 - (40)宿州 夾溝驛 - (70)宿州 睢陽驛 - (50)宿州 大店驛 - (70)靈璧縣 固鎮驛 - (60)鳳陽縣 王莊驛 - (60)鳳陽縣 濠梁驛 - (60)鳳陽縣 紅心驛 - (45)定遠縣 定遠驛 - (45)定遠縣 張橋驛 - (60)合肥縣 護城驛 - (45)合肥縣 店埠驛 - (40)合肥縣 金斗驛 - (45)合肥縣 派河驛 - (60)舒城縣 三溝驛 - (60)舒城縣 梅心

333) 표는 건륭본 『대청회전칙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문제는 강서성 역로의 육로에 관한 서술에서 “江西省 德化縣 潯陽驛에서 南昌縣 南浦驛까지 370리”가 불분명하다. 서술에만 따르면 심양역에서 남포역까지 440리이다. 옹정본 『大清會典』에서는 “(40)德化縣 潯陽驛 - (60)德化縣 通遠驛 - (60)德安縣 德安驛 - (62)建昌縣 新興驛 - (80)安義縣 安義驛 - (70) 奉新縣 奉新驛 - (65)高安縣 高安驛 - (80)清江縣 蕭灘驛”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경본 『大清會典事例』에서는 “(50)德化縣 潯陽驛 - (60)德化縣 通遠驛 - (60)德安縣 通安驛 - (60)建昌縣驛 - (120)南昌縣 南浦驛 - (120)高安縣 高安驛 - (80)清江縣 清江驛”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建昌縣 60리의 역참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건륭본 『대청회전칙례』의 강서성 역로에 관한 서술에서는 역로의 총 거리가 3,225리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합계는 3,165리이다. 建昌縣을 추가하면 정합한다.

	(90)繁昌縣 荻港驛 - (60)銅陵縣 銅陵驛 - (90)貴池縣 貴池驛 - (120)懷甯縣 同安驛 - (90)東流縣驛	(60)桐城縣 呂亭驛- (60)桐城縣 陶衝驛 - (60)潛山縣 青口驛 - (60)太湖縣 小池驛 - (60)宿松縣 楓香驛
호북성	X	(60)黃梅縣 停前驛 - (50)黃梅縣 在城驛 - (50)黃梅縣 孔壠驛
강서성	(120)彭澤縣 龍城驛 - (90)湖口縣 彭蠡驛 - (90)南康府 星子縣 在城驛 - (270)南昌府 南昌縣 南浦驛	(50)德化縣 潯陽驛 - (60)德化縣 通遠驛 - (60)德安縣 德安驛 - (60)建昌縣 新興驛 - [(80)安義縣 安義驛, - (40)奉新縣 奉新驛 -(80)高安縣 高安驛]- (120)南昌府 南昌縣 南浦驛
	(120)豐城縣 劍江驛 - (90)臨江府 清江縣 清江鎮驛 - (60)新淦縣 金川驛 - (70)峽江縣 玉峽驛 - (100)吉水縣 白水驛 - (40)吉安府 廬陵縣 在城驛 - (90)泰和縣 白下驛 - (110)萬安縣 五雲驛 - (130)贛州府 攸鎮驛 - (120)贛縣 烏鎮驛 - (80)南康縣 南埜驛 - (60)大庾縣 小溪驛 - (60)南安府 大庾縣 橫浦驛	
廣東省	(115)南雄府 保昌縣 凌江驛 - (100)始興縣 在城驛 - (200)曲江縣 芙蓉驛 - (300)英德縣 滙陽驛 - (210)清遠縣 安遠驛 - (200)三水縣 西南驛 - (170)廣州府 番禺縣 五仙驛	

육로와 수로에 따라서 이동 거리와 역참의 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육로 운송로는 ①良鄉縣 固節驛에서 景州 東光驛에 이르는 600리의 직예성 역로의 10개 역참, ② 滕縣 臨城驛에서 德州 安德驛에 이르는 797리의 산동성 역로 14개 역참, ③ 銅山縣 利國驛에서 宿松縣 楓香驛에 이르는 1,318리의 강남성 역로 23개 역참, ④ 黃梅縣 停前驛에서 黃梅縣 孔壠驛에 이르는 160리의 호북성 역로 3개 역참, ⑤ 德化縣 潯陽驛에서 南安府 大庾縣 橫浦驛에 이르는 1,500리의 강서성 역로 21개 역참, ⑥ 南雄府 保昌縣 凌江驛에서 廣州府 番禺縣 五仙驛에 이르는 1,295리의 광동성 역로 7개 등 최소 76개의 역참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수로 운송로는 ① 通州潞河驛에서 吳橋縣 連窩驛에 이르는 760리의 직예성 역로 11개 역참, ② 德州 良店驛에서 魚臺縣 河橋驛에 이르는 940리의 산동성 역로 13개 역참, ③ 沛縣 泗亭驛에서 東流縣驛에 이르는 1,821리의 강남성 역로 22개 역참, ④ 彭澤縣 龍城驛에서 南安府 大庾縣 橫浦驛에 이르는 1,130리의 강서성 역로 17개 역참, ⑤ 南雄府 保昌縣 凌江驛에서 廣州府 番禺縣 五仙驛에 이르는 1,295리의 광동성 역로 7개 역참 등

최소 70개의 역참의 존재가 확인된다.

廣州에서 北京까지 역로로 보면 육로는 대략 5,670리, 수로는 대략 6,516리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粵海關志』의 “56개 站과 5리”의 표현은 육로 역로의 역참 사이 거리를 100리로 단순화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해관보다 비교적 北京에 근접해 위치한 閩海關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sup>334)</sup>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 역참당 0.003%를 지급하였다. 여기에 운송 환경이 혹독한 겨울과 봄에는 0.0005%,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 0.0005%를 추가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었다. 세수의 운송비 산정에서 계절과 역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는 월해관 세수의 실제 운송 경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이를 추적하는 작업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여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광동성 역로의 경우 英德縣에서 始興縣까지의 약 500리의 역로가 수로였다는 점과 육로와 수로 모두 廣東省 廣州府 番禺縣의 五仙驛에서 출발하여 江西省 南昌府 南昌縣의 南浦驛까지 단일 운송로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南浦驛에서 北京에 이르기까지 이용한 세수 운송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 변수를 감안하여 월해관에서 北京까지의 실제 운송 경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운송 경비 최소치는 여름·가을, 육로, 역참 78개를 기준으로 0.234%, 최대치는 겨울·봄, 수로, 역참 78개 기준으로 0.312%이고, 여기에 초잡은 0.06%를 각각 합치면 0.294~0.372%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정 범위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또한 건륭 29년 세수 운송 방식이 개혁된 이후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까지

---

334) 복주-북경의 역로의 거리는 육로 4,872리, 수로 5,226리였고, 정확히 경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모두 71개의 역참을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거리상으로 월해관보다 육로 800리, 수로 1,290리 가까운 福州의 경우에도 71개의 역참을 통과하였으므로 월해관이 이보다 적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포함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륭 29년의 개혁은 절생수각은의 歸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실제 운송비에 현격한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추정치에는 추가적으로 北京에서의 체류 비용과 귀향 비용과 함께 입초 침평은 0.15%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면 대략 0.444~0.522%가 지출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월해관에서 배정한 수각은에서 절생수각은을 제외한 실제 운송 경비의 비중을 사료로 확인해 보겠다. 호부의 절생수각은 귀공 조치 전후 수각은, 실제 운송비, 절생수각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35)</sup>

<도표 2-10> 건륭 28년분~건륭 33년분 월해관의 수각은 구성

	영여은	비공은	수각은	비율	지출	비율	절생분	비율
건륭 28년분	258,468.983	25,000.000	10,913.556	3.85	4,839.950	1.7	6,073.606	2.14
건륭 29년분	316,774.303	35,581.400	13,565.691	3.85	5,926.348	1.68	7,639.343	2.16
건륭 31년분	434,656.340	32,935.604	18,002.287	3.85	7,606.823	1.62	10,395.464	2.22
건륭 32년분	377,336.720	25,000.000	15,489.963	3.85	2,141.382	0.53	13,348.581	3.31
건륭 33년분	384,318.340	25,000.000	15,758.756	3.85	2,172.017	0.53	13,586.739	3.31

위의 표는 奏銷摺을 근거로 실제 지출과 歸公한 절생분을 정리한 것으로 이미 확인 것과 같이 수각은은 세수 총액(盈餘銀+備貢銀)의 합에 3.85%로 산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건륭 28년분부터 건륭 31년분까지 수각은에서

335) 方體浴,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29년 11월 15일, 故宮 403019136; 蘇昌·方體浴, 『奏爲請旨事』, 건륭 29년 4월 11일, 第一 MR19, pp.1949-1950; 方體浴,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30년 11월 21일, 故宮 403021928; 李侍堯·方體浴, 『奏爲請旨事』, 건륭 30년 윤2월 23일, 故宮 403019924; 德魁,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2년 12월 22일, 故宮 403023761; 德魁, 『爲請旨事』, 건륭 32년 2월 17일, 第一 MR19, pp.2157-2158; 德魁,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3년 12월 21일, 商務檔案(3), pp.1696-1697; 李侍堯·德魁, 『爲請旨事』, 건륭 33년 2월 21일, 第一 MR19, pp.2214-2216; 德魁,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4년 10월 28일, 第一 MR19, pp.2420-2422; 李侍堯·德魁, 『奏爲請旨事』, 건륭 34년 3월 19일, 第一 MR19 pp.2290-2291.

실제 운송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6~1.7% 수준이었다.

건륭 31년분의 세수 결산은 호부의 세수 운송 방식의 개혁 이전 월해관의 실제 운송비 산정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데, 건륭 31년분은 운송비 7,606.823량 중 호부와 내무부의 벽초 침평은으로 총액 5,235.28량을 지출하였다.<sup>336)</sup> 따라서 실제 운송비로 지출한 금액은 2,371.543량이었고, 대략 0.5% 수준이었다. 호부는 수각은에서 입초 침평은 0.15%를 지출할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약 0.35%가 실제 운송비로 지출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각은에서 입초 침평은 0.15%를 제외한 벽초 침평은의 지출이 금지된 건륭 32년분부터 약 0.53% 수준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입초 침평은 0.15%를 제외하면 약 0.38%가 실제 운송비로 지출된 셈이었다. 월해관의 수각은 3.85%는 실제 운송비에 필요한 0.35~0.38%의 비용보다 10배에 가깝게 높은 비율의 수각은을 배정한 셈이었다.

## 2) 太平關

광동성에 위치한 太平關은 월해관과 동일한 운송 경로를 통해 北京으로 세수를 운송하였다.<sup>337)</sup> 태평관의 주소점은 지출 항목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각은의 산정 방식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건륭 29년 절생수각은의 귀공 이후 태평관의 수각은 규모를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륭 29년분 영여은수목 보고(관기: 건륭 28년 정월 21일 ~ 건륭 29년 정월 20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8)</sup>

<sup>336)</sup> 李侍堯,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33년 7월 16일, 故宮 403025538.

<sup>337)</sup> 『大清會典則例』, “廣東起解京協餉, 給與勘合夫馬傾鎔元寶掣備鞞每千兩給銀六錢, 水脚費每站每萬給銀三錢冬春增給五分惟英德縣至始興縣水路五百里撐駕維艱每站增給五分”.

<sup>338)</sup> 明山, 『奏爲恭報太平關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29년 8월 16일, 故宮 403018486.

<도표 2-11> 태평관 건륭 29년분 세수 보고

태평관 관세				南雄府 夫料·木稅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正額銀	52,675.175	영여은	73,309.673	정액은	650.000
工食銀	186.000	不敷銀	1,610.714	영여은	1,951.492
납부	52,489.180	실존은	71,698.959		

태평관의 정액은 52,675.175량이었고, 여기서 지출 항목 工食銀 186량을 제외한 52,489.18량을 매년 관기가 종료된 후 藩庫에 납부하였다. 그리고 정액을 초과한 영여은 73,309.673량이 北京으로 운송되는 항목이었다. 태평관은 南雄府의 夫料·木稅를 帶徵하는 업무를 겸관하였는데, 南雄府의 정액은 650량이고 이를 藩庫에 납부한 후 영여은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태평관의 영여은과 함께 北京으로 운송되었다.

태평관의 운영 경비는 正稅와 雜稅에서 10%의 火耗를 징수하여 충당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영여은에서 不敷銀 항목으로 추가 지출하였다.<sup>339)</sup> 태평관의 수각은에 대해 광동순무 明山이 “필요한 경비와 운송비는 예에 따라서 火耗 항목에서 지출하고, 부족한 금액은 영여은에서 메웠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볼 때 불부은과 수각은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40)</sup>

태평관은 호부의 고평과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침평은 2%를 지출하였다. 하지만 호부에서 인정한 입초 침평은의 지출은 1.5%뿐이었으므로 나머지 0.5%는 정식 지출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었고, 火耗에서 1.5%를 정식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0.5%는 수각은 항목의 절생분에서 처리하였다.<sup>341)</sup> 아마도 이 비용은 모두 불부은의 형식으로 영여은에

339) 태평관은 건륭 29년분 세수에서 火耗 12,539.319량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정액은과 영여은의 총액 125,984.848량의 10%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다.

340) 明山, 『奏爲解送關稅節省銀遵例恭摺奏聞使』, 건륭 29년 10월 19일, 故宮 403018918, “竊照太平關徵收稅耗遞年解送進京, 俱委令佐雜弁員帶兵護送, 向不經由驛遞, 所需經費水脚, 照例於火耗項下動支, 不敷之數於盈餘項內撥補”.

341) 王檢, 『爲奏明事』, 건륭 31년 10월 19일, 第一 MR19, pp.2095-2096, “竊照太

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31년분 태평관 세수는 기존의 처리 방식대로 불부은의 지출 항목으로 침평은 0.5%를 지출 처리하였다. 하지만 호부는 수각은에서 세수 포장 작업과 운송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 지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불부은으로 침평은 0.5%를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건륭 31년분 세수의 영여은 보고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42)</sup>

<도표 2-12> 건륭 31년분 태평관 세수 보고

태평관 관세				남옹부 夫料·木稅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정액은	52,675.175	영여은	72,528.266	정액은	650.00
工食銀	186.000	不敷銀	1,643.718	영여은	3,289.791
실존은	52,489.18	실존은	70,884.548		

호부는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지출한 침평은 0.5%를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수각은에서 지출 처리한 태평관 영여은의 침평은 356.689량과 남옹부 부료·목세의 영여은 15.243량의 지출이 취소되었다.<sup>343)</sup> 이 사안은 건륭 31년 10월 19일 광동순무 王檢은 지출이 취소된 항목을 전액 복경으로 補解하고, 절생수각은 1,059.84량을 호부에 반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sup>344)</sup>

태평관의 수각은 비중은 사료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태평관의 실제 운송비 산정 방식은 월해관과 동일하였고, 절생수각은은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역으로 수각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건륭 29년 이후 태평관의 호부 납부액, 절생수각은, 그리고 절생수각은이 전체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45)</sup>

平關起解盈餘銀兩，向例每千兩加添平銀二十兩，係在火耗銀內動支，如耗銀不敷，即於盈餘銀兩動撥添補”.

342) 王檢,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1년 6월 2일, 第一 MR19, pp.2059-2061.

343) 王檢, 「爲奏明事」, 건륭 31년 10월 19일, 第一 MR19, pp.2095-2096.

344) 王檢, 「爲遵例具奏事」, 건륭 31년 10월 19일, 第一 MR19, pp.2093-2094.

<도표 2-13> 건륭 29년 이후 태평관 세수 중 절생수각은 비중

	태평관 영여은	불부은	남옹부 영여은	세수 총액	절생수각은	비중 (%)
건륭 21년분	74,471.249	1,505.793	2,106.287	75,071.743		
건륭 29년분	73,309.673	1,610.714	1,951.492	73,650.451	1,044.86	1.4186
건륭 30년분	73,011.430	1,596.948	2,432.345	73,846.827	1,052.35	1.4250
건륭 31년분	72,528.266	1,643.718	3,289.791	74,174.339	1,059.84	1.4288
건륭 32년분	72,047.362	1,244.489	3,876.080	74,678.953	1,052.35	1.4091
건륭 33년분	72,806.728	1,221.918	3,151.974	74,736.784	1,052.35	1.4080
건륭 34년분	72,696.576	1,259.946	3,569.740	75,006.370	1,059.84	1.4129
건륭 35년분	72,092.399	1,268.486	4,447.961	75,271.874	1,059.84	1.4080
건륭 36년분	73,225.125	1,185.603	5,147.676	77,187.198	1,067.33	1.3827

345) 鶴年, 「爲恭報太平關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21년 윤9월 16일, 故宮 403012916; 明山, 「奏爲恭報太平關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29년 8월 16일, 故宮 403018486; 明山, 「奏爲解送關稅節省銀遵例恭摺奏聞使」, 건륭 29년 10월 19일, 故宮 403018918, 明山, 「奏爲恭報太平關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0년 6월 27일, 故宮 403020853; 王檢, 「奏爲遵例具奏事」, 건륭 30년 9월 10일, 故宮 403021392; 王檢,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1년 6월 2일, 第一 MR19, pp.2059-2061; 王檢, 「爲遵例具奏事」, 건륭 31년 10월 19일, 第一 MR19, pp.2093-2094; 王檢,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2년 6월 27일, 第一 MR19, pp.2200-2201; 李侍堯, 「奏爲遵旨具奏事」, 건륭 32년 10월 8일, 故宮 403023092; 鐘音,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3년 5월 15일, 故宮 403025029; 鐘音, 「奏爲遵旨具奏事」, 건륭 33년 9월 23일, 故宮 403025972; 鐘音,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4년 5월 26일, 第一 MR19, pp.2331-2332; 鐘音, 「奏爲遵旨具奏事」, 건륭 34년 8월 9일, 第一 MR19, pp.2380-2381; 德保,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5년 5월 4일, 第一 MR19, pp.2507-2508; 德保, 「奏爲遵旨具奏事」, 건륭 35년 7월 2일, 第一 MR19, pp.2545-2546; 德保, 「奏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36년 4월 16일, 第一 MR19, pp.2701-2702.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건륭 31년분부터 수각은에서 침평은 0.5%의 지출 항목이 취소되었음에도 절생수각은의 비중이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건륭 29년분 이후의 수치가 모두 호부의 세수 운송 방식의 개혁된 이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침평은 0.5%의 지출 금지가 절생수각은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 대신 태평관의 영여은에서 지출하던 불부은이 0.5% 감소하였다. 그 동안 태평관에서 침평은 2%를 지출하였음에도 회계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호부에서 정식 지출로 인정한 침평은 1.5% 외에 나머지 침평은 0.5%를 수각은 항목으로 돌려서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호부에 이것이 적발되면서 영여은에서 수각은의 불부은으로 지출하던 0.5%의 지출이 취소되었다.

다음으로 태평관은 월해관과 동일한 결산 절차와 운송 경로를 이용하였으므로 양자의 실제 운송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륭 29년 節省水脚銀의 귀공 조치가 있기 이전에 태평관의 수각은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로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월해관과 마찬가지로 조치의 전후로 현격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廣州에서 北京으로 세수를 운송하는데 지출하는 실제 운송비의 비중은 0.35~0.38%를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면 절생수각은, 침평은 0.5%, 실제 운송 경비를 합치면 태평관의 수각은이 될 것이고, 표에 따르면 절생수각은은 운송 총액의 1.38~1.42% 수준이었고, 태평관의 수각은은 아마도 1.8%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건륭 29년 호부의 세수 운송 방식의 개혁 이전에는 침평은 0.5%의 지출을 포함하여 2.3%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월해관의 수각은 비중이 3.85%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월해관의 경우 탄태 과정에서 호부 벽초 침평은 1%와 내무부 벽초 침평은 2%를 지출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평관의 수각은 비중은 월해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閩海關

閩海關은 一口通商이 결정된 이후 對서양 무역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南洋 및 일본과의 대외 무역, 그리고 내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해관 역시 건륭 29년 세수 운송이 驛遞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어 절생수각은의 귀공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민해관의 수각은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福州에서 北京까지 역로를 이용한 실제 운송비 산정에 관한 호부의 규정은 세수 꾸러미 운송 준비 작업에 지급하는 鞞籜銀 0.03%와 통과하는 역참당 0.004%였다. 호부의 명령에 따라서 민해관의 운송 방식을 전환하면서 최초로 논의된 방식은 岷도아문에서 坵折銀을 北京으로 운송하는 예에 따라 鞞籜銀 0.06%, 운송비는 겨울과 봄 기준으로 역참마다 0.0045%를 책정하자는 복건순무 定長의 주장이 있었다.

이는 양희염정 高恒의 예에 따른다는 호부안에 따라 민해관의 염세 운송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해관 책임자였던 복주장군 明福은 운송비가 과다 책정된 측면을 지적하며 岷도아문의 염세 운송 방식이 아닌, 錢糧의 운송비 책정에 관한 호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明福의 방식이 채택되었다.<sup>346)</sup>

민해관 역시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지출 항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sup>347)</sup> 다만, 세수 총액과 운송 총액이 확인 가능하고, 수각은 산정 규정과 실제 운송 경비, 절생수각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해관의 수각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륭 29년분(관기: 건륭 28년 7월 16일~건륭 29년 7월 15일) 민해관 奏銷摺을 살펴보면 관세의 징수 총액은 356,822.886량이었다.<sup>348)</sup> 민해관은 藩庫

346) 明福, 「奏爲奏明事」, 건륭 29년 8월 20일, 故宮 403018545.

347) 민해관의 보고는 분기마다 실시되었는데, 문제는 3/4분기·4/4분기 보고는 題本으로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해관은 併封平餘·漏稅罰料·書役截曠 항목의 규모가 월해관보다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항목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에 납부해야 하는 正額銀 66,549.546량이 있었는데, 銅觔水脚銀 7,000량은 번고에 납부하지 않고 영여은과 함께 호부로 직접 起解하였다.<sup>349)</sup>

징수 총액에서 정액은 제외하고, 민해관의 운영 경비와 部飯食銀을 제외한 영여은은 273,043.26량이었다. 수각은은 세수 총액의 1.1%로 규정되었으므로 3,003.47량이 배정되었다. 明福의 보고에 따르면 민해관의 부반식은 7,820.25량이었고, 따라서 민해관의 운송 총액은 영여은, 부반식은, 절생수각은의 총합인 283,006.34량이었고, 모두 284개의 세수 꾸러미로 포장되었다.

민해관의 운송비 책정 방식은 우선 세수 꾸러미를 포장하고 운송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명목으로 세수 꾸러미당 0.03%의 鞞籜銀을 배정하여 85.2량이 지출되었고, 운송 거리에 따른 운송비는 운송 총액을 기준으로 역참당 0.004%가 책정되어 71개의 역참을 기준으로 0.284%인 775.44량이 지출되었다. 건륭 29년분 민해관 세수의 운송 실제 비용은 총 860.64량이었고, 수각은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2,142.83량이 절생수각은의 항목으로 호부로 歸公되었다.<sup>350)</sup>

明福은 역로에서 통과하는 역참을 71개로 설명하고 있다. 복건성 역시 육로와 수로의 구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거리와 역참의 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14> 北京-福州 세수 운송로<sup>351)</sup>

	수로	육로
직예성	(40)通州 潞河驛 - (85)通州 和合驛 - (70)武清縣 河西驛 - (60)武清縣 楊村驛 - (60)天津縣 楊青驛 - (75)靜海縣 奉新驛 - (90)青縣 流河驛 - (70)青縣 乾寧驛	(70)良鄉縣 固節驛 - (70)涿州 涿鹿驛 - (60)新城縣 汾水驛 - (70)雄縣 歸義驛 - (70)任邱縣 鄭城驛 - (70)河間縣 瀛海驛 - (60)獻縣 樂城驛 -

348) 明福, 『奏爲循例比較閩海關年征稅課仰祈聖鑒事』, 건륭 29년 8월 20일, 故宮 403018544.

349) 黃國材, 『奏爲起解稅羨銀兩事』, 옹정 3년 2월 16일, 故宮 402020177-1-0.

350) 明福, 『奏爲奏明事』, 건륭 29년 11월 9일, 故宮 403019053.

351) 표는 건륭본 『大清會典則例』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北京-복주 역로의 거리가 4,862량으로 기록하였지만, 실제 총수는 4,872량으로 계산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驛 - (70)滄州 甄河驛 - (70)南皮縣 新橋驛 - (70)吳橋縣 連窩驛	(40)交河縣 富莊驛 - (40)阜城縣 阜城驛 - (50)景州 東光驛
산동성	(70)德州 良店驛 - (70)德州 安德驛 - (70)德州 梁家莊驛 - (90)武城縣 甲馬營驛 - (70)臨清州 渡口驛 - (70)臨清州 清源驛 - (60)清平縣 清陽驛 - (60)聊城縣 崇武驛 - (90)陽穀縣 荊門驛 - (60)東平州 安山驛 - (60)汶上縣 開河驛 - (90)濟寧州 南城驛 - (80)魚臺縣 河橋驛	(60)德州 安德驛 - (80)平原縣 桃園驛 - (70)禹城縣 劉普驛 - (70)齊河縣 晏城驛 - (60)長清縣 崗山驛 - (57)長清縣 長城驛 - (99)泰安縣 崔家莊驛 - (45)新泰縣 楊柳店驛 - (60)新泰縣 在城驛 - (60)蒙陰縣 在城驛 - (70)沂水縣 垛莊驛 - (60)蘭山縣 徐公店驛 - (70)蘭山縣 在城驛 - (40)蘭山縣 李家莊驛 - (70)郟城縣 在城驛 - (45)郟城縣 紅花埠驛
강남성	(120)沛縣 泗亭驛 - (110)山東嶧縣 萬家驛 - (90)江南邳州 趙村驛 - (120)宿遷縣 鍾吾驛 - (60)桃源縣 古城驛 - (60)桃源縣 桃源驛 - (60)清河縣 清口驛 - (60)山陽縣 淮陰驛 - (80)寶應縣 安平驛 - (60)高郵州界首驛 - (60)高郵州 孟城驛 - (66)甘泉縣 邵伯驛 - (45)江都縣 廣陵驛 - (100)丹陽縣 雲陽驛 - (100)武進縣 毘陵驛 - (100)無錫縣 錫山驛 - (100)蘇州府 元和縣 姑蘇驛 - (50)吳江縣 平望驛	(60)江南宿遷縣 峒岬驛 - (60)宿遷縣 鍾吾驛 - (60)桃源縣 古城驛 - (60)桃源縣 桃源驛 - (60)清河縣 清口驛 - (60)山陽縣 淮陰驛 - (80)寶應縣 安平驛 - (60)高郵州界首驛 - (60)高郵州孟城驛 - (66)甘泉縣 邵伯驛 - (45)江都縣 廣陵驛 - (50)丹徒縣 京口驛 - (100)丹陽縣 雲陽驛 - (100)武進縣 毘陵驛 - (100)無錫縣 錫山驛 - (100)蘇州府 元和縣 姑蘇驛 - (50)吳江縣 平望驛
절강성	(120)嘉興縣 西水驛 - (100)石門縣 皂林驛 - (110)錢塘縣 吳山驛 - (15)錢塘縣 武林驛 - (10)錢塘縣 浙江驛 - (90)富陽縣 會江驛 - (100)桐廬縣 桐江驛 - (95)建德縣 富春驛 - (100)蘭溪縣 澱水驛 - (80)龍游縣 亭步驛 - (70)西安縣 上航驛 - (90)江山縣 廣濟驛	
복건성	(160)浦城縣 小關驛 - (90)浦城縣 柘浦驛 - (70)浦城縣 人和公館驛 - (80)建陽縣 營頭司驛 - (70)建陽縣 建溪驛 - (80)甌寧縣 葉坊驛 - (40)甌寧縣 城西驛 - (50)建安縣 太平驛 - (40)南平縣 大橫驛 - (50)延平府 南平縣 劍浦驛 - (60)南平縣 茶洋驛 - (40)南平縣 嶺峽驛 - (40)古田縣 黃田驛 - (50)古田縣 水口驛 - (100)侯官縣 白沙驛 - (60)侯官縣 芋原驛 - (25)福州府 閩縣 三山驛	

北京-福州 사이에 역로의 거리를 보면 육로 4,872리, 수로 5,226리로 확인된다. 역참의 수를 확인해도 대략 明福이 설명한 71개와 일치한다.<sup>352)</sup> 이를

352) 明福, 『奏爲奏明事』, 건륭 29년 11월 9일, 故宮 403019053, “自閩至京計程七十一站, 每站萬兩給水脚銀四錢...(후략)…”.

종합하면 민해관은 세수 총액의 1.1%를 수각은으로 배정하여 71개의 역참을 기준으로 실제 운송비를 책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세수 운송비로 약 0.306%를 지출하고 나머지 절생수각은을 영여은, 부반식은과 함께 세수 꾸러미로 포장하여 세수로 운송하였다.<sup>353)</sup> 실제 세수 운송에 소요된 경비는 약 0.3%인 셈이었다.

閩海關은 수각은으로 영여은에 1.1%를 배정하였고, 실제 운송비로 약 0.3%를 지출하였다. 수각은 비중은 北京과의 거리와 침평은 지출을 고려하면 월해관 3.85%과 태평관 1.8%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었고, 실제 운송비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월해관의 높은 수각은 비중은 관세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한 벽초 침평은 지출이 반영된 월해관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 4) 南新關·北新關

마지막으로 常關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절강성의 南新關과 北新關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륭 31년분(회계 연도: 건륭 30년 4월 1일-건륭 31년 3월 31일) 복신관의 주소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54)</sup>

<도표 2-15> 건륭 31년분 복신관의 세수 보고

수입		지출	
항목	총수	항목	총수
船料·正銀	189,208.5870	部飯食銀·添平銀·水脚銀	7,078.503684
耗銀	18,920.8586	해관 운영비	9,429.320000
		辦公養廉銀	10,000.000000
		南新關不敷銀	10,495.833900
		造移支造辦釘甲銀	33,483.140800
계	208,129.4456	계	70,486.798384

353) 明福, 「奏爲奏明事」, 건륭 30년 10월 9일, 故宮 403021574.

354) 西寧, 「奏爲恭報徵收錢糧數目仰祈聖鑒事」, 건륭 31년 4월 13일, 第一 MR19, pp.2024-2025.

건륭 31년분 북신관의 세수는 正稅項에 해당하는 船料·正銀과 雜稅項에 해당하는 耗銀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북신관에서 징수해야 하는 규정액은 정액은와 동근수각은은 123,053.65량이었다. 정액은과 동근수각은은 관기가 종료되고 藩庫가 아닌 北京의 호부로 직접 운송하였고, 지출로 규정된 항목을 처리한 후 영여은과 함께 운송하였다. 세수 총액(정액은, 동근수각은, 영여은)은 137,642.647216량이었다. 北新關의 수각은은 1%가 배정되었고, 1,376.42647216량이 배정되었다.

다음으로 南新關을 살펴보면, 건륭 31년분(건륭 30년 2월 18일-건륭 31년 정월 17일) 남신관은 정세와 화모를 포함하여 23,673.6851량이었다. 남신관의 운영비로 총 3,922.019량을 지출하고 남은 영여은 19,751.6661량이었다.<sup>355)</sup> 매년 남신관에서 징수해야 하는 규정액은 정액은 30,247.5량이었다. 건륭 31년분의 경우 10,495.8339량의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이것은 건륭 31년분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고, 남신관은 매년 정액세를 채우지 못하고 결손이 발생하는 상관이였다. 이 때문에 남신관의 정액은 불부분은 북신관의 영여은에서 충당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

남신관은 동근수각은 항목이 없었고, 정액은은 杉木料銀 4,782.5량과 漕造銀 14,440량의 항목이 있었다.<sup>356)</sup> 이 중 삼목료은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藩庫로 납부하였다.<sup>357)</sup> 따라서 매년 남신관에서 北京으로 운송하는 총액은 25,465량이었다. 마찬가지로 25,465량의 1%인 254.65량이 수각은으로 배정되었다. 西寧이 결산한 남·북신관의 세수 총액은 163,107.6476량이었고, 북신관 137,642.647216량과 남신관 25,465량의 합계로 일치하였다. 남·북신관의 실제 세수 운송비 총액은 1,083.04량으로 절생분 548.036량이 반납되었다.<sup>358)</sup>

355) 西寧, 『奏爲恭報徵收錢糧數目仰祈聖鑒事』, 건륭 31년 2월 19일, 第一 MR19, pp.2003-2004.

356) 『大清會典則例』, “浙江南新關稅三萬二百四十七兩有奇. 每年額解杉木料銀四千七百八十二兩有奇. 額解漕造銀一萬四千四百四十兩”.

357) 『大清會典則例』, “十二年覆準 南新關徵收稅課, 分解藩司杉木料銀四千七百八十二兩五錢, 俟該關徵收期滿之日, 照例解交司庫, 委官附解戶部”.

358) 西寧, 『奏爲節省關稅水腳數目遵例奏明仰祈睿鑒事』, 건륭 31년 5월 6일, 第一

이상으로 權關의 성격에 따라 월해관과 동일한 행정 체계를 거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던 광동성의 常關인 태평관, 월해관과 유사한 對남양 대외 무역항으로서 海關의 역할을 수행한 복건성의 閩海關, 장강 이남에 위치한 常關인 절강성의 남·북신관 등을 구분하여 각각에 수각은 산정 과정과 실제 운송비 산정 방식을 살펴보았다.

세 그룹의 權關에 수각은 비중을 정리하면, 월해관 3.85%, 민해관 1.1%, 남·북신관 1%였고, 태평관의 추정치는 약 1.8% 수준이었다. 우선 태평관은 北京까지 세수 운송 거리가 월해관과 동일하였지만, 월해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약 1.8%의 수각은이 배정되었다. 이것은 벽초 첨평은을 지출해야 했던 월해관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對남양 대외 무역항이었던 민해관은 北京까지 운송 거리는 월해관보다 비교적 짧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월해관보다 훨씬 낮은 1.1%의 수각은이 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강 이남의 常關인 남·북신관의 경우에도 1%에 불과하였다.

분석 결과 수각은 비중이 3.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월해관의 케이스는 權關의 성격과 조건,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北京에서 세수 꾸러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호부 벽초 첨평은 1%, 내무부 벽초 첨평은 2%를 지출해야 했던 월해관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월해관이 다른 權關들과 달리 두 단계 저울추 무게의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벽초 첨평은이 필요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징세 업무가 징세 청부업자들에 의해서 이뤄졌던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 때문이었다.

#### 4. 소결

사구통상 시기 신설된 해관은 기존에 朝貢 무역을 관리하던 市舶司와는

---

MR19, pp.2036-2037.

다른 계통의 징세 기구로서 출발하였다. 월해관은 시박사의 업무까지 흡수하며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對서양 무역 관리 제도로 발전하였고, 定額主義를 지향하는 각관체제의 운영 방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속성을 갖고 있었다. 廣州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월해관은 청조가 설정한 定額을 넘어선 초과 징수액인 盈餘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할당된 定額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히 결산’하는 데 최적화된 각관체제에서 정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영여은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물론 각관체제에서도 정액을 초과한 영여은을 모두 “盡收盡解”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에서 영여은의 증감을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량은 풍흉에 따른 농업 생산물에 증감에 영향을 받았지만,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반면, 대외 무역의 경우 교역량은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은 매우 컸다. 게다가 청조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

월해관의 세수 증가는 재정적 측면에서 분명 도움이 되었겠지만, 청조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정액의 초과 징수액의 출현은 이에 대한 고핵 제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정액주의를 벗어난 체제 밖의 현상은 청조에게 오히려 곤란한 문제였고, 세수의 증감을 예측할 수 없는 해관의 속성은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방의 징세 당국으로서도 불편한 것이었다. 게다가 월해관의 교역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이는 단순한 해관의 문제를 넘어서 정액주의에 기반한 청대 재정 운영 정책과 정반대의 벡터(vector)를 갖는 문제였다.

청조 중앙이 징세 과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관리 구조에서 월해관의 對서양 무역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와 비례하여 월해관 행정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높아졌다. 월해관의 세수가 급증한 건륭 초부터 월해관의 행정에 대한 엄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호부는 고핵 범위를 확대하여 정액 외에 영여은까지 포함하면서 관세 행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호부가 權關의 고핵 제도를 강화하며 영여은을 고핵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율해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건륭 14년(1749) 11월 호부가 정액은의 고핵 방식을 영여은으로 확대하고, 건륭 15년 4월 21일(1750년 5월 26일) 總督兼管制를 확립하고, 건륭 15년 6월 21일(1750년 7월 24일) 樞關의 회계 연도를 1년으로 고정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11년 전후 율해관의 세수 결손 사건과 그 후속 처리를 두고, 율해관과 호부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였다.

세수 변동에 불확실성이 높았던 對서양 무역의 속성은 각관체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액제에 기초한 각관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형태였다. 호부는 내지 常關과 이질적이었던 海關까지 포함하여 각관체제의 틀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영여은의 증감을 평가하는 방식을 상품 유통량에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常關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海關은 세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고, 그 변동폭도 컸기 때문에 고핵 방식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전년도 비교법을 통해 영여은에 대한 고핵을 강화하려는 호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건륭제는 전년도 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고핵 기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건륭제가 옹정 13년 비교법, 전삼년 비교법을 통해 영여은의 고핵 기준을 고정시키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다. 호부는 건륭제의 지시에 따르면서도 전년도 비교법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常關과 동일한 고핵 방식을 율해관에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 호부가 전삼년 비교법과 전년도 비교법을 병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건륭제는 건륭 41·42년 비교법과 교역량 기준 비교법을 차례로 적용하며 독자적인 고핵 방식을 수립하려 하였다. 이것은 정액주의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해관의 이질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가정 4년(1799) 최종적으로 영여은의 고핵 기준을 정액으로 고정시킨 조치는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보다 정액제에 기반한 각관체제의 안정성을 선택한 청조의 결정이었다고 하겠다.

건륭 29년(1764) 호부는 榷關의 세수 운송 체계를 개혁하였고, 이에 따라 호부와 월해관은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예외의 인정 여부를 두고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월해관 행정에 대한 호부의 엄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호부의 개혁은 榷關의 郵符 지급을 통일하여 수각은에서 실제 운송비를 제외한 절생분을 歸公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것은 수각은에서 添平銀을 지출해야 했던 월해관의 특례의 인정 여부에 문제로 확대되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를 채택한 월해관은 관세의 과세와 징수, 庫平銀의 재구조까지 포함한 관세 행정 대부분을 징세 청부업자에게 위탁하였고, 이 과정에서는 징세 청부업자-월해관-호부 간에 각 경제 주체들이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두 단계의 조정 절차가 요구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지출하는 입초 침평은은 월해관-호부의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벽초 침평은으로 北京에서 彈兌 과정에서 고평은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비용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호부가 지출로 공인한 항목이었지만, 두 번째 단계는 정식 지출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의 지출 항목을 마련해야 하였다. 월해관은 두 번째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모두 수각은의 절생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절생수각은을 전액 歸公하라는 호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웠다.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지출하는 벽초 침평은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절생수각은의 歸公 문제는 호부가 이를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즉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을 특례를 인정해야 할지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양측의 첫 번째 충돌에서 월해관 측은 수각은에서 벽초 침평은을 지출하고 있었던 월해관의 사정에 관한 내용을 축소하고, 호부에서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한 입초 침평은에 부각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게다가 건륭제는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사정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므로 호부 측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충돌에서 호부는 건륭 31년분 세수를 결손 처리함으로써 절생수

각은의 歸公 문제를 세수 결손 사건으로 전환해 버렸다. 세수의 회계 결산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건륭제는 월해관의 입장을 더 이상 두둔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호부의 주장이 수용되어 월해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며 일단락되었다.

월해관은 세수를 운송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각은을 세수 총액(영여은+비공은 절생분)의 3.85%로 배정하였다. 이것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침평은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월해관의 사정이 고려된 것이었고, 다른 榷關의 수각은 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광동성에 위치한 常關 太平關, 복건성에 위치한 海關 閩海關, 절강성에 위치한 常關 南·北新關의 수각은 산정 방식과 실제 운송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태평관의 수각은 비중의 추정치는 세수 총액에 약 2.3% 수준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월해관의 침평은 지출을 제외하면 양자의 수각은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北京까지 운송 거리의 측면에서 태평관과 월해관은 동일하였고, 양자 모두 동일한 행정 체계를 거쳤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海關과 常關은 세수의 결산 과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민해관의 수각은은 세수 총액의 1.1%로 규정되어 있었다. 北京과의 거리로 보면, 민해관과 월해관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현격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대외 무역항인 海關 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결국 비공식적인 침평은 지출을 위한 월해관의 특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강 하류에 위치한 常關인 南·北新關은 세수 총액에 1%가 배정되었다. 北京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상 南·北新關은 민해관과 거의 비슷하였고, 양자의 수각은 비중의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보면, 역시나 榷關의 세수 운송 절차에서 常關과 海關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榷關의 성격과 조건, 운송 거리 등의 상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월

해관의 수각은 비중은 다른 樞關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월해관의 수각은은 징세 청부업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징세 구조가 반영된 결과였고, 월해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호부의 정책 방향은 월해관 행정에 대한 엄정화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의 엄정화는 언제나 적용 대상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곤혹감을 주었다.

## 제Ⅲ장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 결과: 행상의 도산

### 1.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 1) 權關 회계 연도의 曆年 선행

호부의 회계 연도는 曆年에 맞춰서 회계 연도를 음력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하였다. 호부의 회계 연도는 연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음력의 특성상 윤달의 존재로 인해 호부의 회계 연도의 월수는 12개월 혹은 13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보통 19년마다 7번씩 윤달이 끼었는데, 이 경우 田賦와 같이 징수 총액이 고정된 세수 항목은 윤달이 끼는 해를 만나면 1년 치 전부의 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윤달 치 세수를 당해 회계 연도에 편입시키는 “遇閏加徵”의 방식으로 회계 연도를 역년과 일치시켰다.<sup>359)</sup>

이러한 회계 결산 방식은 正額主義에 기반한 權關의 正額銀을 처리하기 위해 적합하였지만, 정액을 초과한 盈餘銀의 증감을 고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선 權關의 세수는 매년 변동 폭이 커서 월 평균값으로 추가 징수하는 “遇閏加徵”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중앙에서 감독을 직접 파견하는 關差制를 실시한 權關의 경우 책임자의 교대마다 세수를 회계 결산하였기 때문에 호부의 회계 연도의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sup>360)</sup>

359) 월해관의 회계 연도가 호부의 회계 연도를 추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1982년 陳國棟이 『食貨月刊』에 발표한 「粵海關的稅務行政」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월해관의 행정 체계를 분석하면서 월해관의 회계 연도가 역년을 추월한 현상만을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월해관의 회계 연도가 역년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월해관의 관세 행정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것이 징세 청부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연쇄 도산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을 다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은 陳國棟의 연구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陳國棟, 「粵海關的稅務行政」,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2014, pp.66-114 所收).

榷關에서 영여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핵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榷關의 회계 연도를 12개월로 통일하여 윤달의 유무, 책임자의 교대와 관계없이 고핵 기간을 통일하여 세수 고핵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榷關은 윤달이 끼는 해를 만나면 “連閏趨前”의 방식으로 윤달을 포함하여 12개월로 회계 연도를 종료하였고, 마지막 13번째 달은 다음 회계 연도로 넘겼다.<sup>361)</sup>

그 결과 榷關의 회계 연도는 윤달이 끼는 해마다 회계 결산 종료일이 한 달씩 앞당겨졌고, 이때마다 榷關의 회계 연도는 역년에 한 달씩 선행하였다. 윤달을 12번 만나 누적되면서 회계 연도가 역년을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회계 연도를 12개월로 고정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리고 대략 30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榷關의 회계 연도는 역년에 선행하며 호부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월해관의 회계 연도가 역년을 추월하는 현상은 건륭 47년분 세수를 회계 결산하면서 처음 출현하였다. 건륭 47년분의 회계 연도 시작일은 건륭 46년 정월 26일, 종료 예정일은 건륭 47년 정월 25일이었다. 그런데 건륭 46년 5월 윤달이 끼면서 회계 종료일은 12월 25일로 앞당겨졌고, 그 결과 월해관의 건륭 47년분은 실제로 건륭 47년에 징수한 관세를 단 하루도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sup>362)</sup>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榷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월해관의 제외한 榷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론상으로 榷關의 회계 연도가 역년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의 문제였을 뿐 관세 행정과

360)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면, 건륭 15년 회계 연도의 통일 조치가 있기 전에도 榷關의 회계 연도는 12개월을 1년으로 하여 세수를 결산하였다. 다만, 榷關의 책임자의 교체시에도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고정시킨 것이다. 즉, 榷關은 기본적으로 “連閏趨前”의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였다.

361) 『清高宗實錄』卷367, 건륭 15년 6월 壬辰(21), “戶部奏. 各關管理稅務日期, 凡接任徵收者, 無論兩任三任, 俱扣足一年爲滿. 其管關一年零數月者, 將一年盈餘奏報, 零月歸下屆, 統俟扣足一年奏”.

362) 巴延三, 『爲奏明通年應征關稅總數仰祈聖鑒事』, 건륭 47년 2월 초10일, 商務檔案(3), p.1852.

세수의 결산 및 세수의 고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하게 權關의 회계 연도와 역년을 일치시킬 경우 고핵 절차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다.<sup>363)</sup> 하지만 이것은 세수의 결산 기한이 3개월로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야기일 뿐, 사실상 세수의 결산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월해관에서는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월해관의 회계 연도와 역년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한 관세 행정의 혼선은 ‘건륭 41년·42년 비교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고핵 방식의 적용을 알리는 호부의 자문에서 “건륭 41년과 건륭 42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고핵할 것을 알렸다. 하지만 호부가 지칭하는 “건륭 41년과 건륭 42년”의 세수는 월해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건륭 42년분과 건륭 43년분에 해당하며 양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sup>364)</sup>

월해관의 회계 연도와 역년이 불일치하는 현상은 단순한 명칭상의 혼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월해관의 회계 연도가 역년에 선행하는 것은 이월된 윤달이 누적된 결과였고, 윤달을 만날 때마다 월해관의 회계 종료일이 함께 앞당겨지지 않으면 회계 연도에서 미처리된 기간만큼 세수 결산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월해관의 건륭 47년분은 명칭상일 뿐, 실질적으로 호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건륭 46년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세수 결산이 1년 치가 지연되는 것이었다.

월해관을 제외한 權關의 경우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세수 결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윤달이 누적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호부가

---

363) 도광제 시기에 이르면 월해관의 회계 연도는 역년과 2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도광 15년 6월 26일 결산이 이루어진 丁卯年分の 회계 연도는 도광 14년 5월 26일부터 도광 15년 5월 25일이었다. 하지만 丁卯年은 역년으로 도광 17년이다. 彭年,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徵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15년 6월 26일, 第一 MR21, pp.1872-1874.

364) 舒常, 『爲恭報通年智愚關稅總數仰祈聖鑒事』, 건륭 50년 정월 6일, 第一 MR20, pp.993-995, “又於乾隆四十七年四月內經戶部議准粵海關稅銀以乾隆四十一二年兩年作爲比較, 亦在案. 查四十一年計到洋船三十九隻, 通關各口共收銀五十八萬八千四百七兩九錢零. 四十二年計到洋船三十三隻, 通關各口共收銀五十八萬八千四百五十三兩九錢零”.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도 1년에 두 차례 세수를 결산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廣東省에 위치한 常關인 太平關의 경우 건륭 41년 전후로 태평관의 회계 연도가 역년에 선행하였는데, 각각의 회계 연도, 기간, 결산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65)</sup>

<도표 3-1> 태평관의 회계 연도, 관기, 회계 결산일 표

회계 연도	기간	결산일
건륭 40년분	건륭 39년 정월 21일 ~ 건륭 40년 정월 20일	건륭 40년 3월 9일
不明	건륭 40년 정월 21일 ~ 건륭 40년 12월 20일	不明
不明	건륭 40년 12월 21일 ~ 건륭 41년 12월 20일	건륭 42년 정월 19일
건륭 42년분	건륭 41년 12월 21일 ~ 건륭 42년 12월 20일	건륭 43년 정월 25일
건륭 43년분	건륭 42년 12월 21일 ~ 건륭 43년 11월 20일	건륭 43년 12월 26일

태평관은 건륭 40년 10월 윤달이 끼면서 회계 연도가 역년에 선행하였다. 그 이후 2년 동안 회계 연도의 명칭이 불분명해지는데, 주소첩에서는 회계 연도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 않거나 “上年”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건륭 43년 6월에 또다시 윤달이 끼면서 다시 한번 회계 연도 종료일이 앞당겨졌고, 건륭 43년 정월에 건륭 42년분, 12월에 건륭 43년분을 결산 완료하여 1년에 두 차례 세수를 결산하며 태평관의 회계 연도와 역년의 차이를 조정되었다.

하지만 월해관의 세수 결산 절차는 상관과 차이가 있었다. 월해관은 대외 무역 결제 방식과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3개월 안에 세수를 결산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徵收總數 보고와 盈餘銀數目 보고의 두 단계 결산 절차를 거쳤음은 이미 검토하였다. 그런데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결산 기한이 6

365) 德寶, 「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40년 3월 9일, 第一 MR 20, pp.215-216; 李質穎, 「爲委員接管關務恭摺奏聞事」, 건륭 41년 12월 18일, 第一 MR, pp.542-543; 李質穎, 「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42년 정월 19일, 故宮 403030567; 李質穎, 「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43년 정월 25일, 故宮 403034004; 桂林, 「爲恭報額稅盈餘仰祈聖鑒事」, 건륭 43년 12월 26일, 故宮 022594.

개월로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결산 기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호부는 월해관의 세수 결산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한 특수한 사정을 허용한 셈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윤달이 누적되었지만, 월해관의 세수 결산일은 이에 맞춰서 앞당겨지지 않았고, 회계 연도 종료일과 회계 결산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결국 각관체제에서 세수 결산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월해관의 상황에서 윤달의 누적에 따른 회계 연도의 선행 현상이 겹치면서 점차 해당 연도에 징수한 관세 내역이 아닌 전년도 세수를 고핵하는 셈이 되었다. 건륭 15년 회계 연도가 통일된 이후 월해관의 회계 연도, 기간, 회계 결산일을 보면 명확한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66)</sup>

<도표 3-2> 월해관의 회계 연도, 기간, 세수 결산일 표

회계 연도	기간	결산일
건륭 15년분	건륭 14년 12월 26일 - 건륭 15년 12월 25일	건륭 16년 12월 17일
건륭 25년분	건륭 24년 8월 26일 - 건륭 25년 8월 25일	건륭 26년 10월 19일
건륭 35년분	건륭 34년 5월 26일 - 건륭 35년 5월 25일	건륭 36년 10월 24일
건륭 42년분	건륭 41년 2월 26일 - 건륭 42년 2월 25일	건륭 43년 윤6월 2일
건륭 43년분	건륭 42년 2월 26일 - 건륭 43년 2월 25일	건륭 44년 7월 13일
건륭 44년분	건륭 43년 2월 26일 - 건륭 44년 정월 25일	건륭 45년 8월 13일
건륭 45년분	건륭 44년 정월 26일 - 건륭 45년 정월 25일	건륭 46년 윤5월 8일
건륭 46년분	건륭 45년 정월 26일 - 건륭 46년 정월 25일	건륭 46년 12월 24일
건륭 47년분	건륭 46년 정월 26일 - 건륭 46년 12월 25일	건륭 47년 6월 19일
건륭 48년분	건륭 46년 12월 26일 - 건륭 47년 12월 25일	건륭 48년 2월 13일

건륭 15년분의 경우 회계 연도가 해당 역년을 거의 포함하며 회계 연도가

366) 唐英, 「爲奏報關稅盈餘事」, 건륭 16년 12월 17일, 故宮 403001007; 尤拔世, 「爲報解關稅盈餘事」, 건륭 26년 10월 19일, 第一 MR19, pp.1619-1621; 德魁, 「爲補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36년 10월 24일, 第一 MR19, pp.2773-2775; 圖明阿, 「爲報海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4년 7월 13일, 第一 MR20, pp.559-562; 圖明阿, 「爲報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5년 8월 13일, 第一 MR20, pp.734-737; 李質穎, 「爲補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6년 윤5월 8일, 故宮 031723; 李質穎, 「爲補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7년 6월 19일, 商務檔案(3), pp.1865-1870.

종료된 후 약 1년 후에 세수의 결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달을 만날 때마다 회계 연도의 종료일은 한 달씩 앞당겨졌고, 점차 역년을 포함하는 기간이 줄어들었다. 호부가 “건륭 45년분은 關期의 명칭은 비록 (건륭) 45년이었지만, 실제 징수한 일수는 모두 전부 (건륭) 44년”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다.<sup>367)</sup>

회계 연도 종료일이 한 달씩 앞당겨지면 최소한 세수 결산일도 한 달씩 앞당겨져야 하였지만, 오히려 점차 지연되기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건륭 45년에 이르면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약 18개월까지 세수 결산이 지연되었다. 건륭 15년 이후 윤달을 11번 만나서 회계 연도 종료일이 11개월 앞당겨졌지만, 세수 결산일은 7개월만 앞당겨진 셈이었다. 이러한 월해관의 불철저한 세수 결산과 윤달 누적이 결합되며 호부는 월해관의 회계 결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權關의 회계 연도 1년을 12개월로 통일한 결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규정으로 모든 상관에서는 잘 적용되어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결산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오직 월해관에서만 건륭 15년분이 약 12개월 후에 실시된 이후 예외 없이 최소 1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월해관의 세수 결산의 특징은 호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 기간 세수 결산 지연을 사유로 월해관 측이 행정 처분을 받은 기록 없이 대략 3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월해관의 예외적인 세수 결산 방식이 인정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월해관의 독특한 대외 무역 결제 방식이었다. 월해관의 대외 무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주로 남서 계절풍이 부는 여름부터 시작되어 북동 계절풍이 부는 가을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월해관 무역은 남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여름과 가을의 무역 시즌, 북동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 봄의 非무역 시즌으로 구분되었고, 외국 상인이 광주에 체류할 수 있

<sup>367)</sup> 李湖,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6년 7월 21일, 第一 MR20, p.886, “查乾隆四十五年分關期名雖四十五年, 其實經徵月日, 俱在四十四年之內. 此時即行報解, 已違部限一年”.

는 기간은 무역 시즌에만 해당하여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다.

행상은 무역 시즌 동안 외국 상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국내의 시장에 유통하여 판매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겨울이 오면 외국 상인을 모두 廣州에서 출항시켜야 하였는데, 이들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상품의 관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였다. 행상은 그들을 출항시키기 위해 외국 상인에게 넘겨받아서 판매를 완료하지 못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후 무조건 출항시켜야 하였다.<sup>368)</sup>

문제는 외국 상인이 중국에서 매입하는 차잎, 도자기, 비단 등과 같은 상품의 관세(수출세)는 현금으로 지불하였지만, 그들이 가져온 상품의 관세(수입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외국 선박은 입항한 후 바로 상품을 모두 행상에게 인도하였고, 행상은 각 화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때 산정한 수입세는 외국 상인이 매입하는 상품의 가격에서 공제하였다.

광동순무 李湖가 “월해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 상품과 상품의 (물물)교환이고, 현은으로 구입·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월해관의 독특한 교역 방식을 묘사한 것이었다.<sup>369)</sup> 절차와 형식상으로만 보면 행상은 외국 상인들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모두 현금화한 이후에 외국 상인에게 징수한 수입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물론, 행상이 이를 先납부하는 방식을 강요할 수 있었지만, 명분상으로 商·民을 가렵하는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 때문이었다. 행상은 무역 시즌이라

---

368) 阿裏袞, 『奏貨稅均代完多於奏銷時清釐緣由』(附件) 건륭 17년 3월 1일, 故宮 403001104, “惟是夷商只知交貨與行, 迨至出口之時, 不願其銷賣與否, 亦須置貨與彼, 以趕副風信, 行家不得不捐資代爲辦貨使其出口, 而前貨未銷, 稅銀無出, 往往拖欠”.

369) 李湖,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6년 7월 21일, 第一 MR20, p.888, “...(전략)… 即將內地置買之貨估價抵換. 令其年內回國裝載洋貨. 以便趕副次年風汛進口之期. 原是以貨兌貨, 並非交易現銀計算一出一入”.

는 제한된 기간에 대외 교역과 징세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역 시즌이 종료된 후 행상은 매입한 상품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sup>370)</sup> 하지만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반하여 판매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판매가 지연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 관세의 대납이 지연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즉시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월해관의 회계 절차가 상관과 달리 徵收總數 보고와 盈餘銀數目 보고의 2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월해관은 관기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해당 기간 과세한 관세의 총액인 징수 총액을 보고하여 전체 관세의 증감을 보고하고, 행상이 수출·입 관세의 대납을 완료하면 세수를 회계 처리하여 北京으로 운송하고 해당 회계 연도를 결산하였다.

건륭 43년 10월 호부가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확정하기 전까지 이러한 예외적 방식은 호부로부터 인정받은 월해관의 특수성이었고, 사실상 월해관은 회계 결산 기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내의 상품 유통과 인원을 관리하고, 내지 통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상관과 구별되는 대외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사정이 인정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건륭 15년 이후 월해관의 세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일 후 최소 12개월, 최대 18개월 소요되었지만, 호부는 세수 결산 지연을 지적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월해관 책임자의 처벌을 상주한 경우는 없었다.

## 2)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역년이 포함되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월해관의 결산

<sup>370)</sup> 李質穎, 「爲酌辦洋船稅餉分別先後征收以副解限仰祈聖鑒事」, 건륭 47년 8월 2일, 商務檔案(3), pp.1873-1874, “隨據行商潘文岩等稟稱. 洋船進口, 將洋貨起卸, 各行算給商等代賣完稅, 甫經起貨之後, 商等一時不能代爲墊交. 其出口貨物系保商代理人置辦, 所有稅項, 可以隨貨扣清, 先行完繳, 俾其領牌出口, 再趕緊將進口洋貨代賣交納稅餉, 務遵部限之內, 全數交清, 不敢稍遲等情”.

지연 현상은 더욱 주목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건륭 42년분을 고핵하는 과정이었다. 호부는 건륭 42년분에서 실제로 건륭 42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정월과 2월뿐이고, 대부분이 건륭 41년에 징수한 관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sup>371)</sup> 게다가 회계 처리한 시점이 건륭 43년 윤6월이었으므로 호부에서 체감하는 세수 결산의 지연은 2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에 호부는 월해관의 결산이 지체되는 현상을 건륭제에게 보고한 후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건의하였다.<sup>372)</sup>

건륭제는 향후 월해관에서 재차 회계 결산 기한을 넘길 경우 參奏하겠다는 호부의 건의를 승인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산 기한의 엄격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월해관은 건륭 43년분의 결산을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17개월이 지나서 처리함으로써 약 11개월을 초과하였다.<sup>373)</sup> 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월해관감독 圖明阿의 처벌을 상주하였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圖明阿가 계속 유임했다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74)</sup>

그리고 다음 해인 건륭 44년분의 결산이 지체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였다.<sup>375)</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II장에서 검토한 수각은의 절생분 귀공을 둘러싼 호부와 월해관의 의견 충돌에서 호부가 취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또

371) 李質穎, 「爲奏明年滿徵收稅數仰祈睿鑒事」, 건륭 42년 4월 6일, 商務檔案(3), pp.1799-1800. 월해관 회계 연도 건륭 42년분 세수의 관기는 건륭 41년 2월 26일부터 건륭 42년 2월 25일까지였다. 월해관감독은 건륭 42년분 세수를 회계 결산하였지만, 호부 기준으로 건륭 41년 2월부터 12월까지 세수는 건륭 42년 세수가 아니었다.

372) 和珅 등, 「爲奏明請旨事」, 건륭 45년 12월 15일, 故宮 029325-0-0, “再. 查粵海關徵收稅餉因奏解遲延. 經臣部於乾隆肆拾參年拾月內奏請, 勅令該監督嗣後總於關期報滿陸個月以內迅速奏解. 如有遲延, 即行隨奏核參等因. 在案”.

373) 戶部, 「移會稽察房議覆粵海關監督圖明阿奏該關自乾隆四十二年二月二十六日起至四十三年二月二十五日止一年徵收盈餘銀計多收四萬餘兩應毋庸議至奏解遲延該監督交部議處」, 건륭 43년 12월 1일, 內閣大庫 158223-001.

374) 圖明阿, 「爲恭謝天恩事」, 건륭 44년 3월 29일, 故宮 403038144.

375) 圖明阿, 「爲報關稅盈餘銀兩事」, 건륭 45년 8월 13일, 第一 MR20, pp.734-737.

다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호부는 세수의 결산 기한의 문제를 세수의 결손 사건으로 뒤바꿔 버렸다. 호부는 건륭 44년분을 ‘전삼년 비교법’에 따라 고핵하여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sup>376)</sup> 그리고 건륭 45년 12월 15일 월해관의 세수 감소와 회계 결산의 지연을 결부시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월해관감독의 처벌을 상주하였다. 호부의 參奏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77)</sup>

현재 월해관은 건륭 43년 2월 26일부터 윤달을 포함하여 (건륭) 44년 정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징수한 영여은은 해당 감독이 본년 8월에 起解하였습니다. 이를 고핵한 결과 奏를 올려 승인받은 (결산) 기한에 모두 약 1년을 초과한 것으로 매우 지연된 축에 속하니, 마땅히 參奏를 함께 올려 旨를 청합니다. 해당 감독을 刑部로 이관하여 처분을 심의하고, 사후에 특히 힘써 報解를 신속히 하여 年清年款하고 那掩之弊를 근절하십시오.

호부는 “那掩之弊”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향후 세수의 결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나엄지폐”는 “那新掩舊의 弊害”를 의미하였는데, 말 그대로 ‘새로 걷은 세금으로 앞에 세금을 메운다’는 의미였다. 청대 세수 회계에서 징수 기관에서 징수한 세금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회계 처리하기 전까지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였다. 그리고 각 징수 기관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계 연도에 처리해야 하는 세수가 결손되거나 지체되는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다음 회계 연도에서 처리해야 할 세금을 전용하여 처리하였다.

376) 건륭 44년분 세수는 전삼년 비교법을 적용하면 세수의 결손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전삼년 비교법의 월해관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점은 제II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377) 和珅 등, 『爲奏明請旨事』, 건륭 45년 12월 15일, 故宮 029325, “今查該關自乾隆肆拾參年貳月貳拾陸日起, 連閏至肆拾肆年正月貳拾伍日, 至壹年期內徵收贏餘銀兩, 據該監督聲明於本年八月起解, 核之, 奏准例限計逾壹年有餘殊屬遲延, 相應附參請旨, 將該監督交部議處. 仍令嗣後務須迅速報解, 年清年款, 以杜那掩之弊”.

이는 당연히 법률로서 금지하는 사항이었지만, 쉽게 근절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특히 자금력이 영세했던 행상은 월해관의 세수 회계 처리가 12~18개월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를 사업 자금으로 융통하였다. 사료에서 “那新掩舊”, “那掩之弊”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사실상 이를 근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부가 관세의 결산 기한을 설정할 경우 행상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 외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호부는 결산 기한 초과를 세수 결손과 묶어서 월해관감독 圖明阿의 처벌을 상주하였다. 그리고 건륭제도 이전과 달리 圖明阿의 처벌을 결정하였다.<sup>378)</sup> 호부는 결산 기한인 6개월을 엄격히 적용하여 월해관 세수의 결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월해관에서 이를 즉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總商 潘文巖은 세수 납부 지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79)</sup>

상인들은 징세 업무를 매년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의 상인들이 가지고 온 화물이 매우 많아서 어떤 경우에 상품의 판매가 일시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관세는 우선 행상들의 이름으로 (親填冊에) 기재하여 (납세를) 보증하였습니다. 수입세에 관해서는 모두 (외국 선박이) 출항한 때에 비로소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구습에 따라 관세 납부가 지연된 연유입니다. 지난 두 해의 (관세의) 납부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월해관의 징세 업무는 무역 시즌이 종료된 후 시작되었고, 외국 상인에게

378) 호부는 ‘降二級留任紀錄抵銷“를 건의하였지만, 건륭제는 降級을 면제하고 ‘銷去紀錄八次”로 감형하였다(伊齡阿, 『爲酌定期完繳商欠稅餉以清年款以昭慎重事』, 건륭 46년 4월 15일, 第一 MR20, p.821).

379) 伊齡阿, 『爲酌定期完繳商欠稅餉以清年款以昭慎重事』, 건륭 46년 4월 15일, 第一 MR20, pp.820-823, “商等每年承辦稅項, 因外洋各夷所帶貨物繁多, 或一時銷售稽遲. 所有稅銀, 先填入商等名下認保, 至於進口貨餉, 均係於出口之時, 始行完納. 實緣歷年因循拖欠, 以致兩年尚未清繳, 實屬有干例禁”.

매입한 수입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어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세수 결산이 18개월 가까이 지연된 상황에서 행상들은 월해관의 대외 무역 결제 방식의 특수한 사정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월해관감독 伊齡阿는 결산 지연이 규정을 어긴 것임을 인정하고, “那掩侵魚”의 사단이 발생하거나 晝役 등이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결산 기한을 엄수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결산이 지연된 건륭 45년분을 건륭 46년 5월까지 처리하고, 결산 기한이 임박한 건륭 46년분의 처리를 1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건륭 47년분부터는 호부에서 지시한 결산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380)</sup>

한편, 광동순무 李湖는 常關과 동일하게 월해관에 회계 결산 기한을 설정 하겠다는 호부의 방침에 반대하였다. 월해관의 결산이 지연되는 현상은 수입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 일정 정도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원인이지, 월해관 행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행상이 무역 시즌의 종료 후 징세 업무를 완료하기까지 대략 9~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내지의 상관과 동일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호부가 那掩之弊만을 우려하여 원안을 강행할 경우 “那新掩舊”는 막을 수 있지만, 역으로 “나중에 걷을 세금을 미리 납부(那後掩前)”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sup>381)</sup>

자본금 규모가 영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이 쉽지 않았던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행상은 관세 운용을 통해 현금 수요의 압박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행상은 회계 연도의 종료 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 까지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륭 43년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하면서 관세의 운용 기간이 단축되며 그들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380) 伊齡阿, 『爲酌定期完繳商欠稅餉以清年款以昭慎重事』, 건륭 46년 4월 15일, 第一 MR20, pp.820-823, “茲奉訓示, 商等公同酌議, 情願將未完四十五年餉銀限, 本年五月內全完, 四十六年課餉限本年十二月內全完, 其四十七年餉項限至壬寅年九月內按限全完. 庶年清年款商力得抒”.

381) 李湖,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6년 7월 21일, 第一 MR20 pp.885-892.

관세 결산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한 건륭제의 상유가 있는 지 불과 7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광동순무 李湖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상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李湖는 월해관의 무역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82)</sup>

외국인은 모두 6월과 7월 사이에 廣州에 도달하여 겨울에 귀항합니다. 바람을 타고 왕래하여 모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출항이 지연되면 海面에는 (바람의) 저항이 있게 되어 다음 해의 課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모두 외국 선박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자본을 들여 제각기 각 성으로 가서 수출할 상품 등을 매입합니다. 외국 선박이 입항한 후 서양인의 화물을 保商에게 인도하고, 행내에서 관세를 계산하여 印簿(親填冊)에 기입하고, 행상이 대신하여 납부할 것을 保認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지에서 매입한 상품에 가격으로 매겨서 (수입 상품과) 교환하여 그해 안에 귀국하게 합니다. (서양 선박이) 신고 온 서양 상품은 다음 해 무역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입항한 기간에 (수입) 상품을 (수출) 상품으로 교환하며 결코 現銀으로 교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된 상품과 수입된 상품을 따져보면 貨本은 대략 100~200만량 정도입니다.

행상은 무역 시즌이 종료되면 다음 무역 시즌에 거래할 상품을 미리 매입해두어야 하였는데, 월해관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찻잎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찻잎의 수출 가격은 차종뿐만 아니라 품질에 의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행상은 상품 가치가 높은 찻잎을 선매하

382) 李湖,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6년 7월 21일, 第一 MR20, pp.885-892, “夷人總在六七月間到廣, 冬月回帆. 趁風來往, 俱有定期. 若出口遲緩, 洋面一有壓阻, 即悞下年課餉. 是以商人們俱於夷船未到之前, 墊發本銀, 分赴各省, 置辦出洋貨物等. 番船進口後, 把夷人貨物起在保商, 行內算明稅銀多少登入印簿, 代爲保認. 即將內地置買之貨估價抵換, 令其年內回國. 裝載洋貨, 以便趕副次年風汛, 進口之期, 原是以貨兌貨, 並非交易現銀. 計算一出一入, 貨本約有一二百萬兩.”

여 대량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와 함께 최대한 싼 가격에 사들이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였다.

행상이 찻잎을 매입하는 방식은 행상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금력이 풍부한 행상은 직원을 직접 찻잎 생산지로 파견하여 고급 찻잎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이 경우 茶商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행상은 차상을 통해 찻잎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경우 廣州에서 소매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 당연히 중간 비용의 발생은 행상의 수익률을 감소시켰다. 행상은 다음 무역 시즌의 교역을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찻잎을 사전에 매입해 둘 최대한 많은 현금이 필요하였다.

무역 시즌이 시작되어 찻잎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더라도 행상의 현금 흐름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월해관의 교역은 행상이 외국 상인으로 부터 화물을 인도받은 후 수입품의 가격 총액을 산정한 후 수출품 가격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발생한 차액을 은정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수입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월해관의 무역 규모의 큰 폭의 성장세에 반해, 外洋行의 숫자는 오히려 13행에서 6행으로 감소하였다. 총상 潘文巖은 소수의 행상이 수입품을 모두 현금화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호부에서 “那新掩舊”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결산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상인들은 수입 상품의 판매를 완료하지 못해 돈을 꾸어 관세를 대납”하는 상황을 호소하였다.<sup>383)</sup> 이것은 월해관의 대외 무역 결제 방식의 특수성에

383) 李湖, 『爲遵旨查明覆奏事』, 건륭 46년 7월 21일, 第一 MR20, pp.885-892, “又因各貨堆積不能盡在本地, 變價必須分運外省, 遂漸行銷纔得餉, 從貨出是以歷來辦課, 俱是料理洋船出口後, 按卯徵收遵行已久. 至從前商人們共有十三行, 當日夷貨進口尙少, 每年稅銀不過二十餘萬至三十餘萬, 乾隆三十年以後, 洋貨日多, 稅額漸加增現至四十餘萬, 近年各商家業中落, 止存商人們六行辦課, 并力合運說法, 措交每年總要到九個月十個月內, 始能陸續完繳, 此屬實情, 若說那新掩

따른 것이었다.

潘文巖은 6개월 안에 수입 상품을 모두 현금화하여 징세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 이는 현금화와 관계없이 행상이 관세를 대납하면 되는 문제였다. 이것이 불가능하였다는 현실은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해야 할 만큼 영세했던 행상의 자본금 규모와 현금 동원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건륭제는 건륭 46년 10월 2일 상유를 통해 李湖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수의 보고와 운송의 기한을 6개월로 한 결정은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며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해달라는 건의는 “核實辦公之道”에 어긋나는 것이라 힐책하였다.<sup>384)</sup> 이와 함께 월해관의 관세 행정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건륭제의 상유를 받은 李湖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월해관의 회계 결산이 지연된 원인을 건륭 15년 회계 연도가 통일된 이후 관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sup>385)</sup> 그리고 이 사안은 11월 8일 圖明阿가 사건의 책임으로 ‘降一級留任’되는 선에서 종결되었다.<sup>386)</sup> 관세 결산의 지연 문제는 건륭 46년 4월 월해관감독으로 부임한 李質穎이 계획대로 건륭 46년 윤5월 8일에 건륭 45년분을 결산하고, 12월 24일 건륭 46년분을 결산하며 1년에 두 번 세수를 결산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李質穎은 향후 월해관의 결산 지연을 막기 위해 관세의 징세 방식을 변경할 것을 추진하였는데, 기존에 무역 시즌 종료 후 징세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에서 수출·입 상품의 인도와 함께 관세를 先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외국 선박이 입항한 후 수입 화물의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행상이 수입세를 先납부하고, 수출 화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세 역시 즉시 납

---

舊, 洋船出口之日, 新貨未銷餉項無出, 商人們尚須借貸完納, 那有新項可挪”.

384) 李湖, 『爲遵旨明白覆奏事』, 건륭 46년 10월 24일, 故宮 403039615.

385) 李湖, 『爲遵旨明白覆奏事』, 건륭 46년 10월 24일, 故宮 403039615, “自乾隆十五年部議定限十二個月扣足一年報滿, 起迄今三十餘載, 前後遞壓相仍漸成積重之勢, 此實歷任監督經理未協所致咎, 無可辭. 臣前摺雖皆”.

386) 圖明阿, 『爲恭謝天恩事』, 건륭 46년 11월 초10일, 故宮 403039777.

부하는 방식이었다. 월해관은 외국 상인의 관세 납부가 확인되면 領牌를 발급하여 선박을 출항시켜서 교역과 동시에 대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sup>387)</sup>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국 상인이 수입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외국 상인의 반발이 컸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현금 납부 대신 물납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강행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sup>388)</sup> 건륭제는 월해관의 대외 교역에서 “懷柔遠人”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외국 상인의 불만을 가중하는 방식은 채택되기 어려웠다.<sup>389)</sup>

수입세의 선납 방식은 외국 상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 부담을 행상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행상의 자본금 규모로 볼 때 수입 화물 전체의 수입세를 先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李質穎은 그 절충안으로 행상의 代賣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출·입세의 50%를 先납부하고,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李質穎은 이를 통해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390)</sup>

---

387) 李質穎, 『爲酌辦洋船稅餉分別先後征收以副解限仰祈聖鑒事』, 건륭 47년 8월 2일, 商務檔案(3), p.1872, “嗣後洋船到關時, 照各口定例, 每船查驗進口洋貨完畢, 即將應輸稅銀, 先行交納. 其置買內地貨物, 下船全竣, 亦照數交稅, 給牌出口, 不許仍前延滯”.

388) 李質穎, 『爲酌辦洋船稅餉分別先後征收以副解限仰祈聖鑒事』, 건륭 47년 8월 2일, 商務檔案(3), pp.1873-1874, “據各國大班罷刺查巴律多倫等稟稱, 夷等年年前赴天朝貿易, 屢蒙體恤, 各國夷人甚是感激, 所有出口貨稅, 應聽行商先行完交. 至進口貨稅, 夷等不能即時措辦, 懇求照依從前各船回帆之時, 夷等將貨物按照應交稅數, 交明行商, 上緊代賣輸納, 沾恩不淺等情”.

389) 『粵海關志』卷15, 『奏課二』, p.318, “且於外洋夷人, 並無苛累, 籌議尚屬妥協, 應如該監督奏辦”.

390) 李質穎, 『爲酌辦洋船稅餉分別先後征收以副解限仰祈聖鑒事』, 건륭 47년 8월 2일, 商務檔案(3), p.1872, “伏查洋船到廣, 多寡不等, 進口出口稅數, 約計各半. 如此立定章程, 則洋船出口之先, 已將一半稅銀在庫, 滿關後只餘一半稅銀, 六個月內商等辦納甚易, 不臻藉詞拖延, 再逾部限, 自可永遠奉行. 現今四十七年分稅餉, 即照此辦理, 已遵部限, 於滿關後六個月內起解. 謹將酌辦緣由, 恭折奏明. 等因”.

李質穎의 건의안은 호부의 동의를 얻으며 정례화되었는데, 여기서 월해관 관리에 관한 호부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sup>391)</sup> 호부는 榷關의 운영 방식은 해당 감독이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因地制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월해관에 대해서는 “濱海에 위치하여 서양과 통상하고 있어 내지의 常關들과는 또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었다.<sup>392)</sup> 하지만 이것이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월해관은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징세 업무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호부는 회계 결산의 지연을 허용하지 않았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은 철저히 호부의 榷關 운영 원리에서 운영되었고, 이로부터 벗어난 예외는 부정되었다. 대외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특수한 환경은 오직 “因地制宜”의 한도에서만 인정되었고, 징세 청부업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관세 행정은 “인지제의”로 인정될 뿐, 여기서 과생되는 차이는 인정되지 않고 세수의 회계 업무는 상관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이처럼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호부의 정책 방향은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호부의 입장이 반영된 행정의 변화는 행상의 도산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행상의 재무 상태 분석

### 1) 수입과 지출 규모

현재까지 광동체제에 관한 연구는 ‘廣東十三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391)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8, “今該監督奏請, 嗣後洋船出口各貨應納稅銀, 令行商於代置貨物時, 隨貨扣清, 先行完繳, 其進口各貨, 於夷船回帆之時核明輸稅, 從此輸項得以年清年款, 不致稽遲”.

392) 『粵海關志』 卷15, 「奏課二」, p.317, “況粵海關濱海通洋, 與內地各關情形又稍有不同, 其一切稽征事宜, 尤當加意經理, 俾稅課得以按期奉解, 不致拖延”.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당연히 행상의 도산에 관해서도 관심이 컸는데, 행상의 도산은 주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도산은 수지 불균형에 따른 채무 상환 불능의 결과이므로 그들의 수지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행상의 도산을 단순히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확인되는데, 특히 율해관의 행정 체계의 변화가 행상의 현금 유동성(Cash Flow)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행상이 대외 무역에 참여하며 얻는 수익률과 율해관 행정에 참여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경비를 검토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수입의 측면을 결론부터 정리하면, 행상이 對서양 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행상이 對서양 무역에서 주도권을 보장받는 이상, 수익률이 감소하여 행상이 도산하는 현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sup>393)</sup>

광동체제下 율해관의 대외 무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찻잎 교역을 통해 살펴보면 명확하다. 무역 시즌이 종료되면 非무역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 다음 무역 시즌에 거래할 교역품에 대한 先계약인 겨울 계약(Winter contracts)을 체결하였다. 1822년 西成行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EIC와 체결한 겨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怡和行에서 대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화행의 伍秉鑑은 찻잎의 원가, 판매 가격, 수익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94)</sup>

茶商으로부터 찻잎을 매입하는 비용 17량, 이자 0.9량, 저울추 무게 조정 비용, 관세, 화물 운송료 등 부대 비용 3량을 모두 포함한 20.9량,

393) 다만, 1830년대 EIC의 對중국 무역 독점권이 취소되면서 행상의 찻잎 교역 수익률은 하락하고, 리스크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1830년대 행상의 도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吳義雄, 「興泰行商欠案與鴉片戰爭前夕的行商體制」, 『近代史研究』 1, 2007, pp.56-75를 참조.

394) Chen, Kuo-tung, *The insolvency of the Chinese Hong merchants, 1760-1843*, Yale University, 1990, p.66.

동인도회사와 체결한 판매 가격 26량, 수익 5.1량

이에 따르면 功夫 찻잎의 매입가와 부대 비용을 합친 총액은 1擔 당 20.9량이었고, EIC와 체결한 판매 가격은 26량이었다. 행상은 찻잎 1擔을 판매하면서 5.1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수익률은 약 19.6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伍秉鑑의 설명은 찻잎 교역에서 행상이 1擔 당 약 4~5량의 이윤을 얻는다고 언급한 萬源行의 李應桂의 설명과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었다.<sup>395)</sup>

伍秉鑑이 설명한 계약 내용은 非무역 시즌에 계약한 겨울 계약을 기준으로 하였고, 겨울 계약의 판매 가격이 무역 시즌보다 약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상이 찻잎을 수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伍秉鑑의 설명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인 손실 요인이 있었는데, 행상이 EIC로부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모직물이었다.

양측은 겨울 계약에서 다음 무역 시즌에 거래할 찻잎의 수량과 가격을 협상하였고, 여기서 행상이 EIC로부터 구매하는 모직물의 비율에 따라 찻잎을 판매할 수 있는 비중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 모직물은 크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었고, 시장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낮아서 행상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西成行은 겨울 계약에서 功夫 찻잎 390擔 당 모직물 350장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모직물의 수입 가격은 1장당 6.7량이었고, 관세와 기타 비용을 합쳐서 8.2량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당시 모직물의 시장 가격은 7.5량이었으므로 1장당 0.7량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즉, 공부 찻잎 390담의 판매 이익 1,989량당 모직물 350장의 판매 손실 245량을 상쇄하면 행상은 차 1담을 판매하며 4.472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행상이 찻잎-모직물을 교역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손실까지 고려하면 행상은 차 1擔당 4.472량의 이익을 얻었고, 이를 고려하면 수익률은 약 17.2%로

<sup>395)</sup> 佐佐木正哉 編, 『鴉片戰爭前中英交渉文書』,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39輯, p.37.

하향 조정된다. 행상의 수익률에 대하여 일찍이 陳國棟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19세기 차-모직물 교역에 따른 수익률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sup>396)</sup>

<도표 3-3> 19세기 초 차-모직물 교역의 수익률

	차	모직물	합
① 西成行, 1822	+15.38	-2.41	12.97
② 西成行, 1823(怡和行)	+19.62	-2.42	17.20
③ 西成行, 1823(廣利行)	+19.62	-2.67	16.95
④ 西成行, 1823(東生行)	+19.62	-2.42	17.20
⑤ 西成行, 1823(東生行)	+11.92	-2.41	9.51
⑥ 廣利行, 1826	+16.00	-7.03	8.97
⑦ 同泰·天寶·萬源 3行, 1826(怡和行)	+16.00	-6.56	9.44
평균	16.88	-3.70	13.18

행상-EIC의 겨울 계약은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였으므로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같은 차종의 같은 품질로 볼 수 있다. ②, ③, ④, ⑤은 전년도 非무역 시즌에 서성행이 체결한 겨울 계약의 내용이였다. 서성행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1823년 무역 시즌에 怡和行, 廣利行, 東生行이 계약을 대행하였다. 겨울 계약에서 서성행이 체결한 차종과 수량은 功夫 15,000상자, 屯溪 4,000상자로 확인된다.<sup>397)</sup> 서성행의 몫은 이화행, 광순행, 동생행이 각각 공부 5,000상자씩, 둔계 4,000상자는 東生行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1826년 겨울 계약(⑥, ⑦)의 세부 조건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화행이 대행한 同泰·天寶·萬源 3행의 수익률과 광순행의 수익률은 일치한 것으로 볼 때 동일한 차종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22년 겨울 계약(①)에서도 서성행은 功夫 차 12,000상자, 둔계 차 3,500상자를 계약하였다.<sup>398)</sup>

<sup>396)</sup> 연도는 무역 시즌, 괄호 안의 행명은 교역을 대리한 행명을 가리킨다. Chen, Kuo-tung, *The insolvency of the Chinese Hong merchants, 1760-1843*, Yale University, 1990, p.67.

<sup>397)</sup>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4*, p.72.

1822년과 1826년 차 무역의 수익률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동일한 차종이라고 볼 수 있겠다.<sup>399)</sup>

차잎의 수출 가격은 차종, 등급, 계약 시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다. 차잎의 종류는 功夫, 色種, 屯溪, 貢熙皮, 貢熙 등이 있었고, 차잎의 품질에 따라서 10개의 등급으로 나뉘었다.<sup>400)</sup> 또한 겨울 계약의 가격은 무역 시즌에 거래보다 저렴하여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하였다.<sup>401)</sup> 陳國棟의 분석은 모두 非무역 시즌에 체결된 겨울 계약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무역 시즌의 교역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월해관의 무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차잎 교역의 수익률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행상의 도산을 지출 증가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행상의 지출에 관한 기존의 접근은 크게 ①행상의 사치적 소비, ②관원의 수탈, ③捐輸 강제 출연, ④外洋行 도산에 따른 채무 연대 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겠지만, 행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행상의 사치적 소비(①), 관원의 수탈(②)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의 잘못된 선입관에 의한 이미지였을 뿐이었다. 행상은 오히려 행상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였고, 捐納을 통해 관직을 얻는 것도 그들의 사

398)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4*, p.9.

399) 겨울 계약에서 계약하는 차종은 武夷 차잎, 功夫 차잎, 屯溪 차잎 등 차잎의 일반품이었고, 공회피, 공회와 같은 고급 차종은 무역 시즌에 현장 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19세기 초에 맺어진 겨울 계약에서 거래된 차잎은 대부분 공부 차잎과 둔계 차잎이었다. 이 중 공부 차잎의 경우 약 70-80%를 차지하였다.

400) 차종에 따른 가격대를 보면, 공부 차잎은 26~29량, 색종 차잎은 36~50량, 둔계 차잎은 24~34량, 공회피 차잎은 24~32량, 공회 차잎은 45~64량으로 차이가 있었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138).

401) 중등급(5등급) 색종 차잎은 非무역 시즌의 겨울 계약에서 28량의 가격으로 계약하였고, 무역 시즌에는 45량으로 거래되었다. 겨울 계약은 무역 시즌보다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60).

회적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작용한 것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반강제적인 강요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행상은 지방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자발적’으로 거액의 捐輸를 출연해야 하였다(③). 이것은 분명히 행상의 지출 증가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현재 사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건륭 말부터 각종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02)</sup>

<도표 3-4> 행상의 捐輸 용도와 총액

연도	용도	총액	연도	용도	총액
1773	四川軍需	200,000	1808	南河(黃河)河工	300,000
1787	臺灣軍需	300,000	1809	嘉慶皇帝五旬萬壽	120,000
1792	廓爾喀軍需	300,000	1811		600,000
1799	湖廣軍需	120,000	1814	勦平山東林清之亂	240,000
1800	川陝軍需	250,000	1818	嘉慶皇帝六旬萬壽	200,000
1801	川陝軍需	75,000	1819	東河(黃河) 河工	600,000
	順天工賑	250,000	1826	新疆回亂	600,000
1803	惠州剿匪	100,000	1830	新疆回亂	200,000
1804	黃河河工	200,000	1832	廣東(連山) 徭亂	210,000
	防禦海盜	60,000	1835	興建廣東虎門砲臺	60,000
1806	防禦海盜	100,000			

마지막으로 外洋行이 도산하며 상환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해야 하였다(④). 아래의 표는 도산한 행상의 채무 불이행 총액과 행상이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sup>403)</sup>

402) 陳國棟, 「論清代中葉廣東行商經營不善的原因」,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244-245 所收.

403) 陳國棟, 「論清代中葉廣東行商經營不善的原因」,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252-253 所收.

<도표 3-5> 도산한 外洋行의 채무액과 상환 방식

行名	도산연도	총액	분할	연 상환
泰和行, 裕源行	1780	600,000	10	60,000
義豐行	1784	166,000		
豐泰行	1790	255,000	6	42,500
而益行	1795	600,000	6	100,000
萬成行	1809	259,000	3	86,333
達成行, 會隆行	1810	1,447,000	10	144,700
黎泉行	1823	372,000	5	74,400
西成行	1826	475,000	5	95,000
同泰行	1827	86,000	3	28,667
福隆行	1828	792,000	6	132,000
東生行	1830	418,000	3	139,333
興泰行	1837	1,656,000	8.5	194,824
天寶行	1838	720,000	10	72,000

건륭 45년 泰和行과 裕源行의 도산을 계기로 행상이 외국인에게 진 채무를 연대 책임의 형태로 상환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행상의 공동 기금의 성격으로 출발한 行用(Consoo Fund)은 規例에 포함되어 부가세 적 성격의 잡세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행용의 출현과 용도는 도산한 행상의 채무 변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捐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04)</sup>

行用の 과세 범위는 건륭 45년 수입 화물 22종에 불과하던 것이 건륭 47년 수출·입 화물 47종으로 확대되었고, 가경 6년(1801) 수입 화물 중 모직품과 견직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었다.<sup>405)</sup> 일반적으로 행용의 세율은 3%라고 하였지만, 화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sup>406)</sup> 가경 15년(1810) 기준으로

404) 佶山, 『爲再陳關務積幣酌籌調製章程并請聖訓遵行事』, 가경 6년 9월 10일, 故宮 404006118, “奴才留心體察, 緣各行買賣貨物, 向有提抽行用之例. 各按名下, 進出貨數估價若干, 議抽行用若干, 存貯公所, 即作爲代繳乏商欠餉, 及偶遇捐款之數”.

405) 覺羅吉慶, 『爲遵旨秉公酌議恭摺覆奏仰祈聖鑒事』, 가경 6년 11월 28일, 故宮 404006791.

수출·입 화물에 평균 10%를 징수하였다.<sup>407)</sup> 행용에서 지출한 항목과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용에서 지출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08)</sup>

<도표 3-6> 行用 지출 항목과 금액(1807~181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辦公銀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對外 채무액			84,200㉞	128,800	398,100㉞	146,400	145,500
軍需	41,666	41,666		41,600	41,600	41,600	
河工	37,500	150,000	52,500			60,000	73,500
防禦海盜	60,000	20,000	149,800	50,000	30,000	30,000	
澳門軍費		10,000	10,000	43,300	43,300	33,000	
山東饑饉							
기타			212,700㉞				
	194,166	276,666	565,200	318,700	568,000	366,000	274,000

	1814	1815	1816
辦公銀	55,000	55,000	55,000
對外 채무액	145,000	145,000	145,000
軍需			
河工	60,000	60,000	60,000
防禦海盜			
澳門軍費			
山東饑饉	30,000	30,000	30,000
기타			5,325㉞
	290,000	290,000	295,325

406) 梁嘉彬, 『廣東十三行考』, 廣東人民出版社, 2009, p.322.

407)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305.

408)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309-311. ㉞은 萬成行 도산으로 발생한 채납액 관세: 52,800량, 行用: 17,900량, 糧道衙門: 2,000량, 對外 채무 84,200량 중 對外 채무액이다. ㉞은 萬壽慶典 120,000량, 河防 20,000량, 그리고 ㉞의 對外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산이다. ㉞은 원문에 “sic”을 그대로 따랐지만, 금액이 불명확하다. ㉞은 廈門 砲臺 5,325량이다.

이처럼 건륭 51년 신설된 辦公銀 55,000량은 전액 행용에서 지출되었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捐輸와 도산한 행상의 채무 변제도 모두 행용에서 지출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의 관원으로부터 행상은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를 사료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행상은 신설 관세인 행용을 통해 각종 지출 부담과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현금 수요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용의 징수액이 수출·입 화물의 평균 10%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출 증가의 요소가 행상을 도산으로 이끌 정도의 결정적인 요소였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현금 수요의 증가

행상의 차익 무역의 수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지출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捐輸와 도산한 행상이 진 채무의 대리 변제가 대부분 신설된 雜稅 항목인 行用에서 지출되었는 점에서 행상의 도산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행상의 현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월해관의 교역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하였고, 1785년 영국 의회에서 차 감세법이 통과되며 차익 교역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409)</sup>

월해관의 무역 규모의 성장으로 행상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와 비례하여 행상의 현금 수요도 증가하였다. 1785년 전후 5년 동안 차익 교역량의 평균치를 단순 비교해도 최소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up>410)</sup> 차 무역의 증가와 함께 전체 무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785년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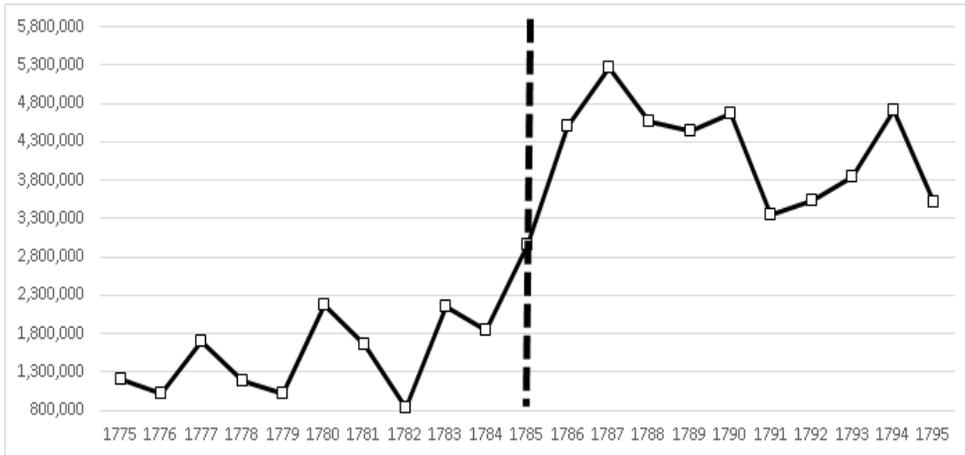
---

409) 1785년 전후 5년 동안 차익 거래량을 평균치로 단순 비교해도 최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410)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117.

전후 10년 동안 EIC가 행상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총액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7> 1785년 전후 10년 EIC 매입 총액



결국 월해관의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는 역으로 행상의 현금 수요를 증가시켰다. 갑자기 성장한 사업 규모는 당시의 廣州의 금융 환경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행상은 무역량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한 관세 수입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는 한, 행상의 현금 유동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었고, 19세기 초부터 EIC 외에 다른 국가의 무역 회사들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월해관의 전체 무역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19세기 초 월해관의 전체 무역 규모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11)</sup>

411)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의 1817년부터 1832년까지 매년 “The import trade of Canton”와 “The export trade of Canton”의 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모스의 통계에 일부 불완전한 면이 있다. 1817년과 1819년의 경우 기타 국가의 무역량이 누락되어 평균선에서 크게 이탈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초 월해관의 수출입 무역량의 추세를 확인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3-8> 19세기 초 월해관 전체 무역 규모



19세기 초 월해관의 대략적인 교역량은 수입 총액 1,800만~2,000만량, 수출 총액 1,400만~2,000만량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행상이 非무역 시즌에 선매해 두어야 하는 상품은 더욱 증가하였고, 이러한 무역 규모의 급성장은 행상의 현금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1823년 무역 시즌의 西成行의 케이스만 보아도, 다음 무역 시즌의 무역을 준비하기 위해 차 수출액의 80%가량 현금으로 필요하였다.

행상의 영세한 자본금 규모와 현금 조달 능력의 한계는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현금 유동성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행상은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는 방식 외에도 非무역 시즌에 체결하는 겨울 계약을 통해 현금 수요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도 있었다.

행상과 EIC 간에 겨울 계약의 규모와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규모와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778~1779년 무역 시즌과 해당 겨울 계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12)</sup>

412)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p.28-29. ah스가 사용한 명칭을 모두 行名으로 대체한다. Puankkequa(潘啓官)은 潘文巖의 同文行, Yngshaw(瑛秀)는 顏時瑛의 泰和行, Munqua(文官)은 蔡世

<도표 3-9> 1778년 겨울 계약 내역

	同文行	泰和行	逢源行	源泉行	裕源行	泰來行	而益行
武夷	3,000	3,000	3,000	1,500	1,500		
松夢·屯溪	2,000	2,000	2,000	1,000	1,000		
貢熙	200	200				100	100
生絲	600			600포	300	112	
모직물 할당	25%	25%	25%	12.5%	12.5%	0	0

1778년 겨울 계약에서 武夷 찻잎 13,500담, 屯溪와 松夢 찻잎 8000담, 貢熙 찻잎 600상자, 生絲 약 1,308담이 체결되었다. 각 상품의 수출 가격은 武夷 찻잎 13.5~14량, 屯溪 찻잎 22량, 松夢 찻잎 20량, 貢熙 찻잎 56량, 生絲 265량이었고, 계약 조건은 상품 가격의 5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금 지불이 지연될 경우 武夷 찻잎과 屯溪 찻잎의 수출 가격을 각각 0.5량, 1량씩 할증하는 것이었다.<sup>413)</sup>

1778년 무역 시즌에서 동인도회사가 매입한 찻잎의 수량은 40,245擔이었는데, 전체 매입량의 약 54%가 겨울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sup>414)</sup> 겨울 계약

文의 逢源行(1760-1796), Chowqua(周官)은 陳文擴의 源泉行, Kweshaw(球秀)는 張天球의 裕源行, Howqua는 일반적으로 五氏의 怡和行을 의미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外洋行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는 林時懋의 泰來行(1784-1788)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Shy Kinqa(石鯨官)은 石夢鯨의 而益行이다. 陳國棟, 『論清代中葉廣東行商經營不善的原因』,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228-230의 행상 명칭과 연대표 참조.

<sup>413)</sup>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8, 에서 무이 13,500담, 둔계와 송몽 8,000담, 공희 600상자(=300담), 생사 약 1300담+α(600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찻잎과 생사의 계약금은 판매가의 50%로 하였다. 계약 물품의 판매 가격은 무이 13.5~14량, 둔계 22량, 송몽 20량, 공희 56량, 생사 265량이었다.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의 지불이 지연될 경우 무이 0.5량, 둔계와 송몽 1량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1778년 무역 시즌에 동인도회사는 모두 40,245담을 매입하였으므로 약 54%가 겨울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sup>414)</sup>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40. 이 시기 월해관의 수출 상품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규모는 시기에 따른 차 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었고, 무역 시즌에 현장 거래량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sup>415)</sup>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50% 이상이 겨울 계약을 통해 체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16)</sup>

무역량의 증가에 따라 행상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상은 겨울 계약의 계약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었다. 월해관의 무역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행상은 더 많은 사업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를 융통할 수 없는 경우 이 수익률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겨울 계약의 계약금을 높였다. 非무역 시즌 체결한 겨울 계약의 내용과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17)</sup>

<도표 3-10> 1778년 월해관의 국가별 수출량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총합
	회사	散商					
차잎	40,245	2,740	15,776	34,152	24,437	10,414	127,764
생사	1,827	277	390	281		186	2,961

415) 1785~1786년 무역 시즌의 경우 현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겨울 계약의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였고(*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111; p.97*), 1798~1799년 무역 시즌은 현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겨울 계약이 전체 차잎 교역량의 98.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98; p.311*).

416)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777년 겨울 계약’은 약 54%(*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8*), ‘1784년 겨울 계약’은 약 40%(*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97*), ‘1797년 겨울 계약’은 약 98.8%(*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98*) 등으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50%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417)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5, pp.152-153; p.158.*

<도표 3-11> 非무역 시즌 행상과 동인도회사의 겨울 계약 비중(단위: %)

	1771	1772	1773	1774	1775	1775	1783	1793
무이	42.10	43.63	43.63	43.63	43.63	42.85	50	74.07
공부							50	74.07
둔계	51.06	52.17	52.17				50	80.00
송몽	55.81	60.00	60.00				50	
공희피							50	70.17
공희								

겨울 계약의 계약금 비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찻잎의 경우 보통 수출 가격의 50%에서 체결되었다.<sup>418)</sup> 행상은 계약금으로 내지의 차상에게 현금을 지불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속히 상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sup>419)</sup>

행상과 동인도회사의 겨울 계약은 매년 체결되었지만, 정확한 계약 규모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찻잎의 수량을 표시하는 무게 단위는擔(1擔=100근), 상자, 파운드 등이 함께 쓰였는데, 찻잎 거래의 기준 단위는擔이었지만, 19세기 이후에는 주로 상자 단위가 사용되었고, 찻잎의 종류에 따라서 상자 용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sup>420)</sup> 게다가 매년 상자의 용량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다른 연도의 상자 용량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817년 겨울 계약을 통해 계약 규모를 살펴보면, 功夫 찻잎 90,000箱, 屯溪 찻잎 36,000箱, 色種·貢熙·貢熙皮 찻잎 21,300箱, 南京布 200,000匹의 계

418)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40.

419) 生絲는 90% 수준이었다.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90.

420)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110. 1785년 기준 상자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이는 1785년의 상자 용량일 뿐, 매년 상자의 용량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연도의 상자 용량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가령 1792년 무역 시즌의 겨울 계약에 이를 적용하면 실제 계약금과 약 20% 오차가 발생한다.

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담으로 환산하면 모두 약 92,182.5擔이다.<sup>421)</sup> 1818년 무역 시즌 동인도회사에서 수입한 찻잎은 158,141擔, 南京布 191,700匹이었으므로 1818년 무역 시즌 차 거래량의 약 58%는 직전 무역 시즌에 체결된 겨울 계약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sup>422)</sup> 매년 그 규모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최소 50% 이상으로 볼 수 있다.<sup>423)</sup>

차 교역량의 폭증과 함께 전체 무역량이 증가하였지만, 무역 규모가 증가한 만큼 행상의 자본 규모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산 기한이 앞당겨진 것은 행상의 자금 흐름에 더욱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상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겨울 계약의 계약금 비중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계약금 비중의 인상은 행상의 현금 유동성의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지만, 행상이 수익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였다.

1792년 무역 시즌이 종료되고, 동인도회사는 겨울 계약의 계약금 비중이 이전의 50%에서 70~80%까지 인상된 것을 근거로 찻잎의 수출 가격을 1~2량 할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424)</sup>

421) 1817년 기준으로 찻잎 상자의 평균 무게는 무이 찻잎 360lb., 공부 찻잎 88lb., 색종 찻잎 75lb, 둔계 찻잎 80lb., 공희 찻잎·공희피 찻잎 66lb이었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313*).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모두 12,291,000lb이고, 1擔=60斤=133.3lb이므로 환산하면 약 92,182.5擔이다.

422) 1818년 무역 시즌 동인도회사가 수입한 찻잎은 158,141擔, 남경포 191,700필이었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3, p.331*). 1818년 무역 시즌 차 무역은 약 58%가 선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남경포는 원인불명으로 계약에 미달하였다.

423)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777년 겨울 계약’은 약 54%(*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8*), ‘1784년 겨울 계약’은 약 40%(*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97*), ‘1797년 겨울 계약’은 약 98.8%(*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98*) 등으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50%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424)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198*;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205*.

<도표 3-12> 1793년 겨울 계약 조건

	武夷	工夫	屯溪	貢熙
가격	13.5	27	25	57
계약금	10	20	20	40
비중	74%	74%	80%	70%

潘文巖과 같이 자금 흐름에 큰 곤란을 겪고 있지 않았던 행상들은 이 조건을 거부하고, 계약금 비중을 기존의 방식대로 50%로 하고 차익 수출 가격을 할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행상들은 동인도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 무역에서 행상이 1擔당 4~5량의 순이익을 얻는다고 보면, 대략 20%에 가까운 이익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었다.<sup>425)</sup> 행상은 겨울 계약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행상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행상은 겨울 계약을 통해 현금 수요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금 흐름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야 하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행상의 연쇄적인 도산 상황에서 행상의 신용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자율은 점점 높아져갔다. 당시 광주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경우 월이율 1%, 일시 차입금의 경우 2~3% 수준이었지만, 경영난에 처해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월이율이 5%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426)</sup>

### 3. 현금 유동성의 악화

#### 1) 행상의 도산과 청조의 대응

<sup>425)</sup>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188-189.

<sup>426)</sup> W. C. Hunter, *The Fan Kwae at Canton, Before Treaty Days, 1825-1833, by an Old Resident*, Kegan Paul, 1882, pp.39-40.

월해관의 결산 기한이 설정되기 전까지 징세청부업을 담당한 행상은 월해관의 회계 결산 전까지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였다. 하지만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호부의 정책 방향은 행상이 관세를 운용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행상의 현금 유동성(Cash Flow)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행상의 영업 외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호부는 對서양 무역 관리 정책에서 “因地制宜”의 범위에서만 차이를 인정하였고, 호부가 관할하는 樞關의 운영 원리에서 벗어난 월해관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용의 부담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 청부업자에게 모두 전가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상이 누리던 이권을 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되었다. 징세 청부업자들은 행정 비용의 증가와 관세 운용 기간 축소에 급격하게 현금 동원력을 약화시켰다.

이것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지출의 증가였다면, 행상으로서의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한 금융 환경에서 행상은 현금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건륭 45년 관세 결산 기한의 설정과 월해관 세수의 酌撥 보편화 현상은 행상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행상의 도산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陳國棟의 정리에 따르면 1760년부터 1853년까지 약 84년 동안 모두 47개 外洋行이 대외 무역에 참여하였고, 1771년부터 1839년까지 모두 37개 外洋行이 도산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27)</sup>

---

427) 陳國棟, 『論清代中葉廣東行商經營不善的原因』, 『清代前期的粵海關與十三行』, 廣東人民出版社, 2014, pp.231-232의 表2 참조.

<도표 3-13> 外洋行의 폐업 연도와 폐업 유형

연도	행명	유형	연도	행명	유형	연도	행명	유형	연도	행명	유형
1771	聚豐	A	1790	豐泰	B*	1809	Lyqua's	C	1831	Tuckune's	C
1775	廣源	D	1791	Chetai's	A	1809	萬成	B*	1831	Chingqua's	C
1778	廣順(coqua)	B	1792	源泉	B	1810	遠成	B*	1835	福泉	A
1780	泰和	B*	1793	隆和	C	1810	會隆	B*	1835	萬源	B
1780	裕源	B*	1794	Tackqua's	A	1810	福隆 A	C	1837	東昌	C
1781	遠來	D	1795	而益	B*	1823	麗泉	B*	1837	興泰	B*
1784	義豐	B*	1797	萬和	B	1826	西成	B*	1839	安昌	C
1784	Seequa's	D	1798	源順	B	1827	同泰	B*			
1786	Lunshaw's	C	1804	義成	R	1828	福隆 B	B*			
1788	泰來	B	1807	同文	R	1829	東生	B*			

행상의 폐업 유형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원인불명으로 사라진 A형, 독무의 도산 선고로 폐업한 B형(중양에 보고 X), 도산 선고와 함께 중양에 보고된 B\*형, 사업 실패 혹은 위법 행위로 독무가 폐업을 명령한 C형, 행상의 사망으로 인한 폐업인 D형, 독무가 은퇴를 승인하여 영업을 종료한 R형 등이 있었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륭 44년(1779) 泰和行, 裕源行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商欠”, 두 번째는 가경 14년(1809) 萬成行, 會隆行, 達成行의 도산, 그리고 마지막은道光 3년(1823) 麗泉行의 도산으로 시작된 西成行, 同泰行, 福隆行, 東生行이 연쇄적으로 도산한 시기이다.

행상의 대외 채무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중양에서 인지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사건은 건륭 41년(1776) 豐進行의 도산이었다. 豐進行의 도산은 廣州의 商欠이 중양에 직접 보고된 첫 사례였다. 이전까지 행상과 외국 상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은 지방 당국의 조정으로 지방 차원에서 해결되는 사항이었고, 중양에까지 보고된 경우는 없었다.<sup>428)</sup> 이 사건은 호부가 월해관의

<sup>428)</sup> 건륭 23년(1758) 資元行 黎光華의 도산과 채무 불이행 문제가 조정에 알려진 최초의 사례이다. 資元行은 약 5만량의 채무를 졌지만, 여광화가 죽자, 그의 아들은 부친의 사망을 구실로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였다. 지방 당국은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건륭 24년(1759) 洪任輝(James Flint)가

결산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상과 외국 상인의 채권·채무 문제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청조는 법률로서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토지 거래 및 채권·채무 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死罪 혹은 充軍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으로 처리되었다.<sup>429)</sup> 1759년 제임스 플린트가 탄원서에서 행상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防範外夷規條』에서 채권·채무 관계의 형성이 금지되었고, 중국인이 불법적으로 외국인과 거래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交結外國借貸誑騙財物例』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만, 본래 豐進行은 外洋行이 아닌 本港行으로서 원칙적으로 對서양 무역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행제도 시기(1760-1771) 이후 本港行이 對서양 무역에 종사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공인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對서양 무역에 익숙하지 못했던 풍진행은 곧 채무를 지기 시작하였고, 1772년 공행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기 시작하였다.

1772년 무역 시즌이 종료된 이후 풍진행은 현금과 상품을 포함한 채무 11,726량을 상환하지 못하며 도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772년 EIC는 풍진행의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한 탄원서를 윌해관감독에게 제출하며 상환을 독촉하였다. 하지만 분쟁의 조정은 1776년 광동순무 李質穎이 부임할 때까지 지연되었고, 광동순무직에 부임한 李質穎이 최종적으로 풍진행을 도산시키고, 倪宏文을 처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430)</sup>

---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중앙 정부에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과 외국인의 채권·채무 관계가 법률로서 금지되었다.

429) 『大清律例』, 『交結外國誑騙財物例』, “交結外國及私通土苗, 互相買賣借貸, 誑騙財物, 引惹邊釁, 或潛往苗寨, 教誘爲亂, (如打劫民財, 以強盜分別。)貽患地方者, 除實犯死罪(如越邊關, 出外境, 將人口、軍器出境, 賣與硝磺之類)外, 俱問發邊遠充軍”. 這就是清代“照交結外國借貸誑騙財物例”.

430) 윌해관감독은 南海縣의 知縣에게 사건의 처리를 명령하겠다고 회신을 보냈지

그런데 풍진행의 도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李質穎은 이 사안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李質穎이 풍진행의 채무 문제를 일반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하여 倪宏文의 감생 자격을 박탈하고 徒刑에 준하여 杖刑으로 감면하여 처벌하였다. 하지만 李質穎의 보고를 받은 건륭제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행상이 외국 상인에게 빚을 지고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중국인끼리의 채무 문제와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倪宏文의 감형을 결정한 李質穎의 판단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며 이것은 “體恤遠人”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책하였다.<sup>431)</sup>

풍진행의 도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채무 문제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확립이었다. 이 원칙은 이미 『防範外夷規條』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지만, 이후에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직예총독 周元理는 해관 책임자의 인수인계 사항에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여 향후 “永遠遵行”할 것을 상주하였는데, 아마도 해관 책임자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누락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32)</sup>

이것은 李質穎이 이 사안을 처리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李質穎이 풍진행의 도산을 중앙에 보고한 목적은 倪宏文을 처벌하기 위해 監生 신분을 박탈하기 위함이었지, 외국 상인과 채권·채무 관계를 맺은 사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李質穎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지방 차원에서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해결했을 것이고, 또한 중앙에 보고한다고 해도 倪宏文의 감형을 결정하는 위험 부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인과 서양인의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

---

만, 사건의 처리는 1776년까지 지연되었다.

431) 李侍堯, 『爲遵旨奏覆叩謝天恩事』, 건륭 42년 정월 9일, 故宮 403030518.

432) 周元理, 『爲欽奉上諭事』, 건륭 41년 12월 7일, 商務檔案(3), pp.1775-1777.

만, “撫馭遠人”의 뜻에 따라 외국인 채권자의 청구권은 인정하였다. 건륭제는 풍진행의 자산을 처분하여 1년 안에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지방의 督撫 이하 해당 府·州·縣 관원의 양림은에서 변제할 것을 명령하였다.<sup>433)</sup>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풍진행의 채무 11,725량은 倪宏文의 동생 倪宏業, 생질 蔡文觀이 6,000량을, 나머지 5,725.75량은 관리의 양림은에서 지불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34)435)</sup>

여기서 월해관 무역을 포함한 건륭제의 대외 관계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건륭제는 건륭 41년 11월 24일 상유를 통하여 자신이 채권·채무 분쟁에 직접 개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436)</sup>

撫馭遠人함에 오로지 秉公持正하여 (그들을) 감화시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常法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평상시에 보기를 草芥처럼 여겨서 불온한 자들이 업신여기도록 내버려 두고, 사단이 발생하여 官衙에 하소연해도 또한, 民人을 비호한다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이 北京에 와서 고발할 수도 없으니, 단지 마음에 원한을 품고, 돌아가서 島夷에게 말을 전하면서 어찌 督撫를 경시하며 깔보며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건륭제의 태도는 洪任輝事件 당시 “外夷와 관련된 사무는 國體와 관계가 있으니,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天朝의 憲典을 명백히 드러낼 것”을 지시한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sup>437)</sup> 건륭제의 “撫馭遠人”의 방침은 朝鮮, 安南,

433) 건륭 41년 11월 26일 上諭, 商務檔案(3), pp.1773-1774.

434) 李質穎, 「爲粵商賒欠夷商貨銀遵旨辦理完結恭摺覆奏事」, 건륭 42년 3월 3일, 故宮 403030858.

435) 건륭 42년 4월 6일 上諭, 商務檔案(3), p.1798. 하지만 건륭 42년 5월 26일 倪宏文이 옥중에서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李質穎, 「爲奏聞事」, 건륭 42년 6월 6일, 故宮 403031676).

436) 李質穎, 「爲叩謝天恩事」, 건륭 42년 정월 9일, 故宮 403030507, “中國撫馭遠人全在秉公持正, 令其感而生畏, 方合政經. 若平視之如草芥, 任聽地棍欺凌, 而有事鳴官, 又復袒護民人, 不爲清理, 彼既不能赴京控訴, 徒令蓄怨於心, 歸而傳語島夷, 豈不輕視督撫, 鄙而笑之”.

琉球, 日本 등 해상 교역뿐만 아니라 伊利, 카흐타 등의 육상 교역을 포함하였다. 그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교역상에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이 아니라 封疆의 문제와 다름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어서 건륭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38)</sup>

대저 漢·唐·宋·明의 끝 무렵을 곰곰이 살펴보면, 먼 곳을 부드럽게 달래는 다스림(柔遠之經)에 매우 어두웠다. 저들이 약하여 힘을 펼치지 못하면 업신여겨 가혹하게 처리하였고, 저들이 강성해져 사단을 일으키면 두려워하여 그들과 타협하였다. 예전부터 해 온 방식을 쫓아서 잠깐의 편안함만을 구하다가 결국 큰 불화를 조성하여 해결할 수 없는 데에 이르렀다. 宋의 패배와 明의 멸망은 모두 이러한 병폐로 인한 것이니 더더욱 본보기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건륭제는 漢·唐·宋·明의 멸망이 변방에서의 갈등이 누적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소한 충돌은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행상과 외국 상인이 채무 관계를 형성하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것이었고, 이 분쟁에서 자국민에게 유리하고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경우 그 불만이 누적되어 반드시 변방의 분란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李質穎이 이 문제를 단순 채무 관계로 여겨서 경솔히 처리한 것도 이러한 큰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하였다.

이처럼 황제는 華夷를 “一視同仁”하는 기본 입장이지만, 대외 교역은 “撫馭遠人” 혹은 “柔遠之經”을 실천하여 외국과의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것은 제국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건륭제는 封疆之臣으로서 將軍과 督撫는 이를 명심하여 대외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향후

437) 『清高宗實錄』卷589, 건륭 24년 6월 戊寅(29), “事涉外夷, 關係國體, 務須徹底根究, 以彰天朝憲典”.

438) 李質穎, 『爲叩謝天恩事』, 건륭 42년 정월 9일, 故宮 403030507, “蓋有深慮漢唐宋明之末季, 多昧於柔遠之經. 當其弱而不振, 則藐忽而虐侮之, 及其強而有事, 則又畏懼而調停之. 姑息因循, 卒至釀成大釁而不可救. 宋之敗明之亡皆坐此病, 更不可不引爲殷鑒也”.

재차 이러한 사건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엄벌할 것이라 경고하였다.<sup>439)</sup>

건륭제는 이러한 대외 전략이 통해 변경 지역의 안정과 영원토록 제국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중국인과 외국인의 채권·채무 관계 설정에 대한 처벌을 「交結外國借貸誑騙財物例」를 적용하여 예외 없이 모두 伊利로 充軍하면서도, 외국 상인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건륭제의 결정은 이후 행상의 도산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행상의 채무 상환 불이행 문제는 건륭 44년 9월 EIC 소속 씨홀스 (Sea horse)號의 선장 팬톤(Capt. John Alexander Panton)이 월해관에 입항하여 행상의 채무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발생하였다. 팬톤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행상의 부채 규모는 다음과 같다.<sup>440)</sup>

<도표 3-14> 행상 채무액(단위 圓)

행명	채무액	행명	채무액	행명	채무액
泰和行	1,354,713	裕源行	438,735	廣順行	1,151,299
萬和行	141,112	義豐行	634,784	遠來行	81,944

豐進行이 도산한 지 6년 만에 외국인과 중국인 간의 채무 관계가 드러나며 광둥순무 李質穎의 입장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李質穎은 이를 중앙에 보고하기 전에 외국인 채권자와 행상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무마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廣順行, 萬和行, 義豐行, 遠來行은 채무 상환 방식

439) 李質穎, 「爲叩謝天恩事」, 건륭 42년 정월 9일, 故宮 403030507, “若仍視爲具文, 再有此等事件, 一經發覺, 或經朕訪聞, 及爲言官糾劾, 必將該將軍督撫重治其罪, 不能似此案之僅予議處也. 將軍督撫皆朕委任之人, 惟當善體朕意, 毋怠毋違, 自可寓久安長治之計. 即我世世子孫, 敬體朕訓, 守而勿失, 億萬年無疆之慶, 詎不在是耶. 此旨著傳諭各將軍督撫, 一體遵照, 並著入於交代, 令各後任永遠遵行, 勿稍玩忽. 並另錄一分交尚書房, 俾皆恪循罔懈”.

440) Chen, Kuo-tung, *The insolvency of the Chinese Hong merchants, 1760-1843*, Yale University, 1990, pp.199-202.

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졌지만, 泰和行과 裕源行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정식으로 사건화되었다.

李質穎은 팬톤의 청원서에 채무인의 이름과 금액에 관한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실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상의 對外 채무액을 조사한 결과 태화행의 顏時瑛이 番銀 136,700량, 유원행의 張天球가 番銀 165,600량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 보고하였다.<sup>441)</sup> 문제는 팬톤의 청원서에 기재된 부채가 이전의 풍진행과 비교하여 훨씬 큰 규모였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李質穎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건륭 25년 채권·채무 관계의 설정 금지 조치가 있기 이전에 부채인 태화행의 136,700兩와 유원행의 165,600兩에 이자가 누적된 것으로 설명하며 건륭 45년 3월 29일 EIC에서 제출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채무액 목록을 근거로 모두 11명이 태화행과 유원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각각 1,354,000圓, 438,000圓의 채무를 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원금과 20여 년 동안 누적된 이자의 총액이라는 설명이었다.<sup>442)</sup>

이 사안을 다루는 건륭제의 태도는 풍진행 때와 다르지 않았다. 사건의 주범인 태화행의 顏時瑛과 유원행의 張天球는 『外國誑騙財物例』에 따라서 伊利로 發往하고, 그들이 외국 상인에게 진 채무를 변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도산한 행상의 자산을 처분하고, 미납된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남은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부족한 금액은 總商 潘文巖의 책임하에 행상이 공동으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결정되었다.<sup>443)</sup>

441) 李質穎 등, 『爲查辦洋商遠年私債核實奏聞事』, 건륭 45년 4월 12일, 故宮 0269 92.

442) 李質穎 등, 『爲查辦洋商遠年私債核實奏聞事』, 건륭 45년 4월 12일, 故宮 0269 92.

443) 覺羅巴延三·圖明阿, 『爲查議具奏事』, 건륭 45년 10월 26일, 商務檔案(3), pp.1824-1836. 태화행과 유원행이 미납한 관세 약 34,000량과 22,500량을 납부하고, 동인도회사에 진 채무 약 60만량은 潘文巖의 책임하에 潘文巖, 陳文擴, 蔡世文, 蔡昭復, 石夢鯨, 陳世積이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것이 결정되었다.

건륭 41년(1776) 豐進行에 이어 건륭 45년(1780) 泰和行과 裕源行이 도산 하는 사건은 건륭 45년 호부가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할 것을 건의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부는 “那掩之弊를 근절” 한다는 명목으로 결산 기한을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월해관의 ‘那新掩舊’의 폐단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은 행상의 도산에 따른 세수 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sup>444)</sup>

호부의 입장에서 행상의 도산보다 심각한 문제는 월해관 세수의 손실이었으므로 관세의 결산 기한을 설정하여 세수 행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행상의 관세 운용 기한을 축소시키며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기점으로 행상의 도산은 폭증하기 시작하였고, 대외 교역이 증가할수록 행상의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 2) 월해관 세수 酌撥의 보편화

월해관 세수 중에는 매년 藩庫에 납부해야 하는 正項銀 40,000량과 銅觔水脚銀 3,564량 등 正額銀 43,564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盈餘銀이 있었다. 영여은은 관기가 종료된 후 奏銷를 거쳐서 결산하였고, 규정된 지출 항목을 제외한 전액을 北京으로 운송하는 京餉이었다. 즉, 월해관의 세수는 각 지역의 수지 변화에 따라 酌撥하는 항목이 아니었다. 하지만 청조의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 호부는 부족한 자금을 월해관의 세수를 撥解하여 처리하였고, 월해관의 관세 행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상은 항상 현금 부족에 시달렸다. 무역 시즌에 수입한 화물은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非무역 시즌에는 다음 무역 시즌에 수출할 상품을 매입해 두어야 하였기 때문에 현금 수요가 컸다. 월해관 세수의 酌撥이 보편화된다면, 행상은 회계 연도가 종료되기도 전에 호부의

444) 和珅 등, 『爲奏明請旨事』, 건륭 45년 12월 15일, 故宮 029325.

지시에 따라 급작스럽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였다. 관세의 결산 기한은 6개월로 설정되었지만, 당시 열악한 금융 환경에서 행상이 징수한 관세는 현금 경색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세수의 회계 결산일은 물론, 회계 연도가 종료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부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호부의 월해관 세수의 先집행은 행상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월해관 세수의 酌撥 현상은 林爽文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건륭제 시기 酌撥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45)</sup>

<도표 3-15> 월해관 세수의 협향 내용(건륭 50년~건륭 60년)

회계 연도	관기	사용처	금액
건륭 52년분	건륭 50년 11월 26일-건륭 51년 10월 25일	복건 병향	40만
건륭 53년분	건륭 51년 10월 26일-건륭 52년 10월 25일	복건 비용	20만
		복건 군수	50만
건륭 57년분	건륭 55년 9월 26일-건륭 56년 9월 25일	귀주 병향	40만
		광동 병향	30만
건륭 58년분	건륭 56년 9월 26일-건륭 57년 8월 25일	사천 군수	50만
건륭 59년분	건륭 57년 8월 26일-건륭 58년 8월 25일	운남 銅本	40만
		광동 병향	22만
건륭 60년분	건륭 58년 8월 26일-건륭 59년 8월 25일	갑인년(59) 광동 병향	28만
		을묘년(60) 운남 병향	10만
		병진년(1) 광동 춘계 병향	30만

445) 佛寧, 「爲報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52년 5월 20일, 故宮 403050972; 佛寧, 「爲報明起解雜項銀兩事」, 건륭 53년 4월 28일, 故宮 403053900; 盛住, 「爲報明起解雜項銀兩事」, 건륭 57년 4월 24일, 商務檔案(4), pp.2130-2136; 盛住,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仰祈聖鑒事」, 건륭 58년 3월 23일, 商務檔案(4), pp.2181-2186; 蘇楞額,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건륭 59년 3월 4일, 商務檔案(4), pp.2384-2389; 舒璽,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60년 3월 13일, 第一 MR20, pp.1925-1928.

건륭 52년 4월 5일 건륭제는 대만의 林爽文의 난 진압을 위한 福建省의 군항을 충당할 목적으로 광동성의 鹽課와 월해관의 關稅를 協餉할 것을 지시하였다. 염과는 전년도에 秋撥한 상황에서 운송을 준비하는 데까지 彈兌와 포장 작업(裝鞘) 등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계 결산이 임박한 월해관 건륭 52년분에서 40만량을 협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446)</sup>

협향이 지시된 시점은 건륭 52년분의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회계 결산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상의 현금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호부의 지시에 따라 40만량을 복건성으로 협향하고, 그 나머지는 건륭 52년 5월 20일 건륭 52년분 세수의 회계를 결산하여 北京으로 起解하였다. 하지만 만약 관기 종료일 이전에 관세의 협향이 결정된다면, 행상은 아직 징수하지도 않은 미래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발생하였다.

건륭 52년 8월 15일 복건성의 군항을 지원하기 위해 복건성과 인접한 지역에서 100만량을 조달하여 협향하라는 호부의 咨文이 월해관에 도착하였고, 광동성의 할당액은 월해관 세수 중 20만량이었다.<sup>447)</sup> 하지만 복건성의 추가적인 군비 수요가 예상되면서 10월 18일 호부는 복건성과 인접한 지역의 常關과 海關의 盈餘銀의 起解를 일시 중지시키고, 세수를 存留하여 향후 군비의 수요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48)</sup> 전체 금액 300만량에서 광동성의 할당액은 地丁·鹽課 50만량, 월해관 세수 50만량, 태평관 세수 6만량 등 모두 106만량이었다.<sup>449)</sup>

광동성에서 협향해야 하는 금액은 10월 21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복건성

446) 복건성과 가까웠던 潮州의 鹽課와 廣濟橋 관세 등 10만량을 우선 운송하고, 廣州의 鹽課는 彈兌와 세수 꾸러미 포장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산 기한이 곧 도래하는 월해관의 영여은에서 40만량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주에서 廣濟橋 관세 6만량이 우선 기해되었으므로 34만량을 지출하였다. 孫士毅, 『爲遵旨酌撥銀項解閩恭摺覆奏事』, 건륭 52년 4월 16일, 故宮 403050661.

447) 明興, 奏摺 附件, 건륭 52년 8월 15일, 故宮 403051548-0-A; 佛寧, 『爲奏聞事』, 건륭 52년 8월 15일, 故宮 403051553;

448) 佛寧, 『爲報明起解雜項銀兩事』, 건륭 53년 4월 28일, 故宮 403053900.

449) 孫士毅, 奏摺 附件, 건륭 52년 10월 26일, 故宮 403052145-0-B.

으로 운송되었는데, 호부는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륭 53년분 세수에서 70만량을 先집행한 셈이었다.<sup>450)</sup> 건륭 53년분 징수 총액이 981,686.312량이었으므로 先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71.3%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다.<sup>451)</sup> 심지어 직전 회계 연도가 5월 20일에 결산되었으므로 행상은 관기 종료일보다 6개월, 회계 결산일보다 12개월 일찍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화되면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 청부업자는 관세를 운용하기는 커녕, 중앙의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교역에서 징수해야 할 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였다. 여기서 행상의 미약한 현금 보유량과 딱 막힌 현금 유동성은 호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월해관 세수는 協餉뿐만 아니라 회계 결산 이전에 호부 세입을 起解하는 현상도 출현하였다. 가경 6년 6월 22일 월해관감독 佶山은 관기 종료 후 가경 壬戌年分の 徵收總數 보고를 실시하였다.<sup>452)</sup> 이에 대해 가경제는 硃批로 “즉시 北京으로 起解할 것”을 명령하였고, 7월 19일 協餉을 제외한 세수가 北京으로 운송되었다.<sup>453)</sup> 가경 壬戌年分 세수의 결산은 10월 13일 영역은수목 보고를 통해 처리되었으므로 월해관의 결산일보다 3달 앞당겨진 것이었다.<sup>454)</sup>

가경 5년 호부는 월해관의 세수에서 광동성의 兵餉 578,124.016량, 호북과 사천의 備貢銀 550,000량을 協餉할 것을 지시하였고, 가경 辛酉年分에서 793,550.147량을 협항하고 부족한 금액 334,573.869량은 가경 壬戌年分에서

450) 圖薩布·佛寧, 『爲撥解赴閩軍需銀兩起程期恭摺奏聞事』, 건륭 52년 10월 24일, 故宮 403052121.

451) 건륭 53년분의 회계 결산은 건륭 53년 4월 28일에 실시되었다. 佛寧, 『爲報明起解雜項銀兩事』, 건륭 53년 4월 28일, 故宮 403053900.

452) 佶山, 奏摺 附件, 가경 6년 6월 22일, 商務檔案(5), p.2510.

453) 佶山, 『爲准咨動撥關稅起解進京恭摺奏聞事』, 가경 6년 7월 21일, 故宮 404005649.

454) 佶山, 『爲循例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睿鑒事』, 가경 6년 10월 13일, 故宮 404006399.

지출하였다. 월해관감독은 호부의 지시에 따라 壬戌年分 영여은 중 協餉한 금액을 제외한 영여은 786,308.79량 중 20만량을 섬서성에 협항하고, 나머지 60만량을 모두 북경으로 운송하였다. 가경제 시기가 되면 두 차례 회계 보고를 통해 결산하던 기존에 방식에서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즉시 起解하는 경우도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가경제와 도광제 시기에 이르러 행상의 도산은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고, 도광 10년(1830) 월해관의 결산 기한이 재조정되며 광동체제 시기 월해관의 세수 결산 제도의 최종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도광 10년 壬辰年分의 관기가 종료된 후 양광총독 李鴻賓과 월해관감독 中祥은 연명으로 월해관의 징세 방식의 변경을 건의하였다. 행상의 “那新掩舊”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은 도광 3년(1823) 黎泉行, 도광 6년(1826) 西成行, 도광 7년(1827) 同泰行, 도광 8년(1828) 福隆行, 도광 9년(1829) 東生行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 대한 지방 정부의 대응이었다.

기존의 방식은 관기가 종료된 후 징세 업무를 시작하여 3개월 동안 진행한 후 다시 3개월 동안 회계 결산과 운송을 준비하였지만, 결산 기한까지 관세의 대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음 회계 연도의 관세를 전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那新掩舊”의 폐단을 단속하기 위해서 월해관 측에서 건의한 새로운 징세 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455)</sup>

수입품은 외국 선박의 화물을 모두 하역한 날(에) 保商과 通事는 어떤 상품을 어느 행이 구매했는지, 어떤 상품을 외국 상인이 아직 판매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행상이

455) 李鴻賓·中祥, 『爲籌議粵海關進口稅銀, 應請自癸巳年分, 爲始隨時, 按船完納, 年清年款, 以杜洋商, 挪掩之弊, 解部銀兩, 得以提早五月, 並請將壬辰年分, 未完進口稅銀, 分限帶徵, 以紓商力, 仰祈聖鑒事』, 도광 10년 7월 7일, 第一MR21, p.1493, “進口貨物於夷船清艙之日, 責令保商通事, 先行報命某貨已經某行買受, 某貨夷人尙未賣出. 已賣之貨, 由行商完納, 未賣之貨, 由夷商交餉, 保商代納夷商”.

완납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夷商이 관세를 지불하여 保商이 夷商을 대신하여 (관세를) 납부합니다.

월해관 측은 회계 연도 종료일에서 회계 결산일까지 시간적 차이를 단축하여 관세의 대납을 독촉하겠다는 것이었다. 외국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 화물을 행상에게 모두 인도하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세를 즉시 先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를 적용하면 상인의 “那新掩舊”의 폐단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의 대납이 3개월 안에 모두 완료되므로 결산 기한을 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sup>456)</sup>

이러한 조치는 도광 壬辰年分 결산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였다.<sup>457)</sup> 도광 초 행상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인한 누적 관세 미납액은 약 68만량, 외국 상인에게 대신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145만량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광 壬辰年分の 관세 약 88만량의 대납이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sup>458)</sup>

월해관 측은 도광 壬辰年分을 이전의 방식대로 징수하고, 새로운 징세 방식은 도광 癸巳年分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도광 壬辰年分の 관기 종료일 이후 징세 업무가 진행되는 6개월의 기간이 도광 癸巳年分の 관기와 겹치므로 두 방식을 병용할 경우 상인에게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를 명분으로 도광 壬辰年分 관세를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456) 월해관 측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계사년분’의 결산을 도광 11년 12월 25일에서 10월 말로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如夢兪允，則癸巳年分關稅即可於十一年六月二十五日滿關後三個月徵齊起解 以例應十一年十二月二十五日繳完，十二年春間起解之銀，得於十一年十月底，即行報解計可提早五月”.

457) 中祥, 『爲恭報起解關稅贏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11년 2월 18일, 第一 MR21, pp.1551-1554, 실제로 수입세의 분할 납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년분’은 결산 기한일인 정월 25일을 초과한 2월 18일에 이루어졌다.

458) 李鴻賓·中祥, 『爲籌議粵海關進口稅銀，應請自癸巳年分，爲始隨時，按船完納，年清年款，以杜洋商，挪掩之弊，解部銀兩，得以提早五月，並請將壬辰年分，未完進口稅銀，分限帶徵，以紓商力，仰祈聖鑒事』, 도광 10년 7월 7일, 第一 MR21, p.1492.

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분할 상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을 제외하고, 호부의 동의 를 얻으며 확정되었다.<sup>459)</sup> 도광 10년의 징세 방식의 변경으로 결산 기한에 관한 규정 자체는 6개월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월해관의 관세 행정은 징세 업무를 완료하는 3개월과 회계 결산을 준비하는 1개월을 합쳐서 약 4개월 안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도광 10년부터 월해관의 관세 는 先납부 방식으로 바뀌었고, 행상의 경영난에 대응하여 월해관 세수의 결 산 기한을 단축시켜서 세수 행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因地制宜”와 “撫馭遠人”(혹은 “緩柔遠人”)의 원칙과 차이가 있었다.

현금 보유량이 미약하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았던 행상은 회계 결산 이전 까지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지만, 결산 기한의 설정 이후 운용 기간의 축소와 행정 비용의 증가는 그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酌撥의 보편화 현상으로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의 교역에서 징수하는 관세’를 선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경색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물론, 가경제와 도광제 시기 지방의 독무와 월해관감독은 행상의 경영난의 원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관의 관원으로서 그들에게 행상의 도산 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의 결산이었다. 지방 당국은 행상의 도산으로 관세의 납부와 捐輸의 출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그들에게 관세와 捐輸를 독촉하였다.<sup>460)</sup> 행상의 경영난 에 대해 호부는 관세 엄정화, 지방 당국은 관료주의로 대응하였고, 이것들이 다시 행상의 사업 운영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

459) ‘임진년분’의 관기는 도광 9년 7월 26일부터 도광 10년 6월 25일이었다. 그리고 ‘임진년분’의 징세 업무는 3개월 후인 9월 26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징세 방식이 적용되는 ‘계사년분’의 관기(도광 10년 6월 26일 ~도광 11년 6월 25일)이 겹친다.

460) 蔣攸鈺, 『爲恭報兼署粵海關印務日期仰祈聖鑒事』, 가경 22년 2월 10일, 故宮 050908, “現在洋商大半疲乏, 節年捐款亦須趕緊催交”.

#### 4. 소결

호부의 회계 연도는 曆年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의 특성상 윤달을 만나는 경우 윤달을 당해 연도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遇閏加徵”의 방식으로 회계 연도와 역년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세수 총액의 월평균을 환산하여 윤달 치를 추가 징수함으로써 월수에 차이는 있지만, 회계 연도와 역년은 일치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定額主義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榷關의 경우 회계 연도의 월수가 12개월 혹은 13개월로 불규칙한 상황에서 遇閏加徵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盈餘銀은 定額銀처럼 1년 치 할당액이 정해진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평균 치를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회계 연도 차이를 조정할 수 없었다. 이에 榷關의 경우 회계 연도 1년을 12개월로 고정하여 윤달을 만나는 경우 “連閏趨前”의 방식으로 윤달을 포함한 12개월로 결산하고, 마지막 13번째 달은 다음 회계 연도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連閏趨前의 방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榷關의 회계 연도가 윤달을 만날 때마다 한 달씩 앞당겨지며 역년보다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세수를 결산하는 常關의 경우 단순한 회계 연도의 명칭에 차이일 뿐, 세수의 고액 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수 결산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월해관의 경우 세수의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륭 15년(1750) 회계 연도가 통일된 이후 월해관의 회계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호부의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예외적 조치였다. 하지만 윤달을 만날 때마다 회계 연도의 종료일이 한 달씩 앞당겨졌음에도 회계 결산일이 앞당겨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점차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기간이 점차 줄어들

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실제로 세수의 결산이 지연되는 것을 뜻했다.

월해관 세수의 결산 지연이 문제로 제기된 시점이 건륭 41년(1776) 지방 당국에서 최초로 중앙에 “商欠”을 직접 보고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세 청부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관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호부의 선제적 조치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호부는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결정하며 회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대외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에 인정하던 예외를 취소하고 각관체제로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였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따른 행정 체계의 변화는 징세 청부업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이권을 축소하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본장에서는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과 함께 酌撥의 보편화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은 관세 행정을 전담하던 행상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관세의 운용 기간을 단축시켰다. 행상은 회계 연도 시작일부터 회계 연도 종료일까지 12개월과 회계 연도 종료일부터 회계 결산일(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호부가 결산 기한일을 6개월로 설정하면서 그만큼 행상의 운용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호부의 조치는 행상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행상의 현금 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는 월해관 세수를 先집행하는 酌撥이 보편화되었다. 행상의 현금 유동성 악화가 지출 증가로 이어져서 收支를 악화시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예상 가능한 범주였다면 행상을 연쇄적으로 도산에 이끌 만큼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월해관 세수의 酌撥 보편화는 행상의 예측 가능 범위를 넘어선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행정 조치였다.

건륭 52년(1787) 林爽文의 난을 진압하면서 시작된 월해관 세수의 先집행은 가경제, 도광제 시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월해관의 회계 절차를 고려해 볼 때 본래 奏銷를 통해 결산 처리하던 세수를 예산으로 편성하

여 집행할 경우 징세 청부업자는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하기는 커녕,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교역에서 징수하게 될 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금 보유량이 항시 부족했던 행상은 호부의 명령에 따라 아직 징수하지도 않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거액의 금액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였다.

당시의 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현금 조달력이 미약한 행상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반대급부였다. 따라서 관세 운용 기간의 축소는 그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켰고, 심지어 해관 세수를 先납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인한 관세 운용 기한의 축소와 현금 유동성의 경색은 행상의 도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행상의 도산에 대한 연구는 보통 행상의 收支 악화, 즉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에 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세한 자본금 규모에 따른 현금 유동성 악화와 도산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는 여기에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가 끼친 영향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상의 收支를 대략 검토하였는데, 행상의 무역 수익률은 최소 2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익 감소로 인해 도산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捐輸의 증가와 辦公銀의 신설, 도산한 행상의 채무 연대 보증 등 지출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비용은 대부분 신설 雜稅 항목인 行用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행상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짧은 무역 시즌 동안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非무역 시즌에 주요 수출 상품의 매입을 완료해야 하였다. 게다가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도 커졌지만, 그와 비례하여 현금 수요도 급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건륭 50년(1785) 영국 의회에서 찾아낸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무역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관세 결산 기한이 설정과 酌撥의 보편화 현상으로 인해 행상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위험(risk)도 증가하였다.

행상이 부족한 현금 수요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식은 非무역 시즌에 체결하는 겨울 계약이었다. 겨울 계약은 다음 무역 시즌에 사전 계약으로 계약금의 형태로 선금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의 수익률을 포기해야 하였다. 행상의 현금 유동성의 경색은 겨울 계약 비중의 증가와 함께 상품 가격을 할인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 이전 50% 수준이었던 겨울 계약의 계약 비중은 이후 70~80%까지 상승하였고, EIC는 판매 가격의 20%의 추가 할인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비교적 자금 여력이 있었던 몇몇 행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상은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행상은 겨울 계약을 통해서 현금 수요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酌撥의 명령이 발생하며 현금 흐름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월 이자 5%의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지방 당국은 징세 청부업자의 현금 유동성 경색에 따른 경영난을 모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근대 관료주의의 특성상 세수 결산에서 발생하는 결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징세 청부업자를 압박하였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행상의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징세 당국의 태도는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하였다. 가경 연간과 도광 연간 행상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중앙과 지방 당국은 더욱더 행정을 엄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악순환을 거듭하였고, 행상의 도산 현상은 더욱더 증가하였다.

## 제Ⅳ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수 화폐: ‘粵海關銀’을 중심으로

### 1. 광동 지역의 은 화폐 유통 상황

#### 1) 지역 은정의 유통

청대 制錢이 법률에 따라 주조와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되며 십진제 계수 화폐로 이용되었던 것과 달리, 銀錠은 국가가 주조와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은정은 그 무게와 순도에 따라 교환 가치가 결정되는 칭량화폐로 취급되었다.<sup>461)</sup> 은정의 관리가 민간에 방임된 결과 은정은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무게와 순도를 지닌 은정이 출현하였고, 심지어 동일 경제권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은정이 사용되는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었다.<sup>462)</sup>

461) 중국의 은정은 종류와 명칭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였지만,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元寶” 혹은 “寶銀”이라고 불리는 무게 50량짜리 은정이다. 은정의 형태가 말발굽과 닮았기 때문에 “馬蹄銀”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中錠”이다. 무게는 10량이고, 마찬가지로 은정의 모양이 말발굽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小元寶”로 불리었다. 세 번째는 “小鏤” 혹은 “鏤子”이다. 무게는 1~2량 혹은 3~5량이고, 호빵 모양을 띠고 있다. “小錠”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 외에 1량 이하의 銀子들도 존재하였다.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1958, p.537.

462) 청대 화폐제도는 張家驥, 宮下忠雄과 彭信威의 선구적 성과가 제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어졌고, 또한 다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하 청대 화폐제도와 관련된 서술은 宮下忠雄과 彭信威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張家驥, 『中華幣制史』, 民國大學, 1925(2016년 河南人民出版社 재출판); 宮下忠雄, 『中國幣制の特殊研究』, 松浦印刷所, 1952;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1958.

청대 ‘유통되는 은정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첫 번째는 순도와 무게가 전혀 다른 규격의 은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지역마다 은정의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天津의 行化銀, 廣州의 司碼銀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순도와 무게가 동일한 규격의 은정이 서로 다른 교환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은정은 청대 재정 회계의 기준 은정이었던 庫平銀이었다. 광동성의 고평은 1량은 호부 고평은 1량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하였다.

청대 은정 체계의 혼란은 화폐 관리 제도의 부재에 따른 일견 ‘여러 종류의 은정이 주조·유통되는 상황’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화폐로서 은정이 고정된 교환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은정의 교환 가치는 은정의 순은 함유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순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추가 동일하지 않다면, 각각의 은정을 감정하는 경제 주체의 저울추에 따라 서로 다른 교환 가치로 평가되었다.

동일 지역 혹은 동일 경제권역에서 서로 다른 교환 가치로 평가된다는 점은 청량화폐로서 은정이 갖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 주조하는 은정은 전쟁, 사회 혼란, 금융 위기, 수급, 자연재해, 풍흉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시장에서 합의된 무게와 순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기도 하였지만, 각 경제 주체들이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고정된 교환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로서 은정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청대 은정 체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청조는 은정을 직접 주조·유통하지는 않았지만, 표준 은정으로서 庫平銀을 설정하여 세금의 과세와 징수의 기준 단위로 설정하였다. 고평은은 ‘이론상’에 순도 100%의 足色紋銀을 호부의 庫平 저울추로 측정한 은정을 의미하였고, 寶銀의 종류·저울추 종류로 표현하면 足色紋銀·庫平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족색문은의 순도가 100%라고 하였지만,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은 순도가 높아질수록 전성과 연성이 강해져서 쉽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실제 순도 100%의 은정을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sup>463)</sup>

463)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1958, p.538. 彭信威는 문은을 순도

이 지점에서 청대 표준 은정인 고평은은 虛銀과 實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虛銀으로서 고평은은 이론상 순도 100%의 족색문은을 호부의 고평 저울추 기준으로 측정한 회계 단위였다. 다만, 징세 기관은 고평은의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이를 회계 처리하면서 징수한 세수를 實銀의 형태로 재구조해서 起解해야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족색문은을 구조할 수 없으므로 순도 99% 이상의 寶銀을 사용해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고평 저울추는 북경의 호부 고평 저울추와 무게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순도와 무게를 조정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조가 직접 구조하여 유통시킨 고평은이 실재하지 않는 이상, 고평은을 기준으로 과세된 세금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는 화폐로 징수해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자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서 족색문은과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補水와 고평 저울추와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加法이 이루어졌다.

우선 은정의 순도 문제부터 살펴보면, 은정은 순은 함유량에 따라서 고유의 색깔과 표면 문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육안으로 비교적 판별이 용이하였다.<sup>464)</sup>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단위의 기준이 되는 은정은 무게 50량짜리 寶銀이었다. 보은은 紋銀을 기준으로 비교적 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65)</sup>

---

표준, 기장 단위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 紋銀은 유통되었다.

464) 『三台萬用正宗』, 阪出祥伸, 小川陽一 編, 『中國日用類書集成』 4, 汲古書院, 2000, p.312 所收, “……九程本色, 微微細絲, 重八正銀, 粗絲兩道. 九二三者, 細絲底白而面青. 九五六者, 絲粗面光而底亮. 九七八, 青絲青暗不堪. 九七八, 水絲漂白好看, 上江文銀但夾銷者, 只在九八. 上江水絲邊青絲隱, 只銷九程. 南京摺銷青絲, 九三, 七邊薄者身高. 北京幹搭敲絲八程九程黑面者就弱. 北京多有插香弊, 上江多灌密陀僧”

465) 張家驥, 『中華幣制史』, 民國大學, 1925, p.49.

<도표 4-1> 청대 寶銀의 종류와 순도 비교표

寶銀 종류	申水	內加成色	外加成色	실측 순도
紋銀	0.0	94.0	94.340	935.3740
二四銀	4.8	98.8	98.814	990.2720
二四五寶	4.9	98.9	98.913	891.2000
二五寶	5.0	99.0	99.010	982.1000
二五五寶	5.1	99.1	99.108	983.0800
二六寶	5.2	99.2	99.206	984.0400
二六五寶	5.3	99.3	99.305	984.9500
二七寶	5.4	99.4	99.404	985.8800
二七五寶	5.5	99.5	99.503	986.8000
二八寶	5.6	99.6	99.602	987.7500
二八五寶	5.7	99.7	99.701	988.6900
二九寶	5.8	99.8	99.800	989.6000
二九五寶	5.9	99.9	99.900	990.5800
足銀	6.0	100.0	100.000	991.5000

보은의 명칭은 순도 94%의 문은을 기준으로 申水하는 액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가령 순도 99%의 보은의 명칭을 二五寶라고 하였는데, 이오보는 문은보다 순도가 5% 높았으므로 이오보 100량과 문은 105량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다. 문은 100량은 보은 2정이므로 보은 1정당 2.5량을 申水한 셈이었다. 즉 보은의 명칭은 은정 1정당 申水한 액수에 따라 붙여진 것이었다. 보은은 申水를 거쳐도 미세하게 순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당시 상거래 관습상 미세한 차이는 무시되기도 하였다.

은정의 순도가 문은을 기준으로 비교적 체계적이었던 반면, 무게는 庫平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고평은 규정상 黃銅을 재질로 만든 한 변이 1寸인 정육면체의 무게를 고평 6.8량으로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고평 1량의 무게는 황동 0.147580824 입방촌의 무게였고, 이를 기준으로 1分에서 50兩까지 모두 32종의 저울추가 존재하였다.

규정상 징세 기관은 호부에서 포정사에 배포한 고평을 사용해야 하였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는 고평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각 징세 기관은 독자적인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고평을 무게 기준으로 사용하였

고, 포정사로 전달된 고평과의 무게 차이를 계산하여 加法하여 처리하였다. 고평 저울추는 고정된 무게 기준으로만 작용하였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저울추인 市平은 고평을 기준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제각각의 저울추를 무게 기준으로 하는 지역 은정들이 구조되어 유통되었다.<sup>466)</sup> 각 지역의 저울추는 天津의 行平, 上海의 申漕平, 廣州의 司碼平 등과 같이 지역권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뿐만 아니라 票號에서 태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申公砵平과 같은 회계 단위로 사용하는 저울추도 있었다. 이하에서 살펴볼 광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저울추 司碼平만 보더라도 시기에 따라 혹은 경제 주체에 따라 미세한 무게 차이가 있었다.

광동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은정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이를 주조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징세 기관에서 세수를 회계 처리하기 위해 주조하는 관용 은정과 민간에서 유통되는 지역 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관용 은정은 월해관의 粵海關銀, 藩庫의 藩庫銀, 鹽運庫의 鹽庫銀 등이 있었다. 원칙상으로 관용 은정은 모두 고평은이었지만, 각 아문에서 주조하는 고평은은 보은과 저울추의 차이로 인해 독자적인 무게와 순도를 가졌다.

粵海關銀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藩庫銀과 鹽庫銀을 살펴본다. 우선 번고은은 각 府·州·縣의 田賦를 회계 결산할 때 이용하였고, 은정 1정당 10량으로 주조하였다. 번고은의 주조는 藩署의 승인을 받은 裕詳, 大昌, 德昌, 寶源, 阜生 등 五家頭라고 불리는 다섯 개의 銀爐 업자들이 담당하였고, 이들은 번고은 주조를 통해 약 8~9%의 수수료를 얻었다. 오가두보다 규모가 작았던 永安, 謙受, 厚全, 寶聚, 泗隆, 慎誠 등 여섯 개의 銀爐 업자들로 구성된 六家頭는 엽고은의 주조를 담당하였다. 엽고은의 순도는 藩庫銀에 비해 약 0.8~1% 정도 낮았고, 銀錠, 銀片으로 주조하였다. 엽고은은 번고은과 같이 규정된 무게 표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67)</sup>

466) 고평보다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 무게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사용한 무게는 모두 고평보다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였다.

467) 區季鸞, 『廣州之銀業』, 中山大學, 1932, pp.1-4.

이들은 주조 수수료 외에 여러 수익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들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抵解”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저해는 州·縣에서 징수한 세수가 결손이 생긴 경우, 이를 연이율 1~6%로 대부하고, 그 반대급부로 다음 회계 연도 결산일까지 州·縣의 세수 운용권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오가두는 이를 다시 대부업에 투자하여 높은 이익을 얻었다. 또한 “捐納”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약 10% 이상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관용 은정의 주조에 관한 독점권을 획득한 은로업자는 점차 동업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은정의 주조량은 각 은로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 1개월 단위로 교대하며 은정의 주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간의 자금의 차입과 차용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상호간의 연대보증을 통해 조직을 유지시켜 나갔다. 오가두의 梟生과 육가두의 兼修, 寶聚 등은 주조 업무 외에 금융 업무를 겸업하기도 하였고, 오가두와 육가두 중에는 銀爐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銀爐를 갖추지 못한 업자의 경우 은정의 주조를 다른 은로업자에게 위탁하기도 하였는데, 履祥, 義隆, 永興, 啓昌 등이 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sup>468)</sup>

호부는 이들 은로업자들에게 官銀號의 자격을 부여하여 개설과 운영, 그리고 폐업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관은호의 운영은 호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은로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지방 정부에서 임의로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관은호의 설정과 관용 은정의 주조는 세수의 회계 처리를 위한 고평은을 주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민간에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반면, 광동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대표적인 지역 은정은 司碼銀이었다. 사마은의 순도 기준은 紋銀이었고, 무게 기준 저울추는 司馬平이었다. 모스(H. B. Morse)는 당시 廣州의 은정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469)</sup>

468) 區季鸞, 『廣州之銀業』, 中山大學, 1932, pp.1-4.

469)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69.

(은정의 가치는) ‘紋銀’-명목상 순도 100%(중국의 표준 순은)와 ‘通貨’銀은 어느 것이든, 각각 무게에 의해 변하였다. 舟山の 曹平銀은 (순도가) 99.7%이고, 江平銀은 (순도가) 99.1%이고, 廣州와 廈門의 통화은 (순도가) 94%이다. 만약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지불하면 [족색]紋銀으로 하고, 상품 대금이면 통화은으로 한다.

모스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에는 “通貨銀”으로서 사마은이 있었고, 사마은의 순도는 94%였다. 사마평은 ‘廣東布政司의 法碼’인 司平에서 유래한 저울추였다. 광동포정사의 저울추는 호부에서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한 고평저울추이므로 명목상으로는 호부 고평과 동일한 저울추였다. 본래 관용 저울추인 사평은 월해관 무역에서 지역 은정과 외국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 저울추로 사용되었고, 장기간 대외 무역이 이어지면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는 사평과 구별되는 司碼平으로 분리되었다.<sup>470)</sup>

사평과 사마평을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용 저울추인 사평과 민용 저울추인 사마평을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다. 사마평은 사평에서 유래하여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그 종류 또한 많았다. 사마평과의 무게 차이에 따라서 998평, 997평, 996평, 995평, 994평, 992평, 988평, 986평 등이 존재하였다.<sup>471)</sup> 행상이 사용하는 시평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米商, 견직물 상인, 997평은 銀號, 996평은 日本布疋行, 蘇杭疋頭行을 사용하였다.<sup>472)</sup>

광동체제에서 월해관 무역에 참여하는 외국 상인은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추의 무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당시 외국 상인은 사마평의 무게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고정값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끝내 성공할 수 없었다.<sup>473)</sup> 동일한

470) 宮下忠雄, 『中國幣制の特殊研究』, 松浦印刷所, 1952, p.368; 『粵海關志』 卷10, 『稅則三』, pp.209-212, “各口征鈔耗折成色平碼及征存撥解”

471) 根岸佶, 『清國商業綜覽』 第4卷, 丸善株式會社, 1906, p.334.

472) 宮下忠雄, 『中國幣制の特殊研究』, 松浦印刷所, 1952, pp.369-370.

473)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사마평이라고 하더라도 행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무게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시기에 따라서도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다.<sup>474)</sup>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대 화폐 체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마평의 무게에 관해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기록의 조각조각에 의존하여 이를 하나의 고정된 무게값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 혹은 이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환산하려는 접근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청대 화폐 체계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인정하고, 여러 변수와 예외가 존재하는 청대 은정의 실제 순도와 무게를 분석하기보다는 회계 절차에서 각 은정 사이에 교환 가치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적인 순도와 무게로 접근한 후에 실제 저울추 무게와 순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조의 재정 회계의 기준인 고평은을 기준으로 각각에 지역 은정과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규정과 함께 그 실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하여 회계 처리하는 규정을 확인하여 고평은을 중심으로 월해관과 사마은을 회계 처리하는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대적인 순도와 무게를 확정한 후 試金 결과와 비교하여 월해관과 사마은의 규격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아편전쟁 이전 월해관의 粵海關銀이 아편전쟁 이후 海關兩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한 준

---

p.210. 1732년 동인도회사에서는 각 행상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마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측정 결과에 따르면 Young Hungqua's 580.3gr(37.603g), Mandareen Quiqua's 579.84gr(37.573g), Leonqua's 580.1gr(37.59g), Beau Khiqua's 580.05gr(37.583g), Tinqu'a's 579.74gr(37.567g), Pinky's 579.85gr(37.574g) 등으로 司碼平의 무게에 차이가 있었다.

474) 모스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舟山의 경우 漕平 저울추와 江平이 존재하였고, 각각 567.3gr(36.76g), 555.3gr(35.98g); 廈門의 市平 570gr(36.94g); 澳門의 시평 577.1gr(37.4g); 廣州의 司碼平은 578.3(37.48g)이었다. 저울추의 경우 지역별 차이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 廣州의 司碼平의 경우 1699년 580.8gr(37.64g); 1724년 581.95gr(37.71g); 1730년 이후 대략 579.85gr(37.57g); 1846년 578gr(37.45g)이었다.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p.68-69.

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외국 은화의 유입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이질적인 화폐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서양과 중국이 접촉하는 유일하고 특수한 공간이었다. 양측의 교역 규모가 성장할수록 상품과 화폐의 교환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유럽-인도-동남아시아를 거친 “西洋” 루트와 아메리카-필리핀을 통한 “南洋” 루트를 통해 막대한 외국 은화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은화의 유통 범위는 동남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점차 내륙 지역까지 공간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 거래를 포함한 일상 생활품에 이르는 매매와 같이 소액 거래까지 이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sup>475)</sup>

청대 외국 은화는 “番銀”으로 통칭하기도 하였지만, 제각각 고유의 법정 순도와 무게를 가졌고, 화폐 도안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고, 은화의 교환 가치의 차이와 도안에 따라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 청대 유통되었던 외국 은화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중 하나인 『清朝文獻通考』 『錢幣考』에서는 외국 은화의 도안과 크기(무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76)</sup>

복건이나 광둥과 같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洋錢이 많이 사용된

475) 도광 9년 12월 16일 상유, 『東華續錄』, “自閩廣江西浙江江蘇漸至黃河以南各省, 洋錢盛行. 凡完納錢糧及商賈交易, 無一不用洋錢”. 청대 대외 무역 항구로서 對서양 무역을 전담한 전기 월해관은 전 세계의 은화가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외국 은화는 명 중기 이후 광둥과 복건 지역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여 청대에 이르면 은화로 賦稅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476) 『清朝文獻通考』 『錢幣考』, “至於福建廣東近海之地, 又多行使洋錢. 其銀皆範爲錢式, 來自西南二洋, 約有數等. 大者曰馬錢, 爲海馬形, 次曰, 又次曰十字錢. 花邊錢亦有大小中三等. 大者重七錢有奇, 中者重三錢有奇, 小者重一錢有奇. 又有刻作人面, 或爲全身, 其背爲宮室器皿禽獸花草之類, 環以番字. 亦有兩面皆爲人形者, 閩粵之人稱爲, 或稱爲. 凡荷蘭佛郎機諸國商船所載”.

다. 그 은[화]는 모두 錢의 형식으로 주조하는데 西洋과 南洋 두 바다를 통하여 들어오고 대략 여러 등급이 있다. 큰 것은 馬錢이라고 하고, 海馬의 형태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큰 것]은 花邊錢이라 하고, 또 다음[으로 큰 것]은 十字錢이라고 한다. 花邊錢 역시 大·小·中의 3등급이 있는데, 큰 것은 무게가 약 7錢이고, 중간 것은 무게가 약 3錢, 작은 것은 무게가 약 1錢이다. 또한 사람의 얼굴이 조각된 것이 있고, 혹은 전신이 조각된 것도 있는데, 그 뒷면에는 궁실의 명기, 동물, 화초 등의 종류가 새겨져 있고, 외국 글씨가 둘러싸고 있고, 역시 양면 모두 人形이 있는 것도 있다. 복건과 광동의 사람들이 말하는 番銀이고, 혹은 花邊銀이라고도 부른다. 모두 荷蘭, 佛郎機와 여러 나라의 商船이 싣고 온다.

외국 은화는 도안과 크기에 따라서 馬錢, 花邊錢, 十字錢으로 구분되었다. 일찍이 彭信威가 마전을 네덜란드 은화, 화변전을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은화(雙柱形), 십자전을 포르투갈 레이스(Reis) 은화로 설명한 이후 많은 연구자가 이를 따랐다.<sup>477)</sup> 그런데 최근 십자전은 포르투갈 레이스 은화가 아닌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레알(Real) 은화의 초기 형태인 “COBS”로 보는 이견이 제기되기도 한 것처럼 이해의 혼선과 오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78)</sup>

외국 은화의 분류에 혼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를 단순 국가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인데, 이보다는 은화의 명칭과 화폐 도안을 연결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彭信威는 은화의 도안으로 말을 탄 기사가 검을 쥐고 있는 형태의 네덜란드 두카토 은화(Ducaton)을 馬錢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두카토 은화가 기마를 도안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清朝文獻通考』의 “海馬”이라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해마 문양으로 본다면 화폐 도안으로 사용한 외국 은화는 존재하지

477)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人民出版社, 2015, p. 541.

478) 이와 관련된 내용은 高炳文, 「漳州市發現的“番銀”考析」, 『福建文博』 1, 2013; 林南中, 「葡萄牙貨幣如何來到閩南」, 『收藏』 5, 2013; 林南中, 「早期葡萄牙銀元流入閩南小考」, 『中國錢幣』 1, 2014를 참조한다.

않는다는 곤란한 점이 있다. 다만 해마와 가장 유사한 화폐 도안이 ‘앞발을 들고 옆으로 서 있는 사자’의 문양인데, 이러한 도안의 대표적인 은화는 네덜란드 두카토와 각국에서 주조한 “두꺼운 은화”인 탈러(Thaler)가 있었다. 두카토와 탈러는 모두 무게가 30g 이상 되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무거운 은화였다. 탈러의 경우 그 주조와 유통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馬錢이라는 명칭으로 보면 네덜란드 두카토 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清朝文獻通考』의 花邊錢에 관한 설명을 보면 흡사 스페인 레알 은화의 도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79)</sup> 화폐 단위로서 레알(Real)은 스페인의 페드로 1세 시기(1350-1369)에 처음 출현하였는데, 1레알은 법정 순도는 11dineros 4granos(93.055%), 무게는  $\frac{1}{66}$  castilian mark(3.486g)였다.<sup>480)</sup> 이후 1497년 페르난도와 이사벨라 시기(1475-1506) 스페인은 물론 향후 국제 통화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메디나 델 캄포(Medina del Campo) 칙령을 통해 레알의 법정 순도 93.055%, 무게는 3.433g으로 확정되었고, 스페인의 상황에 의해 몇 차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레알 은화의 법정 순도와 무게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메디나 델 캄포 칙령에서는 레알 은화의 약수 화폐( $\frac{1}{2}$ R,  $\frac{1}{4}$ R,  $\frac{1}{8}$ R) 주조만

479) 스페인 은화에 관한 서술은 William A. Shaw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경우는 William Arthur Shaw, *The history of currency 1252 to 1894: Being an Account of the Gold and Silver Monies and Monetary Standards of Europe and America, together with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Currency and Exchange Phenomena on Commercial and National Progress and Well-being*, Wilsons & Milne, 1896, pp.319-344를 참고한다. 이하 *The History of Currency 1252 to 1894*로 약칭한다.

480) W. G. Sumner, “The Spanish Dollar and the Colonial Shilling”,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4-3, 1989, p.607-608. 무게 단위인 1castilian mark는 4,608 spanish grains, 3,550.16 troy grains, 230.0465g이다. 순도는 금과 은에 차이가 있었는데, 금의 경우 24quilates, 96cuartos을 순도 100%로 하고(1quilates=4cuartos), 은의 경우 12dineros, 288granos를 순도 100%로 하였다(1dineros=24granos). 이하에서는 단위 기준을 그램(g)과 백분율(%)로 통일하고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환산한다. 다만 당시 스페인 도량형이 십진제의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환산 수치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을 규정하고, 배수 화폐(1R, 2R, 4R, 8R) 주조는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6세기 중엽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된 후 식민지의 귀금속을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무거운 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아메리카 식민지에 조폐소를 설치하여 고액권인 배수 화폐의 주조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향후 국제 무역의 결제 통화로 사용될 ‘8레알 은화(Real de a ocho)’가 출현하게 되었다.<sup>481)</sup> 8레알 은화는 메디나 델 캄포 칙령의 규정에 따라 법정 순도 93.055%, 무게 27.468g의 두꺼운 은화였다.

만력 45년(1617) 張燮이 편찬한 『東西洋考』에서는 필리핀(呂宋)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은화를 “큰 것은 7錢 5分, 夷名은 黃幣時, 다음 [큰 것은] 3錢 6分, 夷名은 突唇이고, 또 다음 [큰 것은] 1錢 8分, 夷名은 羅料釐이고, 작은 것은 9分, 이름은 黃料釐이다. 모두 佛郎機로부터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8레알, 4레알, 2레알, 1레알 은화의 거의 일치한다.<sup>482)</sup>

이를 종합하면 『清朝文獻通考』에서 설명하는 화변전은 식민지 레알 은화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건륭 10년(1745) 기록임을 고려하면 화변전은 식민지 레알 은화가 절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1772년 카를로스 3세의 화폐개혁이 실시되기 전까지 국왕의 흉상이나 전신을 도안으로 사용한 레알 은화는 본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주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레알 은화를 도안에 따라 살펴보면, 크게 紋章型, 胸像型, 雙柱型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장형 은화는 1772년 카를로스 3세의 화폐개혁 이전까지 스페인 본국에서 주조한 압인 방식의 주화(milled coinage)였다. 은화의 앞면은 테두리에 국왕의 이름, ‘신의 은충으로’를 뜻하는 라틴어 “DEI GRATIA”의 약자인 “D G”와 정중앙에 스페인 왕가의 紋章, 그 좌우에 은화를 주조한 조폐소 마크, 액면가, 은화 검수자 이름의 이니셜을 새겼다. 그리

481) Carlo M. Cipolla 著, 장문석 譯, 『스페인 은의 세계사: 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미지북스, 2015, pp.85-97.

482) 『東西洋考』, “銀錢, 大者七錢五分, 夷名黃幣時, 次三錢六分, 夷名突唇, 又次一錢八分, 名羅料釐, 小者九分名黃料釐, 俱自佛郎機攜來”.

고 뒷면은 테두리에 제작연도, ‘스페인의 왕’을 뜻하는 라틴어 “HISPANIARUM REX”가 적혀있고, 정중앙에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을 새겼다.

홍상형 은화는 1772년 카를로스 3세의 화폐개혁 이후 스페인 본국에서 주조한 압인 방식의 은화였다. 은화의 앞면은 테두리에 국왕의 이름, “DEI G”, 제작연도와 정중앙에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 그 좌우에 조페소 마크, 액면가, 검수자의 이니셜을 새겼다. 그리고 뒷면은 테두리에 “HISPANIARUM REX”와 정중앙에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 그 좌우에 조페소 마크, 액면가, 검수자의 이니셜을 새겼다.

쌍주형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만 제작된 압인 방식의 은화였다. 은화의 도안은 1772년 카를로스 3세의 화폐개혁 전후로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있었다. 구형 쌍주형 은화의 앞면은 테두리에 “D G”, ‘스페인과 인디아의 왕’을 의미하는 라틴어 “HISPAN ET IND REX”, 국왕의 이름과 정중앙에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 그 좌우에 검수자의 이니셜, 액면가가 새겨져 있고, 뒷면은 테두리에 ‘모두 하나’를 뜻하는 라틴어 “UTRAQUE UNUM”, 제작연도, 조페소 마크와 정중앙에 ‘보다 더 멀리 나아가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PLUS ULTRA”가 적힌 리본이 감겨 있는 헤라클레스의 기둥(Pillars of Hercules) 사이에 물결 위로 구세계와 신세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지구 모형이 겹쳐져 있다.

그리고 신형 쌍주형 은화의 경우 앞면은 테두리에 국왕의 이름, “DEI GRATIA”, 제작 연도와 정중앙에 국왕의 홍상이 새겨져 있어서 홍상형 은화와 유사하지만, 뒷면은 테두리에 “HISPAN ET IND REX”, 조페소 마크, 액면가, 검수자의 이니셜과 정중앙에 헤라클레스의 기둥 사이에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건륭 10년(1745)의 기사에서 설명하는 화변전은 1772년 이후에 처음 출현하는 홍상형 은화를 포함할 수 없었다. 아마도 화변전의 명칭으로 추정컨대, 화변전이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은화의 테두리(邊)에 花紋이 있는 은화의 범칭인 것으로 보인다. 화문이 실제 꽃문양을 지칭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꽃문

양을 테두리에 사용한 은화는 당시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다.<sup>483)</sup>

“花邊”과 “花紋”의 문제는 가경 초 저술인 『古今錢略』을 통해 추정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였다. 하나는 은화의 위조·변조(테두리를 갈아내거나 자름)하여 화폐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은화의 테두리에 톱니 모양을 양각해 넣은 문양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현재 동전의 옆면에 톱니 모양을 양각한 형태가 아니라 동전 앞면에 넣는 형태였고, 이것은 8레알 은화 도안의 특징이었다.

두 번째는 ‘화변’, ‘화문’으로 묘사되는 은화는 테두리에 라틴어가 각인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화문이 실제 꽃문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라틴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레알 은화 외에도 테두리에 라틴어를 각인한 은화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은화의 범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압도적인 물량을 차지하였던 은화가 레알 은화였다. 인물 도안을 제외하면 『清朝文獻通考』의 설명은 레알 은화의 紋章形 혹은 雙柱形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변전과 구별되는 십자전은 십자가 문양을 도안으로 사용하는 은화의 범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은화는 포르투갈 레이스(Reis) 은화와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레알(Real) 은화의 초기 형태인 “COBS” 은화였다. 레이스 은화 역시 레알 은화와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라틴어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清朝文獻通考』에서 십자전을 별개회의 은화로 구분한 것은 도안 차이는 물론, 무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484)</sup> 십자전

483) 스페인 본국에서 주조한 레알 은화는 꽃봉우리(튤립)를 은화 도안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꽃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古今錢略』에서는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카를로스 3세 레알 은화를 花紋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1772년 화폐개혁 이후 카를로스 3세 8레알 은화는 꽃봉우리를 도안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馬錢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두카토 은화는 꽃문양을 직접 도안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古今錢略』에서는 花紋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카토 은화 역시 테두리에 라틴어가 각인되어 있었다.

484) 포르투갈 금화와 은화의 화폐 단위는 Reis였다. 1688년 8월 4일 포르투갈은 순도 22캐럿, 1mark 금의 가치를 96,000reis, 주조이익을 포함하여 10,2400reis로 하고, 순도 11데나로, 1mark 은의 가치를 6000reis, 주조이익을 포함하여 6300reis

은 화변전보다 가벼운 은화로 분류되었다.

COBS 은화는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압인 방식의 은화가 출현하기 전까지 타인 방식(hammered coinage)으로 주조한 은화였다. COBS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획득한 대량의 은을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은화의 도안을 음각으로 새긴 판을 놓고 망치로 쳐서 문양을 새겼으므로 화폐의 제작 상태는 불량하였고, 법정 무게와 순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식민지 레알 은화의 초기 형태인 COBS 은화는 앞면의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에서 중앙의 십자선이 뚜렷히 강조된 등변 십자가를 사용하였다.

1728년 COBS 은화는 타인 방식에서 압인 방식으로 주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레알 은화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일정 기간 타인 방식으로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sup>485)</sup> COBS의 도안은 기본적으로 구형 쌍주형 은화의 도안과 흡사하지만, 스페인 왕국 문장 혹은 카스티야 연합왕국 문장의 가운데 십자선이 강조된 형태였다. COBS는 무게와 순도면에서 불안정한 경우도 많았지만, 본국 레알 은화보다는 무게와 순도가 높은 무거운 은화였다. 여기서 화변전이 십자전보다 무겁다는 『清朝文獻通考』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도안으로 사용하면서 레알 은화보다 가벼운 은화는 포르투갈 레이스 은화가 유일하였다.

레알 은화는 시기에 따라서 법정 무게와 순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16세기 이후 스페인 제국은 통치 영역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재정 지출의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 압박에 처해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귀금속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스페인은 재정 지출의 부족분을 국내 자산가에 대한 공채 판매, 외국 은행

---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은의 법정 교환비가는 1:16(화폐: 1:16.25)였다. 1747년 은화의 가치는 6300reis로 조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고액 은화였던 480reis 은화의 가치는 6R 은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였다(The History of Currency 1252 to 1894, pp.272-273).

485) Alberto Francisco Pradeau, *Numismatic history of Mexico from the pre-Columbian epoch to 1823*, the Western Printing Company, 1938, p.55.

가로부터 대부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sup>486)</sup> 이러한 상황에서 펠리페 4세 시기(1621-1665) 화폐개혁을 통해 은화의 통화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고, 그 결과 본국과 식민지의 화폐 체계는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1642년 12월 23일 펠리페 4세는 메디나 델 캄포 칙령 이후 최초의 화폐개혁을 추진하여 스페인 본국 레알의 법정 무게를 2.746g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新레알의 통화 가치는 20% 저하되었고, 舊8레알 은화는 新10레알 은화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게 되었다.<sup>487)</sup> 이 조치는 스페인 본국에만 적용되었고,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본국 은화와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 은화는 법정 무게에 차이가 있었고, 양자 간에는 일정한 교환 비가가 성립하였다.

1707년 펠리페 5세(Philip V)가 늘어난 군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레알 은화의 법정 순도 83.33%, 무게 3.067g으로 조정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스페인 본국과 식민지의 통화 체계는 전혀 다른 체계로 분리되었고, 스페인 본국 은화는 “Plata provincial”, 아메리카 식민지 은화는 “Plata nacional”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에도 화폐개혁은 이어졌는데, 1728년 펠리페 5세는 본국 레알의 법정 순도를 83.333%, 무게를 2.987g, 식민지 레알의 법정 순도를 91.666%, 무게를 3.383g으로 조정하면서 양자는 다른 화폐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772년 카를로스 3세는 본국 레알 은화의 순도를 81.25%, 식민지 레알 은화의 순도를 90.27%로 재조정하였다. 이처럼 스페인 은화는 시기별로 물론, 본국과 식민지에서 제작하는 은화에 법정 무게와 순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화변전을 레알 은화로 단정하는 것은 이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

486) 김원중,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재정, 그리고 절대 왕정의 성격』, 『관악사론』 2, 2016, pp.114-115.

487) 1686년 10월 14일 카를로스 2세에 의해 1레알의 법정 무게는 2.738g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외국 은화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교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중국과 서양이 전혀 다른 화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에서 은정은 순은 함유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칭량화폐였던 반면, 외국 은화는 법정 순도와 무게에 따라 주조된 계수 화폐였고, 그 교환 가치는 법정 순도와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은화의 개수로 거래하였다.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 은화는 칭량화폐로 취급되어 중국의 도량형 기준으로 그 교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였다.

하지만 은화의 교환 가치를 오차 없이 측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일단 그 종류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순도와 무게 규정에 미달하는 저열한 은화도 존재하였고, 유통 과정에서 은화의 둘레를 깎거나 자르는 위·변조 행위도 있었다. 주요 은화들은 교역이 장기간 계속되며 상거래 관행으로 그 교환 비율이 고정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순은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18세기 초 이래 율해관 무역의 결제 통화로 이용된 8레알 은화는 대표적인 惡貨였다. 8레알 은화는 이미 출현과 동시에 법정 순도와 무게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1574년 피렌체 조페소의 조사에 따르면 세비야 8레알 은화의 순도 92.708%, 톨레도 8레알 은화의 순도 92.0139%로 법정 순도인 93.055%에 비해 낮았다.<sup>488)</sup>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주조된 은화의 경우 품질이 더욱 나빠졌는데, 1640년대에 이르면 멕시코와 페루에서 주조된 8레알 은화가 유럽에서 유통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18~19세기 8레알 은화의 순도와 무게의 실측 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89)</sup>

---

488) Carlo M. Cipolla 著, 장문석 驛, 『스페인 은의 세계사: 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미지북스, 2015, p.125

489) Robert Chalmers Chalmers, *A history of currency in the British colon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1893, p.402.

<도표 4-2> 8레알 은화의 시금 결과표(단위: %, g)

제작연도	무게	순도	순은	법정 순도와 무게
1702	27.21	91.9	25	1497-1728년 기준 무게 27.47g, 순도 93.1%(순은 25.57g)
1704	27.21	92.1	25.06	
1704	27.21	92.1	25.06	
1704	27.21	93.3	25.39	
1704	27.21	90.5	24.62	
1717	27.21	92.1	25.06	
1717	27.11	92.1	24.968	
1717	27.03	92.5	24.99	
1765	26.983	90.6	24.45	1728-1772년 기준 무게 27.064g, 순도 91.66%(순은 24.45g)
1801	26.982	89.6	24.175	1772-1848년 기준 무게 27.064g, 순도 90.3%(순은 24.44g)
1821	26.983	89.6	24.176	
1826	26.95	89.2	24.04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은 정해진 세칙에 따라 과세한 관세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징수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은정뿐만 아니라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교환 가치를 평가해야 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였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원도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를 모두 갖추고, 아무리 정밀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징세 과정에서 오차와 변수로 인한 손실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지방 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징세 업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리 징수라고 하는 장치를 선택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에 대한 지방 당국의 입장은 건륭 59년(1794) 양광총독 覺羅長麟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난다.<sup>490)</sup>

490) 許地山 編, 『達夷集(鴉片戰爭前中英交涉史料)』, 商務印書館, 1928, pp.163-170, “查各貨稅, 尚須以洋錢傾鑄紋銀, 始能交關. 關上條款繁多, 夷人不能自行經理, 是以責成行商代納. 前督部堂李奏明在案. 且關上吏役賢愚不等, 恐在欺壓夷人, 刁難需索情弊. 事屬難行, 應毋庸議”.

각 貨稅를 검토한 결과 洋錢을 紋銀으로 재주조한 후에야 해관에 납부할 수 있다. 해관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아서 夷人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行商에게 책임지고 납부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前감독이 주를 올린 바 있다. 또 해관의胥役들은 賢愚에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을 속이고 압박하여 뇌물을 요구하며 괴롭힐 정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건의는) 실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의론할 가치가 없다.

메카트니 사절단의 귀국 후 EIC 소속 브라운(H. Browne)은 양광총독 覺羅長麟에게 광동체제에 대한 수정 요구 11조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의 수정이었다. 이에 대해 覺羅長麟은 외국 은화를 고평은으로 재주조하는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징세 청부업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모두 위임함으로써 징세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외국 은화에 함유된 순은 함유량을 ‘측정’하여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징세 청부업자에게 전가하여 관세 행정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지방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 2. 粵海關銀의 순도와 저울추 조정 규정

청조가 庫平銀을 직접 주조해서 유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호부 고평은은 과세 기준과 회계 기준으로서 기능하였다. 월해관의 稅則에 따라 고평은을 기준으로 과세한 관세는 징세 업무를 전담한 징세 청부업자에 의해 그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는 지역 은정 혹은 외국 은화로 징수하였다. 물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월해관의 세수는 모두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재주조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월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화폐인 “粵海關銀”이 출현하였다.

행상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廣州의 市平인 司碼平으로 외국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여 고평은과 동일한 교환 가치로 조정하여 관세를 징수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저울추의 무게 차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행상이 무게 기준으로 하는 고평은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고평이었고, 양자에는 미세한 무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월해관의 저울추를 “粵海關平”, 그리고 월해관평으로 측정한 足色紋銀을 “粵海關銀”으로 구별할 것이다.

행상은 고평은을 가치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들이 기준으로 한 저울추는 고평이 아니라 월해관평이었다. II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호부-월해관-징세 청부업자가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에 모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중간 단계에 출현한 화폐 단위가 월해관은이었다. 결국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의 출현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파생물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편전쟁 이후 성립한 ‘근대 해관’에서도 관세를 징수할 때 “海關兩”이라는 독자적인 화폐 단위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관량은 외국인들이 사용한 “Haikwan Teal”의 번역어였고, 중국 측 사료에서는 “關平銀”이라 지칭하는 화폐 단위였다. 관평은은 명칭 그대로 (榷)關에서 사용하는 저울추(平)를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한 은정’을 의미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청대 대외 무역항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사용한 화폐 단위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아편전쟁 이전 월해관의 월해관은과 아편전쟁 이후 해관량을 모두 관평은으로 통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사전 작업으로서 광동체제下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기준 화폐로 사용한 월해관은의 순도와 무게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겠다. 다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양식 도량형을 기준으로 월해관은과 해관량의 순도와 무게를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월해관은을 조정하는 규정을 통해 회계상의 상대적 교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광동체제下 행상이 관세를 징수할 때 적용하는 규정과 월해관에서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규정을 살펴보고,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월해관은과 사마은의 무게와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회계

상 각각의 저울추와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sup>491)</sup> 그렇지만 상대값을 우선 확인한 후에 실제 試金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그 오차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해관평은 광동포정사의 저울추인 사평을 무게 기준으로 하였고, 사평은 호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고평을 무게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론상 사평, 월해관평은 모두 고평과 같은 무게의 저울추였다. 하지만 각 징세 기관은 규정과 달리, 독자적인 저울추를 사용하여 고평과의 무게 차이를 加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제각각 미세한 무게 차이가 있었다. 사실 이러한 현장의 방식은 상식적으로 매우 자연스럽다. 호부에서 제작하여 포정사에 배포한 저울추의 수량은 제한적이었고, 포정사에서 이를 복제하더라도 100% 오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포정사에서 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결국 광동포정사에 전달된 고평은 무게 기준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포정사와 월해관이 다른 저울추를 사용한 정황은 옹정 10년(1732) 광동순무 鄂彌達이 고평 저울추를 재발급한 사안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호부에서 배포한 새 저울추(新高평)가 기존에 광주포정사에서 사용하던 헌 저울추(舊고평)보다 현저하게 무거운 것이 확인되며 발생하였다. 광동포정사 楊永斌의 확인 결과新高평이 舊고평보다 100량짜리는 0.18량, 50량짜리는 0.03량 무거운 것이 확인되었고, 鄂彌達이 포정사와 월해관의 저울추 무게를 조사했을 때도新高평이 100량짜리는 0.4량, 50량짜리는 0.2량 무겁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월해관은 포정사의 사평을 무게 기준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저울추인

---

491) 무게 단위로 거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무거운 저울추 혹은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현상은 현재까지도 종종 발견된다. 속칭 ‘저울 치기’라고 불리는 형태로 무게를 조작하는 사례는 대표적이라 하겠다(『저울에 벉돌’ 생선 무게 부풀린 영상 공개돼 공분』, 『YTN』, 2021년 3월 23일). 가령 우리가 수산 시장에서 조개 1Kg을 저울로 확인한 후에 구입하지만, 실제 표준 저울로 측정하면 조개의 무게가 1Kg에 미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상인들이 표준 무게보다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월해관평을 사용하였고, 양자의 무게 차이를 加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鄂彌達와 楊永斌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포정사의 저울추는 월해관 저울추보다 100량짜리는 0.22량, 50량짜리는 0.17량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92)</sup> 실제 두 징세 기관은 고평을 무게 기준으로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저울추를 사용하였고, 회계상으로 0.22%를 加法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사용하는 저울추에 실제 무게 차이는 加法과 加平을 통해 조정하였다. 따라서 회계 기준이 되는 고평을 중심으로 각각의 무게 조정 절차를 검토하여 월해관평의 상대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월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적용하는 화폐 단위에 대해 『粵海關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大關: 징수하는 正稅, [船]鈔, [火]耗는 紋銀司平이다. 擔規와 雜項은 九成·九二色·九八平·司平 등으로 같지 않다. 매일 兌收하여 關庫에 저장한다.<sup>493)</sup>

總巡口: 징수하는 擔規銀兩은 九成色·九八平이다. 매달 지출하는 工火을 제외하고 司平紋銀으로 折實하여 大關에 운송하여 저장한다.<sup>494)</sup>

492) 毛克明, 「爲密奏事」, 雍正 10년 11월 24일, 故宮 402004093, “竊照廣東布政司庫錢糧法馬, 頒用年久. 不無輕重有差, 經陞任撫臣鄂彌達, 咨部鑄發, 准部頒到, 新法馬與舊法馬較兌. 據陞任布政司臣楊永斌稱, 新法馬每百兩者, 較舊法馬重壹錢捌分, 伍拾兩者重參分. 復經撫臣以各州縣, 及海關臬司, 併糧鹽二道各衙門法馬, 與新頒之法馬不符. 應否一體較准, 將來解銀得以符合. 咨候部示. 准部以該撫咨稱, 新法馬壹百兩者重壹錢捌分, 伍拾兩者重參分, 數目太相懸殊. 應令將新法馬與各衙門一體較准. 如微有輕重, 即將新法馬留用, 倘太相懸殊, 將新法馬送部, 再行較准頒給等因. 經撫臣暨布政司臣行咨到海關衙門嗣祖秉圭革職離任, 所有稅務經督撫臣等委署廣州府臣龐嶼管理解任按察司臣黃文煒總理伊等, 會差廣州府經歷武維英帶同庫吏王開運, 賚文赴布政司衙門, 較兌海關舊法馬每百兩, 與司庫新法馬少肆錢, 伍拾兩少貳錢, 隨經該經歷具稟, 按察司廣州府兩衙門在案”.

493) 『粵海關志』卷10, 「稅則三」, pp.209-210, “大關[所收正稅鈔耗紋銀司平. 其擔規雜項或九成九二色九八平司平不等, 日逐兌收貯庫]”.

494) 『粵海關志』卷10, 「稅則三」, p.210, 總巡口[所收擔規銀兩係九成色九八平. 每月除支工火外, 折實司平紋銀解貯大關]”

월해관에서 규정한 월해관의 징수 은정은 “紋銀·司平”이었다. 관세를 징수할 때 여러 종류의 화폐로 수납하였지만, 이는 모두 문은·사평을 기준으로 兌收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평은 廣州의 시평인 사마평과 구별되는 포정사의 고평이었다. 기존의 시각대로 사평을 사마평으로 이해하면 문은·사평은 ‘紋銀을 司碼平으로 측정한 司碼銀’을 의미하게 되는데, 문은을 족색문은으로 보더라도 족색문은·사마평이 되므로 족색문은·고평의 고평은과 교환 가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粵海關志』에서 언급하는 사평을 사마평으로 보기는 어렵고 월해관의 고평 저울추인 월해관평으로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따라서 문은·사평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사마은이 아닌, 월해관은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廣州의 “통화은”과 ‘관세를 납부하는 화폐’를 구별한 모스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다만, 행상이 사용하는 사마평이 사평에서 파생된 저울추였으므로 사평, 사마평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지만 월해관의 奏銷摺과 奏摺과 같은 공식 문서에서는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사평은 관용 저울추로서 ‘고평’을 의미한 반면, 민용 저울추인 사마평을 지칭할 때는 “市平”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마평이 사평에서 유래한 저울추이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495)</sup>

건륭 14년 6월 25일(1749년 8월 7일) 당시 월해관 책임자였던 광동순무 岳濬이 작성한 奏銷摺에서 사마은을 고평은으로 절실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96)</sup>

495) 託恩多·蘇昌·尤拔世, 『爲酌辦夷情會摺奏聞事』, 건륭 26년 10월 11일, 商務檔案(3), p.1587, “仍照舊例每百兩收添平銀一兩六錢五分, 合算番銀市平每兩計收銀二分, 亦係定例應徵之款”.

496) 嶽濬, 『爲請旨事』, 건륭 14년 6월 25일, 第一 MR19, pp.227-229, “...(전략)... 二次共應銀一萬五千兩. 除製辦貢品及奉傳辦方物, 并解京運費等項, 實共支銷折實銀九千一百九十一兩七錢一分一釐. 先經臣造清冊咨送養心殿造辦處, 查核在案. 旋奉行核減工價各項未折銀八百四十二兩零, 仍照報銷折銀紋銀司平扣算之例, 實核減足紋司平銀七百九十二兩零”.

....(전략).... 두 차례 모두 15,000兩입니다. 貢品을 구매하고 方物을 준비하여 北京으로 운송하는 등의 항목으로 실제 지출한 총액은 折實한 銀 9,191兩 7錢 1分 1釐입니다. 앞서 臣이 淸冊을 작성하여 養心殿造辦處에 咨文을 보내어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시를 받들어 인건비 각 항을 삭감한 未折[實]한 銀은 약 842兩입니다. 회계 보고는 紋銀·司平으로 折實하여 공제하는 예에 따라서 (환산한) 실제로는 足紋司平 銀 약 792兩입니다.

건륭 14년(1749)은 樞關의 회계 연도가가 12개월로 통일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월해관의 책임자가 교체될 때마다 세수를 회계 처리하였고, 岳濬은 자신의 임기 동안 처리한 備貢銀의 항목과 지출 및 節省分을 보고하였다.<sup>497)</sup> 岳濬은 비공은의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라는 호부의 지시에 따라서 “未折銀” 약 842량을 삭감하였는데, 세수를 회계 결산할 때 미절은을 “문은·사평”으로 折實하는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금액이 “족문·사평”으로 약 792량이었다. 奏銷摺에서 다루는 항목의 단위는 庫平銀이었으므로 足紋·司平은 足色紋銀·庫平을 의미하였고 司平과 庫平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498)</sup>

未折銀을 고평은으로 折實할 때 적용한 비율이 94折임으로 고려하면 未折銀은 문은·사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實銀으로서 문은·사평은 아마도 廣州의 지역 은정이었던 사마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市平인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도 존재했겠지만, 備貢銀 보고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절차적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497) 岳濬의 임기 중에 처리한 貢物은 건륭 13년 1분기와 2분기 공물의 조달 비용으로 할당된 총액 15,000량 중 총지출액 9,191.711량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 5,808.289량이고, 비공은의 節省分을 내무부로 起解하였다.

498) “未折銀”은 94折하여 庫平銀으로 折實하였다. 주소첩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94折로 볼 때 순도 94%의 紋銀인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미절은은 시중에서 유통되었던 지역 은정인 紋銀·司馬平의 司碼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무부 재정은 북경에 도착하여 劈鞘하면서 添平銀의 명목으로 2%를 加平과 加法 비용을 지출하였다.

지역 은정으로 징수한 관세를 고평은으로 회계 결산하는 절차는 월해관에 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常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건륭 13년 9월 4일(1948년 10월 25일) 강서순무 開泰가 작성한 주소첩에서도 “九三色·市平”의 지역 은정을 고평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sup>499)</sup> 당연히 常關에서 사용한 고평도 호부 고평과 무게 차이가 있었지만, 常關은 징수 주체와 회계 주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징수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월해관은 회계 주체인 월해관과 징수 주체인 행상으로 구분되었고, 월해관과 행상이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에도 차이가 있었다. 행상은 호부 庫平을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기준으로 하는 저울추는 월해관평이었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추는 사마평이었다. 따라서 월해관의 경우 내지의 常關과는 달리 월해관평과 사마평을 조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였다.

사마평-월해관평-고평 간에 저울추를 구분하여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洪任輝事件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플린트는 탄원서 세 번째 항목에서 월해관의 관원이 저울추 무게 차이를 명목으로 외국 상인에게 勒索하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sup>500)</sup>

499) 開泰, 『爲遵例具奏事』, 건륭 13년 9월 4일, 第一 MR19, pp.60-61, “又共收過臨關零稅連耗市平九三色銀柒千捌百玖拾伍兩參錢玖分肆釐零, 除傾銷足紋扣補庫平及開支雜項銀貳千壹百捌拾兩玖錢玖分陸釐零外, 實存零稅正耗銀伍千柒百壹拾肆兩參錢玖分柒釐”. 건륭 13년분(건륭 12년 3월 16일-건륭 13년 3월 15일) 贛關의 영여은수목 보고에 따르면 총 징수액 83,513.361량에서 兵餉銀 46,471.055량과 기타 지출 경비 및 雜項銀 6,625.098량을 제외한 正耗盈餘銀 30,417.208량과 臨關에서 市平·九三色銀으로 징수한 7,895.394량 중 市平을 庫平으로 加法하는 비용, 九三色을 足色紋銀으로 주조하는 비용을 포함한 기타 지출 경비 2,180.996량을 제외한 5,714.397량을 합친 正耗銀 36,131.605량을 起解하였다.

500) 洪任輝, 『謹將負屈條款瀝陳伏乞電伸』, 언도불명, 商務檔案(2), pp.1222-1223 所收, “一, 勒補平頭. 從前兌餉, 惟照庫平. 邇年兌餉, 每百兩加平三兩, 名曰解京補平. 未聞部頒庫馬有前後之異”.

하나. 平頭(의 항목으로) 勒索합니다. 이전에 兌餉을 하면서 오직 庫平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최근 兌餉을 하면서 100량당 3량을 加平하며 명목은 北京으로 세수를 운송하면서 저울추를 보충하는 (용도)라고 하는데, 호부에서 배포한 저울추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플린트는 관세의 징수 기준이 되는 호부 고평의 무게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월해관 측에서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3%를 징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호부의 조사 결과 탄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인 건륭 21년 월해관감독 李永標가 저울추 조정 비용을 기존에 1.65%에서 0.8% 추가하여 2.45%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플린트의 고발 내용과 실제로 거의 일치하였다.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 대한 조사 명령을 받고 파견된 복주장군 新柱 등은 회계 결산을 위해 세수 꾸러미 포장 작업을 마치고 關庫에 보관 중이던 세수 꾸러미의 실제 무게를 검사한 결과 0.8% 무겁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501)</sup> 여기서 新柱는 월해관의 저울추를 “海關法馬”로 지칭하여 호부 고평과 구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粵海關平이었다.

이 사안은 李永標가 자의적으로 추가한 0.8%를 금지하고, “舊例에 따라서 100兩당 添平銀 1兩 6錢 5分을 징수하고, 番銀·市平 1兩당 2分으로 계산하여 맞출 것”으로 결정되었다.<sup>502)</sup> 이것은 월해관과 호부의 고평 저울추 무게 차이를 1.65%로 하고, 행상이 현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면서 ‘司碼平으로 무게를 측정한 番銀’에 경우 添平銀 2%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즉, 이미 살펴본 사료에서 “二分頭”로 표현되는 雜稅 항목이었다.

501) 新柱·朝銓·李侍堯, 『爲遵旨審明定擬具奏事』, 乾隆 24年 8월 19일, 『史料旬刊』 第4期, p.122, “臣等會同將未經起解乾隆二十三年貯庫盈餘銀抽兌十封, 照海關法馬每封實係多有八錢”.

502) 託恩多·蘇昌·尤拔世, 『爲酌辦夷情會摺奏聞事』, 건륭 26년 10월 11일, 商務檔案(3), p.1587, “仍照舊例每百兩收添平銀一兩六錢五分, 合算番銀市平每兩計收銀二分, 亦係定例應徵之款”.

『粵海關志』에는 고평, 사평 외에 “九八平”이 자주 언급되는데, 구팔평은 행상이 관세를 징수할 때 98折하여 사마평과 고평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사마평과 고평의 순수 무게 차이가 98折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족색문은과 은화의 순도 차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행상이 사마평으로 “番銀”의 무게를 측정해서 관세를 징수할 경우 순도까지 고려하여 98折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즉, 족색문은·고평을 기준으로 족색문은·월해관평은 1.65% 무게 차이가 있었지만, 번은·사마평으로 징수하면서 2%를 징수해야 하였다.

그렇다면 번은·사마평을 족색문은·사마평으로 변환하면 고평, 월해관평, 사마평의 무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족색문은과 은화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粵海關志』에서는 외국 은화로 관세를 징수하는 규정과 절차를 설명한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澳門總口: 正稅, [船]鈔, 耗[羨]은 한다. 한다. 擔規[銀]과 잡항은 十字番銀·九八六澳平으로 징수한다. 매 월마다 庫平으로 覈實한다. 工火 지출한 후 남은 銀兩은 분기에 따라서 大關로 보내어 저장한다.<sup>503)</sup>
- ② 烏坎總口: 正稅, [船]鈔, 耗[羨]는 한다. 한다. 擔規[銀]과 雜項은 十字番銀으로 징수하며 [저울추]는 庫平이다. 매 월마다 工火을 지불하고 남은 은량은 분기에 따라서 大關으로 보내어 저장한다.<sup>504)</sup>
- ③ …(前略)… 이상 징수하는 銀은 正耗는 加平하고 紋銀으로 걷는다. 만약 十字番銀으로 걸으면 1兩마다 7分을 補水한다. 그 나머지 擔頭·歸公은 모두 番銀司平으로 걷는다.<sup>505)</sup>

503) 『粵海關志』 卷10, 『稅則三』, p.210, “澳門總口. 征收正稅鈔耗係十字番銀. 庫平每兩補水八分. 其擔規雜項收十字番銀, 九八六澳平, 每月仍覈實庫平, 除支工火外, 餘存銀兩按季解貯大關”

504) 『粵海關志』 卷10, 『稅則三』, p.210, “烏坎總口. 征收正稅鈔耗係十字番銀. 每兩補水七分, 其擔規雜項收十字番銀, 係庫平. 每月除支工火外, 餘存銀兩, 按季解貯大關”.

『粵海關志』에서는 외국 은화를 “十字番銀” 혹은 “番銀”으로 표현하지만, 그 외의 사료에서는 십자번은이라는 명칭 자체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粵海關志』가 가정 말에 도광 초에 저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십자번은이 월해관 무역의 결제 통화로 정착한 8레알 은화를 지칭하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십자번은은 8레알 은화 중 십자가 문양을 도안으로 사용하는 은화의 범칭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제조된 COBS, 쌍주형 은화를 포함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8레알 은화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족색문은과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7%를 補水하였다. 澳門總口(①)와 烏坎總口(②)가 각각 8%와 7%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澳門總口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規例에 따라 雜稅가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이었고, 순도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이를 고려하면 양자의 보수 규정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506)</sup> 월해관의 補水와 加平을 정리하면, 행상이 ‘司碼平으로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 은화와 足色紋銀의 순도 차이 7%를 추가하고, 司碼平和 庫平的 무게 차이 2%를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소 복잡한 변수가 출현하는데, 8레알 은화의 경우 스페인의 화폐 개혁에 의해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주조한 레알(Real)의 법정 순도가 2차례 수정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497~1728년 93.055%, 1728~1772년 91.666%, 1772년 이후 90.27%였다. 아마도 월해관의 補水 규정 7%도 초기 레알(Real)의 순도가 93.05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해관의 補水 규정은 레알의 순도 저하에 대응하여 수정된 적이 없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은화의 순도 저하에 따른 손해는 모두 징세 청부업자였던 행상이 부담하고 있었다. 행상은 월해관의 규정을 수정할

505) 『粵海關志』 卷12, 『稅則五』, p.231, “以上收銀者, 正耗加平收紋銀. 如收十字番銀, 每兩補水七分, 其餘擔頭歸公, 俱收番銀司平”.

506) 澳門總口는 순도를 맞추기 위해 8%을 징수하였지만, 이 중 0.8%는 歸公例에 의해 내무부 재원으로 귀입하고, 나머지 7.2%만 호부 재원으로 삼았다. 『粵海關志』 卷11, 『稅則四』, p.225, “凡往來貨物[照例征收正稅, 每兩火耗加一. 正耗收十字銀, 每兩加水八分, 將七分二釐歸入正項解, 餘銀八釐歸入歸公例內解]”.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1775년 總商 潘文巖은 새로 주조되는 카를로스 3세 은화(이하 新은화)의 순도가 낮아지며 행상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에 은화-사마은의 교환 비율을 조정할 것을 EIC에 제안하였다.

1772년 스페인의 화폐개혁은 법정 무게의 변화 없이 법정 순도만 수정하였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협상 결과 양측은 舊은화를 대신하여 新은화를 월해관 무역의 결제 통화로서 지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新은화와 舊은화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8레알 은화 1매 당 司碼銀 0.72량의 무게를 유지하는 대신, 순도가 하락한 만큼 新은화를 98折하여 舊은화와 교환 비율을 맞추는 방식을 결정하였다.<sup>507)</sup>

이것은 모스가 廣州에서 8레알 은화 1매는 廣州의 지역 은정인 司碼銀 0.72량으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하는 것과 일치한다.<sup>508)</sup> 8레알 은화의 법정 순도의 변화에 따라 순은 함유량이 감소하였지만, 은화-사마은의 교환 비율은 0.72량으로 유지한 채 新은화와 舊은화를 98折하여 貼水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한 것은 양자의 무게가 동일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기존의 교환 방식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월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외국 은화(番銀)를 고평은(족색문은·고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加法과 補水의 규정을 확인하였다. 외국 은화와 족색문은의 순도 차이에 따라 補水는 7%로 인정하였고, 외국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는 징세 청부업자들이 사용하는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에 따라 2%의 加法이 월해관에서 회계상으로 양자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규정이었다.

---

507)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324.

508)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2*, p.8.

### 3. 관세 징수 절차의 실제

상술한 바와 같이 월해관의 加法和 補水 규정을 확인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외국 상인들이 관세를 납부하면서 발급받은 납세 증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補水 7%와 加平 2%의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규정과 실재를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월해관의 관세 항목 중 선박세에 해당하는 船鈔와 월해관의 행정 비용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規禮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두 관세 항목은 여러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우선 선초와 규례은 항목은 광동체제下 과세와 징수 방식에서 현격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변수가 거의 없는 매우 안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선초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과세 단위와 등급이 결정되었지만, 과세 규정은 강희 37년(1698) 동양선과 서양선의 과세 방식이 통합된 이후 아편전쟁까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규례은은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박 1척당 정액을 과세하였고, 마찬가지로 옹정제 시기 규례은의 항목과 금액이 고정된 이후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sup>509)</sup>

또한 행상이 과세와 징수를 전담한 商稅와 달리, 월해관에서 직접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에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이 澳門에서 廣州로 입항하기 전에 黃埔에서 납부하는 선초와 규례은은 외국 상인이 은화로 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월해관에서 은화를 고평은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補水和 加平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초와 규례은 항목은 관세의 과세와 실제 징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상인의 납세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플린트는 탄원서에서 입항 과정에서 징수하는 船鈔와 規禮銀을 다음과 같

---

509) 도광 10년 입항규례은을 20% 감면하지만, 기본적인 과세 규정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이 설명하였다.<sup>510)</sup>

하나. 關口에서부터 陋規를 勒索합니다. 매 선박마다 세관을 지날 때 總巡口에서 禮銀 10兩을 요구하고, 黃埔口에서 禮銀 10兩을 요구하고, 東炮台口에서 禮銀 5兩을 요구합니다. [또] 매 선박마다 買辦을 충당하는 비용으로 總巡口 50兩을 요구하고, 黃埔口 100兩의 禮銀을 요구합니다. 매 선박마다 通事를 충당하는 비용으로 總巡口에서 50兩을 요구하고, 黃埔口에서 30兩을 요구합니다. 매 선박마다 화물을 검사하여 總巡口에서 胥吏에게 지급할 비용 100兩을 요구하고, 매일 家人이 화물을 검사하며 가마비(車轎金) 7錢을 요구하는데, 모두 통사와 매관을 거칩니다. 배 한 척(이 납부하는) 총액에 따르면 화물세 외에 먼저 납부하는 은이 3,300兩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는 規禮銀의 항목이 있는데, 원래 이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 시작을 조사해 보니, 關憲의 은혜와 도움을 입어 사례의 예물을 보내는 것으로 이후에 예물을 은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마다 점차 늘어 1,950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歸公되었으니 이미 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 면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陋規 이외에 또 陋規가 있고, 해마다 배로 증가하며 점차 그 뜻을 따를 수 없게 되어 많은 배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를 호소할 곳이 없으니, (이것이) 억울한 첫 번째입니다.

플린트는 외국 선박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關員 등이 陋規를 勒索하고 있음을 고발하며 각종 명목으로 갈취당하는 규례은의 총액을 1,950량으로 설

5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清宮藏中西商貿檔案(二)』, 中國檔案出版社, 2010, pp.1220-1221, “一. 縱關口勒索陋規. 每船放關, 總巡口索禮十兩, 黃埔口索禮十兩, 東炮台口索禮五兩. 充每船買辦, 總巡口索禮五十兩, 黃埔口索禮一百兩. 充每船通事, 總巡口索禮五十兩, 黃埔口索禮三十兩. 每船驗貨, 總巡口索胥費一百兩, 每日家人驗貨, 索轎金七錢, 俱通事買辦經手. 據切一船, 除貨物稅外, 先繳銀三千三四百兩不等. 內有規禮一款, 原無此例. 查其始乃蒙關憲恩恤優渥, 饋送禮物酬謝, 及後以禮物折銀, 遞年漸加至一千九百五十兩, 沿爲成例, 繼而歸公, 已屬啞受, 尤冀邀免. 況陋規之外, 又有陋規, 年年倍加, 稍不遂意, 萬般刁難, 鳴伸無門. 負屈一也”.

명하였다.<sup>511)</sup> 규례은에 관한 서양 측 기록에서도 플린트가 탄원서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Oriental commerce*에서는 규례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512)</sup>

입항규례은 1,089.640량, 출항규례은 516.561량, 糧道衙門 賑濟規禮銀 132량, 保商 差役 12량, 선박의 크기를 측량하는 書辦 8.4량, 선박 장량 兵丁 5.56량, 海關 兵勇 16.78량, 撫院 2.8량, 廣州府 입항 2.8량, 蕃禺 縣 입항 1.7량, 南海縣 입항 1.2량, 軍民部(澳門) 입항 1.2량, 검선 해관 검사 관리 예물 150량, 加平 등 9.359량, 총합 1,950량

규례은은 여러 세부 항목이 있었지만, 이를 크게 분류하면 입항 규례은 1,089.640량, 출항 규례은 516.561량, 糧道衙門 賑濟規禮銀 132량, 기타 161.799량 등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만, 플린트가 고발한 것처럼 규례은은 關員 등이 개인적으로 갈취하는 뇌물이 아니라 정식 잡세 항목이었다. 복주장군 新柱의 조사 활동 결과에서도 월해관의 규례은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조사 활동을 마친 新柱는 “매 척마다 납부해야 하는 原額이 番銀 1,950兩이고, 紋銀으로 折實하여 1,700여 량”으로 보고한 것으로 볼 때 화폐 단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番銀”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우선 은화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sup>513)</sup>

511) 선박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선박의 소유주(Owner) 혹은 명명자(Sponsor)와 관계없이 선박의 깃발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사료에서 유럽의 각국의 선박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반 다이크는 이들 중 무슬림 혹은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동남아시아인 등이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들에 관한 연구를 조망하였다(Paul A. Van Dyke, “Ambiguous Faces of the Canton Trade: Moors, Greeks, Armenians, Parsees, Jews, and Southeast Asians”, Paul A. Van Dyke and Susan E. Schopp Eds., *The Private Side of the Canton Trade, 1700-1840 Beyond the Companies*, Project Muse, 2019, p.42).

512) William Milburn, *Oriental Commerce* v.2, Black, Parry & Company, 1813, p.492.

513) 『新柱等奏審明李永標各款摺』, 『史料旬刊』 第4期, 史料旬刊社, 1930, pp.158-161

가경 연간 東生行의 劉德章이 EIC 소속 管貨人 리차드 홀(Richard Hall)에게 보낸 서신에서 규레은의 징수와 환산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14)</sup>

規禮銀은 총 1,950兩이다. 93折算傾紋銀 1,813.5兩內 입항규레은 紋銀 1,013.364兩, 출항규레은 紋銀 480.42兩, 糧道衙門 放關 紋銀 116.424兩, 餘銀 203.292兩으로 이상 4항목으로 모두 1,813.5兩을 지불한다.

劉德章은 외국 상인이 납부하는 규레은 1,950량을 93折하여 1,813.5량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粵海關志』에서 은화로 관세를 징수할 때 7%를 補水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였다. 劉德章은 월해관에서 折實하는 회계 절차를 설명한 것이므로 折實 후에 1,813.5량의 화폐단위는 足色紋銀·庫平이었다. 역으로 환산하면 플린트의 탄원서와 *Oriental commerce*에서 언급한 1,950량의 화폐단위는 番銀·庫平라고 할 수 있다.

『粵海關志』에서는 입항규레은과 출항규레은에 관한 또 다른 징수 방식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15)</sup>

입항규레은은 1,125兩 9錢 6分[프랑스는 100량을 더하고, 蘇喇國은 100량을 減한다]이고, 출항규레은은 533兩 8錢이다. 이상 모두 9折하여 [足色]紋銀庫平이다“.

---

所收, “夷船進口同出口, 向有各項歸公規禮銀兩, 每船原繳番銀一千九百五十兩, 折實紋銀一千七百餘兩不等”

514) 許地山 編, 『達衷集(鴉片戰爭前中英交涉史料)』, 商務印書館, 1928, pp.173-175. “規禮銀計一千九百五十兩. 一九三折算傾紋銀計一千八百一十三兩五錢內, 應完放關紋銀四百八十兩零四錢二分, 應完糧道放關紋銀一百一十六兩四錢一分四釐, 入口禮紋銀一千零一十三兩三錢六分四釐[交大關], 餘銀二百零三兩二錢九分李瑠[交通事志各項零用], 以上四款共支銀一千八百一十三兩五錢”.

515) 『粵海關志』 卷11, 「稅則四」, p.213, “進口規銀一千一百二十五兩九錢六分[內囑晒加一百兩蘇喇減一百兩], 出口規銀五百三十三兩八錢, 以上俱紋銀九折庫平”.

『粵海關志』의 규정은 도광 10년(1830) 양광총독 李鴻賓이 “매 선박당 입항 규례은 1,125兩 9錢 6分을 걷는데 9折하여 환산합니다. …(중략)… 또한 출항규례은 500여 兩이 있는데 9折하여 징수합니다”라고 설명한 것과는 일치한다.<sup>516)</sup> 월해관에서 징수하는 입항규례은과 출항규례은은 9折하면 劉德章이 설명한 설명한 금액과 일치하였다.

9折과 93折의 차이는 징수 규정의 변화나 화폐개혁과는 관계가 없었다. 특히 1772년 스페인의 화폐개혁으로 레알 은화의 순도 변화와는 무관하였다. 우선 플린트의 탄원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1772년 이후에 작성되었다. 劉德章의 서신은 가경 초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粵海關志』는 도광 초에 저술이 완성되었다. 모두 8레알 은화의 순도가 91.7%에서 90%로 조정된 이후 기록이었다. 또한 규례은의 세칙 항목과 규정이 수정된 것도 아니었다. 『粵海關志』에서 설명하는 규정은 건륭 24년 新柱 등이 보고한 규례은 세부 항목과 총액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新柱 등은 월해관의 규례은 징수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 후 그 세부 항목과 총액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sup>517)</sup>

僱船銀 32량, 官禮銀 600량, 通事禮銀 100량, …(중략)… 押船家人銀 8량, 四班頭役銀 8.32량. 이상 9折하여 紋銀庫平이다[進口規銀]. 출항할 때 납부하는 항목은 管事家人收驗船放關禮銀 48량, 小包 4량, 庫房收禮銀 120량, 貼寫 24량, 小包 4량, …(중략)… 黃埔口收銀 5량, 小包 7전 2분, 이상 9折하여 紋銀庫平이다[出口規銀].

新柱 등이 조사한 입항규례은과 출항규례은 항목의 총액은 각각 1,125.96량과 533.8량이었고, 이를 9折하여 족색문은·고평으로 환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각 족색문은·고평으로 입항규례은 1013.364량, 출항규례은 480.42량

516) 『粵海關志』 卷8, 「稅則一」, p.169, “每船額收進口規銀一千一百二十五兩九錢六分, 九折扣算 …(중략)… 一另有出口規銀五百餘兩, 九折征收”.

517) 新柱·朝銓·李侍堯, 「爲請除外洋夷船規例之名色以杜弊混以協體制事」, 『史料旬刊』 第5期, 史料旬刊社, 1930, pp.337-341.

으로 환산되는데, 이 수치는 劉德章이 설명한 금액과 일치하였다. 『粵海關志』의 환산 규정에서 “九三色·九八平을 9折”한다고 설명한 것에 따르면 9折하기 이전의 화폐단위는 번은·사마평임을 알 수 있다.

월해관에서 징수하는 규례은은 *Oriental Commerce*, 『達衷集』, 『粵海關志』에서 언급하는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환산 방식에 따른 화폐 단위의 차이였을 뿐 모두 호부의 회계 기준인 足色紋銀·庫平으로 환산하면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갖는 금액이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3> 화폐 단위 비교표

출처	입항규례은	출항규례은	화폐 단위	折實
達衷集	1,013.364	480.42	足色紋銀·庫平	
<i>Oriental Commerce</i>	1,089.64	516.561	番銀·庫平	93折
粵海關志	1,125.96	533.8	番銀·司馬平	9折

규례은은 고평은 1813.5량을 기준으로 번은·사마평을 9折하는 방식과 번은·고평을 93折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상인의 납세 증명서에서 규례은 항목 1,950량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징수단위는 번은·고평이었고, 이를 93折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외국 선박이 입항하여 선초와 규례은을 납부한 납세 증명서를 통해 순도와 저울추 무게를 조정하는 절차를 살펴본다. 선초는 선박의 크기를 기준으로 등급을 책정한 후에 선박 등급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였다. 선박의 크기는 용적량이나 적재량이 아닌, 돛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독특한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중국 측 사료에서 “長”으로 표시하는 선박의 길이는 앞 돛대(Foremast)와 뒷 돛대(Mizzenmast)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수치이고, “闊” 혹은 “寬”으로 표시하는 선박의 폭은 메인 돛대(Mainmast)의 측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수치였다. 외국 선박은 입항할 때마다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sup>518)</sup>

선초의 과세 방식은 사료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중국 측 자료인

『大清會典則例』에서는 선박의 등급을 길이와 폭을 곱하여 과세 단위를 산정하였다.<sup>519)</sup> 과세 등급에 따른 세율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세 단위당 선초를 계산하면 세율은 1등급 선박 77.777량, 2등급 선박 71.42857량, 3등급 선박 50량이었다.

다음으로 서양 측 자료인 *Oriental Commerce*의 설명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는 길이와 폭을 곱하여 10으로 나눈 과세 단위에 선박 등급별 세율을 적용하였다. 각 과세 등급별 세율은 1등급 선박 7.777량, 2등급 선박 7.142량, 3등급 선박 5량이었다.<sup>520)</sup> *Oriental Commerce*와 『大清會典則例』의 규정은 丈과 尺의 차이일 뿐 등급별 세율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선초를 관세하는 과정에서 과세 단위와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 선박의 등급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가경 연간 東生行 劉德章이 EIC의 리처드 홀(Richard Hall)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잘 드러난다. 劉德章의 설명하는 선초의 과세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21)</sup>

518) 모스는 Cubit가 ‘尺’을 뜻하는 것이며 1Cubit가 14.1in라고 설명하지만, 그림에도 약간의 오차는 존재한다(*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307, p.267).

519) 『大清會典則例』 권 47 호부, 선초의 과세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4> 『大清會典則例』 船鈔 과세 규정

등급	길이(丈)	폭(丈)	과세 단위(平方丈)	선초(兩)	환산세율
1등급	7.4~7.5	2.3~2.4	18	1400	77.77
2등급	7	2.2	15.4	1100	71.42
3등급	6	2.0	12	600	50

520) *Oriental Commerce* v.2, 1813, p.492. 西洋船의 선초 과세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5> *Oriental Commerce* 船鈔 과세 규정

	길이(尺)	폭(尺)	세율(兩)
1등급	74 이상	23 이상	7.777
2등급	71 ~ 74	22 ~ 23	7.142
3등급	65 ~ 71	20 ~ 22	5.000

521) 許地山 編, 『達衷集(鴉片戰爭前中英交涉史料)』, 商務印書館, 1928, pp.173-175. 劉德章의 서신은 『粵海關志』와 세부적인 수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각 등급별 세율은 『粵海關志』와 동일하다. “船鈔例. 一等船十六丈以上, 作長七丈五尺, 寬二丈四尺, 乘得十八丈, 該鈔銀一千一百二十兩. 二等船十四丈以上, 作長七丈,

<도표 4-6> 가경 연간 선초 규정

	기준	길이	폭	과세 단위	선초
1등급	16丈 이상	7丈 5尺	2丈 4尺	18丈	1,120
2등급	14丈 이상	7丈	2丈 2尺	15.4丈	880
3등급	14丈 이하	6丈	2丈	12丈	480

劉德章의 설명은 등급별 규정이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강희 24년(1685) 조치에 따라 20%를 감면한 금액이었으므로 『大清會典則例』의 규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산출한 등급별 세율도 양자가 동일하였다. 그런데 월해관에서 선초를 적용할 때 1등급 선박을 16丈 이상, 2등급 선박을 14丈 이상, 3등급 선박을 14丈 이하로 적용하여 실제 선박의 등급보다 높게 책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선박이 월해관에 입항하면서 실제 납부한 선초와 규례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강희 38년(1699) 월해관에 입항한 매클즈필드(Macclesfield)號이다.<sup>522)</sup>

<도표 4-7> 매클즈필드(Macclesfield)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항목	무게(兩)	비고
① 船鈔	480.0	
② 월해관의 관원에게 전달하는 船鈔의 10%	48.0	①의 10%
③ 足色紋銀과의 순도 차이	33.6	①의 7%
④ 저울추의 무게 차이 조정 비용	7.0	
총액	568.6	

매클즈필드號는 과세 기준 길이 62.5척, 폭 20척으로 과세 단위는 125였고, 3등급 세율 5량을 적용하여 선초 과세액은 625량이었다. 선초의 과세 과정에서 월해관감독의 자의적인 적용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寬二丈二尺，乘得十五丈四尺，該鈔銀八百八十兩。三等船十四丈以下，作長六丈，寬二丈，乘得十二丈，該船鈔銀四百八十兩”.

522)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92.

480량으로 결정되었다(①).<sup>523)</sup>

다만, ②, ③, ④ 항목에 대한 모스의 설명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②항목은 ‘월해관의 관원에게 전달하는 船鈔의 10% 비용’으로 설명하였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正稅인 船鈔에 부가되는 잡세인 火耗를 의미하였다. ③은 은화와 足色紋銀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補水 7%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司碼平과 庫平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약 1.45%가 추가되었다(④). 월해관에서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가 2%로 확립되는 것은 건륭 24년(1759) 전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강희 연간에는 1.5% 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船鈔는 正稅였기 때문에 火耗 10%와 補水 7%, 加平 2%의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옹정 8년(1730) 입항한 VOC 소속 다위피예(Duifje)號가 납부한 선초와 규레은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24)</sup>

<도표 4-8> 다위피예號의 船鈔와 規禮銀 납세 증명서 정리표

항목	무게(兩)	비고
① 船鈔	881.945	
② 월해관감독 몫 10%	88.194	①의 10%
③ 순도 차이를 보정하는 7%	67.909	①+②의 7%
④胥吏의 2%	17.638	①의 2%
선초 합계	1,055.686	
규레은	1,950.000	
총액	3,005.686	

523) 월해관감독은 로버트 더글라스(Robert Douglas)에게 매클즈필드號의 선박 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여 1,200량의 선초를 과세해야 하지만, 외국 상인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여 600량을 과세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재차 20%를 감면하여 480량을 납부할 것을 알렸다. 월해관감독의 허울 좋은 말로 보이지만, 이는 1698년 동양선과 서양선의 선초 과세 기준이 통일되면서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524) Paul A. Van Dyke, *The Canton Trade: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p.27.

데퓌에號는 과세 기준 길이 67.99척, 폭 22.7척으로 과세 단위는 154.3373 단위이므로 2등급 세율(7.143량)이 적용되어 1,102.431량이었고, 강희 24년 조치에 따라 20% 감면되어 881.945량이 산정되었다(①) 따라서 船鈔 881.945량은 補水와 加平을 거쳐서 규례은 1,950량 등 총액 3,005.686량을 납부하였다.

반 다이크도 모스와 마찬가지로 모두 ②, ③, ④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월해관에서 규정 외에 勒索하는 항목인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정확하게는 모두 월해관의 세칙에서 징수를 규정한 항목이었다. 우선 이미 1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正稅인 船鈔, 商稅에는 火耗 10%의 雜稅의 징수가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월해관감독 몫 10%”는 火耗로 징수한 항목이었다. 월해관의 세칙에는 火耗를 제외하고 船鈔에 추가되는 雜稅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고, 은화로 징수하는 正稅와 雜稅에 補水와 加平이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반 다이크가 설명하는 “순도 차이를 보정하는 7%”(②)는 補水 규정, “胥吏의 2%”(③)는 加平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1739년 입항한 EIC 소속 아우구스타(Augusta)號의 사례에서 船鈔의 징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525)</sup>

<도표 4-9> 아우구스타(Augusta)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정리표

항목	무게(兩)	비고
① 船鈔	1,106.181	
② 庫房 혹은 월해관의 회계 관리자 몫	110.618	
③ 足色紋銀으로 만드는 추가 비용	85.176	①+② 7%
④ 해관의 書房 혹은 胥役 몫	22.196	①의 2%
⑤ 총액	1,324.099	

아우구스타호는 과세 기준 길이 76.3척, 폭 23.3척으로 과세 단위가 177.779단위( $\frac{76.3 \times 23.3}{10}$ )이므로 1등급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액은 1,382.726량이

525)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1*, p.267.

었고, 강희 24년(1685) 조치에 따라 276.545량 감면하여 1,106.181량이 과세되었다(①). 마찬가지로 正稅인 船鈔에는 10%의 火耗가 추가되었다(②). 납세 증명서에는 火耗 항목을 “Copaen(Kungpan) or Hoppo’s Controller”에 납부한 금액으로 기록하였는데, 火耗는 庫房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補水 7%와 함께 加平 2%로도 징수하였는데, 납세 증명서에서 加平 항목을 “Shupan or Clerks of the Hoppo’s Office”에게 납부한 금액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를 선박의 입·출항을 관할하던 書房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1759년 입항한 DAC 소속 프린세스 루이스(Princesse Lowise)號의 사례이다. 이는 반 다이크가 저서에 수록한 영인본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26)</sup>

<도표 4-10> 프린세스 루이스(Princesse Lowise)號의 船鈔 납세 증명서 정리표

항목	무게(兩)	비고
① 船鈔	1374.255	
② 不明	137.426	
③ 不明	105.818	①+②의 7%
④ 不明	27.485	①의 2%
선초 합계	1644.984	
규례은	1950.000	
	3594.984	

원본 문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1등급 선박으로 과세 단위에 7.777량이 적용되어 船鈔 1717.819량이 과세되었다. 마찬가지로 강희 24년 선박 20% 감면 조치에 따라 343.564량이 감면되어 1374.255량이 과세되었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②는 船鈔에 10% 과세된 火耗, ③은 補水 7%, ④는 加平 2%가 적용되었다.

이상에서 실제 납세 사례를 통해 補水 7%와 加平 2%의 규정이 실제 적

<sup>526)</sup> Paul A. Van Dyke, *The Canton Trade: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Plate 29, 재인용

용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행상이 관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加平 2%라고 규정한 것은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였다. 그런데 호부는 호부 고평과 월해관평의 무게 차이를 1.65%로 규정하였으므로 월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를 0.35%로 규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것은 행상이 사용하는 997司碼平이 司平보다 0.3% 가볍다는 설명과도 대략적으로 부합한다.

#### 4. 소결

청대 은정은 국가에서 직접 주조와 유통을 관리하지 않고, 민간에 방임한 결과,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지역마다 다른 은정이 유통되었다. 중국에서 은 화폐는 귀금속으로서 그 무게와 순도에 따라 측정된 순은 함유량을 교환 가치의 척도로 하는 칭량화폐로 사용되었고, 그 특성상 각 경제 주체들이 측정하는 값에 따라 그 교환 가치가 변동한다는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

청대 화폐 체계의 결함의 핵심은 ‘다중·다양했다’가 아니라 동일한 은정이 고정된 교환 가치를 확보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있었다. 결국 이것은 은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문제였다. 의견상 비교적 판별이 가능했던 순도의 문제는 전문가(銀師)의 감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도, 저울추 간에 무게 차이는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경제 주체들 간에 은정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저울추의 무게 차이의 조정의 절차가 존재하였다. 對서양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은 복잡한 체계의 중국 은정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외국 은화를 처리해야 하였다.

시야를 지구로 확대해 보면, 중국이 ‘은의 블랙홀’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칭량화폐 체계를 채택했기 때문이었다.<sup>527)</sup> 청대 廣

<sup>527)</sup> 가령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은 수요량은 막대하였는데, 대공황 직전인 1928년 인도와 중국은 전 세계 은 총 공급량(생산량+재유입량) 3억 1150만 온스 중에서 70.14%에 해당하는 2억 1850만 온스의 공급량을 흡수하고 있었다고 평가되

씨는 중국과 서양의 접촉이 유일하게 허용된 열린 공간으로서 활발하게 상품과 화폐가 유통되던 거대한 경제 구역이었다. 중국의 칭량화폐 체계와 달리 서양은 계수 화폐 체계를 정립하였다. 국가가 법정 순도와 무게를 규정하여 이에 따라 주조와 유통을 관리하였다. 칭량화폐인 은정과 계수 화폐인 은화가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廣州였다.

이질적인 화폐 체계 간에 경제 활동을 위해 양자의 교환 비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우선 외국 은화의 법정 순도와 무게는 정확히 준수되지 않았는데, 당시 전 세계에 유통되었던 스페인 8레알 은화는 대표적인 惡貨였다.

8레알 은화가 악화였음에도 화폐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對중국 무역의 경제 통화로서 이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유럽의 엄청난 공급량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엄청난 수요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국이 칭량화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유통되는 惡貨는 월해관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어 칭량화폐로 취급되며 중국의 화폐 체계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중국의 화폐 체계는 대외 무역에서 의외의 장점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화폐 등이 유통되는 廣州에서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은 세칙에 따라 과세한 관세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징수하고, 또한 이를 오차 없이 회계 처리해야 하였다. 그렇다면 관세로 납부되는 다양한 종류의 중국 은정뿐만 아니라 외국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바로 징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risk)를 징세 청부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관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본 학위논문은 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독자적인 화폐 단위가 출현한 원인을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찾고 있다. II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광동체제에서 粵海關銀은 호부-월해관-징세 청부업자 간에 화폐 가치를 조정

---

었다(Herbert Max Bratter, *The Price of Silver*,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9.)

하는 중간 단계의 화폐 단위였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출현하는 ‘근대 해관’에서도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海關兩(Haikwan teal)”이다. 청대 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화폐는 월해관 은에서 해관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징세 구조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첫 단계로 IV장에서 우선 월해관의 순도와 무게를 확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V장에서 아편전쟁 이후 오구통상 시기와 다구통상 시기에 해관량의 순도와 무게를 확인하여 두 화폐 단위를 비교하여 양자가 동일한 화폐 단위였음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월해관에 입항하면서 납부하는 船鈔와 規禮銀의 징수 규정과 실제 납부액의 기록을 통해 월해관에서 수납한 관세를 고평은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선초와 규례은은 장기간 세칙과 징세 방식에 변화가 없었던 매우 안정적인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월해관에서 직접 과세하여 징수한 관세였다는 점에서 그 실재를 검토하는 데 매우 적절한 분석 대상이었다.

월해관에서 관세를 과세한 기준은 호부 庫平銀이었으므로 외국 상인으로부터 외국 은화로 관세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세 업무는 행상이 전담하였으므로 廣州의 市平인 司碼平으로 은화의 무게가 측정되었다. 즉, 행상이 관세를 징수할 때 ‘외국 은화를 司碼平으로 측정한 무게(番銀·司碼平)’를 호부에서 회계 결산할 때 기준이 되는 ‘足色紋銀을 庫平으로 측정한 무게(足色紋銀·庫平)’와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加法과 補水가 진행되었고, 월해관은 加法 2%, 補水 7%를 규정하였다.

광동체제에서 외국 은화의 환산 과정에서 “은화 1매 = 고평은 0.72량”이라고 하는 청대 화폐 체계의 상식은 사실 “은화 1매=사마평으로 측정한 무게 0.72량”으로 성립된 廣州의 상거래 관행이 굳어진 결과였다. 월해관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은화 1매당 고평은 ‘무게’ 0.72량으로 하였지만, 사실은 加法과 補水の 과정을 거친 수치였다. 스페인의 화폐개혁 과정에서 레알 은화의 법정 무게에 변화가 없었고, 다른 은화들도 對중국 무역 화폐로서 지위

가 확립된 8레알 은화의 무게와 일치시켰으므로 ‘외국 은화 1매 = 무게 0.72량’이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건륭 24년(1759) 新柱의 奏摺에 따르면 월해관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는 1.65%였고, 사마평으로 관세를 징수할 때 2%를 추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고평을 기준으로 월해관평은 1.65% 가벼운 저울추, 사마평은 2% 가벼운 저울추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 저울추 무게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처리 규정’은 그러하였다.

다음으로 실제로 선초와 규레은을 징수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규정과 비교하였는데, 우선 선초의 경우 正稅에 해당하는 관세였으므로 火耗 10%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징수 과정에서 규정대로 고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2%, 외국 은화와 족색문은과의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7%를 추가하여 규정과 일치하였다.

반면, 규레은은 규정과 실제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규레은은 외국 선박이 입항할 때 선박당 과세한 1,950량의 정액세였다. 규레은은 징수 과정에서 별도의 加法和 補水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고, 화모 10%도 추가되지 않았다. 규레은은 본래 잡세였으므로 본래 火耗가 추가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법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1,950량은 ‘월해관평으로 측정된 은화의 무게’를 의미하였다. 이를 족색문은·고평으로 환산하여 고평은 1813.5량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 24년(1759) 新柱의 奏摺과道光 10년(1830) 李鴻賓의 주접에서 실제 지출하는 규레은 총액은 번은·사마평 2,015량이었다. 그런데 실제 징수 과정에서 고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이 차액 65량은 아마도 별도의 지출 항목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레은을 지칭하는 番銀·司碼平 2,015량, 番銀·粵海關平 1,950량, 足色紋銀·庫平 1813.5량은 화폐 종류의 차이였을 뿐 모두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다.

## 제 V 장 아편전쟁 이후 광동 지역 해관의 징세 기준: ‘海關兩’을 중심으로

### 1. 五口通商時期 해관의 징세 구조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남경조약과 그 부속 조약 및 그 외 국가들과의 조약은 一口通商과 行商制度를 근간으로 하는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제도인 廣東體制를 해체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광동체제下 粵海關은 해관의 행정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며 다음 시기 海關體制의 기본 모델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 시기에서 자주 보이는 행정 처리 방식의 관성(inertia)이었다. 오구통상 시기의 시작은 조약에서 시작되었고, 조약에 의해 강제된 대외 무역항의 확대에서 청조가 對서양 무역의 관리 제도로서 모델을 삼을 수 있는 선택지는 월해관 외에 없었다.

결국 오구통상 시기는 청조가 월해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새로운 대외 무역 관리제도의 형성을 모색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관심은 아편전쟁 전후 해관을 관통하는 청조의 대외 무역 정책의 기초가 행정 편의와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을 좀 더 확대하면 제2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따른 신식 해관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리라 본다.

광동체제에서 징세청부업을 담당하던 행상은 대외 무역에 직접 참여하는 무역상으로서 대외 무역에 관한 우세한 권리를 보장받는 반대급부로 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半官적 성격을 갖는 집단이었고, 그들의 활동은 청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 행위였다. 광동체제에서 그들이 담당했던 해관

행정은 크게 외국인의 관리 업무(㉠)와 관세의 징세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의 경우 단순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의 활동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월해관에 입·출항하는 외국 선박과 인원의 수속과 등기, 화물의 통관 업무까지 포함하였고, ㉡ 역시도 외국인에게 관세를 대리로 징수하여 해관에 납부하는 것 외에 납부의 보증인 역할까지 맡는 것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월해관의 과세와 징세 업무를 행상에게 청구하던 행상제도의 폐지는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상제도의 폐지가 대리 징수 구조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행상을 대신하여 새로운 집단에게 징세를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졌는데, 바로 海關銀號를 설치하여 전통적 금융업에 종사하던 금융업자들이 그 업무를 계승하였다. 이것은 조약을 통해 중국과 서양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 이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남경조약 제2조와 제5조에서는 광동체제의 해체와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528)</sup>

제2조. 지금 이후로 大皇帝는 영국의 人民이 가솔을 대동하여 大清의 연해 지역의 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 등 다섯 곳의 항구에 기거하면서 무역 통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大英國의 君主는 다섯 곳의 항구 도시에 領事와 管事 등의 관리를 파견·설치하여 상업 사무를 전담하고, (그들이) 각 해당 지방관과 공문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인으로 하여금 다음에 나열한 예에 따라 貨稅와

528) 『南京條約』,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彙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57, pp.30-33 所收, “一, 自今以後, 大皇帝恩准英國人民帶同所屬家眷, 寄居大清沿海之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等五處港口, 貿易通商無礙. 且大英國君主派設領事管事等官住該五處城邑, 專理商賈事宜, 與各該地方官公文往來. 令英人按照下條開敘之列, 清楚交納貨稅鈔餉等費 …(중략)… 一, 凡大英商民在粵貿易, 向例全歸額設行商, 亦稱公行者承辦. 今大皇帝准以嗣後不必仍照向例, 乃凡有英商等赴各該口貿易者, 勿論與何商交易, 均聽其便. …(후략)…”.

선박세 등의 비용을 명확하게 납부하게 한다. (맡줄은 인용자)

제5조. 大英의 상인과 인민이 광둥에서 무역을 하면서 이전에는 모든 것을 行商 혹은 公行에게 넘겨서 떠맡아 처리하게 하였다. 지금 大皇帝는 앞으로 이전의 사례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영국 상인 등이 각 항구로 가서 무역을 할 경우 어떤 (중국인) 상인과 교역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후략)…

우선 남경조약 제5조에서는 광둥체제의 행상제도의 폐지를 정식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조는 더 이상 행상에게 대외 무역에 관한 이권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행상이 해관 행정에 참여할 유인은 사라졌다.

행상제도의 폐지와 함께 제2조에서는 廣州 이외의 네 곳에 대외 무역항을 신설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중국의 一口通商制度를 폐지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약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領事擔保制” 혹은 “領事報關制”라고 알려진 외국인 관리 제도의 실시를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29)</sup> 영국 정부는 각 개항지에 영사를 파견하여 영국 상인의 입·출항 관리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다고 하는 領事報關制를 통해 행상의 외국인 관리 사무는 영사보관제로 계승되었다.

영사보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경조약의 후속 조약인 『中英五口通商章程』(이하 『通商章程』으로 약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해관에 입항하는 영국 선박은 월해관에 입항하여 선박 등록증(船牌), 선적 명세서(艙口單), 통관 신고서(報單) 등의 외국 영사에게 제출해야 하였다. 규정상으로는 만약 기한을 어기거나 위·변조할 경우 처벌을 받았고, 통관 절차 이전에 화물을 하역할 경우에 압수될 수도 있었다. 영국 상인이 관련 문서를 영국 영사에게 전달하면 영사는 해당 지역의 해관에 이를 통지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였다

529) 曹英, 「領事擔保制探析」, 『安徽史學』 6, 2013, pp.37-45, “領事報關制”라는 용어는 본래의 의미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 영사가 영국 상인의 입·출항 수속과 관세의 납부를 관리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領事報關制”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이다.

(제3조).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기 이전에 상인은 영사에게 수·출입 상품의 하역을 보고해야 하였고, 영사는 영사관에서 고용한 통역관을 동행시켜서 이를 해당 지역의 해관에 보고하여 수출·입 화물을 검사하였다. 관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세칙 적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사는 해관 측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영국 영사는 영국 선박의 입·출항 선박의 수속과 신고 및 통관 절차를 담당하였다(제7조). 또한 「통상장정」 제15조에서는 행상제도의 철폐를 재확인하며 이전에 행상이 맡았던 영국 상인의 관세 납부의 보증인 역할을 영국 영사가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다(제15조).

영사보관제는 행상제도의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밀수·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청조의 대외 무역 감독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영사보관제는 청조와 영국 간의 조약에서만 규정되었고, 미국, 프랑스 등의 다른 국가들이 청조와 체결한 조약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따라서 조약에서 규정한 입·출항 수속과 통관 절차는 영국 상인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국가의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영국 상인들의 불만은 누적되었고, 결국 1851년 7월 영국 영사가 領事報關制의 취소를 양광총독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시행이 중단되었다.

오구통상 시기 관세 행정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正稅, 즉 선박세에 해당하는 船鈔와 상품교역세에 해당하는 貨稅를 제외한 일체의 雜稅의 징수를 금지했던 점이다. 「통상장정」 제6조에서는 수출·입 세칙을 새로 제정하여 다섯 곳의 대외 무역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에 잡세(“規費”)의 징수 일체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은 잡세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조약으로서 이것이 금지되면서 더 이상 납세자에게 행정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雜稅에서 지출하던 항목들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sup>530)</sup> 각각의 지출 항목들은 모두 正稅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

530) 가령 기존에 擔頭銀에서 지출하던 해관의 淸書와 差役 등의 인건비와 행정 비용 등은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도광 23년 8월 22일 양광총독 祁重와 월해관감

즉, 이에 따라 奏銷摺의 형식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남경조약의 체결 이후 新세칙이 적용된 월해관 도광 丙午年分 세수의 徵收總數 보고와 盈餘銀數目 보고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특징은 징수총수 보고가 본래 각관체제에서 해당 회계 연도에 징수한 총액을 先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正額銀과 盈餘銀이 호부의 고핵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만 다루었고, 형식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다.<sup>531)</sup> 다만, 월해관의 收支를 결산하는 주소점인 영여은수목 보고는 구성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32)</sup>

<도표 5-1> 도광 丙午年分 영여은수목 보고의 세부 항목

항목	금액	비고
正額銀	40,000.000	前 正稅項
銅筋水腳銀	3,564.000	前 正稅項
通關經費·養廉工食·銷鎔折耗	36,151.773	前 雜稅項
糧道衙門撥充普濟堂公用銀	19,888.889	前 雜稅項
補解水腳銀	69,710.133	前 雜稅項
部飯食銀	51,106.892	前 雜稅項
造辦處裁存備貢銀	55,000.000	前 雜稅項
內務府廣儲司公用銀	300,000.000	前 雜稅項
正雜盈餘平餘水脚部飯食并廣儲司各款加平銀	67,058.342	前 雜稅項

도광 丙午年分은 관기가 도광 23년 2월 26일부터 도광 24년 정월 25일까지였고, 징수 총액은 2,030,543.108량, 관세 외 수입인 “平餘等銀”은 7,185.204량이었다. 영여은수목 보고 구성의 변화의 첫 번째로 회계 항목에서 “正稅項”과 “雜稅項”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단일 항목으로 합쳐졌다.

독 文豐이 이를 월해관의 영여은에서 지출할 것을 건의하며 월해관의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되었다(文豐·祁重 등, 『爲會議籌給各書役人等飯食公費據實盡命仰祈聖鑒事』, 도광 23년 8월 22일, 第一 MR21, pp.2152-2154).

531) 文豐, 『爲奏報關稅一年期滿徵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24년 2월 29일, 第一 MR21, pp.2190-2192.

532) 文豐, 『爲恭報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24년 5월 25일, 商務檔案(7), pp.3858-3864.

영여은의 正·雜 구분의 사라지면서 “盈餘銀數目”의 명칭도 “收支實數”으로 바뀌었다.<sup>533)</sup>

正稅로 징수한 총액을 의미하는 正羨盈餘銀과 正稅의 지출 항목을 제외한 잔여액을 의미하는 正羨銀이 사라졌고, 마찬가지로 雜稅로 징수한 총액을 의미하는 雜羨盈餘銀과 雜稅에서 지출하는 월해관의 운영비를 제외한 잔여액을 의미하는 雜羨銀 항목이 사라졌다.

두 번째 특징은 “糧道衙門撥充普濟堂公用銀”(이하 ‘普濟堂公用銀’으로 약칭)과 “正雜盈餘平餘水脚部飯食并廣儲司各款加平銀”(이하 ‘加平銀’으로 약칭)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普濟堂은 옹정 2년(1724) 광동순무 年希堯가 老·疾·無依之人을 부양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이었고, 여기에 지출되는 경비는 規禮銀으로 징수하는 1,950량 중에서 糧道衙門의 賑濟規禮銀으로 할당한 132량과 分頭銀 중 일부(0.5%)에서 조달하였다.<sup>534)</sup> 하지만 잡세인 규례은과 분두은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여은의 정식 지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도광 丁未年分부터 보제당공용은의 항목으로 매년 40,000량을 고정 지출하였다.

가평은 항목은 粵海關平과 庫平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이었다. 제II장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北京으로 운송하는 세수꾸러미는 1꾸러미 당 1.5%의 添平銀을 小封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월해관평과 고평의 실제 무게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전국의 權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지출 항목이었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은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저울추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2%를 추가 징수하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新세척 이외에 잡세의 징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비용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었고, 이 비용은 영여은의 정식 지출 항목으로 배정되었다.

---

533) 이러한 현상은 도광 26년 6월 18일 월해관감독 恩吉이 도광 戊申年分 세수를 회계 결산하면서 처음 확인된다(恩吉, 『爲恭報關稅收支實數仰祈聖鑒事』, 도광 26년 6월 18일, 『籌辦夷務始末補遺』 道光朝 4, pp.275-278).

534) 傳泰, 『爲請旨事』, 옹정 7년 10월 28일, 故宮 402018964.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은 기존에 入鞘添平銀으로 지출하던 1.5% 외에 2.5%를 추가 지출하여 총 4%를 지출하였다.<sup>535)</sup> 규정대로라면 北京으로 운송하여 호부와 내무부에 전달하는 항목의 총액에 4%에 해당하였지만, 도광 戊午年分の 경우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도광 연간에도 이어진 酌撥 보편화 현상과 함께 회계 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므로 일단은 加平銀 항목은 운송 총액의 4%라고 일단락하고 넘어간다.<sup>536)</sup>

세 번째 특징은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의 주소지에서 월해관 외에 福州 廈門, 寧波, 上海에 신설하는 해관에서 징수한 세수를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외 무역항을 네 곳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기존에 월해관에서 지출해야 했던 備貢銀과 公用銀 등 내무부 재정의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조는 江海關, 福州關, 廈門關, 浙海關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3개월마다 징세 내역을 월해관감독에게 咨文으로 알리고, 만약 월해관의 세수가 감소할 경우 각 해관에서 補撥할 것을 결정하였다.<sup>537)</sup>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신설 해관의 회계 연도와 월해관의 회계 연도를 일치시켜야 하였다. 즉, 오구통상 시기 다섯 개의 해관은 모두 회계 연도가 동일하였다. 上海는 도광 23년 9월 26일(1843년 11

535) 軍穆彰阿, 『軍機大臣穆彰阿等奏爲遵旨核議耆英等所奏通籌海關稅收并解支禁革等各條款摺』, 도광 23년 閏7월 7일, 『鴉片戰爭檔案史料』 第7冊, pp.263-265 所收.

536) 北京으로 운송하는 금액에만 加平銀을 지출하였으므로 회계 결산 이전에 協餉하는 금액의 경우 가평이 지출되지 않았다. 또한 전기 월해관과는 달리 후기 월해관의 경우 매년 北京으로 운송하는 금액은 호부의 지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우수리 금액은 월해관의 關庫에 남겨 두었다.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회계 문서 및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별고에서 다룰 것이지만, 분석 결과 도광 29년분의 경우 가평은 4%의 적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明善, 『爲恭報關稅收支實數仰祈聖鑒事』, 도광 30년 3월 25일, 第一 MR21, pp.2477-2480).

537) 耆英 등, 『爲敬陳粵海關裁費歸公實在情形分別籌議辦理以免貽誤奏摺奏祈聖鑒事』 附奏, 도광 23년 8월 27일, 商務檔案(6), pp.3780-3782.

월 17일) 개항하여 도광 24년 정월 25일(1844년 3월 13일)까지 징수한 세수는 41,933.451량, 廈門은 도광 23년 9월 11일 개항(1843년 11월 2일)하여 도광 24년 정월 25일(1844년 3월 13일)까지 15,134.438량, 寧波는 도광 23년 11월 12일(1844년 1월 1일) 개항하여 도광 24년 정월 25일(1844년 3월 13일)까지 6,264.468량을 징수하였고, 福州은 아직 대외 무역항의 개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광 丙午年分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네 번째 특징은 上海, 福州, 廈門, 寧波에 신설한 해관을 “夷稅”의 징수를 전담하는 독립된 징세 기관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다.<sup>538)</sup> 따라서 해당 지역에 기존에 존재했던 常關과는 별개의 회계 절차를 거쳤다. 이것은 기존에 각 관체제에서 벗어난 대외 무역항의 특수성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월해관을 중심으로 관리를 총괄하겠다는 청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치한 常關인 江海關, 閩海關, 浙海關는 기존에 각관체제에 따라 각각의 회계 연도에 변화 없이 常稅를 회계 처리하고, 신설한 해관에서 징수하는 夷稅는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맞춰서 별도의 주소집을 작성하여 회계 결산하였다. 가령 강해관의 경우 강소순무 傅繩勛은 기존에 회계 연도에 따라 징수한 常稅를 도광 29년 11월 21일(1850년 1월 3일) 회계 결산하였는데, 해당 회계 연도의 관기는 도광 28년 9월 1일(1848년 9월 27일)부터 도광 29년 7월 30일(1849년 9월 16일)까지였다.<sup>539)</sup> 그리고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도광 28년 12월 26일(1849년 1월 20일)부터 도광 29년 11월 25일(1850년 1월 7일)까지 징수한 夷稅를 도광 30년 2월 29

538) 오구통상 시기 해관에서 징수한 관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에 각관체제에서 징수하던 내지 통과세와 대외 무역세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내지 통과세를 “常稅”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대외 무역세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외국인 세무사제도 성립 이후 신식 해관에서 징수하는 대외 무역세를 지칭하는 용어를 따라 “洋稅”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오구통상 시기와 다구통상 시기를 하려는 목적을 뚜렷히 하고자 사료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夷稅”를 사용한다.

539) 傅繩勛, 『爲江海關一年期滿查明徵收內地商稅銀兩循例恭摺具奏仰祈聖鑒事』, 도관 29년 11월 21일, 第一 MR21, pp.2444-2446.

일(1850년 4월 11일) 회계 결산하였다.<sup>540)</sup>

복주관과 하문관의 경우 월해관의 회계 연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閩海關의 관기가 종료된 직후 常稅를 결산하면서 附奏의 형식으로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맞춰서 복주관과 하문관에서 징수한 夷稅를 결산하였다.<sup>541)</sup> 강해관과 절해관도 이와 마찬가지로 常稅와 夷稅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결산하였다.<sup>542)</sup>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의 경우 이전 시기와 변화없이 내지 통과세와 대외 무역세를 모두 처리하였다. 이것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이 청조의 유일한 對西洋 무역항이면서 중요한 내지 무역항이었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회계 문서를 보면 대외 무역과 국내 상품의 교역에서 징수한 관세를 각각 “洋稅”과 “商稅”로 구별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주소집에서는 양자의 총액만을 다루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 주소집과 함께 호부에 제출한 淸冊을 통해서 확인된다. 주소집의 附件으로 동봉된 것 외에 완전한 상태의 청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료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건륭 초의 상황을 통해 부분적으로 월해관의 “洋稅”와 “常稅”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륭 13년(1748) 광동순무 岳濬이 올린 주소집의 附件의 淸冊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43)</sup>

---

540) 傅繩勛, 「爲江海關徵收西洋各國稅鈔並內地絲商補納稅銀已屆關期報滿恭摺奏祈聖鑒事」, 도광 30년 2월 29일, 第一 MR21, pp.2469-2471. 강소순무 傅繩勛은 월해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까지 징수한 夷稅를 회계 결산하였다.

541) 璧昌, 「爲閩海關一年期滿兩任徵收稅數盈絀情形及廈門開關續徵貨稅分晰陳明仰祈聖鑒事」, 도광 24년 2월 14일, 第一 MR21, pp.2184-2187. 福州關, 廈門關은 閩海關과 관기가 달랐다. 도광 24년 2월 14일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 閩海關의 관기는 도광 23년 2월 16일부터 도광 24년 정월 15일이었고, 福州關과 廈門關은 월해관의 관기에 따랐다.

542) 陳繼昌, 「爲江海關通商以後徵收西洋各國稅鈔並內地絲商補納稅銀現屆關期報滿恭摺奏祈聖鑒事」, 도광 25년 3월 27일, 第一 MR21, pp.2249-2251

543) 岳濬, 「爲復奏事」 附件, 건륭 13년 8월 29일, 故宮 003343-0-A.

<도표 5-2> 건륭 13년(1748) 월해관의 洋稅와 商稅 분류표

	洋稅	商稅	平餘·罰料·截曠	세수 총액	기간
건륭 9년	184,336.589	227,952.051	2,854.621	415,143.261	1년
건륭 10년	78,692.126	168,747.421	1,860.447	249,299.994	7개월 3일
건륭 11년	114,628.204	224,169.017	821.470	339,618.691	1년

이 데이터는 1785년(건륭 50년) 전후 월해관의 대외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이므로 광동체제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지 무역세의 비중이 대외 무역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당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차잎, 비단, 도자기 등의 상품은 廣州와 그 배후지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월해관을 통해 수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우선 내지의 생산지에서 廣州府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洋稅”와 “商稅”는 비례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차잎, 차 무역, 내지 무역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광동체제에서 鄱陽湖-贛江-大庾嶺-珠江로 연결되는 운송 경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sup>544)</sup> 야자와 토시히코(矢沢利彦)는 안휘성과 복건성에서 생산된 차잎이 이 루트를 통해 월해관으로 운송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鄱陽湖-珠江 운송로의 출발 지점은 강서성 饒州府였다.<sup>545)</sup>

중국의 주요 수출품의 운송 루트를 간략히 살펴보면 안휘성의 休寧縣, 屯溪縣, 婺源縣에서 생산된 녹차와 景德鎮의 도자기는 樂安江을 통하고, 祁門縣에서 생산된 녹차는 昌江을 통해 饒州府로 운송되었고, 복건성 武夷縣에서 생산되는 武夷茶는 인력으로 육로를 통해 武夷山脈의 分水關을 거쳐서 육로

544) 吳金成, 『廣東貿易體制 下の 江西의 社會變化』, 『역사교육』 86, 2003. 오금성은 광동체제와 北京-大運河-揚州-鄱陽湖-贛江-大庾嶺-珠江-廣州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연결하여 광동무역체제에서 수출입 상품의 운송에 따른 강서 지역의 번영과 쇠퇴 및 부작용에 관하여 다루었다.

545) 휘주차와 복건차가 廣州府까지 운송되는 경로는 矢沢利彦, 『グリーン・ティーとブラック・ティー』, 東方書店, 1997, pp.177-181을 참조한다.

로 河口鎮에 도착한 후 信江을 타고 饒州府로 운송되었다.

饒州府를 출발한 선박은 鄱陽湖의 여러 갈래 중 하나를 통해 강서성의 남북을 관통하는 贛江에 진입하였다. 선박은 贛江을 거슬러 올라서 贛州에 도착할 이후 小船으로 나누어 贛江을 거슬러 올라서 大庾縣까지 이동한 후 다시 육로를 통해 大庾嶺을 넘어서 광둥성 南雄府 始興縣까지 이동하였다. 여기서 화물을 小船으로 바꾸어 싣고 潁水을 타고 내려가서 韶州府 曲江縣까지 이동하여 太平關에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화물을 大船에 옮겨 실은 후 三水縣에 이르러 珠江을 타고 廣州府로 운반되었다.<sup>546)</sup>

贛江을 통한 운송 루트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선박과 화물은 太平關을 거쳐야 하였다. 월해관의 주요 수출 상품이 둔계 차잎과 무이 차잎 등 안휘성과 복건성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월해관의 무역 규모가 성장하면, 태평관의 常稅도 증가해야 하였다.

하지만 월해관의 무역량 증가와 태평관의 상품 운송량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건륭 연간 태평관의 常稅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건륭 4년분 월해관 세수는 대략 27만량 수준이었다.<sup>547)</sup> 이후 월해관의 교역량이 증가하며 건륭 60년분 월해관 세수는 97만량 수준으로 폭증하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 태평관 세수는 대략 11만량에서 13만량 수준으로 미세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sup>548)</sup>

546) 吳金成, 『廣東貿易體制 下的 江西의 社會變化』, 『역사교육』 86, 2003, p.172.

547) 건륭 4년분 월해관의 關期는 건륭 4년 2월 25일부터 건륭 5년 2월 24일까지였고, 징수한 관세는 269,454.96량이었다(王謩·鄭伍賽, 『爲報解海關歸公雜項銀兩事』, 건륭 5년 윤6월 28일, 第一 MR18). 그리고 건륭 60년분 월해관의 關期는 건륭 58년 8월 26일부터 건륭 59년 8월 25일까지였고, 징수한 관세는 972,367.225량이었다(舒璽, 『爲報明起解關稅盈餘銀兩事』, 건륭 60년 3월 13일, 第一 MR20, pp.1925-1928).

548) 건륭 4년분 태평관의 關期는 건륭 4년 2월 21일부터 건륭 5년 2월 20일까지였고, 징수한 관세는 正額銀 52,675.175량과 盈餘銀 62,063.786량을 합쳐서 114,738.961량이었다(王謩, 『爲奏聞事』, 건륭 5년 4월 19일, 第一 MR18, pp.1100-1102). 건륭 58년분 태평관의 關期는 건륭 58년 6월 21일부터 건륭 59년 6월 20일였고, 징수한 세수는 正額銀 52675.175량과 盈餘銀 76412.031량을 합친 129,087.206량이었다(朱珪, 『爲恭報額稅並比較上屆盈餘數目仰祈聖鑒事』,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방 관원과 서역 등의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로 설명하면 편하겠지만, 청대의 관세 회계 문서의 신뢰도 자체를 부정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태평관은 사실상 韶州府知府가 실질적으로 관세 행정을 책임졌는데, 權關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오히려 설득력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翻陽湖-贛江-大庾嶺-珠江을 통한 상품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贛江을 통해 이동되는 월해관의 수출품인 찻잎 등은 太平關의 징수 대상 항목이 아니라 粵海關에서 징수하는 항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세수에서 雜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편전쟁 이후 잡세의 폐지에 따른 월해관의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어야 하였지만, 오히려 세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편전쟁 전후 월해관의 세수 증감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49)</sup>

<도표 5-3> 아편전쟁 전후 월해관 세수 비교

회계 연도	관기	징수 총액
甲辰年分	도광 21년 3월 26일 - 도광 22년 2월 25일	1,115,742.362
乙巳年分	도광 22년 2월 26일 - 도광 23년 2월 25일	1,182,488.993
丙午年分	도광 23년 2월 26일 - 도광 24년 정월 25일	2,030,543.108
丁未年分	도광 24년 정월 26일 - 도광 25년 정월 25일	2,360,832.158
戊申年分	도광 25년 정월 26일 - 도광 26년 정월 25일	2,186,530.442

건륭 59년 7월 13일, 第一 MR20, pp.1819-1821).

549) 위의 표는 平餘等銀을 제외한 월해관에서 징수한 관세의 총액을 의미한다. 祁重,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徵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22년 3월 28일, 故宮 405005531; 文豐,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徵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23년 3월 26일, 第一 MR21, pp.2117-2118; 文豐, 「爲恭報關稅盈餘銀兩數目仰祈聖鑒事」, 도광 24년 5월 25일, 商務檔案(7), pp.2858-3864; 文豐, 「爲恭報關稅一年期滿徵收總數仰祈聖鑒事」, 도광 25년 2월 28일, 商務檔案(7), pp.2890-2893. 恩吉, 「爲恭報關稅收支實數仰祈聖鑒事」, 도광 26년 6월 18일, 『壽辦夷務始末補遺』道光朝 4, pp.275-278.

무역 규모의 변화를 사료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아편전쟁 이전 도광 초 월해관의 징수 총액이 140만량에서 160만량 사이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新세칙의 적용 이후 월해관의 관세가 급감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은 광동체제下 월해관과 마찬가지로 대외 무역뿐만 아니라 내지 무역이 상당한 높은 비중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오구통상 시기 해관의 회계 연도는 동치 2년(1863) 최종적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다구통상 시기의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확대에 따른 신식 해관과 관계있는 것이었다. 다구통상 시기 해관의 회계 연도는 함풍 11년 8월 27일(186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1결로 하여 매 結마다 四柱淸冊의 형식으로 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1년(4結)마다 한 차례의 주소책을 작성하여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sup>550)</sup>

그런데 함풍 11년 8월 27일은 양력으로 환산하면 1861년 10월 1일이었고, 1861년 4/4분기의 시작일이었다. 이 조치에 따라 청조의 해관에 회계 연도는 더 이상 음력을 따르지 않고, 양력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맞춰졌다. 다구통상 시기 해관의 회계 연도에 매년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월해관의 경우 회계 연도가 바뀌는 것을 기점으로 常關과 洋關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월해관 상관의 회계 처리는 광동체제 이래의 회계 연도에 따라 변화가 없었는데, 가령 동치 4년분 월해관 常稅는 동치 3년 6월 26일(1864년 7월 29일)부터 동치 4년 閏5월 26일(1865년 7월 18일)을 회계 연도로 하였다.<sup>551)</sup> 하지만 월해관 洋關의 경우 동치 3년 9월 1일(1864년 10월 1일)부

550) 師曾, 「爲具報同治四年分洋稅第十七結至第二十結一年期內大關並潮州新關收支總數仰祈聖鑒事」, 동치 4년 12월 19일, 商務檔案(7), pp.4361-4368, “竊照粵海關每年徵收稅銀向係按照關期, 奉部割行, 奏准將各海關洋稅收支數目, 均以咸豐十年八月爲始按三箇月奏報一次, 扣足四結專摺奏銷一次, 仍從第一結起造具, 每結四柱淸冊送部查覈, 毋庸按照關期題銷, 以淸界畫而免稽延, 其各關應征常稅, 仍令各按關期, 照常題銷, 以符舊制. 等因”.

551) 師曾, 「爲常稅一年期滿謹將徵收總數具報仰祈聖鑒事」, 동치 4년 8월 1일, 第

터 동치 4년 8월 11일(1765년 9월 30일)을 회계 연도 1년으로 하였다. 이는 양력으로 환산하면 1864년 10월 1일부터 1865년 9월 30일까지 양력 1년이 었다.

광동체제 시기 청조는 월해관을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지정하였지만, 그 운영 원리는 호부의 각관체제에 철저히 따르고자 하였고, 월해관이 호부의 權關을 운영하는 원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원심력을 억제하며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정화”로 설명한 호부의 여러 조치들은 결국 對서양 무역항을 權關으로서 관리하고 그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과 신설 해관의 구성과 운영을 간략히 살펴 본 결과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방향성 자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편전쟁의 패배에 따라 체결한 조약이었지만, 호부는 더 이상 常關을 운영하던 방식을 해관에 적용하지 않았다. 해관은 기존에 상관과 행정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분리되어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징세 기관으로 독립하였다.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해관체제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호부의 대외 무역 관리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2. 海關兩의 순도와 무게

남경조약에서 행상제도의 폐지가 규정된 이후 행상을 대신하여 징세청부업을 계승한 집단은 銀號, 錢莊 등을 운영한 전통적 금융업자들이었다. 『通商章程』 제8조에서는 징세 청부업자의 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552)</sup>

---

— MR22, pp.338-340.

552) 『五口通商章程: 海關稅則』, 1843년 10월 8일(도광 23년 8월 15일), 『中外約章彙編』 1, pp. 40-51. 所收, “一何時何銀偷稅一款. 英商進口, 必須鈔稅全完, 方准進口. 海關應擇殷實鋪戶, 設立銀號數處, 發給執照, 注明准某號代納英商稅銀

영국 상인의 입항은 반드시 船鈔의 납부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입항을 허가한다. 해관은 응당 殷實한 鋪戶를 선택하여 (해관)은호 몇 곳을 설치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某號가 영국상인으로부터 세금을 대납하였음을 적시하여 증빙으로 삼아 英商이 기한에 맞춰 입출항하도록 한다. (관세의) 납부는 洋錢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洋錢은 순도가 (足色紋銀)에 부족하므로 형편에 맞춰서 해당 항구의 英官과 해관은 어떤 종류의 洋錢은 補水를 얼마하여 추가 징수하는지 議定하여 상인들에게 공포하여 처리한다.

상술한 제8조는 해관은호의 설치와 관세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해관감독은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의 수납기관을 마련해야 하였고, 해관감독과 해관은호는 조약 규정에 따라 각국에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측정하여 補水와 加平 비율을 확정·고시해야 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월해관의 징세청부업은 高洪利가 운영하는 廣恒銀號가 담당하였다. 1844년 高合益, 譚正德, 陳合盛, 高德隆 등 廣州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였던 이들은 해관은호를 개업한 후 월해관의 징세 업무를 담당하였다.<sup>553)</sup>道光 23년 6월 16일(1843년 7월 13일) 광항은호는 『통상장정』 제8조에 따라 외국 은화와 해관량의 환산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 은화의 무게와 순도를 시금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54)</sup>

<도표 5-4> 1842년 廣恒銀號의 시금 결과표

항목	매수	무게	순은	순도	足色紋銀 100량 당 무게
루피 은화	20	6.203	5.650	91.085	109.790
페루 은화	5	3.600	3.230	89.7225	111.455
멕시코 은화	5	3.575	3.195	89.371	111.900
볼리비아 은화	5	3.600	3.210	89.167	112.150
칠레 은화	5	3.595	3.195	88.870	112.520

字樣，作爲憑據，以便英商按期前往。交納均准用洋錢輸征，惟此等洋錢，色有不足，即應隨時隨地由該口英官及海關議定，某類洋錢應加納補水若干，公商妥辦”。

553) “Canton”, 1878년 12월 20일, *Customs Papers No.12*, p.225.

554) “Art. V : An assay of sundry foreign coins”, *The Chinese Repository No.5*, 1845, p.246.

멕시코 은화를 예시로 보면, 멕시코 은화 5개의 평균 무게 3.575량을 녹여서 얻은 순은이 3.195량이었으므로 순도는 89.371%였다. 따라서 멕시코 은화의 무게 100량은 足色紋銀 89.371량으로 평가되었고, 역으로 족색문은 100량은 멕시코 은화의 무게 111.9량과 동일하였으므로 족색문은 100량 당 11.9%를 補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저울추의 무게 문제가 존재하였다. 광항은호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한 저울추는 粵海關平이 아니라 광항은호에서 사용하는 司碼平이었으므로 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The Chinese Repository*에서는 “은화들은 해관은호의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였는데, 월해관의 저울추는 해관은호의 저울추보다 100량당 4錢 5分 혹은 0.5% 가까이 더 무거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월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인 0.35%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회계상으로 양자의 무게 차이가 0.35%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광항은호에서 시금한 결과인 0.4~0.5%가 실제 월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에 더 가까울 것이다.<sup>555)</sup>

이와 함께 『通商章程』 제9조에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 해관의 관세 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바로 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할 때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 저울추를 庫平이 아니라 粵海關平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56)</sup>

하나. 이후로 각 항구의 화물의 大秤과 兌銀의 砵碼, 量物의 丈尺은 모두 粵海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형식(式)을 따라야 한다. 여러 개의

555) “Art. V : An assay of sundry foreign coins”, *The Chinese Repository* No.5, 1845, p.246-247.

556) 『五口通商章程: 海關稅則』, 1843년 10월 8일(도광 23년 8월 15일), 『中外約章彙編』 1, pp. 40-51. 所收, “一秤碼丈尺一款. 嗣後各口秤貨之大秤, 兌銀之砵碼, 量物之丈尺均須按粵海關向用之式. 製造數副, 鐫刻圖印爲憑, 每口每件發交二副, 以一副交海關, 以一副交英國管事官查收, 以便按查輕重, 長短, 計貨計銀, 遵例輸稅. 倘驗貨人役與英商理論長短, 較量輕重, 悉憑此秤碼, 丈尺爲准, 以杜爭端”.

부분을 제조하여 圖印을 鑄刻하여 증거(憑)으로 삼는다. 각 항구에 부분 2개를 發交하여 하나는 해관에 전달하고, 하나는 영국 管事에게 전달하여 관리가 查收한다. 이로서 輕重과 長短과 화물을 헤아리고, 銀을 계산하는데, 편리하게 하여 例에 따라서 稅를 납부한다. 만약 驗貨 人役과 영국 상인이 長短과 輕重의 이치를 논할 때 모두 이 秤砣, 丈尺을 기준으로 증거로 하여 爭端을 막는다.

제9조에서는 조약에 의거하여 신설하는 4개의 대외 무역항의 도량형을 모두 월해관의 도량형으로 통일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수출·입 상품의 크기, 무게를 측정하는 도량형은 물론이고, 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추를 포함하였다. 오구통상 시기 신설 해관들은 모두 월해관에서 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 저울추였던 粵海關平을 관세 징수의 기준 저울추로 사용한 셈이었다.

이하에서는 일단 ‘粵海關平=海關平’이라는 점을 밝히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IV장에서 검토한 결과 광동체제하에서 고평과 월해관평은 1.65% 무거운 저울추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 저울추의 무게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회계상에 처리 규정’이었다.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로 월해관평의 무게는 고평보다 무거운 저울추였다. 청 말과 민국 시기 고평과 사마평, 월해관평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월해관평이 고평보다 1% 이상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광서 4년(1878) 天津에서 海關兩과 行化銀의 교환 비율을 둘러싼 津海關道와 독일 영사의 분쟁은 실측 결과 월해관평이 고평보다 약 1.1%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다.<sup>557)</sup>

그리고 1913년 9월 중화민국 재정부는 은원과 해관량의 교환 비율을 확정

---

557) 광서 초 津海關의 해관량 환산 비율을 둘러싼 津海關道와 외국 영사의 논쟁의 결과 진해관의 해관평은 월해관의 월해관평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해관평은 고평보다 약 1.1% 무거운 저울추라는 사실을 試金 결과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Imperial Maritime Customs, Reports on the Haikwan Banking System and Local Currency at the Treaty Ports*,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79, pp.7-64를 참조한다.

하기 위해 고평과 廣州의 사마평, 997사마평, 해관평의 무게를 실측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도표 5-5> 1913년 저울추 무게 실측 결과

庫平銀	司碼銀	997司碼平銀	海關平
100	99.55	99.85	99.15

이 결과를 해관평 100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관평 100량은 997사마평 100.706량, 사마평 100.403량, 고평 100.857량과 동일한 무게였다. 이에 따르면 해관평은 고평보다 0.85% 무거웠고, 廣州의 市平인 사마평보다 0.4%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관평이 사마평보다 0.4% 무거운 저울추였다는 사실은 아편전쟁 이전 월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가 0.35%였다는 검토 결과와 거의 부합한다. 『通商章程』 제8조를 고려하면 粵海關平과 海關平이 동일한 저울추라고 결론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본다.

월해관평이 고평을 무게 기준으로 하였지만, 더 무거운 저울추였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도 없다. 일단 위도 차이에 따른 무게 차이가 있었는데, 北京과 廣州의 위도 차이에 따라서 월해관의 저울추를 北京으로 가져오면 그 무게는 본래보다 무거워진다.<sup>558)</sup> 그럼에도 1%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은 세수를 결산해야 하는 월해관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규정보다 최대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관세를 징수해야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고, 北京의 彈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 서리의 부정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오차에 따른 행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회피였다.<sup>559)</sup>

558) 물체의 무게는 중력가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령 북경의 경우 북위 39.93°, 고도 0m를 기준으로 중력가속도는 9.801654864m/s<sup>2</sup>, 廣州의 경우 북위 23.12°, 고도 0m를 기준으로 중력가속도는 9.788292034m/s<sup>2</sup>이다. 중력가속도는 북경이 광주보다 대략 0.1365% 높았다. 따라서 월해관의 저울추는 북경에서 본래 무게보다 대략 0.1365% 무거워졌다.

559) 이러한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정육점, 금은방, 수

이를 바탕으로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의 은화-해관량의 환산 방식을 살펴보면, 이전 광동체제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은화는 여전히 칭량화폐로 취급되었고, 足色紋銀과의 순도를 조정하기 위한 補水 및 사마평과 해관평의 무게를 조정하기 위한 加平을 거쳤다. ‘근대 해관’의 은화-해관량의 환산 방식은 월해관 세무사 윌리엄 카트라이트(William Cartwright)의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60)</sup>

<도표 5-6> 1878년 12월 20일 기준 은화-해관량 환산표(단위 兩)

항목	① 월해관 수납	② 시장가	③ 해관은호 수납
관세 과세액	10,000	10,000	10,000
補水	820	920	1,050
(關平과 司碼平) 加平	22	40	40
은화의 무게	10,842	10,960	11,090
은화 1매의 무게	0.717	0.71	0.71
은화 환산액	15,121.34	15,436.62	15,619.72

아편전쟁 전후 월해관의 加平和 補水 비율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족색문은과 은화의 순도를 조정하는 규정으로 보수율을 7%로 고정하였지만, 오구통상 시기 해관에서는 보수율은 변동 비율을 적용하였다. 카트라이트는 補水의 개념을 “프리미엄(Premium)”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은화에 붙는 웃돈’의 개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廣州의 보수율은 외환 시장의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매일 변동하였는데, 은화의 수급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회계 결산에 따른 寶銀의 수급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sup>561)</sup>

---

산물 시장 등 소매업자 등은 일반 소비자에게 표준 무게보다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고물상과 같이 무게 단위로 매입하는 경우 표준보다 최대한 저울추를 가볍게 쳐서 고물을 매입하고자 할 것이다.

<sup>560)</sup> “Canton”, 1878년 12월 20일, *Customs Papers No.12*, p.226.

<sup>561)</sup> “Despatch”. No.143. 「Canton」, 1878년 12월 20일, *Customs Papers No.12*, p.225. 카트라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877년 7월부터 1878년 12월까지 補水의

은화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화폐로 자리를 잡았고, 웃돈이 붙으면서 청량화폐 체계인 중국에서 소재 가치보다 높은 교환 가치로 거래되었다. 따라서 징세 청부업자들은 웃돈을 포기하면서 굳이 은화를 녹여서 寶銀으로 재구조할 이유는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본래 금융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은화와 寶銀의 수급을 조절하며 보수율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마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562)</sup> 이것은 해관은호가 관세를 징수하면서 적용하는 조건(補水, 加平, 은화의 무게)과 월해관에서 관세를 수납하면서 적용하는 조건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보면 명확해진다.

①은 월해관에서 해관은호로부터 관세를 수납할 때 적용하는 은화-해관량의 환산 방식이었다.<sup>563)</sup> 다시 말하면, 해관은호가 관세를 징수할 때 외국 상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관은호가 징수한 관세를 월해관에 전달할 때 적용하는 환산 방식이었다. 그 조건은 補水 8.2%, 加平 0.22%, 은화 1매의 무게 사마평 0.717량이었다. 따라서 해관량 10,000량이 과세된 경우 해관은호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사마평으로 무게를 측정한 은화의 무게 10,842량 이었고, 이를 은화 1매당 0.717량으로 환산하면 은화 15,121.34원이었다.

해관은호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행상과 마찬가지로 징수한 관세를 고평은으로 재구조해서 월해관에 납부해야 하였고, 고평은의 재구조 비용으로 해

변동폭은 다음과 같았다.

<도표 5-7> 廣州의 補水 변동폭

항목	무게(량)
① 월해관 수납	7.700 ~ 8.400
② 시장가	8.400 ~ 10.000
③ 해관은호 수납	9.400 ~ 11.200

562) 『Swatow』, 1878년 1월 28일, *Customs Papers No.12*, p.210. 해관의 세무사들은 海關銀號의 주요 수입원을 寶銀과 은화의 환전 수수료로 보았다.

563) ①의 방식은 사료에서 “Haikwan Bank’s rate for payment”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宮下忠雄 이후에 이를 언급하는 연구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해관은호가 납세자인 상인에게 지불할 때 적용하는 환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에서 ①은 “Customs Allowance”, ②와 ③은 “Duties to be paid”로 기록하고 있다. 엄밀한 ①은 해관은호가 월해관에 전달하는 ‘관세 납부액’, ②와 ③은 해관은호에서 징수하는 ‘징수액’을 의미하였다.

관은호는 1.2~1.5%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해관은호에서 굳이 은화를 녹여서 고평은을 재주조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외환 시장에서 은화로 고평은을 구입하여 처리하였다. 따라서 廣州의 외환 시장의 보수율의 변화는 은화의 수급보다 寶銀의 수급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카트라이트의 설명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관은호는 해관량 10,000량 당 은화 15,121.34원에 해당하는 교환 가치의 고평은을 마련하여 월해관에 납부하였다.

①의 보수율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략 7.7~8.4%의 폭에서 변동하였다. 대략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補水 7%와 비슷한 수준이긴 했지만, 실제 순도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를 0.22%만 加平하였는데, 카트라이트가 해관평이 사마평보다 0.4% 무겁다고 설명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카트라이트의 설명은 1842년 광향은호의 조사 결과가 0.45% 차이였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므로 0.22%의 적용은 실제 저울추 무게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564)</sup>

또한 ①은 은화 1매의 무게를 사마평 0.717량으로 적용하였다. ②, ③에서 적용한 은화 1매의 무게 0.71량과 비교하면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은화의 교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며 해관량으로 과세된 관세를 납부할 때 더 적은 금액의 은화가 지출되는 효과가 있었다. 해관은호는 징수한 관세를 월해관에 전달하면서 해관량의 순도와 무게 기준을 최소화하고 은화의 교환 가치를 최대화하여 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sup>565)</sup>

564) 加平은 關平과 司碼平의 실제 무게 차이 0.4%보다 낮은 0.22%만 하였고, 補水도 시장의 비율인 8.4~10%보다 낮은 7.7~8.4%만 적용하여 실제 순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①은 은화의 교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셈이었다. 즉, 해관은호는 징수한 관세를 월해관에 납부하면서 은화의 교환 가치를 시장 조건보다 높게 평가하여 차익을 얻었다.

565) 가령 은화 1매의 교환 가치를 해관량 0.717량(①)과 0.71량(②, ③)을 적용하면 각각 납부액에 차이가 있었다. 해관량 100량을 기준으로 ①은 은화 139.47원, ②, ③은 은화 140.845원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다. 따라서 ①의 방식은 해관은호가 월해관에 전달하는 세수를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해관은호에서 외국 상인에게 실제 관세를 징수할 때 적용하는 은화-해관량의 교환 방식과 비교하면 명확하다(③). 해관은호는 補水 10.5%, 加平 0.4%를 기준으로 해관량 10,000량당 사마평으로 무게를 측정한 은화 11,090량을 징수하였다. 이를 은화 1매의 무게 0.71량으로 하여 환산하면 은화 15,619.72원이었다. 즉, 해관은호는 해관량 100량당 은화 15,619.72원으로 평가하여 관세를 징수하였고, 이를 월해관에 납부할 때는 은화 15,121.34량만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관은호는 대략 3.3%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 상인은 해관은호에서 은화-해관량을 교환하지 않고, 廣州의 외환 시장에서 은화로 해관량을 구입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었다. 정확하게는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해관은호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②는 廣州의 외환 시장에서 은화-해관량을 환산하는 방식이었다. 외환 시장에서는 補水 9.2%, 加平 0.4%를 기준으로 해관량 100량당 사마평으로 무게를 측정한 은화 10,960량으로 환산하였다. 이를 은화 1매의 무게 0.71량으로 하여 환산하면 은화 15,436.62원이었다. 외국 상인은 해관은호에서 은화로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 1~1.5% 저렴하게 해관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해관은호의 입장에서는 외국 상인이 외환 시장에서 해관량을 구입하든, 해관은호에서 직접 은화로 납부하든 손해는 아니었다.

아편전쟁 이후 해관에서 廣州의 월해관을 대신하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上海 江海關의 해관량 환산 방식을 통해 월해관평이 해관평으로서 오구통상 시기에 확대되는 결과를 살펴본다. 당시 상해의 주요 지역 은정은 規元和 漕平銀이 있었다. 서양 문헌에서는 규원을 “Shanghai tael(上海兩)”로 기록하며 규원의 무게 기준 저울추를 규평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지만, 규평은 상해의 지역 은정인 조평은을 98折하여 계산한 회계 단위로만 존재하는 무게 단위였다.

上海에서 조평은을 98折하는 상거래 관습의 형성에 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sup>566)</sup> 申漕平은 新公砵平과 함께

566) 宮下忠雄은 規元の 기원은 크게 ① 현은 부족설, ② 문은 순도 저하설, ③ 낮

上海의 대표적인 저울추였는데, 조평은은 바로 문은을 신조평으로 측정한 은정을 의미하였다. 상해의 대외 무역 규모의 성장에 따라 광동체제의 廣州에서 그랬던 것처럼 上海에서도 신조평의 무게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고정 무게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sup>567)</sup>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러 변수와 오차가 존재하는 저울추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환산하는 시도보다는 申漕平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적 무게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역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광서 3년(1877) 강해관 세무사 제임스 H. 하트(James H. Hart)가 설명한 조평은을 해관량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68)569)</sup>

<도표 5-8> 강해관의 관평은 산정 방식

항목	무게(兩)	비고
① 漕平銀	100.000	
② (海關平과) 무게 차이	2.800	①의 2.8%
③ (海關平과) 순도 차이	6.168	①+②의 6%
④ 주조비 및 수수료	0.204	
	109.172	

제임스 하트는 조평은 100량을 해관량으로 환산할 때 해관평과 신조평의 무게 차이 2.8%를 加平하고, 문은과 족색문은의 순도 차이 6%를 補水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조평과 해관평의 무게 차이가 2.8%라는 것인데, 이것

은 순도의 은정 출현설, ④ 저울추 무게 인하설로 정리한 후 사료로서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상해 규원의 출현이 상해의 豆行의 상거래 관습상 98折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567) 이에 몇 차례에 걸쳐서 申漕平의 무게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인도조폐국 565.697gr(36.66g), 0중국 해관 565.637gr(36.6527g), 오사카 조폐국 565.73gr, HSBC 564.229gr(26.562g), H. B. Morse 565.65gr(36.64g), W. F. Spalding 565.704gr이었다.

568) 상해의 화폐 단위인 規元의 성립에 관해서는 宮田道昭, 『十九世紀中葉 上海における豆規銀本位制の成立について：中国在来の地域的通貨金融機構の一考察』, 『東洋學報』 84-3, 2002, pp.33-

569) Despatch. No.63. 『Shanghai』, 1879년 5월 2일, *Customs Papers No.12*, p.109.

은 메이지 37년(1904) 저울추의 무게 조사에서 해관평 100량의 무게는 사마 평 100.2927량, 고평 100.9986량, 조평 102.8108량이라는 기록과도 일치하는 수치였다.<sup>570)</sup> 강해관의 해관평은 고평보다 1%가 무겁고, 사마평보다 0.3% 무거웠던 월해관의 저울추인 월해관평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강해관의 해관은호는 재주조 비용 및 수수료의 항목으로 0.204%를 추가하여 해관량 100량을 신조평은 109.172량으로 평가하였고, 신조평은 109.172량을 98折하여 규원 111.4량으로 환산하였다.

규원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記帳 單位였으므로 관세는 上海에서 유통되는 寶銀인 二七寶로 납부해야 하였다.<sup>571)</sup> 이칠보의 명칭은 순도 94%의 문은을 기준으로 申水하는 금액에서 유래하였는데, 이칠보는 보은 1정(50량)당 2.7량을 申水하는 馬蹄銀이었다.<sup>572)</sup> 즉, 이칠보는 문은보다 순도가 5.4% 높은 보은이었고, 순도는 99.4%였다. 따라서 이칠보·신조평 1정(50량)은 신조평은(문은·신조평)으로 52.7량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고, 규원 53.772량의 98折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다. 관세 100량은 규원 111.4량이었으므로 이칠보·신조평 103.5855량으로 납부하였다.<sup>573)</sup>

이처럼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월해관은(足色紋銀·粵海關平)이 곧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해관량(足色紋銀·海關平)으로 이어졌다. 粵海關平과 海關平은 동일한 저울추였기 때문에 관세의 징수 단위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각 지역의 지역 은정의 순도와 저울추에 따라 補水와 加平의 비율을

570) 동아동문서원 편, 『淸國商業慣習及金融事情』, 명치 37년, p.242.

571) 上海의 寶銀은 二七寶 외에 “夷場新”이라고도 불리었다. 이장신은 ‘洋場에서 새로 주조한 元寶’를 의미하였다. 상해 개항 후 南市에 위치한 海關道衙門에서는 官爐를 두어 海關道元寶를 주조하였지만, 개항 후에 北市에서도 銀爐를 설치하여 은정을 주조하였다. 租界가 설치되면서 북시에서 주조한 은정을 海關道元寶에 대칭하여 夷場新이라 하였다. 宮下忠雄, p.208

572) 寶銀의 명칭은 馬蹄銀 1정(50량)당 申水하는 무게로 정해졌다. 二七寶는 2.7량을 신수하는 은정을 의미하였다. 즉 문은 1정당 2.7량 신수한 보은이 이칠보였다.

573) 二七寶·申漕平 50량은 規元 53.772량과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졌으므로 규원 1량은 二七寶·申漕平 0.9298519675667634량이었으므로 규원 111.4량 당 二七寶·申漕平 103.5855량이었다.

적용하였을 뿐, 관세의 환산 방식은 완벽히 동일하였다.

청대 호부의 회계 단위는 고평은으로 변함이 없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경우 관세는 호부의 회계 단위와 동일한 고평은으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징세 청부업자는 廣州의 사마평으로 은화의 무게를 측정하며 고평은과 교환 가치를 맞추기 위한 비용을 납세자인 외국 상인에게 징수하였다. 하지만 『통상장정』 제5조에서 雜稅의 징수가 금지되며 해관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기 雜稅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通商章程』 제9조에서 관세의 과세 기준 저울추를 월해관평으로 고정하면서 사실상 관세의 과세와 징수는 월해관은 혹은 해관량으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5-9>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화폐 단위

	회계 단위	과세 단위	징수 단위
前	고평은	고평은	월해관은
後	고평은	해관량	해관량

아편전쟁 이후 해관은 新세칙에 의거하여 해관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였지만, 월해관 세수를 회계 결산하기 위해서는 광동체제下 월해관과 마찬가지로 고평은으로 재구조해야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존에 첩평은 1.5%에 2.5%를 추가하여 첩평은 4%가 盈餘銀의 정식 지출 항목에서 처리되었다.<sup>574)</sup> 『通商章程』 제6조에서 해관의 운영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아편전쟁 이후 해관은 청대 재정 운영 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징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호부는 대외 무역 항구로서 해관의 특수성을 부정할 수 없었고, 전통적인 權關體制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海關體制를 구축하게 되었다.

574) 基溥, 『爲恭報關稅收支實數仰祈聖鑒事』, 도광 28년 5월 1일, 商務檔案(7), pp.3938-3944, “...(전략)... 遵於上年分季起解陸續共解過銀一百一十萬兩, 隨加平銀一萬六千五百兩, 又二十五兩加平銀二萬七千五百兩, ...(후략)...”.

### 3. 광동 지역 해관의 해관량 산정 방식

광동체제下 월해관에 소속된 總口 중 庵埠總口, 海口總口, 雷州總口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각각 월해관의 分關인 潮州關, 瓊州關, 北海關으로 독립하였다. 오구통상 시기를 거쳐서 다구통상 시기 광동 지역에 신설된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광동체제下 월해관,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 다구통상 시기 신설 해관으로서 월해관을 연속성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 세 해관은 모두 廣州의 해관은호인 廣恒銀號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징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潮州, 瓊州, 雷州는 모두 사마평에서 유래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월해관은과 해관량의 계승 관계를 검토할 분석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다루는 해관량 산정 과정과 관세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은 1877년 12월 8일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가 전달한 제32호 通令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하고 있다.<sup>575)</sup> 물론, 관세 행정에 관한 세무사의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해관은호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제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의 세무사 조사는 동치제와 광세제 시기 각 지역의 화폐 유통 상황과 해관은호의 운영, 그리고 해관량의 환산 절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sup>575)</sup> Circular No.32, 1877년 12월 8일, *Customs Papers No.12*, p.1 로버트 하트가 각 지역의 해관 세무사에게 조사를 지시한 사항은 “1. 해당 항구의 해관은호업자는 누구인가? 그는 관료인가 아니면 무역상인가? 소속 직원의 구성은 어떠한가? 지출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2. 해당 항구의 관세 납부 화폐는 무엇인가? 은정 아니면 은화인가? 만약 후자라면 환산 비율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는가? 3. 지역 은정에 대한 海關兩, 그리고 上海 規元과의 비율은 얼마인가? 足色紋銀의 구성은 어떠한가? 4. 중국 상인의 환산 비율은 외국인과 동일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5. 현재의 시스템은 순조롭게 작동하는가? 다른 불만은 없는가? 다른 제안이 있는가?”였다.

## 1) 潮州關

1860년 1월 월해관 소속 총구 중 하나였던 庵埠總口는 월해관의 분관인 潮州關으로 독립하였다.<sup>576)</sup> 조주관은 아편전쟁 이후 가장 먼저 독립한 총구로서 이후 광동 지역에 설치하는 해관의 모델이 되었다.<sup>577)</sup> 조주관은 개설 당시 다른 해관들과 마찬가지로 廣州의 광항은호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관세 행정을 맡았다. 1877년 8월 8일 월해관감독은 광항은호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廣州의 또 다른 은호업자였던 何福陰이 운영하는 何守益銀號로 교체하였는데, 潮州關 해관은호의 규모는 총책임자 丁價惟 이하 1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인적 구성은 회계 업무 4명, 은정의 검측원 3명, 보조원 3명으로 되어 있었다.<sup>578)</sup>

조주관 해관은호는 관세를 외국 은화로만 징수하였다. 은화-해관량의 환산 방식은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1.145원(直平 기준)이었다. 조주관 해관은호는 관세를 은화로 수납하면서 보수율을 10%로 고정하였는데, 이후 월해관에서 독립하는 다른 분관의 환산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 조주관을 개설하면서 월해관감독은 당시 광동 지역에서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8레알 은화로 수납하고, 廣州의 광항은호 본점의 보수율에 따라서 8.8%를 결정하였다.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이후 해관은호는 상인 단체와 補水 10%를 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세기 초부터 스페인 남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8레알 은화의 주조는 중단된 상태였고, 그 자리를 멕시코 은화(鷹洋)이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홍콩에서도 은화를 주조하기 시작하였

---

576) 潮州關의 설치와 외국인 세무사제도 도입 등 자세한 내용은 陳勇, 『潮海開關史事考略』, 『汕頭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6 4, 2010; 周修東, 『“潮州九正口”與潮州新關開關時間考辨 -就《潮海開關史事考略》商榷一二』, 汕頭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2-2, 2016을 참조.

577) 奕訢 等, 『爲瓊州通商酌定開辦日期并請查照粵潮兩關成案辦理以歸劃一事』, 광서 2년 2월 15일, 『清季外交史料』 5, pp.80-82.

578) “Swatow”, 1878년 1월 28일, *Customs Papers No.12*, pp.210-212.

다. 1866년 11월 27일(동치 5년 10월 21일) 월해관감독은 홍콩 은화를 시금한 후 그 순도를 90%로 확정하고, 보수율 11.11%로 하여 관세의 수납을 허용하였다.<sup>579)</sup>

조주관 해관은호는 이를 계기로 모든 은화에 補水 11.11%를 적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보수율의 인상은 관세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상인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징세 청부업자도 아니었고, 징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들이 감수할 이유는 없었다. 이에 潮州의 상인 단체(萬年豐會館)은 세무사에게 개입을 요청하여 홍콩 은화의 보수 비율 11.11%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에 舊은화의 보수 비율을 8.8%로 되돌려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sup>580)</sup>

조주관 대리세무사 휴버(Huber)는 광항은호 본점에 문의한 결과 월해관감독의 지시가 없는 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휴버는 舊은화의 보수율을 재조정하도록 해관은호에 지시해 줄 것을 월해관감독에게 요청하였다.<sup>581)</sup> 세무사의 요청에 대해 월해관감독은 상인들의 요청대로 보수율을 인하하면 해관은호 운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해관은호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홍콩 은화는 11.11% 가수하되, 그 외의 舊은화는 10% 가수하는 방식을 결정하였다.<sup>582)</sup>

---

579) “Despatch from the Hoppo of Canton to Mr. Commissioner Williams, directing new Hongkong dollars to be taken by the Banker at the rate of Local Tls. 111.11 = Hk. Tls 100”, *Customs Papers No.12*, pp.215-217.

580) 보수 비율은 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재주조 과정에서 손실되는 순은을 보충하는 비율이 포함되었다. “Extract from petition addressed by the Swatow Guild to Mr. Aassistant-in-charge Huber, praying for a reduction in rates charged for dollars”, *Customs Papers No.12*, p.213, “銀號完餉歷來每百兩加補水火耗銀捌兩捌錢”.

581) “Mr. Assistan-inCharge Huber’s Despatch to the Hoppo of Canton Supporting the Guild’s petition for a reduction in rates charged for dollars”, *Customs Papers No.12*, pp.214.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영문명은 『舊中國海關總稅務司署通令選編』을 참조한다. 代理稅務司(assistant in charge), 副稅務司(deputy commissioner), 署稅務司(acting commissioners)

582) “Despatch from the Hoppo of Canton to Mr. Assistant-in-Charge Huber,

실제 조주관의 해관량 산정은 은화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를 가수하고, 해관평과 직평의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1.145량을 가평하여 관평은 100량당 111.145량(直平 기준)으로 하였다. 대리세무사 쉬어트(F. Schjöth)의 설명에 따르면 홍콩 은화는 극히 소량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보수율은 10%로 통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평은과 직평의 무게 차이를 약 1% 가평하였다는 의미이다.<sup>583)</sup>

汕頭的 직평은 廣州의 997사마평보다 0.3% 가벼운 저울추였다.<sup>584)</sup> 광항은 호 본점은 해관평과 997사마평의 무게 차이를 0.4%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 저울추 무게 차이는 약 0.7%이지만, 조주관은 이보다 많은 1%를 가평하였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加平 외에 해관은호의 수수료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 2) 瓊州關

瓊州關은 1876년 4월 1일(광서 2년 3월 7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sup>585)</sup> 경주관의 해관은호도 광항은호의 지점으로 운영되었는데, 해관은호

---

suggesting a rate of Local tls 110 to be charged for old, and local tls 111.11 for new dollars”, *Customs Papers No.12*, pp.215-217. 논란의 발생을 막기 위해 “香港一圓”이 각인된 은화를 新은화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은화를 舊은화로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583) 산정방식은 가평을 한 뒤에 가수를 하는 방식과 가수를 한 뒤에 가평하는 방식이 있었다...

584) 張家驥이 直平이 司碼平보다 0.3% 가벼운 저울추라고 설명하면서 直平을 “997平” 혹은 “997司碼平”이라고 부르는 오해가 이해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張家驥이 司碼平和 廣州의 市平인 997司碼平을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直平은 廣州의 市平보다 0.3% 가벼운 저울추였고, 사실상 994司碼平에 가까운 저울추였다. 그리고 실제 민국시기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直平은 “9935평”이었고, 司碼平보다 0.65% 가벼운 저울추인 것으로 보인다(桂紹熙, 『最近各省金融商況調查錄』, 國光印刷廠, 1916, p.62).

585) 경주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劉彩虹, 『晚清瓊州海關的設立與口岸貿易』, 華南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 2018를 참조.

의 관리자 외에 회계원 2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시작하였다. 개설 초기 해관은호의 운영 경비는 징수한 총액의 0.727%가 배정되었다.

경주관의 은화-해관량 환산에 관한 설명은 매우 소략한데, 경주관도 은화로만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율은 조주관과 동일한 10%를 적용하여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0량, 은화 1매의 무게를 해관평 기준 0.72량으로 하여 해관량 100량당 은화 152.7756원을 징수하였다. 혹은 은화 1매의 무게를 洋平 기준 0.717량으로 하여 은화 154.032원을 징수하였다.<sup>586)</sup>

경주관의 세무사 스톨만(C. C. Stuhlmann)은 해관량 100량이 瓊州의 지역 은정 113.762량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톨만의 설명대로라면 瓊州의 지역 은정의 순도는 90% 이하가 되는데, 지역 은정의 순도가 紋銀 미만인 케이스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스톨만은 ‘해관량 100량은 瓊州의 市平(이하 瓊平)으로 무게를 측정한 은화 113.762량으로 환산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평이 997사마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조주관의 케이스처럼 補水와 加平 외에 추가되는 기타 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은 검토하기는 어렵다.

### 3) 北海關

北海關의 해관은호도 廣州의 廣恒銀號 지점으로 운영되었다.<sup>587)</sup> 해관은호에는 책임자 1명, 사무원 1명, 화폐 감정사 2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운영 경비는 瓊州關과 비슷하게 관세 징수액의 0.8%가 배정되었다. 북해관의 해관은호도 관세를 은화로만 수납하였다.<sup>588)</sup> 또한 조주관, 경주관과

586) 洋平은 해관평보다 0.4% 가벼운 저울추였다. 따라서 洋平으로 측정한 은화의 무게는 0.717량이었다.

587) 이하 北海關의 해관은호에 관한 설명은 “Pakhoi”, *Customs Papers No.12*, pp.229-230을 참조한다.

588) 북해관 세무사 에드워드 맥킨은 馬蹄銀으로 관세를 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북해관은 은화를 재주조할 수 있는 시설이 부

마찬가지로 補水 10%를 적용하였다.

북해관에 해관은호를 설치하면서 광항은호 본점에서 전달한 海關平은 雷州의 市平(이하 雷平)을 기준으로 100.52량이었다. 따라서 海關兩 100량은 뢰평으로 측정된 은화의 무게 110.572량이었다. 그런데 북해관의 해관은호에서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0.58량(뢰평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해관 세무사 에드워드 맥킨(Edward Mckean)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877년 4월 Ch'ang Mao라는 중국인의 경우 해관량 176.5량을 은화 195.05량(뢰평 기준)으로 납부하였다. 이는 해관량 100량당 은화의 무게 110.572량(뢰평 기준)을 적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해 11월 영국인 D. Welsh의 경우 해관량 246.131량을 은화 272.172량(뢰평 기준)으로 수납하였다. 이는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0.58량(뢰평 기준)의 해관은호의 수납 방식을 적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추측 가능한 부분은 중국인과 외국인에 적용하는 방식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맥킨이 “내가 알기로는 중국인과 외국인 상인은 같은 환산 비율에 따라 관세를 지불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sup>589)</sup>

다음 가능성은 바로 은화의 품질이다. 위·변조가 없는 품질이 좋은 은화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었지만, 위·변조가 심한 은화(broken dollars)는 상품 가치를 잃고, 청량화폐로 취급되었다. Ch'ang Mao와 D. Welsh에 환산 비율의 적용이 달랐던 원인은 그들이 납부한 은화의 품질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 차이에 대해서는 맥킨도 알 수 없다고 설명할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관세를 수납하는 방식에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0.572량, 110.58량(모두 뢰평 기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

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해관에 유입되는 은화가 무제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담보되지 않았고, 해관은호 업자들은 은화를 무게로 측정하여 징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sup>589)</sup> “Pakhoi”, *Customs Papers No.12*, p.230, “Chinese and Foreign merchants pay Duty according to the same rate, so far as I can learn”.

이와 별개로 북해관의 해관은호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는 “餉平”이었다. 향평 100량의 무게는 퇴평 100.47량이었다. 여기에 10% 보수를 적용하면 해관량 100량은 은화 110.517량(퇴평 기준)과 동일한 교환 가치였다. 북해관의 해관은호는 해관량 100량당 은화 110.62량 혹은 110.58량(모두 퇴평)으로 납세자에게 관세를 수납하여 餉平을 기준으로 한 은화 110.517량(퇴평 기준)으로 세수를 회계 처리하여 그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평은 廣州의 사마평을 기준으로 한 저울추였다. 광향은호 본점에서 해관평과 사마평의 무게 차이로 0.4%를 가평하여 수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廉州府에서 해관평과 퇴평의 무게 차이 0.47~0.52량은 이에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다.<sup>590)</sup> 이상에서 분석한 북해관의 저울추와 해관은호의 환산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5-10> 북해관 해관은호의 환산 방식의 차이

항목	餉平	海關平	불명
海關兩	100	100	100
加平	0.47	0.52	0.527
補水	10%	10%	10%
은화의 무게	110.517	110.572	110.58

이상에서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월해관에서 독립한 조주관, 경주관, 북해관의 해관량을 분석하였다. 세 해관은 모두 공통적으로 관세를 은화로만 수납하였다. 해관은호는 표면적으로 해당 지역의 寶銀 수급의 불안정을 이유로 외환 시장의 변동에 관계 없이 은화-해관량의 환산 비율을 고정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은화를 寶銀으로 태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寶銀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廈門과 같은 대외 무역항에서도 관세

<sup>590)</sup> 桂紹熙, 『最近各省金融商況調查錄』, 國光印刷廠, 1916, p.61. 민국시기의 조사에서 “(北)海關 關平銀 1,000량당 997사마평과 비교하여 8량 5전이 무겁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의 납부는 은화로만 수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sup>591)</sup> 해관은호는 은화로 수납하여 寶銀으로 태환하는 것이 해관은호 측에 이익이었고, 이 때문에 여러 구실을 핑계로 은화 납부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은화를 寶銀으로 태환할 때 순도 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紋水”라고 하였다. 순도 차이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紋水는 加水와 비슷하였지만, 紋水는 실제 순은 함유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화폐의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었다. 조주관의 보수율 재조정 문제에서 광항은호는 월해관 분관에서의 은화-寶銀의 관계와 加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sup>592)</sup>

합풍 9년 12월 潮州府 汕頭에 新關을 설립하였습니다. 징수하는 세향은 예에 따라서 紋銀으로 징수해야 하였지만, 상인들은 모두 番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마땅히 시세에 따라 순도를 보충해야 합니다만, 해당 지역에는 紋水의 시세가 없었고, 또 징수한 세량은 반드시 運解해야 하였고, 省城에 도달하여 紋銀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省城의 紋水 시세가 등락하는 것은 정해진 액수가 없었는데 이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인들은 이전에 新關 兪委員과 稅銀 100량 당 紋水 10량을 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각 상인들은 이에 따랐고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省城의 문수 시세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각 상인들이 세향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다시 논의하여 1兩 2錢의 水銀을 덜어 거두어서 100兩 당 단지 8兩 8錢만을 補水하였습니다. 이를 감해 준 이후 省城의 紋水가

591) “Amoy”, *Customs Papers No.12*, 1878년 8월 9일, p.171.

592) “The Customs Deputy to Mr. Assistant-in-Charge Huber: deciding to adopt, from 1st November 1870, the rates of Local Ts 110 for old, and Local Ts 111.11 for new dollars”, *Customs Papers No.12*, p.218, “據該銀號稟稱, 遵查咸豐九年十二月間潮州汕頭海口設立新關, 所收稅餉例應紋銀, 而各商均繳番銀, 應照時價補水, 該處尚無紋水行情, 且所收餉銀必須運解, 來省方可換易紋銀, 省中紋水時價長落無定, 亦難懸擬, 故稟商前新關兪委員酌定, 每稅銀百兩加紋水十兩, 各商允從並無異, 迨征收未久, 適值省城紋水市價過低, 因恐各商完餉受累, 復議減收水銀一兩二錢, 每百兩僅補水銀八兩八錢, 既減以後, 省城紋水又復價仰, 每百兩除水銀之外, 尚須賠墊二三兩不等, 數年之久賠累甚鉅”

또다시 올라서 100兩 당 水銀 외에 오히려 2~3兩을 부담하였고, 수 년 동안 지속되어 손실이 매수 큼니다.

조주관, 경주관, 북해관의 경우 加水가 10%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관은호는 廣州의 紋水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였고, 상승할 경우 추가 금액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이는 광향은호 본점에서 월해관에 납부하는 관세의 가수 변동폭(7.7~8.8%)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은화의 순도가 90%인 점을 고려하면 해관은호는 11.11%를 가수했어야 하지만, 월해관의 분관은 모두 10%로 고정하고 있었다.<sup>593)</sup> 해관은호는 1.11%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해관 세무사 에드워드 맥킨(Edward Mckean)은 보고서에 따르면 해관은호는 “은화 100량이 足色紋銀으로 90.909량”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은화의 시금 결과 순도 90%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實銀으로서 해관량의 실제 순도는 99%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94)</sup> 사실상 광동 지역의 해관량은 足色紋銀이 아니라 二五寶인 것으로 추정되며 해관은호가 손실을 감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월해관 분관들이 은화로만 관세를 수납한 원인이 加水와 紋水 차이에 따른 수익에 있었다면 은화의 품질 혹은 상품성이 중요하였다. 시중에서 수요가 적거나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惡貨는 은화로서 제값대로 평가되지 못하였고, 시장의 수요가 적은 은화는 납부가 거부되기도 하였다. 1877년 5월 경주관에서 Messrs. Hertons, ebell & Co.은 관세를 “일본 무역 은화(Japanese trade dollar)”로 납부하고자 하였지만 해관은호는 수납을 거절하였고, 일본 무역 은화의 액면 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굳이 일본 무역 은화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減價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소위 ‘무역 은화’는 멕시코 은화 등을 대체하여 對중국 무역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각국에서 주조한 은화였고, 무역 은화의 크기와 무게, 순도는 멕

<sup>593)</sup> 1872년 3월 13일 廣州에서 시금한 결과 은화의 순도 90%는 재확인되었다.

<sup>594)</sup> “Pakhoi”, 1878년 1월 29일, *Customs Papers No.12*, p.230.

시코 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본 무역 은화도 마찬가지로 법정 순도 90%, 무게 420gr(약 27.22g)으로 차이가 없었다.<sup>595)</sup> 따라서 해관은호가 일본 무역 은화의 수납을 거부한 이유는 은화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멕시코 은화 등 일부의 은화를 제외한 ‘상품’으로서 은화는 시장에서 수요가 적었고, 紋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었다. 무역 은화는 일본 외에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에서 주조하였지만, 매우 짧은 기간만 주조되었다는 점은 해관은호의 무역 은화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변형이 심한 은화, 은화의 둘레를 깎거나 갈아서 훼손한 은화는 수납이 거절되거나 감가하여 징수하였다. 1878년 6월 11일 하문관에서 德記洋行(Messers. Tait & Co.)은 품질이 저열한 碎銀(Chopped dollars)으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지만, 수납을 거절당하였다. 규정대로 한다면 납부한 은화를 칭량화폐로 취급하여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여 加平하고 순도 차이에 따른 加水를 하였기 때문에 형태가 훼손되었더라도 무게 총량만 부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sup>596)</sup> 하지만 해관은호는 품질이 저열한 은화의 경우 온전한 형태의 은화에 비해 상품성이 낮았으므로 1~1.5%의 貼水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sup>597)</sup> 결국 寶銀의 기피와 은화의 선호는 은화의 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월해관 분관은 해관량과 은화의 加水를 10%로 고정하여 해관량 100량은 은화 110량(해관평 기준)으로 동일하였고, 저울추 역시 사평에서 유래한 사마평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각각 환산액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

---

595) “무역은”은 19세기 후반 스페인 은화를 대체하여 對중국 무역을 위해 각국에서 주조하기 시작한 은화이다. 일본에서 주조한 무역은은 은화의 중앙에 용 문양이 각인되어 있고, 은화의 둘레에 “430GRAINS. TRADE DOLLAR. 900 FINE 大日本明治〇年”(〇은 연수)가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뒷명에는 중앙에 “貿易銀”이 세로로 각인되어 있고, 둘레에는 천황가의 家紋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벚꽃 줄기, 오른쪽에는 국화꽃 줄기가 각인되어 있다.

596) “Amoy”, 1878년 8월 9일, *Customs Papers No.12*, p.171.

597) “Messers. Tait & Co.’s Letter of 17th June 1878, reporting payment of Duty under protest”, *Customs Papers No.12*, pp.206-209.

인하였다. 그 원인은 이미 언급한 대로 加平이 실제 저울추 무게만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해관은호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은화의 품질 등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차이가 있었다. 여러 지출 비용을 상쇄할 만한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관은호는 加平의 항목에 이를 첨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월해관은과 해관량은 동일한 순도와 무게 기준이었지만, 虛銀이었으므로 이를 實銀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소결

제1차 아편전쟁은 一口通商과 行商制度를 특징으로 하는 청조의 對서양 무역 관리 시스템인 廣東體制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조는 광동체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하였고, 오구통상 시기는 바로 광동체제下 월해관을 모델로 하는 해관체제를 수립해 가는 시기였다. 다만, 행상제도의 취소가 청조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조는 海關銀號를 지정하여 행상을 대신하여 관세의 징수를 청부하는 형태의 징세 구조를 유지하였고, 이것은 조약을 통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었다.

오구통상 시기 해관은 월해관을 표준으로 하는 행정 체계를 구성하였다. 남경조약에서는 新세칙을 결정하여 해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해관의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관세로 납부하는 은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 저울추는 월해관의 고평 저울추인 월해관평이 되었고, 이로써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은 월해관평으로 통일되었으며, 월해관평은 海關平으로서 자리 잡았다.

해관의 화폐 단위의 통일 외에 조약을 통해 新세칙의 설정과 雜稅의 폐지를 결정하여 관세 납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기존에 회계 결산 문서인 徵收總數 보고와 盈餘銀數目 보고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조는 해관의 운영 경비를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었

다. 이는 각관체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청조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다른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청조는 다섯 곳의 해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을 월해관을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관의 회계 연도를 월해관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세수를 결산하였다. 신설 해관은 기존의 常關과는 별개의 징세 기관으로 설치되어 대외 무역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각 해관의 설치와 운영은 청조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었던 월해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경로 의존성이었다.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오구통상 시기 호부의 해관 정책은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그 주요 사례 중 하나가 해관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호부는 해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화폐로 海關兩(=關平銀)의 사용을 인정하였고, 이것은 광동체제下 粵海關銀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호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는 기존에 각관체제에서 인정한 호부-월해관 간에 저울추 무게 차이 외에 징세 청부업자-호부 간에 저울추 무게 차이를 인정하고, 그 조정 비용을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海關平으로 측정한 足色紋銀’이 바로 해관량이고, 해관량은 외국인 세무 사제도가 성립한 이후에도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오구통상 시기부터 ‘關平銀’과 ‘海關兩’의 두 명칭이 혼용되었는데, 해관량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Haikwan teal”의 번역어로서 중국의 관평은을 지칭하였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화폐 단위였다. 남경조약에서 관세 납부의 무게 기준 저울추를 월해관의 월해관평로 통일할 것이 결정되면서,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된 광동체제下 월해관은은 아편전쟁 後 해관의 화폐 단위로 공인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월해관은은이 관평은으로서 해관의 정식 화폐 단위로 인정받은 현상은 각관체제에서 해관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 정리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각관체제에서 월해관의 원심력은 인정되지 않았고, 權關으로서의 통일성을 강화하던 호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징세 청부업자-월해관-호부 간에 저울추 차이로 인해 출현한 중간 단계의 화

폐 단위인 월해관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의 관세는 세칙에 따라 고평은으로 과세하여 월해관은 기준으로 징수하였고, 최종적으로 고평은으로 회계를 처리하였다. 한편, 아편전쟁 이후 관세는 新세칙에 따라 관평은으로 과세하여 관평은을 기준으로 징수하였다. 물론 해관에서 세수를 결산할 때는 고평은으로 전환하여 회계 처리하였지만, 이전 시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호부가 고평은과 관평은 간에 교환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을 해관의 정식 지출 항목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신식 해관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해관에서 독자적인 화폐 단위인 관평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신식 해관도 광동체제下 월해관은과 오구통상 시기 관평은과 동일한 무게와 순도 기준을 갖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에 신설된 신식 해관인 潮州關, 瓊州關, 北海關의 징세 과정을 검토하였다.

시기에 따라서 변화는 있지만, 이들 해관의 해관은호는 모두 월해관의 해관은호인 廣恒銀號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지역 은정의 순도와 무게는 廣州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환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과세와 징세의 기준은 월해관평을 기준으로 하는 해관량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광동체제 해체 이후 신설된 해관에서 월해관은을 표준으로 하는 독자적인 화폐 단위가 사용된 직접적인 계기는 관세의 과세와 징수의 무게 기준 저울추로 粵海關平을 규정한 남경조약의 조항이었다.

## 결론

본 학위논문은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의 특징과 징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검토하고,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된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오구통상 시기 출현하는 해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를 계승적으로 수정·변용한 결과였다는 점까지 확인하였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면 외국인 세무사제도 성립 이후 출현하는 소위 ‘근대 해관’으로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더욱 섬세한 분석 과정이 필요하므로 후속 연구로 보충하고자 한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운영 원리는 청대 재정 운영에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지적되는 正額主義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국의 榷關(海關+常關)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호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강희 23년(1684) 四口通商이 결정되면서 네 곳에 신설된 海關은 모두 榷關體制의 틀 안에서 구성되었는데, 粵海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관체제는 ‘매년 정해진 할당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결산’하는 데에 역량이 집중된 형태의 관리 제도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와 통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운영 원리를 대외 무역항인 해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은 풍흉에 영향은 있었지만, 그 증감은 일정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해관은 상관과 달리 불확실성과 변수가 컸다. 대외 무역의 증감은 제한이 없었고, 그 변화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해관은 태생적으로 정액주의에 근간한 청조의 재정 운영 원칙과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강희 연간 대외 교역량이 미미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옹정 연간 재정 개혁을 거쳐서 건륭 초 榷關의 세수 규모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정액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바로 榷關에 할당한

정액을 초과하는 盈餘銀이 증가한 것이다.

월해관은 명·청대 朝貢貿易을 관리했던 市舶司와는 다른 계통의 징세 기관으로 출발하여 곧 시박사의 업무까지 흡수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징세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洪任輝事件을 거치면서 완성된 광동체제는 對서양 무역 루트를 월해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의 교역량이 증가하며 세수가 상승할수록 영여은의 비중은 더욱 높아졌고, 정액을 초과한 영여은에 대한 고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액주의에 최적화된 각관체제에서 청조는 廣州의 관세 행정을 완벽히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월해관 행정을 엄격히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호부는 戶關의 하나인 월해관이 각관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심력을 인정하지 않고, 權關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광동체제下 월해관 운영 원리의 핵심이었다.

광동체제下 廣州는 對서양 무역이 허용된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다. 중국과 서양이 만나는 이 열린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품의 교환 과정은 반드시 두 화폐 간에 교환 가치에 따라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즉, 이질적인 화폐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 문명권의 만남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절차는 상품과 화폐의 교환에 전제 조건이었다. 그리고 청량화폐 체계의 중국과 계수 화폐 체계의 서양에 이 흥미로운 만남에서 외국의 은화는 중국으로 유입된 후에 청량화폐로 취급되며 중국의 화폐 체계 안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찍이 카를로 M. 치폴라는 “8레알 은화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주조되어 쉽게 부러지는 악화임에도, 또한 화폐로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음에도, 어떻게 지구 곳곳에서 선호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sup>598)</sup> 치폴라는 스페인령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공급되는 압도적인 물량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하지만 이 대답은 치폴라의 결론의 방향을 바꾸어 공급처인 스페인령 아

---

<sup>598)</sup> Carlo M. Cipolla 著, 장문석 驛, 『스페인 은의 세계사: 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미지북스, 2015, pp.128-129.

메리카 식민지가 아니라 엄청난 수요량과 함께 서양과 이질적인 화폐 체계를 유지했던 전 세계 은의 최종 소비지인 중국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의 블랙홀이라고 평가되는 중국에서 외국 은화는 액면 가치가 아닌 소재 가치에 따라 교환 가치가 결정되는 칭량화폐로 취급되었고, 8레알 은화는 중국에 유입된 후 중국인 감정사들에 의해 그 순도와 무게가 평가되어 은화의 순은 함유량에 따라 교환 가치가 결정되었다.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설명되는 청대의 화폐 체계는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전 세계 은화의 유통을 촉진하는 펌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출현과 동시에 서양의 대표적인 惡貨로 평가받았던 8레알 은화는 그 저열한 품질로 인해 이미 17세기 유럽의 각국에서 그 유통을 금지하는 법령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법정 순도와 무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국제 통화로서 불안정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8레알 은화가 對중국 무역의 결제 통화로서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 은화가 중국에 유입되어 교환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은 칭량화폐 체계에서 자연스러운 환전 절차였기 때문이다.

청대 칭량화폐 체계의 대전제는 각 화폐에 포함된 순은 함유량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對서양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업무 능력은 바로 납부액의 순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업무가 청대 경직된 행정 체계에서 위험(risk)이 너무 컸다는 사실이다. 징세 당국의 입장에서 업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그들을 대신할 브로커(broker)를 선정하여 골치 아픈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었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각관체제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 환전 업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월해관의 최선의 대책이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을 청조의 對서양 무역의 관리 이념이 반영된 징세 기관으로 본다. 광동체제는 廣東省의 해안 전역에 걸쳐 위치한 해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관리하고, 징수한 관세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행정 체계였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였지만, 청대 경직된 재정 운영 방식으로는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sup>599)</sup>

광동체제는 관세 행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민간 영역에 위탁하고, 월해관 감독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작동 매커니즘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규정하였다. 제I장에서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반영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한 후에 제II장과 제III장에서는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배경과 그에 따른 행정 체계의 변화가 징세 청부업자에게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관세의 과세와 징수를 전담하는 행정 부서 자체가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광동체제에서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은 교역에 직접 참여하는 무역상으로서 징세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었는데, 이보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상이 관세의 징수뿐만 아니라 과세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稅則을 적용하는 행위’인 과세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우선 세칙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 품질,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였다. 징세 당국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과세 행위를 모두 행상에게 맡겼다. 행상은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는 업무 전체를 담당한 징세 청부업자였던 셈이다. 이렇게 행상이 관세의 과세와 징수를 전담한 형태의 징세 구조는 결과적으로 월해관이 관세 행정 능력이 퇴화된 징세 기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징수한 관세를 회계 처리하는 데 역량을 강화한 회계 결산 기구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호부가 월해관의 행정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건륭 초 영여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월해관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월해관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세수의 증가는

---

599) 청대 재정 구조의 특징에 관해서는 김형중, 『清代國家權力の 性格 -財政史的 觀點에서의 理解』, 『東亞文化』 45, 2007을 참조.

오히려 월해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은 개설 초기부터 중앙에서 월해관감독을 파견하여 관리하는 監督專管制를 실시하였지만, 옹정 원년(1723) 巡撫專管制의 실시부터 건륭 15년(1750) 總督兼管制가 확립될 때까지 월해관의 관리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관리 제도의 변화는 기존에 각관체제의 방식으로 월해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잘 보여준다.

청조는 월해관감독이 관세의 징수와 회계 처리를 전담하고, 양광총독이 월해관 행정에 참여하는 총독겸관제를 통해 청조는 관세의 逋脫을 감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무와 월해관감독이 월해관 행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사실상 독무를 통해 월해관감독을 관리한다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황제와 호부는 실질적으로 월해관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해관 업무와 행정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건륭 연간부터 보이는 월해관의 관세 행정에서 광동순무를 배제하는 원칙은 廣州府에 상주하는 광동순무와 월해관감독의 결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던 황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고, 불신에 기반한 행정 체계에서 월해관 행정을 “엄정화”하는 시작이었다.

마지막 특징은 월해관이 관세를 대리 징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세수의 회계 절차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른 權關이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세수의 결산을 완료해야 했던 것과 달리, 월해관은 3개월 안에 徵收總數 보고를 통해 징수 총액을 먼저 보고한 후 관세의 대납이 완료된 이후 盈餘銀數目 보고를 통해 회계를 결산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던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었다. 광동체제가 안정 궤도에 오르며 월해관의 교역량은 점점 증가하였고, 그 중요성 역시 더욱 커졌다. 월해관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청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정액을 초과하는 영여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수의 증감을 평가하는 개혁 제도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와 함께 기존 각관체제에서 월해관에게 인정해주었던 특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통일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규정하였다. 월해관의 세수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륭 초부터 월해관 행정에 대한 엄정화가 본격화되는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따른 행정 체계의 변화는 행상이 기존에 누리던 이권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행상에게 행정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징세 청부업자들의 영업 외 지출 증가,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등 현금 유동성을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건륭 말부터 시작된 행상의 도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월해관 행정에 엄정화의 첫 번째 양상은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월해관의 첨평은 지출 특례의 금지였다. 행상은 외국 상인에게 관세를 징수한 후 이를 庫平銀으로 재구조하여 월해관에 납부해야 하였다. 여기서 각 경제 주체인 징세 청부업자-월해관-호부 간에 저울추 무게 차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각 관체제에서 호부는 중앙의 호부와 각 지역의 權關 간에 고평 저울추의 무게 오차를 1.5%로 승인하여 이를 權關의 정식 지출로 인정하였다. 이 결정은 전국의 權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세수 꾸러미를 포장할 때 1.5%의 입초 첨평은을 小封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고평은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호부와 權關의 고평 저울추 무게 차이만을 조정하는 비용이었고, 월해관의 경우 징세 청부업자와 호부 간의 저울추 차이를 조정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였다. 월해관의 경우 北京에서 세수 꾸러미를 해체하는 작업(劈鞞)에서 고평은과 월해관의 교환 가치를 조정해야 하였다. 당연히 이 비용은 각관체제에서 인정된 정식 지출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해관은 이를 관행적으로 세수의 운송비 항목인 水脚銀의 節省分에서 지출하였다.

하지만 건륭 29년(1764) 호부는 전국의 權關에 세수 운송을 驛遞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였고, 기존에 水脚銀에서 지출하는 운송 준비 비용과 실제 운송 경비를 제외한 節省分을 모두 호부로 반납할 것을 결정하였다. 양측은 첨평은의 지출을 두고 두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건륭제

는 호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파생된 저율추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호부는 각관체제로부터 간극을 벌려가던 월해관의 원심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관체제로의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월해관의 지출 항목에서 세수의 운송을 위해 할당하는 수각은의 비중이 세수 총액의 3.85%였다는 점은 이미 분석한 것처럼 세관의 성격이나 거리로 따져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廣東省에 위치한 常關으로서 세수 운송 거리로 보면 월해관과 동일했던 太平關의 경우 세수 총액의 최대 2.3% 내외, 福建省에 위치한 對南陽 무역항으로서 운송 거리가 월해관과 현격한 차이가 없었던 閩海關의 경우 세수 총액의 1.1%가 배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浙江省에 위치한 常關으로서 세수 운송 거리가 월해관보다 짧았던 南·北新關은 세수 총액의 1%가 배정되었다. 결국 월해관의 높은 수각은 비중은 수각은에서 침평은을 지출해야 했던 월해관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었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호부의 조치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한 월해관의 특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두 번째 양상은 관세 결산 기한의 설정이었다. 건륭 15년 영여은 증감에 고핵 안정성을 위해 榷關의 회계 연도는 12개월로 통일하였는데, 이는 역년에 따르는 호부의 회계 연도와 차이가 있었다. 榷關은 음력의 윤달을 만나면 이를 회계 연도에 포함시키고 마지막 13번째 달을 다음 회계 연도로 넘기는 “連閏趨前”의 방식을 채용하였다.

월해관에서 連閏趨前의 방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월해관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특례가 반영되어 회계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안에 회계를 결산해야 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세수의 결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건륭 15년 이후 월해관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데, 連閏趨前의 방식에 따라 윤달이 누적되었음에도 그만큼 회계 연도의 종료일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호부는 월해관 세수의 결산이 지연되는 경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이를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건륭 41년(1776) 행상의 “商欠”이 지방 당국에

의해 중앙에 최초로 보고된 직후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호부 방침은 징세 청부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관세 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방지해야 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을 가졌다. 이에 호부는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결산 기한을 6개월로 결정하였고,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월해관에 인정하던 특례를 축소하고 각관체제로의 구심력을 강화시켰다.

세수의 결산 기한 설정은 행상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관세의 운용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전까지 행상은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약 18개월에 가까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부의 결정은 이를 6개월로 단축시켰고, 이에 따라 행상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위험(risk)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행상의 도산을 다룬 선행 연구의 공통적인 접근 방식은 행상에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검토 결과 행상이 무역을 통해 얻는 수익률은 최소 20% 이상이었고, 관리들의 수탈을 포함하더라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상이 도산하는 배경을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따른 세수의 결산 기한 설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세수 운용 기한의 축소는 자본금 규모가 영세했던 행상의 현금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더하여 건륭 52년(1787)부터 월해관의 세수를 先집행하는 酌撥이 보편화되면서 징세 청부업자의 현금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酌撥의 보편화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는 점에서 징세 청부업자들을 당혹케 하였다. 본래 결산하는 세금이었던 관세를 예산으로 편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행상은 징수한 관세를 사업 자금으로 운용하기는커녕,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교역에서 징수하게 될 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행상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관세 운용 기한의 단축은 그들의 현금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겨울 계약을 통해 수익률의 저하를 감수하면서라도 사업 자금을 조달해야 하였고, 심지어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급전을 융통해야 하였다. 19세기 초 행상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행상의 신용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행상의 신용도 하락은 자연스럽게 이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자금 흐름이 안정적인 행상의 경우 월이율 1%, 일시 차입금의 경우 2~3%의 수준이었지만, 경영난에 처한 행상의 경우 월이율은 5%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sup>600)</sup>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에 따른 행정 체계의 변화는 결국 징세 청부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행상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조가 보인 태도는 더욱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지방 당국은 행상의 현금 유동성 경색에 대처하여 철저하게 그들을 압박하였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를 시작으로 행상의 자금난은 점차 심해졌고, 이에 따라 지방 당국의 태도는 더욱 보수적으로 변화하였다. 가경 연간과 도광 연간 행상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중앙과 징세 당국은 더욱 행정을 엄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월해관은 청대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 출발하여 그 특례가 인정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관체제의 안에서일 뿐이었다. 무역량의 증가에 따른 세수 규모의 증가로 인해 월해관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호부는 월해관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각관체제의 통일성에서 벗어난 월해관의 특례는 취소 혹은 축소되었다. 호부는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대리 징수 구조는 인정하였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각관체제와의 간극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월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인 粵海關銀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 파생물이었다. 각관체제에서는 지방의 징세 기관과 호부 간에 저울추 무게 차이만을 인정하였고,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

<sup>600)</sup> The Fan Kwae at Canton, *Before Treaty Days, 1825-1833*, by an Old Resident, pp.39-40.

에 없는 징세 청부업자와 호부의 저울추 무게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리 징수 구조의 중간 단계에서 출현한 월해관은 독립된 화폐 단위로 굳어졌고, 광동체제가 해체된 이후 ‘근대 해관’의 화폐 단위로 이어졌다. 제IV장과 제V장은 광동체제의 해체 전후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가 이어지는 의미를 關平銀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로 인해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는 호부의 회계 기준 은정인 고평은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월해관은 출현하였다. 월해관은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한 足色紋銀’을 의미하였다. 粵海關平은 이론상 호부 庫平과 동일한 저울추였지만, 실제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는 고평과 무게에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이 사용하는 司碼平의 무게 역시 차이가 있었으므로 월해관은 다른 權關과는 달리 월해관을 고평은과의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두 단계 절차가 필요하였다.

청대 은정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공문서에서 언급되는 고평과 각 저울추에 대한 설명은 호부가 회계상 공인하는 무게 차이일 뿐 실제 무게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호부에서 각 지역에 배포한 고평은 이론상 무게 기준이었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각자의 저울추를 사용하여 고평과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加法的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므로 명칭상 고평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당시 상인들은 물론, 현재의 연구자들까지 중국의 저울추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측정하여 확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sup>601)</sup>

어쩌면 이러한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도량형으로

601) 張家驥는 “馬關條約에 따라 중앙 정부의 고평 1兩을 575.82gr, 즉 37.31256g으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張家驥, p.55). 하지만 「馬關條約」과 그 후속 조약 등에서 庫平의 무게를 서양식 도량형으로 환산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현재까지 무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청대 화폐 제도에 대한 연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평의 무게는 측정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측정 시기에 따라서도 일정하지 않았다.

측정한 저울추의 무게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분석의 결과 월해관평은 고평보다 1.65% 가벼운 저울추로 회계상으로 처리하였지만, 실제 무게 차이는 월해관평이 고평보다 1% 무거운 저울추라는 점이 밝혀졌다. 회계상의 무게보다 실제 무게가 큰 결과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징세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준보다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하여 기준보다 많은 은정을 걷어서 차후에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은정의 순도는 이론상 순도 100%의 족색문은을 기준으로 비교적 체계를 갖추었다. 8레알 은화의 순도는 93%로 평가되었고, 이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7%가 추가되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라 시기(1475-1506) 메디나 델 캄포(Medina del Campo) 칙령이 반포된 이후 출현한 화폐 단위 1레알(Real)은 법정 순도가 93.1%로 규정되었으므로 양자가 일치하였다. 이후 두 차례 화폐개혁을 거치면서 스페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주조하는 8레알 은화의 무게는 변화가 없었지만, 순도는 1728년(옹정 6년) 91.66%, 1772년(건륭 37년) 90.3%로 낮아졌다.

8레알 은화의 법정 순도는 시기에 따라 낮아졌지만, 순도 차이를 조정하는 월해관의 규정은 7%로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징세 청부업자들은 관세 행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8레알 은화의 순도 저하에 대응하여 EIC와 협상을 통해 對중국 무역 대금의 결제 통화로서 8레알 은화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교환 비율을 수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新은화의 무게를 98折하여 순도가 저하된 만큼 교환 가치를 낮추어 舊은화에 맞추고, 은화 1매의 무게 0.72량의 상거래 관행을 유지하면서 은화의 법정 순도 하락에 대응하였다.

월해관의 규격을 검토하는 문제는 외국 선박이 월해관에 입항하기 전 黃埔에서 납부한 船鈔와 規禮銀의 규정과 실제 납부 사례를 통해 회계상의 처리 방식과 실제 납부 과정을 비교하여 외국 은화, 사마은, 월해관은, 고평은 간에 무게와 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계상으로 사마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 2%였고, 월해관평과 고평의 무게 차이가 1.65%임을 확인하

였다.

오구통상 시기는 청조가 광동체제下 월해관을 모델로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를 구축해 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 월해관의 행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관세의 대리 징수를 틀로 하는 징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행상을 대신하여 海關銀號가 징세청부업을 계승하였고, 관세는 월해관평을 무게 기준으로 하여 징수하였다. 이러한 징세 구조는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성립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오구통상 시기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인 월해관평은 사마평보다 0.4% 무거운 저울추임이 확인되었다. 이전 시기에 회계상으로 사마평과 월해관평은 고평보다 가볍게 처리하였지만, 실제 무게는 호부의 고평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추였다. 월해관평과 고평의 실제 무게 차이는 규정과 달랐지만, 월해관평과 사마평과 실제 무게 차이는 규정과 거의 부합한다는 점으로 볼 때, 광동체제下에 사용하던 월해관평이 그대로 아편전쟁 이후 해관의 무게 기준 저울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구통상 시기는 대외 무역항이 각관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해관체제를 수립하는 시기였다. 해관의 독자적인 징수 기준인 관평은의 출현은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파생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저울추의 무게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II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광동체제下에서 호부는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월해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오구통상 시기 월해관의 행정 체계가 변화하며 호부는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 저울추를 월해관평으로 결정하였고, 관세의 과세와 징수는 월해관평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첩평은의 추가 지출이 인정되어 월해관은 기존에 1.5%에 2.5%가 추가되어 총 4%의 지출을 저울추 무게 차이를 조정하는 비용으로 정식 지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확대에 따라 출현한 신식 해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식 해관도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및 오구통상시기 관평은과 동일한 무게와 순도 기준을 갖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

였다. 제V장에서는 광둥 지역에 신설한 潮州關, 瓊州關, 北海關을 중심으로 해관의 관세 징수 기준 화폐의 환산 절차를 검토하였고, 과세와 징세의 기준이 월해관평을 기준으로 하는 해관량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광동체제下 행상은 관세 행정에 참여하는 반대급부로 對서양 무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이 담당한 행정은 크게 외국인 관리 사무(㉓)와 관세의 과세와 징수 업무(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 대리 징수 구조는 ‘청조의 관원이 외국 상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는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 이념이 명분으로 작용하였지만, 사실상 이를 통해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책임자는 관세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제거할 수 있었다.

광동체제가 해체된 후 ㉓의 업무는 영사가 담당하는 領事擔保制로 대체되었고, ㉔의 업무는 票號·錢莊·銀號 등을 운영하였던 전통적 금융업자들이 계승하였다. 이들은 조약에 따라 海關銀號를 설치하여 관세를 수납하였다. 사실상 청조의 대외 무역 관리의 정책 기조는 단절되지 않고, 각각 영사와 해관은호로 분리되어 지속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오구통상 시기(1842-1858)의 대략적인 모습이었다.

광동체제下에서 징세 청부업자가 담당한 관세의 과세와 징세 업무(㉔)는 아편전쟁 이후 해관에서 관세의 과세(㉔-1)과 징수(㉔-2)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는 각각 세무사와 해관은호가 담당하였다. 세무사와 海關監督(海關道)의 직능은 구분되어 있었고, 세무사는 징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외국인 세무사제도는 이전 시기 해관의 관리 제도가 갖고 있었던 관리 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었다. 관세의 과세(㉔-1)와 징수(㉔-2)를 각각 세무사와 해관감독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통해 중앙은 더욱 강력하게 해관을 장악할 수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 해관에서 세무사가 담당한 업무는 크게 이전 시기 행상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던 외국인 사무(㉓)의 업무는 외국 선박의 입·출항 수속 및 등록과 신고 등의 통관 업무였다. 이는 오구통상 시기 영사담보제와 연속성을 갖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근대적 항만 시설(등대, 방파제, 부두 등)을

관리하는 업무였다(㉔). 정리하면 ㉓의 업무는 행상-영사-세무사로 이어지는 전통 원리의 계승이었고, ㉔는 근대적 항만 시스템의 도입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별다른 위화감과 반발 없이 청조에서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와 그에 따른 징세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었다. 중앙 정부는 해관 행정을 해관감독과 외국인 세무사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總督兼管制에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해관감독과 외국인 세무사가 결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청대 대외 무역 관리 제도는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기본 틀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관의 징세 구조는 이어졌지만, 이를 관리하는 청조의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큰 차이를 준 것이었다. 광동체제에서 월해관은 權關의 하나로서 운영되었지만,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해관은 대외 무역을 전담하는 관리 기구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구통상 시기는 청조가 새로운 형태의 해관체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서 흘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史料

#### 1) 기간물

『申報』

『時報』

『晨報』

『東方雜誌』

『順川時報』

『國風報』

*The Chinese Repository*

#### 2) 출판물

『乾隆朝上諭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達衷集(鴉片戰爭前中英交涉史料)』(許地山 編, 商務印書館, 1928).

『東西洋考』(張燮, 謝方 交點, 中華書局, 2000)

『明清宮藏中西商務檔案』(中國第一歷史檔案館, 中國檔案出版社, 2010).

『撫粵政略』(李士禎, 沈雲龍 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第39輯, 文海出版社, 1988).

『美國哈佛大學圖書館藏未刊中國舊海關史料』(吳松弟 整理,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4).

『奮中國公債史資料(1894-1949年)』(千家駒 編, 中華書局, 1984).

『史料旬刊』(故宮博物院, 史料旬刊社, 1930).

『山西票號史料』(中國人民銀行山西省分行山西財經學院·山西票號史料編輯組, 山西經濟出版社, 1990).

- 『三台萬用正宗』(阪出祥伸, 小川陽一 編, 『中國日用類書集成』 4, 汲古書院, 2000, 所收).
- 『上海錢莊史料』(中國人民銀行上海分行 編, 上海人民出版社, 1960).
- 『上海錢莊史料』(中國人民銀行上海分行編, 上海人民出版社, 1960).
- 『鴉片戦争の研究 資料篇』(佐々木正哉 編, 東京大学出版会, 1964).
- 『鴉片戦争檔案史料』(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2).
- 『鴉片戦争前中英交渉文書』(佐々木正哉 編, 巖南堂書店, 1967).
- 『鴉片戦争前中英交渉文書』(佐佐木正哉 編,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39輯, 文海出版社, 1988 所收).
- 『鴉片戦争後の中英抗争 資料篇稿』(佐々木正哉 編, 東洋文庫近代中国研究委員会, 1964).
- 『吳照檔案選編』(太平天國歷史博物館編, 江蘇人民出版社, 1983-1984).
- 『吳照檔案中的太平天國史料選編』(靜吾・仲丁 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58).
- 『郵傳部奏議類編・續編一』(沈雲龍 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第14輯, 文海出版社, 1988 所收).
- 『第二次鴉片戦争』(齊思和 等 編, 上海人民出版社, 1978).
- 『中國舊海關史料(1859-1948)』(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京華出版社, 2001).
- 『中國舊海關史中國海關密檔: 赫德・金登幹函龍彙編:1874-1907』(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書局, 1990).
- 『中國舊海關稀見文獻全編』(劉輝 主編, 中國海關出版社, 2009).
- 『中国近代貨幣史資料 第一輯 清朝統治時期(1840~1911)』(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金融史料組編, 中華書局, 1964).
- 『中國清代外債史資料(1853-1911)』(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 編, 中國金融出版社, 1991).
- 『中國清代外債史資料(1853-1911)』(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 中國金融出版社, 1911).

- 『中國海關與庚子賠款』(中國近代經濟史資料叢編輯委員會, 中華書局, 1983).
- 『中國海關與義和團運動』(中國近代經濟史資料叢編輯委員會, 中華書局, 1983).
- 『中外舊約章彙編』(王鐵崖 編,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57).
- 『天津商會檔案 錢業卷』(天津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2010).
- 『天津商會檔案彙編: 1903-1911』(天津市檔案館 編, 天津人民出版社, 1989).
- 『天津海關檔案』(天津市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2013).
- 『清宮內務府造辦處檔案總匯』(中國第一歷史檔案館·香港中文大學文物館 合編, 人民出版社, 2005).
- 『清代檔案史料叢編』(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編, 中華書局, 1978).
- 『清代硃批奏折財政類』(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0).
- 마이크로필름
- 『海關總稅務司署通令全編』(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辦公廳 編, 中國海關出版社, 2013).
- 『海關總稅務司署通令全編』(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辦公廳編, 中國海關出版社, 2013).

Imperial Maritime Customs, *Decennial Report*,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國舊海關史料』, 京華出版社, 2001, 所收.

Imperial Maritime Customs, *Retruns of the Trade and Trade Reports*,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國舊海關史料』, 京華出版社, 2001, 所收.

### 3) 미출판물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檔案館 總理各國事務衙門檔案.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檔案館 外務部檔案.

臺灣故宮博物院 清代宮中檔及軍機處檔摺件全文資料庫.

## 2. 研究書

- 黃六鴻, 『福惠全書』, 강희 33년본, 김형중 譯, 『福惠全書』 전3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채경수, 『明末 清初 海上勢力의 浮沈과 國家權力의 大應』,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0.
-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7, pp.139.
- Carlo M. Cipolla 著, 장문석 驛, 『스페인 은의 세계사: 1500-1800년 아메리카의 은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미지북스, 2015, pp.128-129.
- 조영현, 『대운하와 중국상인 회·양 지역 휘주 상인 성장사, 1415-1784』, 민음사, 2011.
- 하마시타 다케시 著, 서광덕·권기수 驛, 『조공시스템과 근대 아시아』, 소명출판사, 2018.
- 다이앤 머레이 著, 이영옥 驛, 『그들의 바다(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심산, 2003.
- 아사다 미노루 著, 이하준 驛, 『동인도회사, 거대 상업 제국의 흥망사』, 과파에, 2004.
- 孔敏·彭貞媛 主編, 『南開經濟指數資料彙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 區季鸞, 『廣州之銀業』, 中山大學, 1932
- 祁美琴, 『清代權關制度研究』, 內蒙古大學出版社, 2004, pp.149-150.
- 梁嘉彬, 『慶東十三行考』, 商務印書館, 1937.
- 梁廷枏 撰·袁鍾仁 點校, 『粵海關志』, 廣東人民出版社, 2002.
- 任智勇, 『晚清海關再研究』, 人民出版社, 2012.
- 張家驥, 『中華幣制史』, 民國大學, 1925(2016년 河南人民出版社 재출판).
- 張啓祥, 『交通銀行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井上裕正,『清代鴉片政策史的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2004.
- 趙桂芬 主編,『津海關史要覽』,中國海關出版社,2004.
- 中國海關通志編纂委員會,『中國海關通志』,『方志出版社』,2013.
- 陳詩啓,『中國近代海關史(晚清部分)』,人民出版社,1993.
- 陳詩啓,『中國近代海關史問題初探』,中國展望出版社,1987.
- 彭信威,『中国貨幣史』,第2版,上海人民出版社,1965.
- 黃鑒暉 等編,『山西票號史料 增訂本』,山西經濟出版社,2002.
- 岡本隆司,『近代中國と海関』,名古屋大學出版會,1999.
- 高柳松一郎,『中國關稅制度論』,商務印書館,1933
- 宮田道昭,『中國の開港と沿海市場-中國近代經濟史に関する一視點-』,『東方書店』,2006.
- 宮田道昭,『清末における外国貿易品流通機構の一考察 -ギルドの流通支配を中心として』,『駿台史学』第52号,1981.
- 宮下忠雄,『支那貨幣制度論』,質文館,1938.
- 宮下忠雄,『中国幣制の特殊研究 -近代中国銀兩制度の研究』,日本學術振興會,1952.
- 宮下忠雄,『支那銀行制度論』,嚴松堂書店,1941.
- 根岸佶,『清國商業綜覽』,丸善株式會社,1906.
- 島淑男,『近代中國の經濟と社會』,汲古書院,1993.
- 藤原敬士,『商人たちの広州:一七五〇年代の英清貿易』,東京大學出版會,2017.
- 鈴木智夫,『洋務運動の研究』,汲古書院,1992.
- 木越義則,『近代中國と廣域市場圏-海關統計によるマクロ的アプローチ』,京都大學學術出版會,2012.
- 濱下武志 等 編,『山西票號史料,書簡篇(一)』,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1990.

- 濱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97.
- 濱下武志, 『中國近代經濟史研究』, 汲古書院, 1989
-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 明代における商人および商業資本』,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72.
- 山本進, 『明末清初江南の牙行と国家』, 『名古屋大学東洋史研究報告』 第21号, 1997.
- 山本進, 『明清時代の商人と國家』, 研文出版, 2002.
- 山本進, 『清代財政史研究』, 汲古書院, 2002.
- 小島淑男, 『近代中國の經濟と社會』, 汲古書院, 1993.
- 松下智, 『中国の茶その種類と特性』, 『河原書店』, 1986.
- 矢沢利彦, 『グリーン・ティーとブラック・ティー』, 東方書店, 1997
- 矢沢利彦, 『東西お茶交流考』, 東方書店, 1989.
- 岸本美緒, 『清代中國の物價と經濟變動』, 研文出版, 2003.
- 岩井茂樹, 『中國近世財政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4.
- 岩井茂樹, 『朝貢・海禁・互市: 近世東アジアの貿易と秩序』, 名古屋大学出版會, 2020.
- 上田信, 『海と帝國 明清時代』, 講談社, 2005.
- 檀上寛,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 岸本美緒, 『明末清初中国と東アジア近世』, 岩波書店, 2021.
- Alberto Francisco Pradeau, *Numismatic history of Mexico from the pre-Columbian epoch to 1823*, the Western Printing Company, 1938
- Andrew B Liu, *Tea War: A History of Capitalism in China and India*, Yale University Press, 2020.
- Chen, Kuo-tung, *The insolvency of the Chinese Hong merchants, 1760-1843*, Yale University, 1990.

- H. E. Morriss, C. R. Maguire, *China Stock & Share Handbook*, North-China Daily News & Herald, 1914.
- Hosea Ballou Morse,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The Clarendon press, 1926.
- Hsiao Liang-Lin, *China's Foreign Trade Statistics, 1864-1949*. 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4.
- Imperial Maritime Customs, *Reports on the Haikwan Banking System and Local Currency at the Treaty Ports,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79.
- John D Wong, *Global Trade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House of Houqua and the Canton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Paul A. Van Dyke, *Merchants of Canton and Macao: politics and strategies in eighteenth-century Chinese trade*,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1.
- Paul A. Van Dyke, *Merchants of Canton and Macao Success and Failure in Eighteenth-Century Chinese Trade*, Project Muse, 2016.
- Paul A. Van Dyke, *The Canton Trade: Life and Enterprise on the China Coast, 1700-18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 江滢河, 黃超 譯, 『廣州貿易: 中國沿海的生活與事業(1700-1845)』,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8.
- Paul A. Van Dyke and Susan E. Schopp Eds., *The Private Side of the Canton Trade, 1700-1840 Beyond the Companies*, Project Muse, 2019.
- Preston Wallace Barker, *Rubber statistics, 1900-1937: production, absorption, stocks and price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8.
- Preston Wallace Barker, *Rubber: history, production, and manufacture*,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0.
- Robert Chalmers Chalmers, *A history of currency in the British colon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1893

W. C. Hunter, *The Fan Kwae at Canton, Before Treaty Days, 1825-1833, by an Old Resident*, Kegan Paul, 1882.

William Arthur Shaw, *The history of currency 1252 to 1894: Being an Account of the Gold and Silver Monies and Monetary Standards of Europe and America, together with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Currency and Exchange Phenomena on Commercial and National Progress and Well-being*, Wilsons & Milne, 1896.

Paul A Van Dyke·Susan E Schopp, *The Private Side of the Canton Trade, 1700 - 1840: Beyond the Companies*,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8.

Weng Eang Cheong, *The Hong merchants of Canton : Chinese merchants in Sino-Western trade*, Curzon, 1997.

Zhao Gang, *The Qing Opening to the Ocean: Chinese Maritime Policies, 1684 - 1757*,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 3. 研究論文

강진아, 「근대 중국의 재정개혁에 있어서 전통성과 근대성 재고(再考) -1930년대 광둥성(廣東省)의 징세청부제도의 운영과 실태」, 『人文論叢』 50, 2003, pp.38-59.

강진아, 「시대와 공간의 越境: 일본 중국사학계의 새로운 조류」, 『동아시아역사연구』 5, 1999.

김원중,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재정, 그리고 절대 왕정의 성격」, 『관악사론』 2, 2016, pp.

김형중, 「清代國家權力の 性格 -財政史的 觀點에서의 理解」, 『東亞文化』 45, 2007,

박기수, 「清代 廣東行商 怡和行 伍秉鑒(1769-1843)의 활동과 그 위상 -

- 英國東印度會社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中國史研究』 97, 2015.
- 박기수, 「清代 行商의 紳商的 성격 -潘氏家族의 사례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0, 2012.
- 박기수, 「청대 광동의 대외무역과 광동상인」, 『명청사학회』 9-1, 1998.
- 박기수, 「최근 중국에서의 명청시대 지역사연구: 청대 광동지역 경제사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39-1, 1999.
- 박민수, 「清代 江南 市鎮의 牙行과 會館·公所의 建立 -碑刻資料의 分析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117, 2011.
- 송한용, 「하마시타의 조공시스템론을 통한 ‘아시아교역권’론에 대한 재론」, 『용봉인문논총』 47, 2015.
- 吳金成, 「廣東貿易體制 下의 江西의 社會變化」, 『역사교육』 86, 2003, p.172.
- 이영옥, 「아편전쟁 시기 道光帝의 아편정책」, 『東洋史學研究』 69, 2001.
- 이학로, 「廣州의 鴉片問題와 許乃濟의 弛禁論」, 『中國史研究』 26, 2003.
- 이학로, 「아편과 19세기 중국사회」, 『계명사학』 22, 2011.
- 장런주, 「廣東貿易體制시기 粵海關의 징세구조와 무역관리 : 『粵海關志』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정성일, 「清代廣州貿易體제의 成立 - 洪任輝事件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41, 1991.
- 정성일, 「네이피어(Napier)事件과 清朝의 對應」, 『명청사연구』 22, 2004.
- 高炳文, 「漳州市發現的“番銀”考析」, 『福建文博』 1, 2013.
- 孔祥毅, 「1883年金融危机中的票号与钱庄 (上)」, 『山西財經大學學報』 3, 2000.
- 孔祥毅, 「1883年金融危机中的票號與錢莊 (下)」, 『山西財經大學學報』 4, 2000.
- 祁美琴, 「關於清代權關“差官”問題的考察」, 『清史研究』 4, 2003.

- 祁美琴·崔燦,「包衣身份再辨」,『清史研究』2, 2013;
- 段玉芳,「1757年“一口通商令”形成原因的研究綜述」,『前沿』20, 2013.
- 戴一峰,「晚清粵海關(洋關)設立問題考辨」,『中國社會經濟史研究』1, 2009.
- 戴和,「清代粵海關稅收述論」,『中國社會經濟史研究』1, 1988.
- 董萬倫,「從滿文記載看“諸申”的身份和地」,滿語研究 1, 1986.
- 杜家驥,「清代滿族的“諸申”問題」,『清史研究』5, 2020;
- 盧金玲·劉正剛,「乾隆時期的粵海關腐敗案」,
- 廖聲豐,「清代前期粵海關的商品流通及稅收」,『華南農業大學學報』, 2009
- 劉文華,「乾隆年間戶部撥款60萬作為內務府常年經費考辨」, 滿族研究 1, 2019.
- 劉厚生,「從《舊滿洲檔》看滿語“諸申”(jušen)一詞的語義」, 史學集刊 2, 1990.
- 凌弓,「論1883年上海金融風潮及其對近代民用企業的影響」,『上海金融學報』1, 1996.
- 李金明,「1757年廣州一口通商與洪任輝事件」,『南洋問題研究』2, 1993;
- 李金明,「清代海關的設置與關稅的征收」,『南洋問題研究』3, 1992.
- 李育民,「晚清“人臣無外交”的異變及其趨向」,『史學月刊』7, 2019.
- 李育民,「晚清“人臣無外交”的異變及其趨向」,『史學月刊』7, 2019.
- 林南中,「早期葡萄牙銀元流入閩南小考」,『中國錢幣』1, 2014.
- 林南中,「葡萄牙貨幣如何來到閩南」,『收藏』5, 2013.
- 林延清,「試論清中期的“夷欠”問題」,『近代史研究』1, 1985.
- 徐法言,「內務府漢姓包衣的社會地位及其族屬認定」,『社會科學研』3, 2008.
- 蕭國亮,「清代廣州行商制度研究」,『清史研究』2, 2007.
- 申學鋒,「清代國庫制度述略」,『財政科學』3, 2016, p.136.
- 榮曉峰,「清末天津化寶銀危機與制度調整」,『安徽師範大學學報』48-6, 2000.
- 吳必龍,「二十世紀初期天津金融風潮及其對對外貿易的影響」,『南開經濟研究』1, 1995.
- 王開璽,「略論“人臣無外交”思想在近代中國的歷史命運」,『北京師範大學學

報』5, 2009

- 王巨新,「清前期粵海關稅則考」,『歷史教學』5, 2010.
- 王濤,「清代廣州對外貿易中的引航制度」,『歷史教學』6, 2014.
- 王華鋒,「乾隆朝“一口通商”政策出台原委析論」,『華南師範大學學報』4, 2018.
- 袁伯韜·胡瑞琴,「洪任輝事件與清王朝的對策探析」,『魯東大學學報』6, 2016
- 李金明,「清代粵海關的設置與關稅的徵收」,『中國社會經濟史研究』4, 1995
- 任智勇,「從權稅到夷稅:1843—1854年粵海關體制」,『歷史研究』4, 2017.
- 張坤,「道光九年(1829)前后的行商制度危機及其調整」,『中國經濟史研究』5, 2016.
- 張明富,「福康安與乾隆末中安宗藩關係的修復」,『西南大學學報』36-4, 2010  
을 참조.
- 章榮玲,「從清宮檔案探討“十三行”名稱的含義」,『嶺南文史』3, 2018.
- 程美寶,「水上人引水-16-19世紀澳門船民的海洋世界」,『學術研究』4, 2010.
- 曹雯,「清代廣東體制再研究」,『清史研究』2, 2006.
- 曹英,「領事擔保制探析」,『安徽史學』6, 2013.
- 佐々木正哉,「粵海關の陋規」,『東洋學報』第34卷 第1·2·3·4合併號, 1952.
- 佐々木正哉,「清代廣東の行商制度について -その独占型態の考察-」,『駿台史學』第66号, 1986.
- 陳國棟,「清代前期粵海關監督的派遣(一六八三-一八四二)」,『史原』第10期, 1980.
- 陳國棟,「清代前期粵海關的稅務行政(一六八三-一八四二)」,『食貨月刊』第11卷 第10期, 1982.
- 陳國棟,「清代中葉慶門的海上貿易(一七二七-一八三三)J」,吳叙雄 主編,『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4輯,中央研究院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91.
- 陳鋒,「20世紀的清代財政史研究」,『史學月刊』1, 2004.
- 陳鋒,「清代權關的設置與關稅征收的變化」,『人文論叢』1, 2018.

- 詹慶華, 「中國近代海關總稅務司募用洋員特權問題新論」, 『近代史研究』 1, 1995
- 彭澤益, 「廣州十三行續探」, 『歷史研究』 4, 1981.
- 彭澤益, 「清代廣東洋行制度的起源」, 『歷史研究』 1, 1957.
- 彭澤益, 「清初四樞關地点和貿易量的考察」, 『社會科學戰線』3, 1984
- 香阪昌紀, 「清代的北新關與杭州」, 『杭州師範學院學報』 1, 1998.
- 黃國盛, 「清初四省海關衙署設置新探」, 『福建師範大學學報』2, 1999
- 侯彥伯, 「1869年粵海關監督奏銷與粵海關稅務司貿易報告表中洋稅收入數據之考核」, 『國家航海』 16, 2016.
- 岡本隆司, 「辛亥革命と海関」, 『近きに在りて』 39, 2001.
- 岡本隆司, 「清代粵海関の徴税機構 -保商制度を中心として」, 『史林』 75-5, 1992.
- 岡本隆司, 「清末粵海関の展開 -広州における洋関談立の意味」, 『史林』 77-6, 1994.
- 岡本隆司, 「『朝貢』と『互市』と海関」, 『史林』, 90-5, 2007.
- 高橋孝助, 「中国の常関・釐金・海関」, 『移動と交流』, 1990
- 菊池貴晴, 「経済恐慌と革命への傾斜」, 『中國近代化と社會構造: 辛亥革命の史的位罫』, 教育庶嫡, 1960.
- 宮田道昭, 「19世紀中葉上海における豆規銀本位制の成立について: 中國在來の地域的通貨金融機構の一考察」, 『東洋學報』 84-3, 2002.
- 宮澤知之, 「宋代の牙人」, 『東洋史研究』 39, 1980.
- 宮澤知之, 「元朝の商業政策 : 牙人制度と商税制度」, 『史林』 64, 1981, pp.185-213.
- 内田直作, 「清代の貿易独占機構(二)」, 成城大學經濟研究 6, 1956.
- 内田直作, 「清代の貿易独占機構(一)」, 成城大學經濟研究 5, 1956.
- 檀上寛, 「明清時代の天朝體制と華夷秩序」, 『京都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

- 科研究紀要』12, 2013.
- 藤原敬士, 「商人の社会的地位の上昇から見る広州貿易会社の特殊 嘉慶年間の捐納の事例を中心に」, 『史海』 55, 2008.
- 滝野正二郎, 「清代乾隆年間における粤海関の徴税報告遅延問題について」, 『アジアの歴史と文化』 8, 2004.
- 瀧野正二郎, 「清代常関における包攬について」, 『文學會志』 39, 1988.
- 滝野正二郎, 「清代淮安関の構成と機能について」, 『九州大学東洋史論集』 第14号, 1985.
- 廖大珂, 「宋代牙人牙行与海外貿易」, 『海交研究史』 2, 1990.
- 廖敏淑, 〈清代對外通商制度〉, 《近代中國：東亞與世界》下卷(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廖敏淑, 「從清越通商交渉看清朝的外政運作機制」, 『近代中國：政治與外交』 上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 廖敏淑, 「清代の通商秩序と互市——清初から兩次アヘン戦争へ」, 『中国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学出版会, 2009.
- 廖敏淑, 「互市から見た清朝の通商秩序」, 北海道大學大学院法學研究科, , 平成18 年度博士論文, 2006)
- 劉志偉, 「アヘン戦争前の広州貿易システムにおける寧波商人」, 『東洋史論叢』 別冊特集號, 2009.
- 百瀬弘, 「清代に於ける西班牙弗の流通(上)」, 『社會經濟史學』 6-2, 1936.
- 百瀬弘, 「清代に於ける西班牙弗の流通(中)」, 『社會經濟史學』 6-3, 1936.
- 百瀬弘, 「清代に於ける西班牙弗の流通(下)」, 『社會經濟史學』 6-4, 1936.
- 本野英一, 「イギリス向け紅茶輸出貿易の衰退と中国商人「団結力」の限界 - 福州での紛争, 論争を中心に」, 『東洋學報』 77-1・2, 1995
- 寺田隆信, 「清朝の海関行政について」, 『史林』 第49卷 第2号, 1966.
- 山本英史, 「清初における包攬の展開」, 『東洋学報』 第59卷 第1・2号, 1977.
- 山本進, 「清代の椎税と牙行」, 『名古屋大学東洋史研究報告』 28, 2004.
- 山本進, 「清代江南の牙行」, 『東洋文庫』 74, 1993.

- 西村元照, 「清初の包攬: 私徴体制の確立、解禁から請負徴視制へ」, 『東洋史研究』 3, 1976.
- 小瀬一, 「中国における二十世紀初頭の恐慌について」, 『一橋論叢』 103-2, 1990
- 蕭文嫻, 「清末上海における事業投資とその資金調達 -ゴム株式恐慌(1910年)に至る過程を中心に-」, 『社会経済史学』 63-5, 1997, p.69.
- 松津繁一, 「支那海関制度の歴史的発展總稅務司制度を中心として-」, 『満鉄調査月報』 第19巻 第6号, 1939.
- 松浦章, 「清代前期の浙江海関と海上貿易」, 『史泉』 85, 1997
- 松浦章, 「清代前期の海関監督について」, 『關西大學文學論集』41-3, 1992
- 松浦章, 「清初の権関について」, 小野和子 編, 『明末清初の社会と文化』,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96, 所収.
- 矢沢利彦, 「西洋人から見た中国の茶」, 『駿台史学』 76, 1989.
- 新宮学, 「明代の牙行について」, 『山根論叢』, 1990.
- 安藤久美子, 「辛亥革命運動と帝国主義--列強の海関管理に反対する運動から善後借款反対運動へ」, 『近きに在りて』 32, 1997.
- 安野省三, 「明代, 川陝・湖広地方の茶の生産者と商人層」, 『山根論叢』, 1990.
-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会の秩序形成』,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4
- 岩井茂樹, 「16~18 世紀の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商業と互市体制」, 『東アジア研究』 46, 2006.
- 岩井茂樹, 「明代中国の礼制覇権主義と東アジアの秩序」, 『東洋文化』 85, 2005.
- 岩井茂樹, 「十六世紀中国における交易秩序の模索—互市の現実とその認識—」, 『中国近代社会の秩序形成』,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4.
- 岩井茂樹, 「十八世紀前半東アジアの海防と通商 -信牌問題と南洋海禁案から」, 『大阪市立大学東洋史論叢 別冊特集号「文献資料学の新たな可能性③」』, 2007.
- 岩井茂樹, 「帝国と互市——16-18 世紀東アジアの通交」, 『帝国とネットワーク——長期の19 世紀』 世界思想社, 2009.

- 岩井茂樹, 「清代の互市と“沈黙外交”」, 『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 岩井茂樹, 「清代国家財政における中央と地方 -酌撥制度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第42巻 第2号, 1983.
- 永田雄三, 「後期オスマン帝国の徴税請負制に関する若干の考察」, 『駿台史學』 100, 1997, pp.75-110.
- 張亨道, 「粵海関船料之研究」, 『中国総合研究』 創刊號, 1975.
- 田中正俊, 「東インド会社の独占-茶の価格」, 『中嶋論集』 下巻, 1981.
- 井上裕正, 「清代嘉慶・道光期のアヘン問題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41巻 第1号, 1982.
- 佐藤正哲, 「十八世紀前半ムガル帝国における領国支配と徴税請負制について(一)」, 『アジア研究』 24-1, 1977.
- 佐伯富, 「清代における奏銷制度」, 『東洋史研究』 22, 1963,
- 中村哲夫, 「近代中国の通貨体制の改革 -中国通商銀行の創業-」, 『社会経済史学』 第62巻 第3号, 1996.
- 詹慶華, 「中國近代海關總稅務司募用洋員特權問題新論」, 『近代史研究』 1, 1995;
- 泰惟人, 「近代中国の茶貿易 -輸出の漸落期」を中心に」, 『中國近現代史』, 1985.
- 波多野善大, 「中国輸出茶の生産構造 -アヘン戦争前におりる-」, 波多野善大, 『中国近代工業史の研究』, 東洋史研究会, 1961, 所収.
- May-bo Ching, “The ‘English Experience’ Among the Humblest Chinese in the Canton Trade Era (1700s-1842)”, *Curtis's Botanical Magazine*, 34-4, 2017.
- Evelyn S Rawski・Susan Naquin, “A New Look at the Canton Trade, 1700 - 1845”,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78-2, 2018.
- W. G. Sumner, “The Spanish Dollar and the Colonial Shilling”,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4-3, 1989,

Josephine C Dobkin, “Chinnery and Houqua: Questions of Attribution”,  
*Metropolitan Museum journal*, 48-1, 2013.

DONG WANG, “Between Tribute and Unequal Treaties: How China Saw  
the Sea World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History*, 103,  
2018.

## 中文摘要

### 清代粤海关与关税代理征收结构

#### ——关于“海关两”起源的内容

首尔大学 大学院

东洋史学科

朱莹俊

本学位论文为旨在分析广东体制下粤海关的关税代理征收结构及海关独立货币单位使用习惯方式的研究内容。清朝在康熙23年(1684)以四口通商的方式重启对外贸易后，以乾隆24年(1759)发生的洪任辉事件为契机，建立起了以一口通商及行商制度为特征的对外贸易管理制度，即“广东体制”，广东体制的建立标志着广州粤海关对外贸易惯例及清朝对西洋贸易政策的制度化。然而随着道光22年(1842)《南京条约》签订，除广州外另有四处被新设为通商口岸，行商对贸易权的垄断被剥夺，广东体制亦趋于解体。故可将“广东体制下的粤海关”概括归纳为集1759年至1842年间围绕广州粤海关为中心所进行清朝对外贸易政策的管理制度。

同时，鸦片战争战败导致广东体制解体的事实，其并不意味着清朝对传统对外贸易管理制度的抛弃。清朝反而在原先广东体制的基础上，凭借自身运营经验探索并摸索出新替代方案。因此，将此基础模型理解为广东体制下粤海关的征税结构，自然且符合常理，尽管在此过程中必然存在由条约签订所带来的对外贸易扩大化，及为适应贸易方式改变而进行的补充与调整。基于此种理解，可以将随广东体制解体而兴起的五口通商时期(1842-1858)视为清朝在既存征税体系基础上不断构建新型对外贸易管理制度的时期。

因此，对广东体制下粤海关的构成，特征，结构组合，运转机制，乃至对户部

对西洋贸易政策的变化及该变化对征税结构的影响，抑或是对直至鸦片战争前清朝构筑的征税体系，对外贸易政策内容等一系列主题的探讨，均为应以对五口通商时期海关及多口通商时期出现的“近代海关”性质的理解为入手点而率先解决的课题。通过对此种课题的研究，亦可理清清朝海关政策的连续性，为外国人税务制度的建立及“近代海关”的出现提供新的合理解释。

而清朝重启对外贸易后所设海关，亦随管理内地全部贸易活动的榷关体制而运营。其中由明代钞关演化而来的榷关，因其包含清代户部与工部管辖下的税关“户关”与“工关”，故可将其理解为广义上征收通关税的税关。然榷关体制的“全国税关在一定期限内按每年定额进行精准结算”的初衷，则反映了被称为明清两代财政运营原理特征之一的原额主义被应用于管理对外贸易方式的情况。

其中，广东体制下的粤海关，不仅是清朝对西洋贸易的唯一港口，亦作为具有与内地常关按同一定额主义特性而运营的户部征税机关。尽管其作为外贸易港口，随对外贸易量增加而在一定程度上具有存在威胁定额主义的可能性，但此点亦为区别于内地常关的海关本质属性体现。而此种现象在商品流通交易量无大幅变化的康熙年间尚无大碍，但随着雍正年间实施耗羨归公，将陋规定为杂税而征收，其造成税收大幅增长的同时，超过康熙年间所定榷关定额的额外征收额亦开始增长。因此，截至乾隆初年，随着国内商品流通量增长与对外交易的急剧增长，超过榷关定额的额外征收额已大幅超过了原有有定额。

特别是乾隆初年对西洋贸易中心粤海关的发展甚为惊人。随着粤海关税收规模增大，其额外征收额所占比重亦逐渐增高。而对户部而言，尽管额外征收额的增减管理日趋重要，但榷关体制下，户部无法直接监督各地区税务征收的过程，其对征税机关的极度不信与怀疑则以强化会计结算的方式体现出来。其中，依户部施政方向所实行的一连行政手段则可概括称为保证“粤海关行政严肃公正”的举措。

广东体制下的粤海关，则以不同于内地常关的方式及形态运营。其在承认行商在贸易中优越地位的同时，亦强令其承担大部分关税的课税与征收，与西洋人管理等关税行政。此种将关税行政的大部委托的征税承包制，亦为当时清朝所承认的合法活动。而对于来自民间的税务承包者而言，除榷关体制所规定行政流程

外，在委托关税行政的代理征收结构中仍存有各种附加项，户部则对此例外项则予以非正式默认。尽管户部制定的粤海关运营原则承认对关税代理征收结构应符合因地制宜，但这并不意味着其允许脱离榷关体制下的额外支出。

至乾隆初年，粤海关已成长为占全国榷关税收比重极高的特殊榷关而备受户部关注。乾隆年间对榷关体制的不断的改变与修正，正是户部为克服自粤海关而始的正额主义缺陷及副作用而采取的举措。其对粤海关行政采取的严肃公正政策，亦以针对对榷关体制离心力不断加剧的粤海关为方向。因此，粤海关行政严肃公正政策其本身，亦作为既存基础上的特例，以减少，乃至取消例外的基础大方向上展开并施行，这便是户部欲强化榷关体制统一性的意图所在。同时，由于该政策及施策方向适用于鸦片战争以前唯一的对西洋贸易港口，从而与内务部财政联系紧密，并具有特殊地位。而对于此种关系及地位的先行解释与理解方式则有所差异。

本学位论文则意在通过对乾隆29年(1764)在税收运送体系调整下水脚银的节省分归公，及乾隆43年(1778)对粤海关的税收结算期限设定的考察，探讨粤海关所认之特例为户部所否定的过程。而粤海关行政严肃公正政策的实施，不仅使在关税代理征收结构中享受既得利益的税务承包者权利缩减，亦成为当时费用支出增加的要因。作为税务承包者行商的主要权利之一，行商享有在截至会计结算日前可将征收关税调用为其事业运作资金的关税调用权。在当时不稳定的金融环境中，行商通过此权利有效解决了其对现金的大量需求，而关税调用期的缩减急剧则阻塞了现金的流动性。因此，随着乾隆43年(1778)粤海关税收结算日设定后，粤海关行政体系亦有所变化，进而成为导致嘉庆道光年间行商不断破产的直接或间接原因。

在粤海关的征收结构中，课税及关税征收主体(税务承包者)与税收会计处理主体(粤海关)相互分离。粤海关作为对西洋贸易的征税机关，其对精确课税，征收关税及会计结算至关重要，但随着对外贸易重后，广州在中国与西洋异质文明交融下为经济活动提供场所，并逐步发展为以贸易为媒介进行商品及货币交易的巨大市场的情况下，征税当局须对不同重量，纯度的中国银锭，乃至全世界流通的外国银元中纯银含有量进行准确“测定”，并“评价”其交换价值的能力。因此，粤

海关的关税行政亦十分具有风险(risk)，而征税当局并无甘受如此繁杂，直接执行风险如此之大业务的必要，故其委托与民间，以代理征收的方式来规避税务征收中的风险。

而对税务承包者而言，即使其被委任以关税行政(课税与征收)，但税收的会计处理业务仍须由粤海关直接处理。而此处则涉及测定银两重量标准的砝码重量问题。已知关税的课税基准依户部会计基准制定，以库平银为标准。而称量货币体系的特征中，户部所用库平与各征税机关所用库平存在差异，在榷关体制下则将此调整费用列为正式支出。而粤海关关税则由税务承包者代为征收，行商所用库平与粤海关所用库平间亦存在差异。即税务承包者—粤海关—户部三个经济主体所用测定银两重量的标准，砝码其本身重量存在差异的问题。但榷关体制下仅将粤海关及户部调整费用认定为支出，而税务承包者至户部间的砝码重量差异，则另须经过其他换算、核算程序。因此，乾隆29年(1764)在节省水脚银归公问题上户部与粤海关的矛盾亦由此产生。

对于砝码重量的差异，粤海关则需在关税征收与会计过程额外增加两次调整程序。此亦为区别于内地常关的粤海关行政特征，且在此过程中出现了作为中间阶段货币单位的关平银。广东体制下的粤海关使用以粤海关使用的库平砝码“粤海关平”测定重量的足色纹银“粤海关银”进行会计处理税收。而税务承包者行商则以广州市平“司码平”测量重量，而将粤海关银作为基准进行征收和代纳关税。粤海关虽以户部库平银为基准调整粤海关银的交换价值，并进行税收结算，但由于砝码重量差异，户部则需要最终以户部库平银为基准，额外增加调整其交换价值的程序。

在广东体制下粤海关系统变容及扩大的五口通商时期，新设海关虽采用依据条约改定的粤海关税则，但海关度量衡，会计年度，会计方法等则仍以粤海关为基准划一。且与前相比更加值得注意的是，在此期间，海关作为对外贸易的征税机关，其与内地常关的差异得到承认，不再被要求保持与榷关的同一性。自此，海关逐步脱离榷关体制，并形成了独立运营的原理。

而作为关税代理征收结构的衍生物，海关的独立货币单位亦得到了户部的正式承认。在五口通商时期，海关则使用以广东体制下粤海关的粤海关平作为关税征

收的重量基准的“海关平”，关税则使用以海关平测定重量的足色纹银作为基准的关平银进行征收，而海关的货币单位最终于鸦片战争前后统一。同时，为人所熟知的“近代海关”货币单位海关两，则为西洋人在称呼关平银而所使用过的“Haikwan teal”的译词。因此可以说，鸦片战争后新设海关与“近代海关”中使用的货币单位海关两，亦是继承了广东体制下粤海关所使用过的粤海关银。

广东体制下粤海关的关税代理征收结构直至鸦片战争以后依然存在，而此种现象不仅仅是一种“惯性”，亦是签订条约双方相互协议的产物。在因鸦片战争行商无法参与关税行政的情况下，清朝虽然能够通过委托海关银号业务确保关税征收，但此种业务并不能保证短期间确保税务征收的课税能力。因此，五口通商时期走私逃税泛滥的根本原因，正是海关在进出口商品通关程序的把控及对商品准确课税处理上的无能所导致的。同时，对多口通商时期外国人税务司制度能够轻易安置于清朝，其中所表现出的亲和力，亦正是在于将关税行政委托与民间处理税务承包制的惯性，及与无法发挥其应有课税能力的海关体系的结构组合。此亦是理解关于“近代海关”出现的相关问题，而再度关注思考广东体制的理由。

**关键词：** 榷关，常关，海关，粤海关，粤海关监督，广州，广东体制，行商，保商，一口通商，五口通商，海关银号，海关两，关平银，司码银，库平银，包揽

**學號：** 2013-30861